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국내외 제도 연구

2017. 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SBI 중소기업연구원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최종보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국내외 제도 연구

2017. 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제 출 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국내외 제도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국내외 제도연구

2017. 8.

중 소 기 업 연 구 원

연구책임자 : 최 수 정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황 경 진 연구위원

권 선 윤 선임연구원

장 윤 섭 선임연구원

김 수 현 연구원

신 가 램 연구원

목 차

요 약 문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추진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
제2장 우리나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관	5
제1절 우리나라 제품안전관리제도 개관	5
1.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개관	5
2. 사전적 제품안전관리제도	6
3. 사후적 제품안전관리제도	8
제2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개정 경과	9
1.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의 통합	9
2.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연혁적 고찰	10
제3절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주요 쟁점	44
1. 개관	44
2. 제조 및 수입업자의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보관의무	47
3.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안전인증 정보 게시의무	48
4. 구매대행업자 등의 KC 인증 부담	49
제4절 최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입법동향	50
제5절 소결	53
제3장 주요국가의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	55
제1절 개관	55
제2절 미국	58
1. 미국의 소비자안전관리법제 개관	58
2. 소비자안전관리의 현황	60

3. 소비자제품안전법 및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62
4. 미국의 유독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64
5. 연방유해물질법	74
6. 독극물예방포장법	74
7. 가연성 식물제품법	74
8. UL(Underwriters Laboratory) 인증	75
제3절 EU	76
1. 개관	76
2. 제품 · 물질안전법제	77
3. 임의인증	92
4. 소비자안전문제사례와 법제 강화	97
제4절 일본의 생활용품안전법제	102
1. 일본의 생활용품안전법제 개관	102
2. 일본 주요 제품안전 관련법	103
3. 소비생활용품안전법	104
4. 전기용품안전법	111
5.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118
6. 가스사업법	119
7. 가정용품품질표시법	120
8.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3
9. SG마크	124
10. ST마크	127
11. 섬유제품 관련 인증제도	129
12. 소비자안전사고와 법제 강화	130
제5절 중국의 생활용품안전관리제도	132
1. 중국의 상품인증제도의 개요	132
2. 중국의 강제 상품인증제도의 개요	133
3. 중국강제인증제도 관련 법령	134
4. 중국강제인증 제도 관련 기관	137
5. 인증대상의 종류	138
6. 인증마크	141
7. 신청절차	141
8. 의류 제품 인증	143
9.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	147
10. 「제품품질법」	147

11.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중국의 「형법」 규정	153
12. 소비자제품안전사고 사례	154
제4장 국내 제품안전관리 입법례 분석	157
제1절 개관	157
제2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60
1. 개관	160
2. 주요 내용	163
제3절 제품안전기본법	168
1. 제정목적	168
2.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제도	168
제4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69
1. 개관	169
2. 주요 내용	171
제5절 제조물책임법	175
1. 개관	175
2. 2017년 개정	176
제5장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선방안	177
1. 물질안전관리제도와와의 연계를 통한 규제이행비용 합리적 분담	177
2. 구매대행업자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의무 폐지	188
3. 제품안전관리체계의 재설계	189
4. 사전규제 완화를 대비한 사적 책임 강화	191
부 록 I	193
부 록 II	203
부 록 III	241
부 록 IV	263
부 록 V	269
부 록 VI	331
부 록 VII	339
부 록 VIII	357
부 록 IX	371
부 록 X	377

표 목 차

〈표 1-1〉 안전관리제도의 전·후 비교	1
〈표 2-1〉 현행 제품안전관리 체계도	7
〈표 2-2〉 생활용품 인터넷 게시의무 유무	49
〈표 2-3〉 인증확인 표시 없는 생활용품의 판매·사용 등 금지의무	49
〈표 2-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사전 및 사후규제	50
〈표 3-1〉 전안법 쟁점 대상에 관한 해외 유사제도 비교표	56
〈표 3-2〉 간단 비교표	58
〈표 3-3〉 미국 제품안전 개요	59
〈표 3-4〉 EU의 제품안전관리체계	77
〈표 3-5〉 CE 마크 대상 품목	89
〈표 3-6〉 Oeko-Tex Standard 100의 적용범위	93
〈표 3-7〉 비용표	94
〈표 3-8〉 섬유산업의 잔류유해물질의 발생원인 및 유해성	98
〈표 3-9〉 Oeko-Tex Standard 100의 난연제 사용규제 기준	99
〈표 3-10〉 Oeko-Tex Standard 100에서 규제하는 섬유용 난연제	99
〈표 3-11〉 섬유산업의 환경규제 항목 및 근거	100
〈표 3-12〉 유럽의 난연제별 제한 법규 현황	101
〈표 3-13〉 일본의 제품안전을 둘러싼 제도적 발전사	104
〈표 3-14〉 가정용품품질표시법 상의 대상 품목 일람표	121
〈표 3-15〉 유해물질규제법상의 화학물질 사용 규제	124
〈표 3-16〉 중국의 제품안전관리체계	133
〈표 3-17〉 중국강제인증(CCC) 대상 범위	139
〈표 3-18〉 방직제품 분류 예시	144
〈표 3-19〉 지표요구 정도에 따른 유형분류	145

〈표 4-1〉 전안법 쟁점 대상에 관한 국내 유사제도 비교표	158
〈표 4-2〉 화평법 체계도	162
〈표 4-3〉 어린이제품법 체계도	171
〈표 5-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179
〈표 5-2〉 유해물질 안전요건(가정용 섬유제품)	180
〈표 5-3〉 아릴아민 종류	181
〈표 5-4〉 위해우려제품의 종류	183
〈표 5-5〉 물질별 적용기준	184
〈표 5-6〉 물질별 적용기준	184
〈표 5-7〉 사용제한 물질	185
〈표 5-8〉 물질별 적용기준	185
〈표 5-9〉 사용제한 물질	186
〈표 5-10〉 물질별 적용기준	186
〈표 5-11〉 사용제한 물질	186
〈표 5-12〉 유해물질 안전요건(가죽제품)	187
〈표 5-13〉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관리제도 비교표	192

그림 목차

〈그림 2-1〉 안전관리제도 신·구 비교	7
〈그림 2-2〉 시장 출시 전 안전관리제도	8
〈그림 3-1〉 EU의 인증체계	88
〈그림 3-2〉 RoHS 인증마크	90
〈그림 3-3〉 RoHS 인증절차	91
〈그림 3-4〉 WEEE 인증마크	91
〈그림 3-5〉 VDE 인증마크	93
〈그림 3-6〉 GS 인증마크	94
〈그림 3-7〉 DGUV 인증마크	96
〈그림 3-8〉 ENEC 인증마크	96
〈그림 3-9〉 PSC마크제도 상의 특정제품 표시	107
〈그림 3-10〉 PSC마크제도 상의 특별특정제품 표시	107
〈그림 3-11〉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제도 도식	110
〈그림 3-12〉 전기용품의 표시	114
〈그림 3-13〉 전기용품안전법의 업무 절차 흐름도(제품 유통 전)	115
〈그림 3-14〉 전기용품안전법의 업무 절차 흐름도(제품 유통 후)	117
〈그림 3-15〉 액화석유가스법상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구분	119
〈그림 3-16〉 가스사업법상 가스용품 등의 구분	120
〈그림 3-17〉 가정용품품질표시법에 따른 행정상의 집행체계	123
〈그림 3-18〉 중국의 인증마크 기본도안	141
〈그림 5-1〉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183

요 약 문



I. 우리나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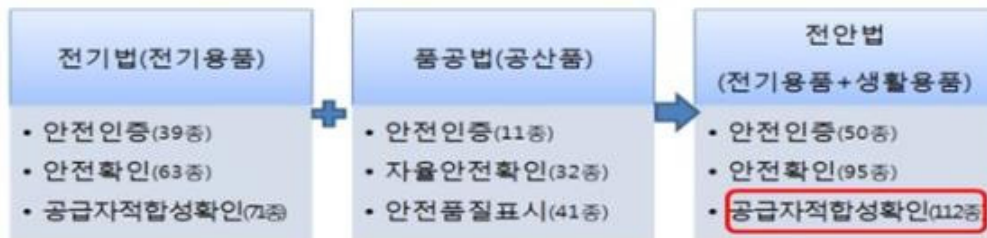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개관

-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제품안전 법률 규정의 통합·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기용품안전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으로 이원화된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 개정함
- 개정법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음
- 기존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적합성확인제도로 운영되던 전기용품안전법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제도로 운영되던 공산품안전법이 통합된 개정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제품별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3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함

 - 공산품안전법상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으로 변경되면서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보관의무가 신설되어 영세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증비용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며,
 -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려는 판매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규제이행비용 증가와 함께 사실상 규제이행이 어려운 구매대행업자 등이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 대상이 될 우려 발생
- 제24차 일부개정(2017년 3월 14일)을 통하여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에 따라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서류보관 의무를 일부 유예함

[그림 1] 안전관리제도 신·구 비교



2.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주요 쟁점

가. 제조 및 수입업자의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보관의무

□ 법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급자적합성확인 방법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국의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중 택일할 수 있음
- 다품목 소량생산을 기본으로 한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과도한 규제비용부담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험결과서 보관 의무를 유예하여 제품설명서만 구비하도록 함
-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KC마크)에 대한 의무가 유예된 것이 아니므로 KC마크를 위한 시험검사 의무는 여전히 유지됨

- KC인증을 위한 시험검사는 기존 공산품안전법 제22조 하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던 내용이나 그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관련 중소기업, 특히 의류관련 업체들이 새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함을 부담으로 인식함
-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생활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안법 인지도는 29.1%에 불과하였으며, 인지도 최저 주요 품목은 섬유(장갑, 신발, 가방)가 20%, 섬유원단(23.3%), 가구(24.2%) 순서이고, 10개 기업 중 76.7%가 KC인증을 미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나.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안전인증 정보 게시의무

- 법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그 정보를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품을 판매중개하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이 KC인증을 받은 제품만 입점을 허가함에 따라,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던 업체들의 규제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됨

다. 구매대행업자 등의 KC 인증 부담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와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구매대행업자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의무가 새로 신설되었으나, 구매대행업의 특수성에 따라 상품에 대한 시험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함
- 구매대행업의 특성상 자가사용 목적을 가진 소비자의 이름으로 수입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므로 업자는 시험인증을 위한 상품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임

[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사전 및 사후규제

구분	사전규제			사후규제	
구분	안전기준 준수	표시	신고 · 서류보관	판매 · 사용금지	사용금지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 확인제품	직접 · 외부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인증) 의무	공급자 적합성 확인표시	-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신고 의무 - 인증서류보관 의무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없는 제품 판매 · 사용금지	표시사용 금지 - 개선명령

3.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최근 입법동향

□ 박정 의원 대표발의안(2017.03.17.)

- (주요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안(2017.04.07.)

- (주요내용) 생활용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원부자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부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행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화학적 처리 등 없이 제조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 함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 개정

- (주요내용) 환경부는 2017년 8월 22일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 자동차용 워셔액 · 습기제거제 · 양초 · 틈새충전재 등 5종의 제품을 위해우려 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련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

4.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 위해물질 인증 등 규제이행주체간의 규제비용 부담 합리화

-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최종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인증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인증비용 부담 주체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체계의 타당성 검토 필요

- 통합 이전의 법체계에 의하면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법을 통하여 특히 제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한 반면, 기타 공산품은 공산품안전법으로 공산품의 품질경영과 안전 및 품질을 관리함
- 개정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체도를 일원화하면서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 반면,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 면이 있음
- 화재나 감전 등 위해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소비자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전기용품과 그렇지 않은 생활용품을 동일한 규제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필요
- 또한,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전관리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규제패러다임이 새롭고 다양한 상품이 계속하여 등장하는 현대사회에 과연 효율적인 규제방향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구매대행업 등 피규제대상의 범위 검토 필요

- 구매대행업은 수수료를 받고 직접구매자에게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품은 바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배송되므로 구매대행자에게는 인증 받을 상품 자체가 인도되지 않으므로 KC인증이 불가능함
 - 또한 소비자 직구와의 규제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유사제도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의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입법방식의 비교법적 분석 및 입법론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구체적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의 입법목적과 소상공인 규제부담의 합리화라는 목적을 조화시켜 법제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II. 주요 국가의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

1. 미국

- ❑ (개관)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법체계는 1972년 제정된 소비자제품안전법과 2008년 제정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고, 소비자안전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가 설립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 (소비자제품안전법) 1972년 10월 27일 제정된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에서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를 설치하여 모든 소비자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감독함
- ❑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2008년 8월 14일 제정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CPSIA)에서 CPSA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하였음
 - 먼저 제219조(15 U.S.C. §2087)에서 소비자제품안전과 관련된 우려를 일으키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 아동용제품의 수출입업자에게 당해 상품에 대해 아동상품안전규칙(Children's Product Safety Rule)에 따라 '아동용 제품인증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CPC)'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작성된 추적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부착할 것을 의무화함
- ❑ (UL인증) UL(Underwriters Laboratory)은 OSHA(미 산업보건안전청)에서 인가한 NRTL(국가공인시험소) 중의 하나로, UL인증은 자율규제제도이나, 미국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들과 UL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협조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UL 표준 중 상당수가 미국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들에 의하여 표준으로 채택
 - 또한 UL인증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정해진 안전요건을 충족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강제규제와 유사한 효력
 - 2005년 기준, 전기·전자제품, 건축구조물, 건축자재, 방화제품, 수영장장비, 완구, 인화성 액체저장, 위험성 물질,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선박용제품 등 19,140개 유형의 품목이 해당됨

[표 6] 미국의 생활용품안전관리제도 개관

구분		미국
법령		• 제품안전성을 보다 강화하는 CPSIA에 규정을 따름
시장 출시 前	사전규제	• 어린이 제품의 판단지침 마련 • 어린이제품은 CPC와 제3자 시험, 추적라벨 부착 등 의무 • 장기간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판매 시 소비자등록업서 제공
	수입제품	• 주요 세관에 수입감시부를 설치하고 관세국경보호국과 협력하여 통관전 검사 수행
	처벌규정	• 5년 이하 금고, US\$50만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 개별위반 당 최대 US\$10만, 복수건 최대 US\$1,500만의 민사상 과징금 부과
시장 출시 後	시장감시	• 생산공장, 유통물류창고, 운송중제품, 기타 보관장소를 포함하여 제품안전성 조사 • 모든 관련 기록, 서적, 문서, 포장, 라벨 등에 대한 조사권한
	정보관리	• 제품사고 정보수집 통합DB 기반으로 제품안전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해 분석 및 사후조치 시행
	사후조치	• 기업 자발적 리콜이 원칙 • 언론, 판매기록, 정보 게재, 제품등록카드 등 활용

2. EU

□ **(개관)** EU에서 공산품에 이용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법제로는 크게 4가지로 REACH, CLP, BPR 및 PIC로 나뉘짐

□ **(REACH)** REACH(Regul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서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위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질을 등록하고, 이러한 절차는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해야하는 사업자와 함께 함

- 원칙적으로 REACH는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되는데, 의류, 가구, 전자제품을 포함한 세척용품이나 공장과 같이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물질 뿐만 아니라 매일 사용되어지는 물질을 그 대상으로 함

□ **(CLP)** CLP 규칙은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을 화학물질의 등급과 표지를 통해 EU내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화학물질이 시장에 소개되기 전에 산업계에서 인지된 위험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반드시 물질이 갖고 있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입증하도록 함

□ **(BPR)** BPR은 인간, 동물, 자재 또는 살균성 제품내 포함되어 있는 활성물질(active substances)

의 작용에 의해 해충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유해한 생물에 대항하는 상품인 살균성 제품을 시장에 유통 전 승인을 받아야 함

 **(CE마크)** 유럽연합의 통합규격으로 유럽 내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하는 의무인증으로, 대상품목으로는 저전압기기, 완구류, 가스기기 등임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선언)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함으로써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

- (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 적합성인증)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

 **(Oeko-Tex Standard 100)** 생상품 관련 섬유 라벨로, 섬유생산공정의 환경적 측면을 배제하고 섬유제품 내에 알레르기나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한 물질이 없음을 나타내는 친환경 마크로 민간자율인증임

- 대상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는 I.유아 및 3세 미만 소아용 섬유 제품, II.직접 피부에 접촉하는 제품, III.피부에 접촉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접촉되는 섬유제품 및 IV.인테리어 소재가 속함

[표 7] EU 생활용품안전관리제도 개관

구분		EU
시장 출시 前	법령	• 제품안전지침(Directive), 개별 제품의 안전기준(EN Standard) 등
	사전규제	• 유럽공동체인증인 CE마크 부착 필수
	수입제품	• 관세국과 시장감시기관 협력하여 수입제품 감시 • Risk Analysis 기반 세관 우선조사 품목 선정 • 회원국간 DB 공유
시장 출시 後	시장감시	• 개별 국가별 시장감시기관에서 수행 • 비정기적 합동조사 수행
	정보관리	• 시장감시 정보, 통계, 분석결과 등을 공유 • RAPEX를 통해 긴급위해정보 공유
	사후조치	• 벌금, 리콜 등

3. 일본

- **(개관)** 일본에서는 소비자 등이 사용하는 제품 중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그 제품을 지정하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이 기술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특별히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제품은 국가에 등록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음
 - 제조·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가 정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 사업자도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제품안전법의 목적은 소비생활용품에 따른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서 PSC마크제도와 제품사고정보 보고·공표제도,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표시제도를 들 수 있음

 - (PSC마크제도) PSC마크제도는 일반소비자에게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하여 제조·수입업자가 자체 검사에 따른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할 경우 PSC마크를 부착
- **(전기용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은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에 따라 전기용품에 따른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정용품품질표시법)** 가정용품품질표시법은 일반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구매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를 적정하게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62년에 제정되었음

 - 소비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사용되는 섬유제품, 합성수지가공품, 전기기계기구, 잡화공산품 중 소비자가 구입에 있어서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고, 특히 품질을 확인할 필요성이 높은 것을 '품질표시가 필요한 가정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유해물질규제법)**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섬유제품(가정용 의류)을 대상으로 섬유 가공과 화학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해물질규제법은 포름알데히드 수지 및 유기 수은 화합물 등의 향균 가공 등에 대해서 화학물질별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 유해물질규제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사후단속으로 관리하고 있음

☐ **(섬유제품 관련 인증)**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규율과 별도로 민간인증인 ‘SEK 마크’와 ‘에코 마크’가 있음

- (SEK마크) 사단법인 ‘섬유평가기술협의회’가 관리하는 SEK 마크 인증사업은 가공 섬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피부 부착 시험 등을 통해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시험은 화학물질 시험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시험소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성 등의 심사는 제3자 등으로 구성된 ‘인증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에코마크) 에코마크는 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에 걸쳐 환경 부하가 적고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 상품에 붙일 수 있는 마크임

4. 중국

☐ **(개관)** 중국의 상품인증제도는 인증 종류에 따라 크게 강제성 상품인증과 비강제성(자율성) 상품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강제성 상품인증)** 중국의 강제성 상품인증은 중국강제인증(中国强制认证,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줄여서 CCC, 3C라고도 한다)이라고도 하고,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표준제도의 일종임

- 중국강제인증은 중국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주요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등이 있음
- CCC대상 품목은 가전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등 현재 20개 대분류 하에 158종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 **(비강제성 상품인증)** 비강제성 상품인증은 국가 상품인증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인증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행동 하에 실시되는 것이라 ‘자율성 상품인증(自愿性产品认证)’이라고도 함

□ **(의류 제품 인증)** 중국강제인증 대상품목이 아닌 의류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국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술요구, 상품사양설명 및 기타 필요사항에 관한 요구에 적합해야 함

● 의류품 품질에 대해서는 강제성 국가표준인 ‘GB18401-2010 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요구(国家纺织产品基本安全技术规范, National general safety technical code for textile products)’에 부합해야 하고, 포름알데히드, pH, 염색 견뢰도, 악취 및 가분해성 방향족 아민 염료(발암성 염료) 등 5개 항목에 합격해야 함

● 방직제품의 기본안전기술요구는 지표요구 정도에 따라 A, B, C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A유형은 영유아 방직제품, B유형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C유형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제품임

□ 섬유제품에 대한 중국의 국가 표준은 한국의 KC인증과 비교하여, KC와 같은 마크표시나 서류보관 의무는 없지만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유사하며, 표시 기준 등에서는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음

[표 8] 중국의 생활용품안전관리제도 개관

구분		중국
법령		• 제품품질법, 수출입상품검사법, 표준화법, 강제성제품관리규정 등
시장 출시 前	사전규제	• 강제인증대상품목의 경우 CCC인증마크 부착 필수 • CCC대상 외의 제품의 경우에도 GB규격 적합이 강제됨 (섬유의 경우 CCC 대상이 아니라 GB 대상)
	수입제품	• 수입시 통관 전 CIQ(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GB규격의 적합여부와 CCC인증여부를 검사
	처벌규정	• CCC인증에서 지정된 시험을 하지 않을 시 30,000위안 이하의 벌금 • 불법 인증마크 사용 시 10,000위안 이하의 벌금
시장 출시 後	시장감시	• CQC, CTC 등 단속권한을 가진 기관의 시장 감시를 통한 사후관리 • CCC인증대상 제품에 한하여 주기적 공장심사
	정보관리	• AQSIQ, SAIC(공상행정관리국), CCA(중국소비자협회)에서 시장정보 수집
	사후조치	• GB규격 성적서 검사 등 사후단속을 통해 부적합제품 리콜요청

III. 국내 제품안전관리 입법례 분석


(원료의 제조자 의무 관련) 원료 및 원자재 제조단계에서 인증 획득 입법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음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의무를 부여

*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구매대행업 부담 완화 관련) 구매대행업자의 의무를 면제시킨 국내법의 예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전파법」을 들 수 있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은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축산물의 표시 생략 가능
-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금하였으나 해당 조항 삭제(‘15.3.27)


(제품안전 및 사후규제 관련) 제품안전과 관련된 입법례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사후규제와 관련하여 제품안전기본법 및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 적합성확인 등의 의무를 부여하며,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표시도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를 사용함
- (제품안전기본법)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함
- (제조물 책임법)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

IV.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선방안

1. 물질안전관리제도와의 연계성을 통한 규제비용 부담 합리화

- 전안법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절반 가량이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두고 있는 바, 화평법과의 연계성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화평법은 화학제품 중에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위해우려제품’으로 고시하고 있음
 - 위해우려제품은 세제류, 코팅·접착제류, 방향제류, 염료·염색류 및 살생물제류로 분류되며,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품목별로 위해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부자재 등에서 물질관리의 과정을 거친 후 완제품이 재단·봉제 등의 단순공정을 요구할 뿐이라면, 원부자재자의 인증을 완제품의 인증으로 갈음함으로써 전안법의 취지를 따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됨

 - 가정용 섬유제품 중 의류 등은 생지에 염색 및 가공공정을 거쳐 원단을 만든 후 단순 재단·봉제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제품이 완성됨
 - 가죽 제품의 경우, 가죽 생산공정에서 유연제·염색제 등의 화학제품을 사용하지만, 제품 제작 단계에서는 재단·접합 등의 공정만 요구됨
 - 원단 및 가죽의 제조 단계에서 생지, 염료 및 안료, 접착제, 코팅제 및 유연제 등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면, 그 원단 및 가죽을 사용하되 단순 공정을 거쳐 생산된 최종제품 또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봐야함
- 최종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제품 생산 공정에 참여하는 각 단계의 생산자가 그 생산품에 대한 제품안전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장기적으로는 위해우려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구매대행업자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의무 폐지

- ▣ 구매대행업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 제품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으로 국내 소비자의 개인 고유통관번호를 사용하여 수입하며 제품의 배송 역시 해외에서 소비자의 주소로 이루어짐

 - 하지만, 일부 업자들의 경우 해외 현지 등에 재고를 보유해두는 사례들이 있는 바, 이들은 수입업자로 구매대행업자와는 구별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고유통관번호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국내 소비자 주소를 직배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매대행업의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구매대행업과 관련하여 인터넷 안전 정보 게시 및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함

 - 위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해외 제품이 국내 KC인증을 획득하여 관련 안전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매대행업자들이 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 하나의 품목을 다수 수입해서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달리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품목을 소수 구매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각 품목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이행가능성 없음
 - 또한, 「전파법」 등에서 구매대행업의 의무를 면제시킨 국내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므로, 법적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기 관련 조항에서 구매대행업 삭제 필요

3. 제품안전관리체계의 재설계

- ▣ 현행 전기용품생활안전법의 전부개정 이유는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들고 있음

 - 하지만,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특성과 위해도 차이를 고려할 때 통합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정치 않으며,
 - 일본 등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분리된 안전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음

- 가슴기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사건 등의 일련의 사건과, 최근 신기술제품이나 융합혁신제품등의 등장을 고려할 때 사전적 품목규제방식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야기함
- 제품안전규제라는 사회적 규제 강화로 인하여 자금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달리 공급자 적합성확인을 위한 자체 시험기관을 보유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규제부담비용이 높아져 규제이행력에 문제가 발생함
-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규제보다는 시장에 초점을 두어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함
- 어린이제품법에서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제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우려 있음

4. 사전규제 완화를 대비한 사적 책임 강화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사전적 규제와 위반시 과태료, 벌금 부과 등 사후적 규제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사전적 규제는 물질 및 제품의 위해성 정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 등 합리적 기준 설정이 어려움
-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혁신 및 급속한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품목별 합리적 기준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규제공백 발생 가능
- 사적 책임이 강화된 규제체계는 규제이행비용부담이 낮으며, 보험료 산정 및 면책기준 고려 등을 통한 자체 생활용품 안전관리의무 이행력 높일 수 있는 반면 사고 발생시 높은 배상금액으로 인한 제재 및 사회적 신용 저하로 인한 제품안전사고 억제 기능 높음
-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보험, 기금 등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음
-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 특히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 원인자의 책임을 엄격히 부담하게 하고, 손해배상책임 등 그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제품안전사고 억제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추진배경

- 정부는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기용품안전법’)¹⁾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을 통합하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란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여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전기용품안전법과 공산품안전법을 통합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전부개정 이전 안전관리제도는 그 위험도에 따라 각각 세단계로 분류되었음
-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나누어졌으며, 공산품의 경우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제도로 나누어 관리되었음

〈표 1-1〉 안전관리제도의 전·후 비교

기존		통합 후 시행('17.1.28~)	
전기용품안전법 (전기용품 대상)	공산품안전법 (공산품 대상)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대상	품목 변동사항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외) 퓨즈홀더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동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동일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추가) 온열시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동일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제외) 어린이용장신구 (추가) 인테리어 필름, 스포츠용 고글

* 공산품을 생활용품으로 명칭 변경하여 범위 명확화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약칭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나 현행법과의 구별을 위하여 편의상 전기용품안전법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 기존 「전기용품안전법」, 「공산품안전법」은 KC인증*을 사용하고 있었음

* KC인증: ‘제품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부처마다 상이했던 인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하여 2015년 6월 8개 부처 19개 법령 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

☐ 개정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의류 등의 생활용품의 경우 KC인증이 의무화되어 다품종, 소량생산 또는 영세제조업기반의 소상공인(제조업 및 수입업자 포함) 및 병행수입업자의 규제비용증가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대상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함(법 제23조제4항)

- 증명서류 비치를 위해서는 시험검사를 거쳐야하며, 이는 기존 품공법 하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이나 그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관련 중소기업 특히 영세의류 제조업체들이 새로 제품시험을 받아야함을 부담으로 인식

☐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법 제25조제4항)

- 제품을 판매·중개하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이KC인증을 받은 제품만 입점을 허가함에 따라,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주로 판매하던 영세업자들이 오픈마켓 등에서 퇴출될 위기 발생함

- 구매대행업자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의무가 새로 신설되었으나, 구매대행업의 특수성에 따라 상품에 대한 시험인증이 사실상 어려움

- 구매대행은 자가사용 목적을 가진 소비자의 이름으로 수입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므로 업자는 시험인증을 위한 상품을 직접 보유할 수 없음

☐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가습기살균기사건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일응타당성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 개정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가 중 등의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일부조항을 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조치함

- 공급적합성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의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마크 게시의무 유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의무화는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또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유예
 - 특히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을 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모델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부담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외국법제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소비자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규제부담을 주지 않는 구체적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반영하고자 함
- 소비자안전 확보를 입법목적으로 가진 국내 유사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고 규제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 정책적 필요사항 도출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인증제도 분석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의류 및 섬유 등의 소비자제품 안전확보 위한 인증제도의 비교법적 분석 및 구체적 법적 개선방안 제시
- 생활용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해외 주요국가의 강제인증제도와 자율인증제도를 쟁점별로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쟁점대상에 관한 국내유사법령 비교분석을 통하여 규제형평성측면에서 합리적인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안) 제시
- 인증주체에 관한 국내 유사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규제대상의 적정성 재검토

전기생활용품안전법개 개정방안 제시

- 생활용품의 소비자안전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대안을 모색하여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방안 제시
-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해외 주요국가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방안에 반영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국내 유사제도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의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입법방식의 비교법적 분석 및 입법론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구체적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안전과의 입법목적과 소상공인 규제부담의 합리화라는 목적을 조화시켜 법제 선진화에 기여

제2장 우리나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관

제1절 우리나라 제품안전관리제도 개관

1.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개관

-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제품안전 법률 규정의 통합·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기용품안전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으로 이원화된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 개정함

 - 원래 제품안전 관련 법률은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 제정 시기가 각각 다르고 체계와 용어 등이 상이하여 체계적·효율적 규제 집행 및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이외에도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안전관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진 법률은 아니지만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 개정법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음
- 기존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적합성확인제도로 운영되던 전기제품 안전관리제도(전기용품안전법)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제도로 운영되던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공산품안전법)가 통합 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전기생활용품안전법)로 변경됨

 - 제품별 위해수준에 따라 3단계(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순)으로 관리함
- 舊 공산품안전법상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으로 변경되면서 안전확인증명서류 보관의무가 부과되어 영세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비용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요인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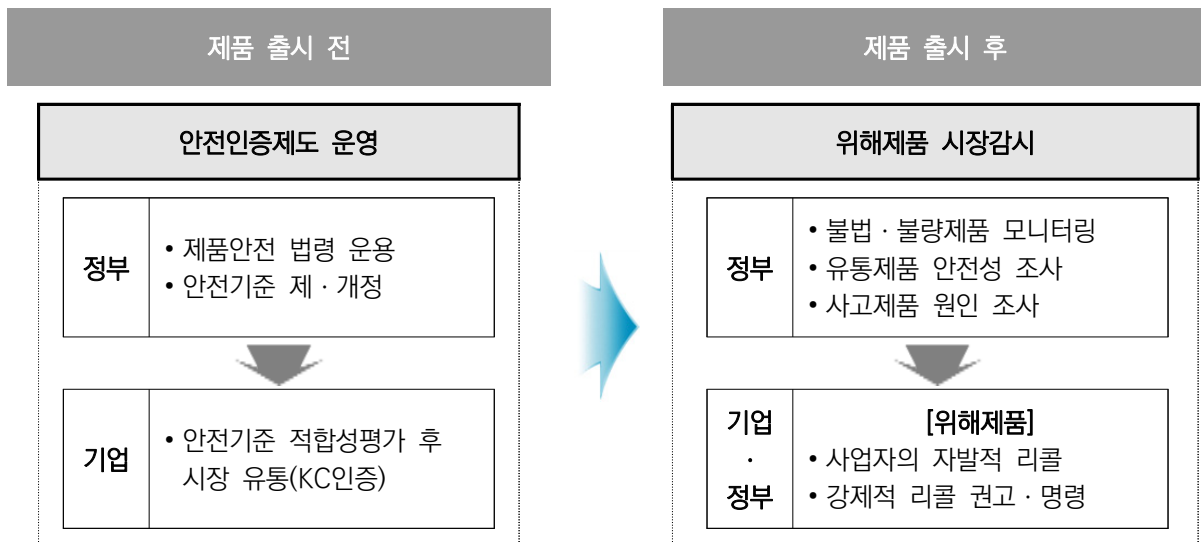
-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려는 판매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법제25조제4항)

2. 사전적 제품안전관리제도

- 현행 제품안전관리제도는 제품의 시장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관리제도와 사후관리제도로 나눌 수 있음
- 사전관리제도로서 KC인증 등의 안전인증제도 등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 제품의 시장 출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안전관리제도로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등을 들 수 있음
 - 안전인증제도는 위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만 판매를 허용하여 제품 출고 전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제품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임
 -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제품시험, 공장심사, 인증서 발급 이외에도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를 통하여 인증 당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있음
 - 안전확인제도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함
 - 현행법상 안전확인제도는 舊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제도와 舊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일원화한 것임
 - 舊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제도는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함
 - 舊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자율안전확인제도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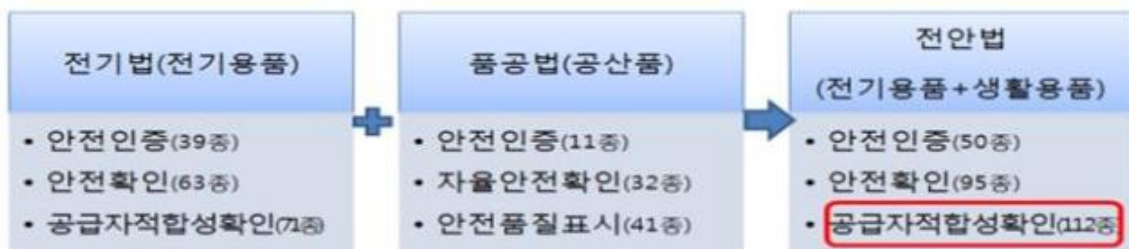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문제되고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직접 또는 제2자에게 의뢰하여 제품시험을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으로 構 전기용품안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舊 공산품안전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일원화한 것임
- 전기용품안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제품시험을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임
- 공산품안전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산업통상부장관에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함

〈표 2-1〉 현행 제품안전관리 체계도



* 자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 11면.

〈그림 2-1〉 안전관리제도 신·구 비교



〈그림 2-2〉 시장 출시 전 안전관리제도

높음 ← (소비자 위해도) → 낮음		
구 분	대상품목(258) (전기용품/공산품)	적 용 절 차
안전인증	55종(45/11)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인증 → 판매 (KC마크)
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101종(68/33)	제품시험 → 신고 → 판매 (KC마크)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품질표시)	102종(59/43)	제품시험 → 판매 (KC마크)

3. 사후적 제품안전관리제도

- 제품안전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결함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안전성 조사 및 리콜제도를 들 수 있음
- 안전성 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함
 -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관리대상제품과 ②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의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③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 등의 조치를 한 경우나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⑤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⑥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음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 안전성 조사의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시에는 안전성 조사결과와 해당 제품의 명칭모델명·제품사진과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등을 포함함(법 제15조의2, 령 제17조의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요청에 의한 안정성 조사(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2),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도 할 수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제도는 리콜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①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리콜하는 자발 리콜(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리콜을 실시하는 리콜권고(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사업자가 리콜을 실시하는 리콜명령(동법 제11조)의 3가지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음

제2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개정 경과

1.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의 통합

- 제23차 전부개정(2016년1월27일)을 통하여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

-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에 대한 대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그 주기를 늘려주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제24차 일부개정(2017년 3월 14일)을 통하여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

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모델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보관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서류보관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

2.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연혁적 고찰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개정 연혁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정(1974. 1. 4.)

□ 제정이유

- 전기용품의 제조·판매·사용 등을 규제함으로써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장해를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전기용품을 제조하려는 때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판매업자는 불량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사업자와 전기공사업자 등은 불량전기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공업진흥청장은 불량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파괴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제1차 일부개정(1989. 12. 21.)

□ 개정이유

- 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전기용품제조업허가 및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하고, 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도 제조업등록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며,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벌칙을 현실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기용품을 위해의 정도에 따라 1종 전기용품과 2종 전기용품으로 구분함
- 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용품제조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2종전기용품제조업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대상을 1종 전기용품으로 한정함

3) 제2차 타법개정(1993. 3. 6.)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4) 제3차 타법개정(1992. 12. 8.)

□ 주요내용

- 공업표준화법

5) 제4차 타법개정(1997. 12. 13.)

□ 주요내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6) 제5차 타법개정(1997. 12. 13.)

□ 주요내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7) 제6차 일부개정(1999. 2. 5.)

□ 개정이유

-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의 자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기용품제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1종 전기용품제조업의 등록제, 2종 전기용품제조업의 신고제 및 2종 전기용품수입판매업의 신고제를 각각 폐지함
- 전기용품제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규정 승인제도를 폐지함
-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종 전기용품제조업자등에 대한 시설의 수리·개조·업무의 정지등 명령제도를 폐지함

8) 제7차 전부개정(1999. 9. 7.)

개정이유

- 전부개정의 이유는 전기용품의 안전관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와 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제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기용품제조업자가 제조한 전기용품과 공장 등 그 생산체제를 시험·평가하여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행하는 안전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종전에는 전기용품 중 화재·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대하여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하도록 하고, 화재·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당해 제품·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등은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당해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9) 제8차 일부개정(2005. 3. 31.)

□ 개정이유

- 불량전기용품의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의 도입
 - 수입 중고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중고전기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 이를 그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안전검사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개선·파기·수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검사의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 중고전기용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됨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법 제5조제4항)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기검사에 대한 제조업자의 회피 등으로 그 실효성이 미흡하게 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불량전기용품의 유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기대됨
- 불법전기용품 조사 및 확인 등을 위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설립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전기용품 조사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불법전기용품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불법 전기용품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전기용품의 조사 및 확인을 전문기관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 전기용품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안전인증 관련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용품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기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 처벌기준의 강화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10) 제9차 일부개정(2005. 12. 23.)

□ 개정이유

- 전기용품의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질문의 시기·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질문계획을 미리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용품의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질문의 시기, 이유,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질문계획을 미리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11) 제10차 전부개정(2007. 12. 21.)

□ 개정이유

-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12) 제11차 타법개정(2008. 2. 29.)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13) 제12차 일부개정(2008. 3. 28.)

□ 개정이유

- 최근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불법전기용품을 중개판매하는 신종영업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중개판매업자의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의 경우에도 제조·판매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 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14) 제13차 타법개정(2008. 6. 13.)

□ 주요내용

- 전파법

15) 제14차 일부개정(2008. 12. 26.)

□ 개정이유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주요내용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16) 제15차 일부개정(2009. 3. 25.)

□ 개정이유

-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용품 판매 중개의 범위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쇼핑몰에서 단순히 거래공간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 경우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중개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도입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 정의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스스로 제품시험을 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도록 하되,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해당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위한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전기용품 판매 중개에서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 하는 경우 제외
 -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중개를 금지하고 있는바, 전기용품 통신 판매중개자가 사이버쇼핑몰에서 단순히 거래공간만 제공하는 때에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용품 판매의 중개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함.
- 안전인증에 대한 관리의 강화
 -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17) 제16차 타법개정(2009. 5. 21.)

□ 주요내용

- 전기사업법

18) 제17차 타법개정(2010. 2. 4.)

□ 주요내용

- 제품안전기본법

19) 제18차 일부개정(2011. 3. 30.)

□ 개정이유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

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안전인증 면제확인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과 중복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 등의 일부 이양 :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면제확인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함.
- 안전기준 없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근거마련
 - 현재는 신개발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으려 해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신제품의 시장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신개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지식경제부 장관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개발 전기용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시장진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과태료 부과 대상 축소
 - 현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는 외에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복제재의 소지가 있음.
 - 자체검사 기록의 작성·보관 의무의 내용 중 작성·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만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20) 제19차 타법개정(2013. 3. 23.)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21) 제20차 일부개정(2013. 7. 30.)

□ 개정이유

- 건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교류

전원이나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를 전기용품으로 정의하여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 등을 전기용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건전지나 충전지 등 2차 전지의 발달에 따라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이 널리 쓰이는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을 교류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 등으로 정의함.
- 현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그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대상에서 제외함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을 다원화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감독기준 등을 마련함.

22) 제21차 일부개정(2014. 1. 21.)

□ 개정이유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함

□ 주요내용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

23) 제22차 일부개정(2015. 2. 3.)

□ 개정이유

- 현행법은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해발생 우려가 큰 전기용품 중 일부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을 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라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고가의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 주요내용

- 일부 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반영하여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4) 제23차 전부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명칭변경, 2016. 1. 27.)

□ 개정이유

-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산품의 명칭을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모두 동일하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통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통합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사 종류 및 주기의 완화(안 제7조)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이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정기검사 또는 자체검사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종래의 공산품은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제품에 따라 정기검사의 주기가 다르고 수시검사의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제조자 등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음.
- 안전인증대상제품 모두 2년에 1회 정기검사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시검사를 폐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검사를 통일하고 단순화하여 제조자 등의 영업활동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부담을 완화함.
-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려는 판매업자 등은 안전인증 등의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정상적으로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이 유통되고 소비되도록 함.
-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때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등이 적시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지 못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을 방지함.
- 현행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되어 안전확인표시 등의 사용금지 조치 또는 개선명령만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등은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되, 사고 발생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큰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성 확인 및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함.

25) 제24차 일부개정(2017. 3. 14.)

□ 개정이유

-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 가슴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 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주요내용

-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함
- 또한 현재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모델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보관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함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제·개정 연혁

□ 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34호 「공산품품질관리법」으로 제정됨
- 제정이유
 -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품질검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품질표시상품중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등은 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
- 상공부장관은 품질표시상품중 특히 품질향상을 위하여 등급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상품은 제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상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등급을 사정하도록 함

▣ 제1차 일부개정(법률 제2117호, 1969.5.27.)

● 개정이유

- 품질관리대상품종에 금속제품·기계기구 및 동부분품·연료잡제품을 추가하고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품질표시상품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을 금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제2차 일부개정(법률 제2601호, 1973.3.12.)

● 개정이유

- 공업진흥청신설로 공산품품질관리에 관한 업무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업진흥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보완하고 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불합격상품에 대한 파기 및 수거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명의 피해나 화재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은 품질표시상품이 아니라도 상공부령으로 검사지정상품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에 불합격된 상품은 판매를 금지시키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상품을 파기 또는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이 우수한 상품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3차 전부개정(법률 제3890호, 1986.12.31.)

● 개정이유

-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소비생활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제, 품질검사제 및 품질관리등급제등 공산품의 품질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여 우량공산품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품질관리진단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입공산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그 상품의 품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된 품질표시상품의 수입업자를 품질표시의무자로 추가함
- 품질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그 표식을 제거 또는 변경한 상품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할 상품 중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도 그 상품의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등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뿐만 아니라 보관 및 운반도 할 수 없도록 함
- 품질관리등급사정은 상품의 품질관리상태에 대하여만 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공기술의 품질관리상태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산품에 대한 품질관리진단제도를 신설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공산품의 제조업자가 따라야 할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산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기준 등에 따라 품질관리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와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함

□ 제4차 전부개정(법률 제4622호, 1993.12.27.)

● 개정이유

-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체제(ISO 9000시리즈)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산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던 품질검사제도를 안전위주의 검사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함
- 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이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의 기본방향등이 포함된 품질경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 정부는 품질경영을 실천하여 품질향상·원가절감 및 생산성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 기업생산현장의 분임반 및 품질명장을 선정하여 포상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경영의 실천을 장려함
- 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의 품질보증체제를 인증하는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그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을 실시하도록 함

-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공산품의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공산품에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고,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품질표시명령을 하며, 이에 위반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공산품의 판매는 물론 보관등도 하지 못하도록 함
- 종전의 품질검사제를 안전검사제로 변경하고, 그 검사의 대상을 생명·신체·재산등에 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으로 한정함

제5차 일부개정(법률 제5778호, 1999.2.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 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품질표시제도로 전환하고, 공산품의 안전을 검정하는 안전전문기관의 검정사업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이 적은 품질경영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제6차 전부개정(법률 제6315호, 2000.12.29.)

개정이유

- 기업·공공기관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종전에는 정부주도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맞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해방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해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공산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등 공산품의 안전검사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기업의 품질경영에 관한 사항외에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품질경영촉진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함(법 제명)
- 기업 등의 품질경영 개선 및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품질경영관련 단체를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및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경영에 관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5조)
- 종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이 기업 등의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

관이 하도록 함(법 제7조)

-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품질표시기준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품질표시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해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법 제15조)

■ 제7차 일부개정(법률 제7237호, 2004.10.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 위해의 우려가 있는 세정제·접착제 등의 공산품에 대하여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그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어린이 보호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8차 일부개정(법률 제7507호, 2005.5.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의 실현과 공산품안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로 하고, 안전검사제도와 관련한 검사 등에 관한 사무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에서 국가와 특별시·광역시·도의 공동사무로 하려는 것임

■ 제9차 전부개정(법률 제7742호, 2005.12.23.)

● 개정이유

-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현황을 보고하게 하고, 공산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안전·품질표시의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업 등의 품질경영체제인증 사업자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국내 인정기관 또는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품질경영체제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품질경영체제인증 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법 제9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마다 공산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법 제14조제1항·제3항·제6항,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판매·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중인 공산품에 대하여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정제도를 자율안전확인제도로 변경(법 제19조): 공산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당해 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공산품에 대하여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품질표시의 의무화(법 제22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공산품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산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제도 등(법 제24조 및 제26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도록 하고,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못하도록 함
-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법 제29조제1항제2호):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품에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 등이 함유되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판매금지·개선·수거·파기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제10차 일부개정(법률 제9250호, 2008.12.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 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제11차 일부개정(법률 제9430호, 2009.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제12차 일부개정(법률 제10961호, 2011.7.25.)

● 개정이유

- 기업의 자율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경영과 공산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품질경영체제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품질경영체제인증 실태조사, 품질경영체제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설립·운영 등의 인증 신뢰성 향상사업을 하도록 하되, 그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39조제1호 신설)
-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판단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안 제22조제3항)

-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의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시험·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이 우려되는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자율안전확인에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되, 유효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제13차 일부개정(법률 제11971호, 2013.7.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산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4차 일부개정(법률 제12314호, 2014.1.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서는 일정한 인증을 받아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상·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폐 PVC를 가공하여 재생산된 불량 PVC 파이프가 판매되고 있어 상·하수도 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으로 정한 안전·품질표시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제15차 일부개정(법률 제13318호, 2015.5.1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업무규정과 인정업무 운영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이미 보고하고 있어 중복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기관 및 기업 등에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실태조사, 내부 심사 및 경영검토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증기관 및 기업 등의 매년 정기 사후관리 시 관련 자료 확보 등의 대체방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중복 부담 요소임
- 이에 불필요한 규제 개선의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인정기관, 인증기관 및 기업 등의 운영현황보고, 자료제출 등 중복 부담을 제거하고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제16차 전부개정(법률 제13859호, 2016.1.27., 타법폐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 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발의안

1) 제정안(1973. 10. 12.)-

□ 정부발의안(「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제안이유

- 전기용품의 제조·판매·사용등을 규제함으로써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장해를 방지

● 주요내용

-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제조업자가 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제조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

- 판매업자는 불량전기용품을 판매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함.
- 전기사업자·전기공사사업자들은 불량전기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공업진흥청장은 불량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파괴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용품에 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함

2) 개정안(1989 ~ 2017)

☐ 정부발의안(1989.10.18.)

● 제안이유

- 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전기용품제조업허가 및 형식승인제도를 개선
- 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도 제조업등록등을 받을 수 있게 하며,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벌칙을 현실화

● 주요내용

- 전기용품을 위해의 정도에 따라 1종전기용품과 2종전기용품으로 구분함.
- 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용품제조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2종전기용품제조업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대상을 1종 전기용품으로 한정

☐ 정부발의안(1998.10.29.)

●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신고제를 폐지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 현재의 전기용품의 안전관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 이를 통하여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제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 주요내용

- 전기용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전기용품과 공장 등 그 생산체제를 시험·평가하여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안전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제품의 사양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하도록 하고, 화재·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당해 제품·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 등은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당해 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등을 하고 당해 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의 등록(1종 전기용품) 및 신고(2종 전기용품) 제도를 폐지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 산업자원위원장 발의(1998.12.30.)

● 제안이유

-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의 자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
- 기타 행정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전기용품제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등록제 및 2종전기용품제조업의 신고제, 2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의 신고제를 폐지함
- 전기용품제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규정승인제를 폐지함
- 기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1종전기용품제조업자 등에 대한 시설의 수리 등의 명령제도 폐지

□ 정부발의안(2004.11.09.)

● 제안이유

- 불량전기용품의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수입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도입(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중고전기용품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 이를 그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여야 함)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 불법전기용품 조사 및 확인 등을 위한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설립
- 안전인증 관련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 심재업의원 대표발의안(2005.07.18.)

● 제안이유

-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를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안전 인증대상 사무소·사업장·점포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전기용품 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음.
- 이 때 검사·질문계획을 사전에 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노력이 소요되는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용품의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질문의 시기·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질문계획을 미리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정부발의안(2007.08.24.)

● 제안이유

-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용품 중 위해(危害)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 안전확인제도를 도입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기용품의 대여업자 등에 대한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
-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만으로도 화재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성 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해당 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함

□ 서갑원의원 대표발의안(2008.01.18.)

● 제안이유

- 최근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불법전기용품을 중개판매하는 신종영업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중개판매석업자의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의 경우에도 제조·판매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 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임태희의원 대표발의안(2008.10.08.)

제안이유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주요내용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허범도의원 대표발의안(2008.10.31.)

제안이유

-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
- 한편,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하도록 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주요내용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
-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한 경우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위한 제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기관에서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안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으로 규정
- 안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의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

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와 자율안전확인대상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 김종률의원 대표발의안(2008.11.28.)

● 제안이유

- 현행 양별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주요내용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별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최구식의원 대표발의안(2008.12.02.)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의 판매의 중개·구매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전기용품의 비대면 거래를 중개하는 전기용품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단순히 거래의 장과 시스템만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자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주요내용

- 제품의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전기용품 통신판매중개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통신판매중개자가 제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 또는 고지하였거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결제대금예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음

 지식경제위원장발의(2009.02.26.)

● 제안이유

-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하도록 함.
- 또한, 현행법상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중개 금지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중개”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전기용품 판매의 “중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 규정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위한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전기용품 판매의 중개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함
-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전기용품 등의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규정함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정부발의안(2010.06.10.)

● 제안이유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안전인증 면제확인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과 중복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주요내용

-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 등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 안전기준 없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근거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마련
- 자체검사 기록의 작성·보관 의무의 내용 중 작성·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만 하도록 함

□ 정부발의안(2012.12.28.)

● 제안이유

- 건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교류 전원이나 직류 전원을 이용한 기계·기구 및 재료를 전기용품으로 정의하여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타인에게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도 제조업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전기용품의 용어를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을 교류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 등으로 정의
- 현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
-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타인에게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제조업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을 다원화

□ 강창일의원 대표발의안(2013.11.04.)

● 제안이유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주요내용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

□ 윤영석의원 대표발의안(2014.04.14.)

● 제안이유

- 현행법은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해발생 우려가 큰 전기용품 중 일부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을 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라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고가의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 주요내용

- 일부 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반영하여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발의안(2015.08.27.)(「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안이유

-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공산품의 명칭을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모두 동일하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통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통합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사 종류 및 주기의 완화(안전인증대상제품 모두 2년에 1회 정기검사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시검사를 폐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검사를 통일하고 단순화)
- 인터넷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의무 신설
- 안전인증기관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신설
-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등은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정 신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사고 발생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큰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도입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안(2015.11.05.)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인증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현행보다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유와 비교해 비난의 가능성이 큰 만큼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를 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발의(2017.02.28.)

● 제안이유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 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 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현재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모델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보관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음.

● 주요내용

-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함.
- 또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함

□ 박정의원 대표발의안(2017.03.17.)

● 제안이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그러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영난 등의 이유로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주요내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상욱의원 대표발의안(2017.04.07.)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급자적합성생활용품 중 특히 의류, 가방 등의 경우 원부자재(원단 등)에 대한 단순 봉제작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은 패션 트렌드에 맞추어 신속히 국내외로 판매되어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상황임.
- 따라서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각 제조업자가 제품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현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아 중국 등 동남아 수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주요내용

- 생활용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원부자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부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행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화학적 처리 등 없이 제조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 함

제3절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주요 쟁점

1. 개관

가. 전부개정을 통한 법령의 변경

-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기존의 전기용품안전법과 공산품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공산품 안전법을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법령을 개정함

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제품 안전관리제도의 통합

- 공산품안전법에서 규정하던 공산품의 안전관리 사항을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일원화하여 통합하여 운영

- 공산품안전법상의 공산품이란 용어를 생활용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일원화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통합함
- 공산품안전법상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함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생활용품의 정의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을 말하여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법적 정의는 동일함

다. 안전인증제도 규제의 완화

- 전기용품안전법과는 달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모두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사 종류를 줄이고 검사주기를 늘려 안전인증대상관리 규제부담 완화 (법 제7조 제1항)
- 전기용품의 정기검사 주기를 매년 1회 이상에서 2년 1회로 생활용품의 검사주기와 같이 통일하고 수시검사 폐지하여 전기용품제조업자의 규제부담 완화
 - 舊전기용품안전법에 따라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이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또는 자체검사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구 전기용품안전법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제도가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으로 작용하여 임의인증제도를 신법에서 폐지함

라. 안전확인제도 개선

-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법 제15조) 동일한 시험으로 다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불필요함 부담 완화
- 안전확인신고 효력 상실제도를 새로 도입하여(법 제20조) 사후안전관리규제 강화
 -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등은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사후적 제품안전관리 강화

- 구법에서는 허위신고 또는 부정신고에 대해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안전확인표시 등의 사용금지 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었고, 공산품의 경우 관련 규제 없었음

마.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강화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서류보관의무 신설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함

-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제품설명서 및 시험결과서를 5년간 보관할 의무 신설(동법 시행규칙 제40조)함으로써 의류와 같이 유행에 민감하여 단기간 다품종 소량생산을 경쟁력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업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 제기됨
- 舊법에서는 서류보관의무 범위는 안전확인대상인 공산품과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이었으므로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 새로 피규제대상에 포함되어 규제부담 강화

□ 전기용품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도를 신규도입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되, 사고 발생의 피해 정도가 큰 전기용품의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관리 감독 강화

바. 표시·정보제공 의무 강화

□ 인터넷판매 제품의 인증관련 정보게시의무와 안전인증표시·안전확인표시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없는 생활용품의 대여·중개 금지하고 있음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려는 판매업자 등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하여야 함
- 관련 정보게시의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 제42조 제2항 신설
- 판매자가 인터넷에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 표시 도안,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자명 등을 게시해야 함

2. 제조 및 수입업자의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보관의무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함(법제23조제4항)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제23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 제12호)
- 다품목 소량생산을 기본으로 한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과도한 규제비용부담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험결과서 보관 의무를 유예하여 제품설명서만 보유할 의무 부담함(시행규칙 제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KC마크)는 해야 하므로 시험결과서를 받아야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검사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하므로 시험결과서 보관의무 유예 의미가 없음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금지
 -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제조업자·수입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 구법에서는 안전인증·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용품의 판매·사용 금지 대상의 범위 대상에 대여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가 포함되어 전자산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도 판매중개업자에 해당됨
 - 대여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의 판매·사용금지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등) ①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직접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 증명서류비치를 위해서는 시험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기존 공산품안전법 제22조하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던 내용이나 그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관련 중소기업체, 특히 의류관련 업체들이 새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함을 부담으로 인식

- 제품 시험과 관련된 인증수수료의 경우 품목당 20~3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예시 1〉

- 나염티셔츠 1장당 검사료가 생산원가의 27.4% 차지(3색상 합 300장 생산 시)
 - 1장(기본 반팔티)당 생산원가 3,000원에 검사료가 1,133원 추가 됨
 - 검사료: 340,000원(원단검사료270,000원+ 나염검사료70,000원)
 - 1장당검사료: 1,133원(340,000원/300장)

*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생활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안법 인지도는 29.1%에 불과하였으며, 인지도 최저 주요 품목은 섬유(장갑, 신발, 가방)가 20%, 섬유원단(23.3%), 가구(24.2%) 순서이고, 10개 기업 중 76.7%가 KC인증을 미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으로 인증비용 부담 가증되어 생활산업 중소기업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3.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안전인증 정보 게시의무

-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법 제25조제4항)²⁾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2조 제2항 제14호) 부과할 수 있음

2) 표<2-2> 및 표<2-3>은 지광석, “우리나라 제품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6., 474면 <표5>, 476면 <표6> 인용.

- 제품을 판매증개하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이 KC인증을 받은 제품만 입점을 허가함에 따라,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던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됨

〈표 2-2〉 생활용품 인터넷 게시의무 유무

구분		개정전	17.1.29개정	17.3.14 개정	18.1 이후
구매대행업자	KC 마크	×	○(안전인증/안전 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	○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수입업자명	×	○	×	○
구매대행업자 이외	KC마크	×	○(안전인증/안전 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안전인증/안전 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수입업자명	×	○	○	○

〈표 2-3〉 인증확인 표시 없는 생활용품의 판매·사용 등 금지의무

구분	개정전	17.1.29개정	17.3.14 개정	18.1 이후
제조·수입·판매업자	○	○	○	○
판매증개·수입대행·대여업자	×	○	○	○
구매대행업자	×	○	×	○

4. 구매대행업자 등의 KC 인증 부담

-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KC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증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42조 제2항 제16호)를 부과할 수 있음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증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구매대행업자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의무가 새로 신설되었으나, 구매대행업의 특수성에 따라 상품에 대한 시험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함

- 구매대행업의 특성상 자가사용 목적을 가진 소비자의 이름으로 수입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므로 업자는 시험인증을 위한 상품을 보유할 수 없음

〈표 2-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사전 및 사후규제

구분	사전규제			사후규제	
구분	안전기준 준수	표시	신고·서류보관	판매·사용금지	사용금지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 확인제품	직접·외부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인증) 의무	공급자 적합성 확인표시	•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신고 의무 • 인증서류보관 의무	•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없는 제품 판매·사용금지	• 표시사용 금지 • 개선명령

제4절 최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입법동향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안(2015.11.05.)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인증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현행보다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유와 비교해 비난의 가능성이 큰 만큼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를 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발의(2017.02.28.)

● 제안이유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 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 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현재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모델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보관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음.

● 주요내용

-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함.
- 또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함

□ 박정의원 대표발의안(2017.03.17.)

● 제안이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그러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영난 등의 이유로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주요내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상욱의원 대표발의안(2017.04.07.)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급자적합성생활용품 중 특히 의류, 가방 등의 경우 원부자재(원단 등)에 대한 단순 봉제작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은 패션 트렌드에 맞추어 신속히 국내외로 판매되어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상황임.
- 따라서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각 제조업자가 제품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현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아 중국 등 동남아 수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주요내용

- 생활용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원부자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부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행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화학적 처리 등 없이 제조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 함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 최근 2017년 8월 22일,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호흡에 의해 소비자 인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개정된 동 기준에서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산·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충진제 등 5종의 제품을 위해우려 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련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
- 자동차용 워셔액은 지금까지 전기생활용품관리법상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으나 화학성분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로 이관하였으며, 워셔액에 포함되는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함량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

- 그리고 습기제거제의 경우도 현재는 전기생활용품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인 생활용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번 환경부의 안전강화 기준의 마련에 따라 2017년 12월 30일부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

제5절 소결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규제체제의 재설계 필요성 검토하여야 함

-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의 용도나 안전수준, 위해정도 등을 미리 예측하여 소비자안전 대책이나 규제 방안을 마련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우리나라는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소비자보호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령을 마련해놓고 필요에 따라 해당 법령의 규제 대상이나 범위 또는 사업자의 책임 범위 등을 필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 필요
 - 통합 이전의 법체계에 의하면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법을 통하여 특히 제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한 반면, 기타 공산품은 공산품안전법으로 공산품의 품질경영과 안전, 품질을 관리함
- 개정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원화하면서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 반면,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 면이 있음
 -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허위, 부정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규정 신설,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제도 도입 등은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일회성 수입·생활용품 등의 안전인증 면제,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처벌경감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생활용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허위·부정 신고 등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및 확인 표시 등의 사용금지, 개선 명령 신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서류보관의무 신설 등 규제 강화
- 구법에서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전기용품과 일반 공산품으로 이원화하여 규제한 반면, 통합 개정법에서는 일반 공산품인 생활용품을 전기용품과 같이 강화된 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규제
 - 화재나 감전 등 위해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소비자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

대한 전기용품과 그렇지 않은 생활용품을 동일한 규제체계로 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필요

-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전관리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규제패러다임이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이 계속하여 등장하는 현대사회에 과연 효율적인 규제방향인지를 고민하여 볼 필요가 있음
- 생활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생활산업의 경쟁력 및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이하 후술한 일본의 경우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정용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구분하여 규제의 구체적 타당성 추구하고 있음

피규제대상의 범위 검토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 업체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타격을 받음
- 구매대행업자측의 의견에 의하면 수수료를 받고 직접구매자를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품은 바로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배송되므로 구매대행자에게는 인증받을 상품 자체가 인도되지 않음
 - 구매대행업은 소비자의 요청시 제품구매를 대행하여 해외에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제조·수입과는 그 업태가 다르며, 해외 제조제품의 구매대행업자가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KC인증을 획득해야 함
 -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소비자 직구와의 규제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 있음

인증비용 귀속(규제부담비용 주체)의 타당성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모색할 필요 있음

- 의류 등 생활용품은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으나 기본적인 안전검사 외에는 KC인증서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음
 - 동대문의류시장 등에서는 신제품이 매일 출시되고 있어 일일이 인증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어 왔음
 - 수입업의 경우 계약시 공급자적합성이 확인된 증명서류를 보유할 의무가 있었을 뿐, 병행수입업자들은 소량 수입이 많아 서류를 확보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음

제3장 주요국가의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

제1절 개관

-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법체계는 1972년 제정된 소비자제품안전법과 2008년 제정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고, 소비자안전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가 설립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EU에서 공산품에 이용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법제로는 크게 4가지로 REACH, CLP, BPR 및 PIC로 나누어지며, 강제인증제도로는 저전압기기, 완구류, 가스기기 등을 대상으로 유럽내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하는 CE마크가 있음
 - 섬유 관련 인증으로는 섬유생산공정의 환경적 측면을 배제하고 섬유제품 내에 알레르기나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한 물질이 없음을 나타내는 친환경 마크로 민간자율인증제도인 Oeko-Tex Standard 100이 있음
- 일본에서는 소비자 등이 사용하는 제품 중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그 제품을 지정하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이 기술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특별히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제품은 국가에 등록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음
 - 제조·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가 정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 사업자도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중국의 상품인증제도는 인증 종류에 따라 크게 강제성 상품인증과 비강제성(자율성) 상품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중국강제인증 대상품목이 아닌 의류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국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술요구, 상품사양설명 및 기타 필요사항에 관한 요구에 적합해야 함

- 의류품 품질에 대해서는 강제성 국가표준인 ‘GB18401-2010 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 요구(国家纺织产品基本安全技术规范, National general safety technical code for textile products)’에 부합해야 하고, 포름알데히드, pH, 염색 견뢰도, 악취 및 가분해성 방향족 아민 염료(발암성 염료) 등 5개 항목에 합격해야 함
- 섬유제품에 대한 중국의 국가 표준은 한국의 KC인증과 비교하여, KC와 같은 마크표시나 서류보관 의무는 없지만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유사하며, 표시 기준 등에서는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음

〈표 3-1〉 전안법 쟁점 대상에 관한 해외 유사제도 비교표

국가	법률/제도명	특 징	시사점
미국	CPSIA (소비자제품 안전법)	•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 혹은 의도된 모든 유형의 제품을 대상 • 납·프탈레이트류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며, 해당 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 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FCC, 의무)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 시 전파를 발생 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승인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 • (UL, 임의)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생산업자·판매상·수입업자 대부분이 UL규격을 요구 • (Woolmark, 민간임의) 의류·인테리어용 섬유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마크	• 미국의 경우, CPSIA(소비자제품안전법) 등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사업자 스스로가 자사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하는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운영중
EU	REACH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 EU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 • 업체 스스로가 해당 화학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 및 등록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상·하위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 • 신화학물질은 물론 기존화학물질과 전기전자 및 자동차업계 등 전산업에 걸쳐 적용되며, 독성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노출정도와 과정을 평가하는 위해성 관리방식으로 전환	• 사업자 스스로가 자사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하는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운영 중 • EU에서 제품안전관리 제도로는 강제성을 지닌 CE마크를 표시하고 있음
	Oeko-Tex Standard 100(민간자율 인증)	• EU의 대표적인 민간 인증 제도로서, 모든 가공 단계의 섬유 원료, 중간 제품, 최종 제품과 그에 사용되는 부속 재료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세계적으로 통일된 테스트 및 인증 시스템 • 생산품 관련 섬유 라벨로, 섬유생산공정의 환경적 측면을 배제하고 섬유제품 내에 알레르기나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한 물질이 없음을 나타내는 친환경 마크	

국가	법률/제도명	특징	시사점
EU	CE 마크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으로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 •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적합성인증(COC)로 구분	
일본	가정용품품질 표시법	•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표시업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표시하는 사업자)를 표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표시 • 섬유제품 품질표시[섬유의 조성, 취급방법 및 발수성 표시(코트류)], 원산국, 표시자명 및 연락처, '위험' 주의환기' 표시 등	• 일본의 경우,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유해물질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 ① 가정용품에 포함되는 유해물질의 검출기준 지정 ② 판매 및 증여의 금지 조항 ③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회수 ④ 담당 공무원의 관계사업자에 대한 출입 및 검사 등을 규정 • 기저귀, 영유아용 의류, 속옷, 침구, 가정용 에어졸 제품, 가정용 세정제, 가정용 접착제 등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이 그 대상임	
	JIS마크와 PSE마크	• 新JIS 마크는 ①민간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증, ②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일본국내외), 수입업자(일본국내), 판매업자(일본국내), 수출업자(해외) 등임 • PSE마크는 일반가정, 상점, 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제품 454개 품목은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PSE마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 불가	
중국	표준화법, 제품품질법	• (GB 18401-2010) 중국내 생산, 수입 또는 판매되는 모든 섬유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화법」, 「제품품질법」 등에 의하여 제정된 강제성 국가표준 • 중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및 부품 가운데 의무인증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표준협회) 및 중국국가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 인증을 받은 후 CCC마크를 획득해야만 중국 내 판매가 가능	중국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제도에 따라, 강제성 국가표준인 CCC마크를 표시하여야

〈표 3-2〉 간단 비교표

구 분		미국	EU	일본	중국
관련 법		CPSIA (소비자제품안전법)	CE마크제도	• 가정용품품질표시법 •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준화법 • 제품품질법 • 강제성 상품인증 관리규정 • 중국강제인증제도
대상 품목	강제	FCC 규격 (제품/함유된 재료 규제)	CE마크	• JIS마크 • PSE마크	CCC마크
	임의	UL규격 Woolmark			
적합성평가		자기적합성선언	자기적합성선언 또는 안전인증	안전검사/인증	
리콜요건		안전기준 위반여부/ 중대제품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특정제품 또는 가정용품	

제2절 미국

1. 미국의 소비자안전관리법제 개관

- ☐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는 모든 소비자가 신체 생명상의 위해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하는데,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의 4대 권리 중 하나로 공표한 이래 국제적으로 소비자의 주요한 권리로 다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 1977년만 해도 소비생활용품(자동차, 살충제, 식·의약품 등 제외)의 안전사고 인한 사망자 수는(일부 주 제외) 25,000명이었는데, 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증가하는 것임
-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소비자안전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가 설립되었고, CPSC의 활동으로 1986년에는 사망자수가 21,600(2,850만명의 상해자)으로 13% 감소시킨바 있어 이는 미국에서 소비자보호 활동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음
- ☐ CPSC는 위해정보관리를 위해서 전국적인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공산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기술적·의학적·경제적 관점에서 실험 및 연구를 통하여 전문성을 마련하여 그 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인 기준제정을 장

려하고 있음

- 또한 CPSC는 위해제품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검사를 시행하고, 문제발견시 시정조치로 연결시키고 있다.

□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법체계는 1972년 제정된 소비자제품안전법과 2008년 제정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고, 그 이외의 연방 유해물질법, 독성예방포장법, 가연성 직물제품법, 냉장고 안전법, 버지니아 그램 베이커 목욕탕 안전법(PP&S), 어린이 가솔린 화상예방법

□ 공산품에 이용되는 유독물질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미국환경보호처(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고, 유독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엄격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첫째, 유독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제조자는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할 책임을 부담함
- 둘째, EPA는 인체 건강 및 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위험, 특히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상업적 제조·사용·유통 및 처분에 관한 총체적인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셋째 정부의 규제권한은 기술개발에 있어서 불필요한 경제적 장애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표 3-3〉 미국 제품안전 개요

구분		미국
법령		• 제품안전성을 보다 강화하는 CPSIA에 규정을 따름
시장출시 前	사전규제	• 어린이 제품의 판단지침 마련 • 어린이제품은 GCC와 제3자 시험, 추적라벨 부착 등 의무 • 장기간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판매 시 소비자등록엽서 제공
	수입제품	• 주요 세관에 수입감시부를 설치하고 관세국경보호국과 협력하여 통관전 검사 수행
	처벌 규정	• 5년 이하 금고, US\$50만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 개별위반 당 최대 US\$10만, 복수건 최대 US\$1,500만의 민사상 과징금 부과
시장출시 後	시장감시	• 생산공장, 유통물류창고, 운송중제품, 기타 보관장소를 포함하여 제품안전성 조사 • 모든 관련 기록, 서적, 문서, 포장, 라벨 등에 대한 조사권한
	정보관리	• 제품사고 정보수집 통합DB 기반으로 제품안전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해 분석 및 사후조치 시행
	사후조치	• 기업 자발적 리콜이 원칙 • 언론, 판매기록, 정보 게재, 제품등록카드 등 활용

2. 소비자안전관리의 현황

가. 위해정보의 관리

- ☐ 미국에서는 CPSC를 중심으로 위해정보조사전산망 등 정보수집체계를 전국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이를 안전기준에 반영하고, 또는 위해제품의 시정조치 활동에 활동하고 있음
 - 각 지정병원은 위해정보에 관한 기록(위해종류, 사고지역, 환자신상, 제품종류, 검토의견 등)을 CPSC에 매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CPSC는 위해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지정병원 및 타 연방기관의 자료협조를 받고 있으며, 타 기관의 자료제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 CPSC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타 기관에 정보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 외에도 검사관들이 사망진단서를 수집·분석하여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검사관경보프로그램, 타 정부기관의 정보, 소비자에 의한 위해상품신고접수를 위한 무료전화 운영, 신문 및 잡지 등으로부터 사고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음

나. 소비자안전기준의 관리

- ☐ 미국의 공산품 안전기준은 CPSC에서 주관하는데, CPSC는 기술적·의학적·경제적인 실험과 연구를 거쳐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CPSC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 기준 제정을 장려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 미국의 안전기준 제정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관련 안전기준(안) 제출공고를 통하여 잠재적 위험이 있는 품목에 대해 관련 집단(타 연방기관,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이 자율기준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견청취를 위해 30일 내지 60일간의 공고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CPSC는 접수된 의견과 자율기준안을 분석·평가하여 자율기준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안전기준으로 인정하고, 자율기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방관고에 재차 공고를 통하여 강제기준을 발표하는데, 이 경우에는 안전기준의 비용·편익 분석결과가 포함됨
- ☐ 또한 CPSC는 안전기준의 국가적 조정을 위하여 국립표준연구소(ANSI) 등 많은 기관 및 사업자협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타 기준과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음

다. 위해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 CPSC는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상시적인 안정성 감시와 검사를 통하여 문제 발생시에 시정조치로 연결시키는데, 위해제품의 감시와 시정조치를 위하여 전국에 3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CPSC는 제조시설, 보관시설, 기록, 문서 등에 대한 검사와 자료요구권을 갖고 있으며, 필요시에 관계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시정조치는 CPSC의 지역사무를 중심으로 위해제품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지시(리콜, 교환, 환불)를 부과하고, 긴급한 위해제품의 강제적인 압수를 지방법원에 요청함으로써 대응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CPSC는 사업자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해제품의 2가지로 대분류하고 있음
 - (i) 안전기준은 없으나 실질적인 위해제품의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수리, 환불, 교환을 지시하고,
 - (ii)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고 있음
- 제조자, 공급자, 소매자는 해당 제품이 실질적 위해를 일으키거나 안전기준을 위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즉시 CPSC에 보고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와 공공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됨
 - 예컨대 1992년 GE사가 자동커피제조기의 결함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음
 - 법규상 주요 보고 내용에는 위반한 안전기준, 위해발생 사실, 제품결함정보, 제품의 기술적 정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불만사항을 포함하여 기술되어야 함
- 미국에서는 위해제품의 해당 사업자는 자발적인 시정조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CPS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계획서의 내용으로 위해발생 내역, 제품위험을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 위해원인에 대한 설명, 시정 중에 있는 제품의 사용에 관한 지침, 제품교환, 환불 등에 관한 설명이 명시되어야 함
- CPSC는 소비자생활용품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시정조치의 이행에 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으로 일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금지제품으로 선언하여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3. 소비자제품안전법 및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1972년 10월 27일 제정된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에서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를 설치하여 모든 소비자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감독함

- CPSC는 소비자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적인 또는 상당한 위해나 사망에 위험을 보이는 상품을 회수(recall)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백한 금지된 상품의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유통을 금지함
- CPSC에게 15,000이상의 소비자 상품에 대한 관할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담배제품, 화약제품 및 탄약, 자동차, 살충제, 항공기 그리고 선박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연방 규제당국에 관할권이 있음

 CPSC는 소비자제품안전기준 제정절차(Procedure for Consumer Product Safety Rule)에 근거하여 소비자안전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

- CPSC는 안전기준의 공표 전에 적용 대상제품의 위험정도 및 성질, 소비자제품에 대한 공공의 요구, 업계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등에 관한 적절한 조사를 하여야 함
- 소비자제품의 성능, 내용, 설계, 구성, 마감, 포장 등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제품에 대한 광고나 사용설명서 부착에 관한 요건 및 경고 또는 사용설명서의 형태 등에 관한 요건을 공표함

 2008년 8월 14일 제정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CPSIA)에서 CPSA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하였음

- 먼저 제219조(15 U.S.C. §2087)에서 소비자제품안전과 관련된 우려를 일으키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함
- 아동용 제품의 수출입업자에게 당해 상품에 대해 아동상품안전규칙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고 CPSC에서 인가한 제3시험기관의 테스트를 바탕으로 '아동용 제품인증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CPC)'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작성된 추적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부착할 것을 의무화함
- CPSC는 CPSIA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규정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i) 내구적인 영유아 상품안전기준, (ii) 시험 및 인증 (iii) 페인트나 기본물질에서의 납 사용제한,³⁾ (iv) CPSIA 제108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난감 및 아동용 제품에 대한 프탈레

이트(Phthalate) 사용제한⁴⁾ 등이 포함됨

□ CPSIA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상품안전규칙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음

- 동 규칙에서는 주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해 디자인 또는 의도된 소비자제품을 아동용 제품으로 정의함
- 12세 이하용 여부는 (i) 제품 레이블 등 제조자가 제품 용도를 설명한 문구, (ii) 제품 포장, 디스플레이, 판촉활동, 광고 등에서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적절한 용도로 보이는지 여부, (iii) 제품이 일반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도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지 여부 등⁵⁾ 을 고려하여 결정됨
-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미국내 생산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반드시 CPC를 발행해야 하고, 제3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이용하여 제품시험 및 인증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동 규칙 등 규제적용 대상인 아동용제품에 대한 수입 및 제조업체는 CPC를 직접 발행해야 함
- CPC 발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수입 및 제조업체가 CPSC에서 인가한 제3시험기관의 제품시험과를 토대로 하여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데, 인증 필수 항목⁶⁾을 규정함
- CPC제출과 관련하여 (i)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 판매 및 유통업체에 반드시 CPC를 제출하여야 하고, (ii) 요청시에는 관세청장과 CPSC에 CPC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iii) 판매 및 유통업체에 직접 인증서 인쇄본을 전달하거나 해당 인증에 대한 동사의 송장이 포

3) 2009년 2월 10일 이후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는 납이 600ppm(part per million) 미만으로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2009년 8월 10일 이후에는 300ppm 미만으로 규제치가 낮아진다. 또 2011년 8월 10일부터는 100ppm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피부에 접촉되는 재질에만 적용을 하며, 종이, 섬유, 천연재료는 제외한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제품은 완구, 어린이용, 섬유제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책, 문구 등으로 거의 모든 제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2010년 2월 10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에 수출시 납 성적서와 인증서가 꼭 있어야 한다.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된 페인트는 2008년 11월 12일부터 납이 600ppm 미만이라는 성적서와 인증서를 미국 수출 시에 있어야 한다. 2009년 8월 10일부터 90ppm 미만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4) 2009년 2월 10일부터 완구나 어린이 보호용품에는 6가지(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가소제 41)가 각 1,000ppm미만으로 함유되어야 한다. 보통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사용을 하며, 장판이나 완구, 병원용품, 식기구, 전선의 피복 등에 널리 사용된다. 가소제를 사용하는 재질에는 PVC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예폭시에도 사용이 된다.

5) 2002년 9월 소비자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연령결정가이드라인(Age Determination Guidelines) 및 동 가이드라인 후속도 고려사항에 포함됨

6) 제품설명, 관련법률, 미국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정보, 상기 업체 내 제품시험결과 보관담당자의 연락처, 제품 생산일자 및 장소, 제품 시험일자 및 장소, 시험소 정보.

함된 전용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등 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가 판매 및 유통업체에 합당한 증명서 이용방법을 제공하였을 시 인증서 제공의 필요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iv) 소매업자나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CPC는 각 제품과 배송에 따라 각각 발급해 제공되어야 함

4. 미국의 유독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가. 연혁 및 기본구조

□ TSCA는 1976년 제정 이래 총 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현재 4개의 장으로 구성으로 있는데, 제1장 유독물질의 관리(Control of Toxic Substances), 제2장 석면위험에 대한 긴급대응(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제3장, 실내 라돈의 저감(Indoor Radon Abatement), 제4장 납 노출 저감(Lead Exposure Reduction)있음

□ TSCA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첫째, 화학물질의 제조자는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할 책임을 규정한다. 둘째, 미국 환경보호처(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인체 건강 및 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리스크, 특히 급박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상업적 제조·사용·유통 및 처분에 관한 총체적인 규제권한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다.⁷⁾ 셋째 정부의 규제권한은 기술개발에 있어서 불필요한 경제적 장애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됨

□ 2016년 6월 22일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에 의해서 TSCA는 개정되었는데, EPA가 의무적으로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하고 실행가능한 deadline을 갖고 평가하도록 하고, 신규 위험기반 안전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화학물질의 정보에 대한 공공투명성을 증대시켰으며, 법률개정에 따른 EPA를 활동보장을 위한 기금에 관한 규정들이 신규 포함되었음

□ TSCA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규정은 제3조 내지 제5조인데, 화학물질의 제조나 수입이전 단계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인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규명하고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제3조에서 행정당국인 EPA에게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unreasonable

7) 제조는 전통적인 의미의 제조나 생산 뿐만 아니라 TSCA의 적용을 받는 화학물질과 혼합물질의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제2조 제9호), 가공은 물리적 상태의 변화 여부나 다른 물질과이 혼합 여부와 상관없이 화학물질을 제조한 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 제13호), 유통이란 화학물질을 판매·제공·운송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5호).

risk)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 (mixture)로서 생산·유통·가공·사용·처리되어 충분한 정보나 경험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거나(제3조 (a)(1)(A)(i)), 화합물질이나 혼합물이 상당한 양으로 생산되어 환경에 유입되거나 인간에 노출됨에 있어서 상당하거나 실질적인 경우에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경험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제3조 (a)(1)(A)(ii)) 평가의 권한을 부여함

- 제4조에서 화합물질의 제조나 가공 전에 EPA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러한 통지를 EPA는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제5조에서는 EPA에게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불합리한 위험을 유발하는 화합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가공·유통·사용 또는 처분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EPA가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해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비교 평가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TSCA의 목적은 위험이 존재하는 모든 화합물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나 환경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물질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확인됨.

나.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 TSCA에서는 화학물질의 제조사업자나 가공사업자에게 당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조 제(a)(1)항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화학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노출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양으로 생산되는 경우에 EPA는 제조자 또는 가공자에게 안전성 및 환경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TSCA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특정 분자단위의 유기물질 또는 무기물질을 말함

- 혼합물이나 연방 살충제·살균제·살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7 U.S.C. 136 et seq.])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충제라는 상업적 용도로 제조·가공·유통되는 살충제, 담배 또는 유사담배상품,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of 1954 [42 U.S.C. 2011 et seq.]) 및 관련규정에서의 핵 관련 물질, 연방 국세법 규정(section 418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26 U.S.C. 4181])에 의한 총기류 관련,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법규정(section 201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21])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의약품, 화장품 또는 기구(device)는 제외됨⁸⁾

8) TSCA §2(2).

- 과학적 실험이나 분석 또는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목적의 소량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⁹⁾ 시험판매(test marketing)의 목적인 경우에도 면제가능하며,¹⁰⁾ 신규물질이라 하더라도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EPA가 판단하는 경우에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됨¹¹⁾

□ EPA는 제3조 제(a)(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정보개선과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설치하여¹²⁾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위원회에서는 (i) 제조되는 물질의 양, (ii) 당해 물질에 환경에 유입되는 양, (iii) 작업장 내에서 노출되는 사람의 수와 그 노출기간, (iv) 인체에 대한 노출의 정도, (v) 건강 또는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과의 관련성, (vi) 해당 물질이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의 존재 정도, (vii) 해당 물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해당 물질이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개선 정도 (viii) 해당 물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한다.¹³⁾ 우선선정된 화학물질 리스트를 입증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암, 유전자 변형 또는 불임에 대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의심되는 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평가의 요건으로는 크게 불합리한 위험과 실질적인 양의 노출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불합리한 위험에 대하여, EPA는 제3조 제(a)(1)항에 따라 당해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를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동조 제(a)(2)항에 따라 규칙제정을 통해 당해 물질에 대한 신규 정보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으나, 규칙 제정에 앞서 EPA는 우선적으로 당해 화학물질이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EPA는 화학물질의 불합리한 위험 초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입증된 다른 화학물질과의 구조적 관련성, 불확정적인 평가 자료, 관련 사례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는데, ‘노출’은 위험 분석의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우선 노출에 대한 입증이 필요며,¹⁴⁾ 또한 EPA는 현재의 자료와 경험이 당해 물질의 영향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하거나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9) TSCA §4(h)(3).

10) TSCA §4(h)(1).

11) TSCA §4(h)(4).

12)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TSCA §3(e)(1)(B).

13) TSCA §3(e)(1)(A).

14) 법원은 EPA가 이론적 개연성 이상의 노출이 있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Chemical Mfrs, Ass’n v. EPA, 859 F.2d 997, 989 (D.C. Cir. 1988).

기존 연구의 하자로 인해 이를 신뢰할 수 없다거나 기존의 연구로는 위험을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EPA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불충분성이 인정될 수 있음

- EPA는 이러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당해 물질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만약 현재 실시중인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불합리한 위험 초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EPA는 추가적인 평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마찬가지임

● 실질적인 양의 노출 조건과 관련하여, 제3조 제(a)(2)항에 따르면, EPA는 불합리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도 노출을 근거로 화학물질의 평가를 요구할 수 있음

- EPA는 (i)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실질적인 양으로 생산되거나 생산될 것이고, (ii) 당해 물질이 실질적인 양으로 환경에 유출되거나 유출될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거나, 또는 이네가 당해 물질에 중대하거나 실질적으로 노출되고 있거나 노출될 수 있으며, (iii) 당해 물질의 제조·유통·가공·사용 또는 처리 등의 활동이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며, (iv) 이러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당해 물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물질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제3조 제(a)(1)항에서의 ‘불합리한 노출’보다 그 입증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명문으로 물질의 실질적인 생산 및 실질적이거나 중대한 노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과거 EPA는 실질적인 노출 또는 유출을 엄격하게 수치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생산 및 노출에 대한 판단은 각 화학물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야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이라는 개념을 정량화하지 않았지만, 그 후 1993년 5월 성명에서 EPA는 ‘실질적’ 생산·유출·노출을 정량화하는 정책성명을 공포함으로써 그 기준을 제시하였음¹⁵⁾

□ 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EPA는 위 평가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위원회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당해 물질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함

- 이 규칙에는 평가되어야 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평가결과의 생산기준, 기존물질의 경우 평가결과의 제출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¹⁶⁾
- 물질에 대한 정보개선을 위한 규약이나 방법에서는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는 발암성, 돌연변이유발성, 기형유발성, 행동장애성, 누적 또는 상승효과 및

15) 박종원, 「환경리스크 대응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104면.

16) TSCA §3(b)(1).

기타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수반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됨¹⁷⁾

- 화학물질 또는 화합물의 성질로는 잔류성, 급성독성, 아급성독성(subacute toxicity), 만성성(chronic toxicity) 및 그 밖에 불합리한 위험을 유발하는 성질이 포함됨¹⁸⁾
- 평가방법으로는, 직원에 대한 역학적 실험을 규정하기 전에 EPA는 국립직업안전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임원(Director)과 협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역학적 연구, 직렬적·계층적 실험(serial or tiered testing), 시험관 실험(in vitro test), 동물실험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TSCA 제3조 제(a)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평가와 정보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EPA에 대하여 제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¹⁹⁾ 신청을 받은 EPA는 해당 물질이 이미 규칙 이나 동의에 의해 제출된 물질과 동일하거나 정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인지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자료제출이 중복되는지를 판단하여, 정보의 동일성과 공평한(equitable) 자료 제출비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도록 함²⁰⁾

□ EPA는 규칙 등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 해당 자료를 접수하였음을 15일 이내에 연방관보에 공표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1) 평가가 실시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2) 해당 물질의 사용내용 및 정보개선내용, (3) 정보개선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²¹⁾

□ 정보제출 절차에 따른 정보나 기타 정보를 접수받은 EPA는, 인체에 심각하거나 광범위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하에 판단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 그러한 위험을 방지 또는 저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그러한 위험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비용이나 다른 비위험적 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관보에 공표하여야 함²²⁾

- TSCA 제3조 제(a)항에 따라 정보고지가 요구되는 화합물질을 제조 또는 가공하려는 자 또는 규칙 등에 의해서 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EPA에 그 물질에 대한 정보개선에 관한 규약이나 방법에 대해 청원할 수 있고, EPA는 이러한 청원에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²³⁾

17) TSCA §3(b)(2)(A) 제1문.

18) TSCA §3(b)(2)(A) 제3문.

19) TSCA §3(c)(1).

20) TSCA §3(c)(2), (3). & (4).

21) TSCA §3(d) 제1문.

22) TSCA §3(f) 제1문.

23) TSCA §3(g) 제1문.

다. 제조 및 가공에 대한 고지

- 일반적 절차로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TSCA 제7조 제(b)항에서 요구하는 목록을 EPA에서 처음 발간한 후 30일 이전에 제조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TSCA 제7조 제(a)(2)항에 따라 EPA가 중대한 신규 사용법이라고 결정하였던 용도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됨²⁴⁾
- 다만 적어도 제조나 가공 90일 이전에 TSCA 제4조 제(d)항에 따라 물질의 제조나 가공의 의도를 EPA에 고지하였거나, 제4조 제(b)항, (e)항 및 (f)항을 준수하였다면 제4조 제(a)(1)항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하며, 또한 EPA에서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였고, 제4조 제(a)(3)(A)항, (B)항 및 (C)항에 따라 결정되고 검토기간내에 결정과 부합하는 조치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함²⁵⁾
 - 검토기간내 제7조에 따라 EPA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²⁶⁾
 - (i) 비용이나 다른 비위험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사용조건에 따라 EPA에 의해서 관련있는 것으로 확인된 잠재적으로 노출되거나 민감한 부차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포함하여 관련 화학물질이나 중대한 신규 이용으로 인해 인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야기하는 지 여부 및 그러한 경우에 EPA는 제4조 제(f)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 (ii) 관련 화학물질 또는 중대한 신규 이용에 대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EPA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또는 EPA에서 그러한 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 물질의 제조·가공·유통·이용 또는 처분 또는 이러한 행위의 결합(combination)으로 인해 인체 또는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제기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물질이 상당한 양으로 생산되는 경우에 그러한 물질이 환경에 유입될 수 있는지 또는 합리적으로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물질에 인체의 노출이 상당하고 실질적인 여부.
 - 그러나 EPA에서 검토기간내까지 제4조 제(a)(3)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정보제공자에 의한 철회가 있지 아니하다면, EPA는 제25조 제(b)항에 따라 검토신청비를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제한을 따로 규정함²⁷⁾
 - EPA는 화학물질에 노출과 관련하여 충분한 입증이 가능하면, 화학물질의 수입(import)이나 가공에 대해서도 제4조 제(a)항 규정을 적용하여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4) TSCA §4(a)(1)(A).

25) TSCA §4(a)(1)(B).

26) TSCA §4(a)(3).

27) TSCA §4(a)(4).

□ 위 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을 받은 EPA는 신청자가 EPA에 대하여 물질의 제조·가공·유통·이용 및 처분 또는 그 결합된 행위에 대하여 EPA에 의해서 관련있는 것으로 확인된, 잠재적으로 노출되거나 민감한 부차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포함하여 신청에서 확인되는 특수한 조건에 있어서 인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충분히 확인된 경우 및 EPA에서 적절한 규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대해서 위 검토절차를 면제할 수 있음²⁸⁾

● 또한 EPA는 신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b)(2)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하고 EPA가 제출된 신청서와 화학물질이 제4조 제(b)(2)항에 따라 EPA에 제출되도록 하고 있는 정보의 동일성 여부 및 그러한 물질에 대한 신청자의 정보제출인 절차 따라 요구되는 정보와의 중복여부가 확인된다면, EPA는 이를 면제할 수 있음²⁹⁾

- EPA는 신청자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가공·유통·이용 또는 처분 또는 그 결합 행위가 사용조건에 따라 EPA에 의해서 관련있는 것으로 확인된 잠재적으로 노출되거나 민감한 부차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포함하여 관련 화학물질이나 중대한 신규 이용으로 인해 인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지를 포함한 인체 또는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지를 결정한다면, 이 또한 검토절차를 면제할 수 있음³⁰⁾

- 또한 EPA는 혼합물질이나 또다른 화학물의 제조나 가공에서 화학적 반응의 결과가 일시적으로 존재하거나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가공에 대하여 제4조 제(a)항 및 (b)항에서 요구하는 절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³¹⁾

라.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위험평가

□ EPA가 위험평가 절차 및 기한에 관한 제5조 제(b)(4)(A)항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제조·가공·유통·이용 또는 처분 및 이와 결합된 행위로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불합리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규정과 제7조 및 제5조 제(c)(2)항에 따라 EPA는 그러한 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하여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해야 하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따른 그러한 위험을 더 이상 야기되어서는 아니되며,³²⁾ 다만 아래 요건들은 지역적 제한이 부가될 수 있음

● 그러한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가공·유통의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제조·가공·유통되는 양을 감소해야 한다는 요건

28) TSCA §4(h)(1).

29) TSCA §4(h)(2)(A).

30) TSCA §4(h)(4).

31) TSCA §4(h).

32) TSCA §5(a)(1) to (7).

- 특정사용목적 또는 EPA가 특정하는 정도를 초과한 집중사용(a particular use in a concentration) 목적을 위한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가공·유통의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제조·가공·유통되는 양을 감소해야 한다는 요건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사용·유통 또는 처분 및 그 결합행위에 대한 명확한 최저 용량 주의 및 설명이 표시되거나 동봉되어야 하고, 그 형태와 내용은 EPA가 규정한다는 요건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는 제조 또는 가공공정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고, 또는 제5조 제(a)항에 따른 요건들에 부합하다는 보증에 필요한 검사를 감독하거나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상업적 사용방식 또는 방법을 금지하거나 규율해야 한다는 요건
 -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자에 의해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또는 그러한 물질 또는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의 처분방식 또는 방법을 금지하거나 규율되어야 한다는 요건.
 - 다만, 범위반 또는 주(State)나 정치적 세부구역(political subdivision)에서의 요건이나 발효중인 조치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금지 또는 규율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로 하여금 유통업자, 물질보유자 또는 물질에 노출된 사람에게 결정의 통지, 결정에 대한 공시(public notice) 또는 요건을 검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택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대체 또는 재구매에 대한 요건
- EPA의 위험평가 절차는 위험평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높은 순위의 화학물질을 지정하여 평가절차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해 연방관보에 공표하여야 하고, 폴리염화비페닐(PCB), 수은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함
- EPA는 화학물질에서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불리합리한 위험이 제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하고, 2016년 6월 22일까지는 위험평가수행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³³⁾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공표하여야 함
 - EPA는 2016년 6월 22일까지 규정을 통해서 높은 순위 또는 낮은 순위 물질로 지정하는 기준을 포함한 위험기반 검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높은 순위로 지정하는데는 위험 및 노출의 잠재력, 물질의 사용조건 또는 사용조건의 심각한 변화, 제조 또는 가공되는 물질의 용량 또는 심각한 용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함³⁴⁾

33) TSCA §5(b)(4)(A) & (B).

34) TSCA §5(b)(1)(A).

- EPA에 의해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노출 또는 민감한 부차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포함하여 이용조건하에서 잠재적 위험 및 잠재적 노출경로로 인해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줄 불합리한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화학물질에 대해서, EPA는 높은 순위 물질로 지정하여야 하고, 위 위험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입증이 충분한 경우에는 낮은 순위 물질로 지정하여야 함³⁵⁾
- 우선순위확정절차에서는 우선순위지정에 필요한 시간을 9개월이상 1년미만으로 보장해야하고, 지정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³⁶⁾
 - (i) EPA는 지정시 또는 지정전에 이해당사자들에게 우선지정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련 정보를 9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ii) EPA는 우선순위 지정안을 정보의 확인, 분석, 지정의 근거와 함께 공표하여야 하고, 90일동안 지정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함
 - (iii) EPA가 법 제3조 제(a)(2)(B)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정보를 수령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3개월까지 연장 진행할 수 있고, 연장기간까지 EPA에서 이용가능한 정보가 낮은 물질로 지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면, EPA는 높은 순위의 물질로 지정하여야 함
- ▣ 2016년 6월 22일 이후 180일 이내에 EPA는 2014년 TSCA 화학물질 평가작업 갱신계획(2014 update of the TSCA Work Plan for Chemical Assessments)로부터 선택된 10개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180일 기간동안 그 위험물질의 목록을 공표하여야 함.³⁷⁾
- 2016년 6월 22일 이후 3년 6개월 이내에 EPA는 최소 20개의 높은 순위 물질과 22개의 낮은 순위 물질에 대해서 위험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EPA에 의해서 위험평가가 진행되는 화학물질의 50%는 2014년 TSCA 화학물질 평가작업 갱신계획에서 선별되어야 함³⁸⁾
- EPA는 계속적으로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지정하여야 하고, 제5조 제(b)(4)(G)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료일까지 EPA의 위험평가 진행능력을 고려하여 위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함³⁹⁾
- 우선순위 물질을 지정함에 있어 EPA는 2014년 TSCA 화학물질 평가작업 갱신계획에서 지속성 및 생물축적 점수(Persistence and Bioaccumulation Score) 3점을 받은 화학물질, 발암물질, 맹독성 및 만성독성을 가진 물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함⁴⁰⁾

35) TSCA §5(b)(1)(B).

36) TSCA §5(b)(1)(C).

37) TSCA §5(b)(2)(A).

38) TSCA §5(b)(2)(B).

39) TSCA §5(b)(2)(C).

40) TSCA §5(b)(2)(D).

- 금속 및 금속요소에 대한 위험평가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위험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EPA는 과학자문청(Office of the Science Advisor)의 금속위험평가 기본계획(Framework for Metals Risk Assessment), 위험평가포럼(Risk Assessment Forum) 및 2007년 3월과 그 이후에 과학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금속위험평가를 언급하였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함⁴¹⁾
- 높은 순위의 화학물질로 지정하면, EPA는 그 물질에 대해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EPA가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낮은 순위의 화학물질 지정을 개정할 수 있다. 또한 EPA는 각각의 위험평가를 종료하였을 때 적어도 하나의 높은 순위 물질을 지정하여야 함⁴²⁾
- EPA는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22일 이후 1년내 화학물질이 인체 또는 환경에 대한 유해에 불합리한 위험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절차에 따라서 위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함⁴³⁾
- EPA는 제5조 제(b)(2)(A)항에서 확인되거나 동조 제(b)(1)(B)(i)에서 지정되었고, 제조업자가 요구하였던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공표하여야 함⁴⁴⁾
- 위험평가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EPA는 수행하였던 위험평가의 범위를 공표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위험사항, 노출, 사용조건, EPA가 예상하는 잠재적으로 노출되었거나 민감한 부분집단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높은 순위의 화학물질로 지정하기 위해 선정개시부터 위험평가의 범위공표까지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법 제(b)(2)(A)항에 의해 확인되거나 동법 제(b)(4)(E)(iv)(II)에서 선택된 화학물질에 시행된 위험평가에 대하여는 EPA가 위험평가의 범위를 공표하기 최소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함⁴⁵⁾
- 위험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MPA는 화학물질의 사용조건에 대한 위험과 노출에 관하여,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주는 특정위험과 관련한 정보 및 EPA에 의해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잠재적으로 노출되거나 민감한 부분집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평가하여야 하고, 사용조건에서 화학물질에 총 노출 또는 경계노출(sentinel exposures)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및 그 기준을 설명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MPA는 화학물질의 사용조건하에서 관련한 지속성(relevant, the likely duration), 강도, 빈도, 및 노출의 횟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확인된 위험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주는 특정위험과 관련한 정보 및 EPA에 의해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잠재적으로 노출되거나 민감한 부분집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노출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비중을 설명하여야 함⁴⁶⁾

41) TSCA §5(b)(2)(E).

42) TSCA §5(b)(3).

43) TSCA §5(b)(4)(A) & (B).

44) TSCA §5(b)(4)(C).

45) TSCA §5(b)(4)(D).

46) TSCA §5(b)(4)(E).

5. 연방유해물질법

- 

1960년대 시행된 연방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 Act, FHSA)은 위험성 있는 소비자제품에 대해 위험성과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표시할 의무를 부과함
- 

경고표시가 필요한 제품의 정의는 연방규칙(C.F.R) 1500.5~20에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성과 부식성, 가연성 제품, 자극물, 강력한 예감제, 압력 발생시 위험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 대상 제품도 포함함
- 

CPSC는 경고표시 뿐만 아니라 해당 유해물질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고, 납함유 규제가 FHSA에 추가됨

6. 독극물예방포장법

- 

1970년부터 시행된 독극물예방포장법(Poison Prevention Packing Act)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소비자용 가정제품의 포장을 어린이가 용이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
- 

규제대상제품은 (i) FHSA 15 U.S.C. §1261(f)에서 정의된 유해물질 (Hazardous substance) 제품(독성과 부식성, 가연성인 것, 자극적인 물품 또는 분해와 열 등으로 압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용 또는 취급하는 경우 심각한 상해와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ii)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21에서 정의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iii) 휴대용기에 보존하고 있는 연료로서 사용된 물질 및 가정에서 난방과 조리, 냉방 등에 사용되는 물질 등임

7. 가연성 직물제품법

- 

가연성 직물제품법(Flammable Fabrics Act, FFA)는 소비자가 착용시 위험할 만큼 가연성이 강한 의류 및 직물제품의 제조, 판매를 위한 제공 또는 판매, 운송, 수입 등을 금지함
- 

현재는 의류, 실내 피복품, 직물, 기타 섬유로 분류되는 모든 섬유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함
- 

가연성 기준은 미국 제품안전 요구사항(U.S. Product Safety Requirements)에 따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CPSC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CPSC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제품위험이 있을 경우 제품판매 제한 조치와 위법·위험 제품에 대한 시장철수명령과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8. UL(Underwriters Laboratory) 인증

□ UL은 OSHA(미 산업보건안전청)에서 인가한 NRTL(국가공인시험소) 중의 하나로 자율 규제 제도

- 다만, 일부 도시(municipality)에서는 강제하고 있으나, UL 측에서는 별도로 해당 도시 목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차원에서 법령 및 규정 도입을 통해 강제화 하기도 함

□ 1893년 최초 백열전구가 발명된 이후 주요도시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으며, 국가 화재보험위원회(National Board of Fire Underwriters)는 그 원인이 전기에 있다고 판단

- 한편 UL 설립자인 William Henry Merrill은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화재 가능성을 알 수 있게 하는 안전성 실험 구상을 화재보험업체들에게 발표함
- 결국 이를 토대로 화재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보험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보험업계는 제품안전검사 구상을 지원

□ 자율규제제도이나, 미국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들과 UL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협조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UL 표준 중 상당수가 또한 미국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들에 의하여 연방·주·지방의 정부조달 등의 표준으로 채택

- 또한 UL 마크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정해진 안전요건을 충족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강제규제와 유사한 효력
- 2005년 기준, 전기·전자제품, 건축구조물, 건축자재, 방화제품, 수영장장비, 완구, 인화성 액체저장, 위험성 물질,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선박용제품 등 19,140개 유형의 품목
- 기존에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업용 주방기기 및 용품들은 그 안전성을 입증하는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 및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인증을 받은 경우가 많아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본 인증이 권장됨.

□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표준의 제정, 시험 검사 및 인증기능 수행
- 원자재, 장치, 제품, 기기 등으로 인한 제반 위험이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고 자체적인 품목별 기준을 충족할 경우 UL 마크 표시를 허용

- UL 마크 표시 제품의 품질 기준 충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한 제품의 제조·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제도

제3절 EU

1. 개관

☐ EU에서 공산품에 이용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법제(규정)로는 크게 4가지로 REACH, CLP, BPR 및 PIC로 나뉜다

- REACH(Regul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서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위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질을 등록하고, 이러한 절차는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들과 함께 하도록 함
 - EHCA에서는 사업자들이 등록한 정보를 수리하고 평가하며, EU 회원국들도 인체나 환경에 대한 초기 염려를 명확히 해 줄 선별된 화학물질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회원국의 행정관청과 EHCA의 과학위원회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한 관리가능성을 평가하게 됨
- CLP 규칙은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을 화학물질의 등급과 표지를 통해 EU내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화학물질이 시장에 소개되기 전에 산업계에서 인지된 위험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반드시 물질이 갖고 있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입증하도록 함
 -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또는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지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물질이 갖고 있는 효과를 인지하도록 한다.
- BPR에서는 살균성 제품에 대한 시장에서의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살균성 제품은 인간, 동물, 자재 또는 살균성 제품내 포함되어 있는 활성 물질(active substances)의 작용에 의해 해충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유해한 생물에 대항하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 BPR은 인체 및 환경보호의 수준을 고양함과 아울러 EU내 살균성 제품시장의 기능을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PIC는 관련 위험물질의 수입 및 수출을 관리 및 EU 역외로 관련 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

- 동 규정의 목적은 위험물질의 국제거래에서의 공유된 책임 및 협력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저장·운송·이용 및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인체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표 3-4〉 EU의 제품안전관리체계

구분		EU
법령		• 제품안전지침(Directive), 개별 제품의 안전기준(EN Standard) 등
시장출시 前	사전규제	• 유럽공동체인증인 CE마크 부착 필수
	수입제품	• 관세국과 시장감시기관 협력하여 수입제품 감시 • Risk Analysis 기반 세관 우선조사 품목 선정 • 회원국간 DB 공유
시장출시 後	시장감시	• 개별 국가별 시장감시기관에서 수행 • 비정기적 합동조사 수행
	정보관리	• 시장감시 정보, 통계, 분석결과 등을 공유 • RAPEX를 통해 긴급위해정보 공유
	사후조치	• 벌금, 리콜 등

2. 제품·물질안전법제

가. 제품안전일반지침⁴⁷⁾

1) 개관

☐ 제품안전일반지침(2001/95/EC)⁴⁸⁾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됨

- 동 지침은 완구, 화학, 제품, 화장품, 기계류 등 별도의 부문별 입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재 상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제품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각 부문별 규제를 보완함

2) 정의와 안전요건

☐ 안전한 상품이란 일반적인 사용시 위험이 없거나 매우 적은 위험만 있으며, 사용 건강과 안전을 고도로 지키는 제품을 말함

- 동 지침은 안전한 상품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47) 김재영, 「EU 소비자법제 연구」, 2015, 한국소비자원, 59면 이하 참조.

48)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35814670112&uri=CELEX:32001L0095>.

☐ EU 법규 또는 회원국법규의 안전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안전하다”고 간주되며, 본 지침의 절차에 의해서 성립된 EU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도 안전하다고 간주됨

☐ 이러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요소에 따라 규범 준수여부를 판단하게 됨

- 즉 회원국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유럽표준, EU 기술표준, 관행규범, 소비자의 기대 수준과 같은 기준을 정해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음

☐ 이 지침은 제품 생산자와 개별회원국으로 하여금 몇 가지 의무를 정하고 있음

- 제품생산자는 제품의 위험요인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험 예방 의무, 위험 상품 추적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지며(지침 제3조 내지 제5조)
- 회원국은 지침이행 확보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 시장 감시 강화조치 의무가 있음(지침 제6조)

3)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의무

☐ 생산자들은 일반적 안전 요건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유통해야 함

- 생산자들은 ① 소비자들이 상품의 내재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제공, ② 상품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③ 일반적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상품 공급, ④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안전 모니터링, ⑤ 상품이 추적가능 하도록 문서 기록 제공할 의무 부담

☐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알게 될 경우 당국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조해야 함

4) 회원국의 의무

☐ 회원국은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보장해야 함

☐ 회원국들은 ① 상품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② 위험 상품에 대한 필요 조치 및 EU 집행 위원회에 상세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하여야 함

- 회원국들은 안전 기준 위반자들에 대한 벌 칙을 마련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접수한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해야 함

5) 긴급 경고 및 개입 시스템

- 동 지침은 회원국내에 위험한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회원국들과 집행위원회에 위해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긴급경고시스템(RAPEX 제도)를 마련하여 신속한 정보 입수 및 문제해결을 위한 EU차원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⁴⁹⁾
- 회원국들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상품을 구별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개입조치를 단행해야 함
- 회원국들은 이러한 긴급 경고 시스템을 통해서 EU 집행위에 통지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

나. EU의 REACH

- REACH는 2006년 12월 채택되어 200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EU의 규칙으로서, EU 화학산업계의 경쟁은 향상되는 반면 화학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으로부터 인체와 환경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채택되었고, 또한 동물실험의 감소하기 위하여 물질에 대한 위험평가(hazard assessment)의 대안적 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원칙적으로 REACH는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되는데, 의류, 가구, 전자제품을 포함한 세척용품이나 공장과 같이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물질 뿐만 아니라 매일 사용되어지는 물질을 그 대상으로 함
 - REACH에서는 사업자들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EU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물질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지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이하 'ECHA')에 물질의 안전사용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용자들과 위험관리수단에 대해 소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위험이 관리되지 아니한다면, ECHA는 다양한 방법으로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장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보다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함
- REACH에서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위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함
 -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질을 등록하고, 이러한 절차는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 있음
 - ECHA에서는 사업자들이 등록한 정보를 수리하고 평가하며, EU 회원국들도 인체나 환경

49) EU 정책브리핑 제5장 제5절 소비자정책 635 이하.

에 대한 초기 염려를 명확히 해 줄 선별된 화학물질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회원국의 행정 관청과 EHCA의 과학위원회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한 관리가능성을 평가함

- 위험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사용제한 또는 이전 승인 된 용도에 국한하도록 할 수 있음
- REACH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자들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심지어 화학물질 과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자들(제조업자, 수입업자, 하위 사용자, EU역외 사 업자)에게도 적용됨
- 1990년대 후반부터 화학물질관리법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인식되고, 1998년 영국 체스터에서 개최된 환경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REACH의 제정이 논의되었고, 2003년 10월 EC가 REACH안을 제출하였음

● 제출안에 대하여 화학업계와 각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i) REACH가 산업계에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을 들일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고용과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ii) REACH에서 규제대상을 위험물질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특 히 주효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에 공동결정절차를 통해 유럽회의 및 유럽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채택되었다. 화학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될 수 있었던 원인⁵⁰⁾으로는 (i) 당시 EU내 화학물질규제법제에서 규제의 정합성과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고, 특히 기존 화학물질 규칙⁵¹⁾을 비롯한 제한지침⁵²⁾, 위험물질지침⁵³⁾ 및 그 수정지 침을 포함하여 40개 이상이 지침과 규칙을 통하여 화학물질을 규제함에 있어서 정합성이 결여되어 규제의 비효율성이 발견되었다는 점, (ii) 또한 종래의 법제상으로는 기존의 화학 물질에 관하여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위험평가의 지연이나 부재의 원 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족하였다는 점, (iii) 종래의 법제 나 조사가 혁신을 저해하고 혁신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점,⁵⁴⁾ (iv) 기

50) See European Commission, REACH in brief, Enterprise & Industry General and Environment Directorate General (February 2007). p.3 (박종원, 환경리크 대응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114-116면에서 재 인용)

51)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of 23 March 1993 on the evaluation and control of the risks of existing substances, 2001 O.J. (C.116) 38.

52) Council Directive 76/769/EEC of 27 July 1976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O.J. (L. 262) 201.

53) Council Directive 67/548/EEC of 27 June 1967 on the approximation of laws, regulations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he classification, packaging and labelling of dangerous substances, O.J. (L. 196) 1.

54) 즉 위험물질지침의 제6차 수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톤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출시전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자에게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하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존물질에 대하여 사업자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는 구조적 문제,⁵⁵⁾ (iv) 종래의 법제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정보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하위 사용자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사용 정보나 하위사용자에 의한 노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임

다. EU의 CLP

1) CLP의 의의

□ CLP 규칙(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은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을 화학물질의 등급과 표지를 통해 EU내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이 시장에 소개되기 전에 산업계에서 인지된 위험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반드시 물질이 갖고 있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또는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지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물질이 갖고 있는 효과를 인지하도록 함

□ 이러한 절차에 기초하여 화학물질은 위험은 표지 및 안전정보표에 관하여 표준 기재와 프로그램(standard statement and programs)을 통해 전달되어진다. 예컨대, 공급업자가 물질을 ‘급성독성 분류 1(구강)’으로 확인하면, 그러한 표지에는 “삼키면 치명적”, “위험” 및 해골문양으로 위험 기재(hazard statement)를 내포하도록 함

□ CLP는 분류(classification), 표지(labelling) 및 포장(packaging)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09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대해서는 UN의 Globally Harmonised System(GHS)에 근거함

2) 규제 사업자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CLP에 따라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해 분류하고, 표지하여야 하고, 포장하여야 함

- 공급사업자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특정상품의 생산업자. 합성사업자(formulator)와 재수입업자(re-importer)를 포함한 하위 사용자, 및 소매입자를 포함한 유통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는 큰 부담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EU의 화학산업이 외국보다 발전속도가 늦춰진다는 지적 있었다.

55) 사업자는 자기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이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인적자원의 한계를 갖고 있는 행정기관에게 평가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원인자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구조의 부적절성이 지적되었다.

- ☐ 시장에서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최초 취급일로부터 1달 이내 취급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를 ECHA에 통지하여야 하고,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물리적으로 EU영내에 들어온 날로부터 1달 이내 통지하여야 함

3) 분류

- ☐ 대부분의 경우에 공급업자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질의 분류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자가 분류(또는 자가판정, self-classification)이라고 함
 - 이러한 절차는 4가지로 분류되는데, (i) 정보의 수집, (ii)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한 평가, (iii) 분류기준과 상치되는 정보에 대한 검토, 그리고 (iv) 분류(판정)의 결정으로 진행됨
- ☐ 이전 지침에 의한 분류는 CLP의 분류로 변경되는데, 공급업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하여야 함
 - (i)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위험물질지침(Dangerous Substance Directive)에 따라 분류되었거나, 2015년 6월 1일 이전에 위험제조물질지침(Dangerous Preparations Directive)에 의해 분류되었던 혼합물로 분류된 경우, (ii) 위험분류를 위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
- ☐ REACH에 규정이 있으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시장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물질, 예컨대 장소가 분리된 중간재(on-site isolated intermediates), 수송된 중간재(transported intermediates) 또는 상품이나 연구개발 과정(product and process-orientated research and development)을 위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분류할 필요가 있음
- ☐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하위 사용자는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받아들이고 재분류(재평가)의 필요성을 재평가하여야 함
- ☐ 일부 경우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결정이 유럽공동체 단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업자는 각각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질에 통일화된 분류 및 표지를 신청하여야 함
 - 이러한 절차에서는 가장 위험한 물질을 중요시하는데, 생식 또는 민감한 호흡기질환에 대한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 유독성과 관련이 있다. 통일적인 분류는 경쟁(competitiveness)과 혁신을 증진함과 동시에 인체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임

4) 표지(Labelling)

- 공급업자는 시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CLP에 따라 포장내 포함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i) 화학물질이 위험하다고 분류된 경우와 (ii) 혼합물 속에 위험하다고 분류된 화학물질이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하여야 함
- CLP에는 표지의 내용과 다양한 표지요소들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i) 공급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i) 일반 공중에 알 수 있도록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의 명목상의 수량(포장에 수량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iii) 제품 식별자(product identifier), (iv)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위험 그림문자, 시그널 워드(signal word), 위험문구, 예방 문구(precautionary statements) 및 추가 정보 등
 -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125ml 미만의 작은 포장 또는 표지를 하기 곤란한 경우인데, 공급업자는 통상 CLP에서 라벨요소로 요구하는 위험 및 예방 문구 또는 그림문자를 생략할 수 있음
-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이 일반공중에게 공급되는 경우, 위험에 대한 어린이에게 안전한 잠금방식 및 접촉과 관련하여 물질에 어떤 위험이 내포하는지 또는 포장에 메타놀(methanol) 성분이나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⁵⁶⁾성분을 포함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가 포장에 부착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운송법규에 따른 표지나 표시행위(marking)은 위험물질의 외부 포장에 운송 및 CLP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CLP 표지는 밖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음
 - 즉 CLP에서 요구하는 위험 그림문자(hazard pictogram)이 위험한 상품의 운송에 관한 규정의 위험과 유사한 경우에, CLP 그림문자는 외부에 드러낼 필요가 없음

5) 통일화된 분류 및 표지

- 물질의 분류가 통일화되고, 유럽공동체내 적절한 위험관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수준의 규범이 만들어야 할 때, 다음 경우가 고려되어야 함
 - (i) 물질이 생식이나 호흡기 민감자(respiratory sensitiser)에 대한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독성이 존재하는 경우,
 - (ii) 물질이 생명파괴성(biocidal) 또는 식물보호성 상품내에서 활성물질인 경우,
 - (iii) EU수준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6) 토양 오염의 원인물질 중 하나.

☐ EU회원국,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하위 사용자는 유럽연합 전반에 걸친 통일된 분류 및 표지를 제
안할 수 있는데, 제안 후에 이해당사자들이 절차에 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레지스트리(registry)에
공고하여야 함

- 통일화된 분류 관련 서류에는 물질의 제조와 사용에 관한 정보, 물질이 갖는 위험 및 유럽
공동체 수준에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되어야 함
- 보고서에는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물리적, 독성학적 및 환경독성학적 위험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ECHA는 제안서를 접수 후에 45일 동안 공공 협의 기간(public consultation period)을 준비하
고, 그 이후에 접수된 논평을 회원국들 또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던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수
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제안서 제출자들의 제안서, 논평 및 견해들은 ECHA의 위험평가위원회
(Risk Assessment Committee)에 전달되고, EU 회원국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제안서에 대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ECHA는 이를 유럽위원회에 전달하게 됨

- 회원국들의 대표를 포함하는 REACH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ttee)의 협조를 받아
유럽위원회는 당해 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지를 결정함

6) 혼합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명(alternative chemical name in Mixtures)

☐ 혼합물내 모든 구성물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급업자는 사업의 기밀성 및 특별히 공급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표지 또는 안정정보표에 대체명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음

- ECHA가 대체명 요청을 승인하면 모든 EU회원국에 유효하고, 화학물질을 대신하여 표지,
안전정보표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체명은 다음의 경우에만 승인이 이루어짐
 - (i) 유럽공동체 내 물질에 대한 작업장노출한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 (ii) 대체명의 사용은 작업장에서건강 및 안정에 관한 필수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 및 화합물을 취급함에 따른 위험이 제어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iii) 물질이 특정 위험부류로 분류되어야 하는 경우 (CLP규정 Annex I. 1.4.1(III) 참조)

라. 살균성 제품 규정(Biocidal Products Regulation)

☐ BPR에서는 살균성 제품에 대한 시장에서의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살균성
제품은 인간, 동물, 자재 또는 살균성 제품내 포함되어 있는 활성 물질(active substances)의 작
용에 의해 해충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유해한 생물에 대항하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

을 말한다. BPR은 인체 및 환경보호의 수준을 고양함과 아울러 EU내 살균성 제품시장의 기능을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 2012년 5월 22일에 채택되었고, 일부조항에는 유예기간이 있지만 2013년 9월 1일부터 유효하며, 살균성 제품 지침(Biocidal Products Directive, Directive 98/8/EC)은 폐지됨
- 모든 살균성 제품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품내 포함된 활성물질은 사전에 승인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일부 예외 있음
 - 예컨대 검토 프로그램(Review Programme)에서 활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살균성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활성물질 승인에 관한 최종결정을 보류하는 국내법에 따라 (최대 3년)이용될 수 있음
 - 평가중인 신규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은 임시승인을 취득한 경우에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음
- BPR은 활성물질 및 살균성 제품에 대한 승인을 간명화하고, EU회원국 평가, 의견수렴 및 결정에 대한 타임라인을 도입하여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시장을 통일화함에 목적이 있음
 - 또한 의무적인 정보공유의무를 도입하고 대안적 실험방법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동물실험 감소를 촉진함
 - 이전 지침에서처럼 활성물질 승인은 EU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회원국 수준에서 살균성 제품의 부수적인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승인은 회원국들간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에 의해서 다른 회원국들로 확대됨
 -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EU 수준에서의 승인에 관한 새로운 유형가능성을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음
- 정교한 IT플랫폼인 살균성 제품 등록(Register for Biocidal Products, R4BP 3)은 신청자, ECHA, 회원국내 관련당국 및 유럽 위원회간에 데이터 및 정보를 교환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또 다른 IT툴인 IUCLID도 신청을 준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1) 활성물질에 대한 승인

- 활성물질은 그것을 포함하는 살균성 상품 승인 전에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 활성물질은 먼저 회원국내 관련당국의 평가를 사정하고, 그 결과를 ECHA의 살균성제품 위

위원회(Biocidal Products Committee)에 전달해야 하고, 270일 기간 내에 의견을 준비해야 함

- 위원회의 의견은 유럽위원회의 승인결정에 대한 근거가 되고, 활성물질에 대한 승인은 10년을 넘지않은 규정된 기간동안 부여되며, 갱신가능함

□ BPR에서는 형식적인 예외사항과 활성물질 평가에 적용가능한 부수적인 기준을 도입함

- 원칙적으로 예외기준에 해당하는 활성물질은 승인되지 아니하는데, (i) CLP규정의 1A 또는 1B에 해당하는 발암물질, 돌연변이유발 요인, 생식에 미치는 독성물질(reprotoxic substances), (ii) 환경 호르몬, (iii)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물질, (iv) 잔류성 및 생물농축성(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vPvB) 물질이 여기에 해당함
- 특히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활성물질이 공공 보건이나 공익을 근거로 활성물질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개정이 예상가능하다. 이 경우 활성물질에 대한 승인은 최대 5년 동안 부여됨

□ 잠재적으로 대체기준(substitution criteria)을 충족하는 활성물질은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를 거치게 될 것이고, 승인절차동안 대체 예상물질로 지정될 수 있음

- 대체기준은 사용과 잠재적 노출에 대한 본질적인 위험성에 근거하고, 이 경우 활성물질의 승인은 최대 7년간 부여됨
- 대체물질로 여겨지는 활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살균성 물질에 대한 국내 또는 유럽연합의 승인에 평가 중에 비교평가가 수행되고, 이로써 활성물질의 화학적 다양성이 적절한지 뿐만 아니라 대체 물질 또는 방법이 낮은 위험성을 표시하고 동일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가 평가됨

마. 사전통보승인 규정 (Prior Informed Consent Regulation, Regulation (EU) 649/2012)

□ PIC는 관련 위험물질의 수입 및 수출을 관리 및 EU 역외로 관련 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임

- 규정의 목적은 위험물질의 국제거래에서의 공유된 책임 및 협력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저장·운송·이용 및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인체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본 규정은 EU내에서 위험한 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국제거래에 관한 사전 정보동의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의 이행과 관련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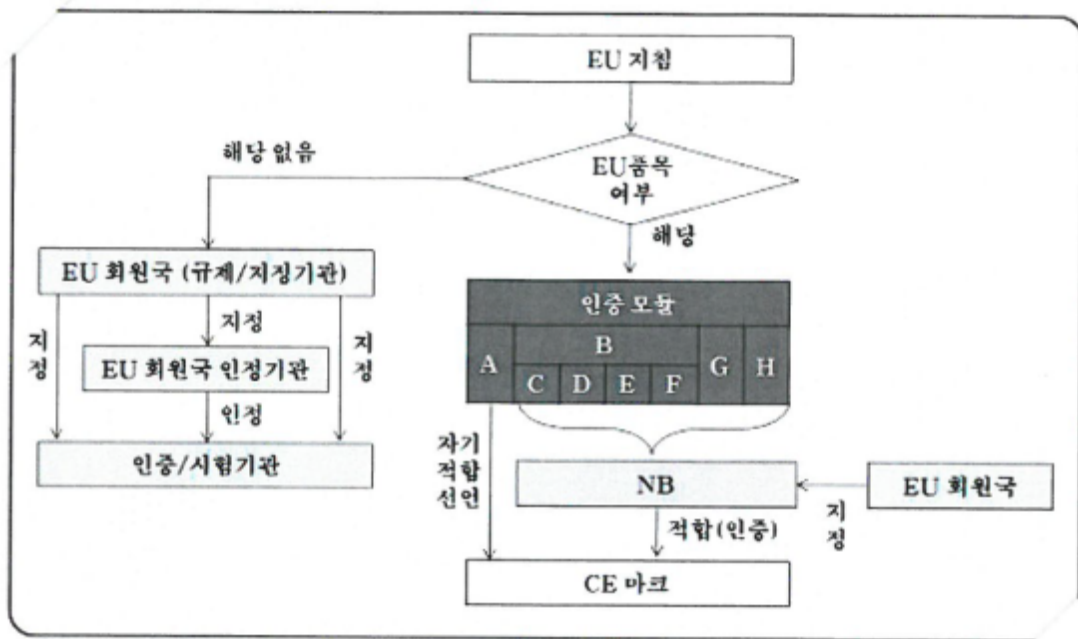
- PIC 규정은 산업 화학물질, 살충제 및 살균제를 포함하고 첨부I에서 나열하고 있는 금지되거나 엄중하게 제한을 받는 화학물질, 예컨대 벤젠, 크로로포름(chloroform), 아트라진(atrazine) 및 페메트린(permethrin)에 적용됨
 - 이러한 화학물질은 수출통지(export notification) 및 명시적 승인(explicit consent)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PIC규정은 첨부V에 나열된 수출금지 화학물질과 수출시에 관련 EU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포장 및 표지에 관한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됨
 - 약품, 방사성 물질, 폐기물, 화학적 무기, 식품 및 식품첨가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은 유전학적으로 유기체를 변형하고, 다른 EU규정에 의해서 규율되므로 PIC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수량을 제공하고 매년 수출입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나 분석을 위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바. CE마크(Conformite European Mark)

- (CE마크, 의무) 유럽연합의 통합규격으로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선언)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함으로써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
 - (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 적합성인증)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
 - (대상품목) 저전압기기, 단순압력용기, 완구류, 건축자재, 전자파적합성, 개인보호장비, 비자동저울, 능동삽입용의료기기, 가스기기, 온수보일러, 민수용폭약, 의료기기, 방폭장비, 레이저용 선박, 승강기, 압력기기, 기계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무선 및 전기통신용 단말기, 승객운송용 케이블설치, 측정기구 등
- 제품 안전에 관한 EU의 통합 인증마크제도로 EU 내 유통되는 소비재는 반드시 CE 마크 부착 필요하며, 제품 종류에 따라 총 21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 큰 위험요인이 없는 품목의 경우 공급자의 자기적합성 선언에 의한 자기인증에 의해, 큰 위험이 있는 경우는 EU차원의 지정검사기관인 유럽시험인증기관(EOTC,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의 인증을 통해 적합성 평가 표시인 CE마크 부착

〈그림 3-1〉 EU의 인증체계



- 유럽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중 소비자의 건강,안전,위생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제품에 적용
- 대상품목의 경우 CE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됨
 - 제품 또는 포장에 CE Marking을 부착하여야 함.
-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U의 법적요구지침 (Directive) 및 해당 조화 표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임
 -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음

〈표 3-5〉 CE 마크 대상 품목

	품목	대상 제품	비고
1	저전압기기	교류(AC) 50~1000V, 직류(DC) 75~1500V의 전기제품	
2	단순압력용기	내부압력 0.5bar이상의 용기 및 그 부속물	
3	건축자재	빌딩과 토목건설에 사용되는 건축용제품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문 등	
4	완구	인형, 장난감, 자전거 등의 어린이 (14세미만) 완구 및 어린이 제품	
5	전자파적합성	전자기 혼선을 초래하거나 전자기 혼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TV, 라디오, 컴퓨터, 전동기, 전자기계 등	
6	개인보호장비	안전을 위해 입거나 쓰는 제품 (신체보호용 장구)	
7	비자동저울	질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사람이 작동해야 하는 것. 산업용, 의료용 일반 계량저울	
8	능동삽입용의료기기	인체 내부에 삽입하는 인공기관 또는 보조기관으로 외부의 에너지로 작동되는 것 (인술린 펌프 등)	
9	가스기기	가스에 의한 조리, 난방, 온수, 냉각, 세척용 기기, 가스기기에 들어가는 안전, 점검, 조정기능의 부품장비, 가스조리기구, 히타, 온수기 등 가정용 가스기구	
10	온수보일러	4~400 Kw의 일반 온수보일러 유류 및 가스연료사용 온수보일러	
11	민간용폭약	군사용을 제외한 민간용 폭약, 위험물 수송관련 UN에 의해 Class 1에 속하는 물질	
12	의료기기	이식용 의료기기를 제외한 각종 의료용품 및 장비. 진단, 예방검사, 치료 또는 병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약이나 면역혈청, 신진대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	
13	방폭장비	폭발위험 환경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보호기구폭발 위험성 감파기, 예방시스템, 폭발물질 생산, 수송, 저장, 측정, 조정에 사용되는 기기. 폭발위험성이 있는 환경 밖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나, 폭발위험으로부터의 보호기능에 필요하거나 기여하는 기기	
14	레이저용 선박	선체길이 2.5m~24m의 레이저, 스포츠용 소형선박, 미완성 선박 및 선박부품장비	
15	승강기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16	압력기기	압력용기 이외의 압력기기, 압축액체를 담고있는 용기 또는 연결부분 액체를 수송하는 도관 (압력시스템과 연결되는 것) 압축장비의 보호부분으로, 일정압력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부품이나 시스템, 압축장비	
17	기계류	자재의 변형, 처리, 이동, 포장등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적어도 동력요소를 포함한 일련의 부품과 부속품, 작동시 서로 연계되어 움직이는 기계, 장비 전체, 한 기계의 기능을 변형하는 교환기능의 장비로서 다른 기계에 조립되기 위한 것, 기계의 안전기능을 보장하는 별도로 판매되는 안전부품으로 그 부품의 작동이 쇠약하거나 열악할 때 사용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공장 및 목공기계, 식품기계, 전기공구등의 산업용기계류	

	품목	대상 제품	비고
18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진단, 예방, 검진, 치료, 병 완화용의 시험관용 재료, 기기, 장비(혈액검사기등)	
19	무선 및 전기통신용 단말기	통신망에 연결된 전기통신기기 유.무선 통신단말기	
20	승객운송용 케이블설치	케이블카, 곤돌라, Chair Lift용 케이블설치	
21	측정기구	계량도구, 측정도구	

사. RoHS인증

〈그림 3-2〉 RoHS 인증마크



자료원: TUEV

- ☐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은 유럽연합(EU-법령 2002/95/EG)에서 시행되며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지침임
 - 제한물질들은 총 6가지로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프탈레이트, 브롬계 난연제인 PBB와 PBDE이다. 대상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는 카드뮴의 경우, 균질물질 내 중량기준 0.01%이며 나머지 5개 물질은 0.1%임
 -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 RoHS(China RoHS)를 시행을 하고 있어 유럽에서 정한 6가지 품목과 유럽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과학기기나 의학장비도 중국의 RoHS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 지침의 적용대상 제품은 CE마킹 지침을 만족시켜야 하며, 지침 불이행 시 벨기에의 경우 4만 유로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그림 3-3〉 RoHS 인증절차



자료원: TUEV

아. WEEE

〈그림 3-4〉 WEEE 인증마크



자료원: TUEV

- RoHS 인증과 같이 전기전자제품과 비전기전자제품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WEEE 인증은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로 독일어로 Elektro- und Elektronikgeraete-Abfall로 불림
- 인증 적용 품목은 8개 품목 군으로 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 레이저, 스포츠용품 그리고 자동 판매기임
- 동 인증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연합 내에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5가지 의무사항을 요구함
- 첫째, 무료 수거의 의무화로 회원국들은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무료로 폐전기전자 제품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 둘째, 수거 시스템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하는 것으로 국가별로 적용이 되고 있고,

- 셋째는 제품별 재생 비율 의무화이며,
- 넷째는 특정 물질의 분리를 명시하는 것인데, 제조업체는 수거된 폐전기전자 제품을 재생, 재활용, 재사용 공정으로 보내기 전 특정물질이나 부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 마지막으로, 제조사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표시 마크와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처리 시설에 대한 정보는 유지, 업그레이드, 수리, 재활용을 포함한 회수, 재이용 및 친환경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함

3. 임의인증

가. Oeko-Tex Standard 100(민간자율인증)

- (Eco-Label 개념) 에코라벨은 환경 친화적, 자원 절약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유발하여 녹색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생산자가 제품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려는 동기를 갖게 하는 시장 지향적 환경정책 수단으로, 생산규제 혹은 사용금지를 명하는 법규적 정책수단은 아님
- 주요 에코라벨로 Oeko-Tex Standard, Flower, Toxproof, SG, Ecoproof, ASG, Ecollection, Otto-Versand, Its One World, Eco-Tex 등이 있음
- 한편, Oeko-Tex Standard 100은 EU의 대표적인 민간 인증 제도로써, 모든 가공 단계의 섬유 원료, 중간 제품, 최종 제품과 그에 사용되는 부속 재료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세계적으로 통일된 테스트 및 인증 시스템을 말함⁵⁷⁾
- 이는 국제 사회에 유해물질에 위해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KC 안전관리제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안전관리제도에 영향을 주었음⁵⁸⁾
- (Oeko-Tex Standard) 생산품 관련 섬유 라벨로, 섬유생산공정의 환경적 측면을 배제하고 섬유제품 내에 알레르기나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한 물질이 없음을 나타내는 친환경 마크임
- 오스트리아 섬유연구소(OeTI, Austrian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와 독일의 사설 연구소인 Hohenstein 연구소(German Research Institute of Hohenstein)가 합병하여 Oeko-Tex의 약자로 표시되는 조직을 구성하여 인체에 유독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섬유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Oeko-Tex Standard 100이라는 섬유라벨을 정립하였으며,

57) https://www.oeko-tex.com/kr/consumer/what_is_ots100/what_is_ots100.html

58) FITI시험연구원, “섬유·피복류 국방규격의 KC 마크 적용에 관한 정책연구”, 방위사업청 연구보고서, 2013, 170쪽.

Oeko-Tex Standard 100의 적용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음.⁵⁹⁾

〈표 3-6〉 Oeko-Tex Standard 100의 적용범위

유 형	구 분
I	유아 및 3세 미만 소아용 섬유 제품 의류, 완구, 침구류, 수건 제품 등
II	직접 피부에 접촉하는 제품 속옷, 침구류, 티셔츠 등
III	피부에 접촉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접촉되는 섬유제품 재킷, 코트 등
IV	인테리어 소재 커튼, 테이블 보, 소파 커버 등

나. 독일 임의인증

□ 독일은 위 강제인증 외에도 다양한 환경, 산업, 전기 전자제품 관련 인증을 권장하고 있으며, 몇몇 인증들은 점점 부품에 따라 필수 인증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임

- 필수 인증은 아니지만, 품목에 따라 독일 시장에 진입할 경우 획득을 장려하고 있어 점점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됨

1) VDE(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 전기전자IT 협회)

〈그림 3-5〉 VDE 인증마크



자료원: VDE

□ VDE 인증마크는 독일 전기전자 제품뿐 아니라 기기 및 제품 안전법이 언급되는 제품도 포괄하며, 독일 의료기기 법상의 의료기기 역시 포함됨

- VDE 인증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제품이 VDE 규정을 준수했음은 물론 유럽 혹은 국제 규정에 적합하다는 의미임

59) FITI시험연구원, “섬유·피복류 국방규격의 KC 마크 적용에 관한 정책연구”, 방위사업청 연구보고서, 2013, 171쪽.

□ 1893년도에 설립된 VDE는 동 분야 규정 및 표준을 관할함

- 산하에 5개 유관단체(IT협회, 에너지 협회, 생명공학 기술협회, 마이크로 테크닉 VDI/VDE 협회, 자동화 기술 VDI/VDE 협회)를 두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VDE 인증마크를 발급, 전기 전자 및 IT분야 안전 관련 인증을 대행함

□ 인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품과 VDE 기관의 업무 처리량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6주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있음

-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7〉 비용표

연간비용	비용
1~5개의 생산 공장 보유	공장 한 개당 425유로
6~10개의 생산 공장 보유	공장 한 개당 320유로
11개 이상의 생산 공장 보유	공장 한 개당 215유로
생산 공장의 케이블 및 절연전선	공장 한 개당 1,320유로
전자부품에 대한 생산 현장	공장 한 개당 1,055유로
기업 등록 비용	250유로

□ 동 인증은 필수 강제 인증은 아니지만, LED 램프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인증으로,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동 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함

- 공공입찰의 참여 기준으로 동 인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LED 시장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동 인증 획득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GS(Geprüfte Sicherheit)

〈그림 3-6〉 GS 인증마크



자료원: TÜEV

- CE 마크의 경우 자사의 제품이 유럽 시장법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바,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인증인 것과는 달리 독일 노동 사회부에서 제정한 GS마크는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인증은 아니며 자율적으로 취득 가능함
- 2007년 2월 14일 EU집행위원회는 제품의 시장화를 위한 통일된 규제라는 명목 하에 독일 GS 마크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CE마크만이 해당제품의 요건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표시이며, 따라서 CE마크 조항준수와 관련해 EU회원국은 CE마크 외의 국가 규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했으나, EU회원국과 유럽 의회는 유럽위원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럽이사회 규칙(EC) 765/2008 제 30조 5항에 따라 가시성, 가독성 및 CE마크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제품에는 모든 다른 마크의 부착을 허용함

 - 유럽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인증인 GS마크는 해당 제품이 독일기기 및 제품 안전에 관한 법률(das Geraet-und Produktsicherheitsgesetz)의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마크임
 - GS마크는 일반적인 품질 인증서가 아니며, 때문에 제품수명을 보장할 수 없으며, GS 마크는 CE마크처럼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인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취득 가능하며, 유럽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인증 마크임
- GS마크는 독일 노동 사회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품질보증 마크로 한국의 KS마크와 유사함

 - 모든 공산품은 독일의 DIN 또는 EN규격에 따라 검사를 끝마치면 GS마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유럽 제품 책임법과 독일 장비 안전법에서는 제품 안전에 관한 책임을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음
- GS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선 GS-Stelle라는 검사기관(예, VDE, LGA, TUV, BG-PRUFZERT 등)에서 type 테스트를 의뢰해야 함

 - 그 밖에 GS-Stelle는 공장 감시 등을 통해 제품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는데, 제품 사양변경 시 제조업자는 GS-Stelle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신규 테스트 및 인증서 내용 변경 등)가 GS-Stelle에서 취해짐
 - GS 마크는 기술부품 내지는 소모성 완제품(예, 기계, 공구, 장난감, 전자기기, 전등, 가전제품 등)을 위해 발행될 수 있음

3) DGUV 인증(구 BG-PRUEFZERT)

〈그림 3-7〉 DGUV 인증마크



자료원: DGUV

- DGUV 테스트 인증은 제품 품질과 인체상 유해함을 증명하는 인증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음
- DGUV는 2010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BG-PRUEFZERT를 대체하고 있는 인증이며, 인증 내용은 다르지 않음
- 취득한 인증마크는 최고 5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 해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수용도를 구분해서 취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품의 위생상태만을 별도로 인증 받을 수 있음

4) ENEC 인증

〈그림 3-8〉 ENEC 인증마크



자료원 : tuvdotcom.com

- 동 인증은 LED 램프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CE와는 달리 강제 인증은 아니지만, CE 기본 인증 외에도 ENEC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보다 시장 진출에 유리하며,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필수임

- ENEC는 유럽안전마크로 유럽 제조업체 협회의 요청으로 유럽시험인증센터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전기 제품이 충족해야 할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일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가 유럽전기인증규격(ENEC)과 그에 따른 ENEC 인증 마크임
- 현재 이 협정은 1993년 10월 5일 이후 조명, 사무용 설비, 컴포넌트 인증을 규제하고 있음
- ENEC는 EN=유럽규격(European Norms)와 EC=전기인증(Electrical Certification) 그리고 24=인증기관 식별 번호를 의미함
- ENEC 마크는 전제 전기기술 제품의 상당 부분을 대상으로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인증기관에 대해 합의한 적합성 마크이며, 이 마크는 특정 유럽 안전기준을 준수한 증명임

4. 소비자안전문제사례와 법제 강화

가. 난연섬유제품의 환경규제 및 인증제도

□ 섬유제품의 잔류 유해물질과 인증제도

- 2001년 5월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되었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 것으로 POPs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는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하여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를 교란시키고 중추신경계의 손상을 초래하는 유해물질로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규제대상이 된 12종의 POPs는 다이옥신, Furan, DDT, Aldrin, Chlorden, Dieldrin, Endrin 등으로서 다이옥신은 브롬계 난연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음
- 섬유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아직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폐수발생량과 BOD 부하량이 전체 산업의 약 14%에 달하며, 오염배출량이 비금속광물(26%), 제지/담배(14.6%)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은 제조업 부분 소비량의 4.5%를 차지함
- 섬유산업에 있어 오염배출량의 95% 이상이 염색가공업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섬유산업에서의 잔류유해물질의 발생원인과 유해성은 아래의 <표3-8>과 같음

〈표 3-8〉 섬유산업의 잔류유해물질의 발생원인 및 유해성

유해물질	발생원인	인체유해성	대상품목
Ph	염색/가공(산성/알칼리성 조제)	피부자극(무해범위: 4-7, 5)	모든 섬유제품
포름알데히드	수지가공 주원료 직접염료의 고착제	점막자극, 피부알레르기, 후두암 발생원인	방추, 방축, 유연 가공제품
염소계 페놀류	섬유유연제, 호제의 부폐방지용, 면, 모제품의 방부, 방충제	전신중독, 발암성 근육이완, 순환계 식약유발	천염섬유, 피혁 신발
잔류농약	천염섬유 재배, 보관 시 병충해 방지	발암성, 호르몬장애, 면역체계 손상, 간기능 장애, 중추신경장애	면, 마, 모 등의 천염 섬유제품
중금속	염/안료 및 무기화합물, 후처리제	피부염, 각막염, 결막염, 탈모증, 운동신경 마비, 중추신경장애	염색가공제품, 피혁가공제품
PVC 가소제	PVC 코팅제품의 강연도 조절 및 안정제	내분비계 장애원인, 간, 신장 등의 손상	PVC 코팅제품, 플라스틱 제품
유기주석 화합물	항균가공, 신발, 카펫의 악취 발생 방지제	간, 신장 손상, 피부자극 인체의 내분비계 교란	항균가공제품, 악취발생방지 제품
아조염료	색상이 선명하고 경제적인 아조기를 가진염료 (산성, 직접 염료등의 일부염료)	피부염, 발암성 물질생성	염색가공 제품
발암성염료	염색가공 시 산성, 직접, 염기성, 분산염료 중 발암성 염료 사용	발암성 물질생성	염색가공 제품
알러지성염료	염색 가공 시 분산염료 중 알러지성 염료 사용	피부자극에 의한 알러지 반응	염색가공제품(폴리에스터, 나일론, 아세테이트 등)
유기염소계 캐리어	염료 침투 촉진을 위하여 소수성 섬유에 사용한 염색조제	피부, 눈, 코, 목에 자극, 두통, 근육경련, 발암성 화합물	염색가공제품 (폴리에스터 등)
난연제	난연 가공제가 phosphate 화합물, bromo 화합물질로 용출	발암성, 피부자극	난연가공 제품

- 난연제는 phosphate 화합물이나 브롬계 화합물이 땀 등에 용출됨에 따라 발암성, 피부자극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브롬계 화합물의 경우 매우 심각한 인체 유해성 실험결과가 발표되었음
- 섬유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비하고자 유럽선진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에 섬유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어 1992년에 Oeko-Tex라는 섬유제품 환경 인증시스템이 탄생하게 됨
- 초기 Oeko-Tex에서 규제하기 시작한 항목은 pH, HCHO, PCP & TeCP, Aryl amines(24종), Allergenic dyestuffs(20종), Carcinogenic dyestuffs(6종), Heavy metal(10종), Pesticides(20여종), Organic carriers, Color fastness, PVC phthalates, VOC(emission of volatiles) 등이었고 그 이후 1996년에는 섬유제품에 특정 아조염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독일법규가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법적 효력을 배경으로 Oeko-Tex는 2000년 이후 급성장을 하게 됨

- 현재는 EU 내의 일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신 무역장벽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현재 Oeko-Tex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에는 섬유 난연제가 포함되어 있음
- Oeko-Tex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Oeko-Tex standard 100에 따르면 난연제에 대하여 각 섬유제품에 따라 아래의 <표 3-9>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3-9> Oeko-Tex Standard 100의 난연제 사용규제 기준

Product Class	유아용	피부에 직접 접촉	피부에 간접접촉	장식용
난연제 총량(mg/kg)	0.5	1.0	1.0	1.0

- 유아용일 경우 사용 총량이 0.5 mg/kg을 넘지 않도록 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1.0 mg/kg의 규제량을 정하고 있고, 한편 Oeko-Tex standard 100에서 규제하고 있는 난연제 종류를 아래의 <표 3-10>와 같이 나타냄

<표 3-10> Oeko-Tex Standard 100에서 규제하는 섬유용 난연제

난연제 종류	CAS-No.
Polybrominated biphenyles(PBB)	59536-65-1
Tri-(2,3-dibromopropyl)-phosphate(TRIS)	126-72-7
Tris-(aziridinyl-phosphin-oxide)(TEPA)	5455-55-1
Pentabromodiphenylether(penta BDE)	32534-81-9
Octabromodiphenylether(octa BDE)	32536-52-0

-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규제 난연제는 브롬계열의 난연제인데 합섬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에서 가장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인 브롬계 난연제는 전 세계적으로 섬유분야에서 뿐 아니라 모든 산업계에서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Oeko-Tex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섬유용 브롬계 난연제로서는 TBA-bis(2,3-dibromopropylether), TBA-bis(arylester), Hexabromocyclodecane (HBCD), Decabromodiphenyloxide(DBDPO), Ethylenebis(pentabromophenyl), tetrabromophthalic anhydride, Bis(tribromophenoxyethane) 등이 있음
- 브롬계 난연제의 산업에의 적용은 전기전자 분야에 56%, 건설부분에 31%, 직물등에 7%, 그리고 운송에 약 6%가 사용되고 있고, 이외에 산업용 섬유에서 환경규제대상인 항목을 살펴보면 의류용에서의 브롬계난연제뿐 아니라 건축용의 geotextile에서 사용되는 브롬계 난연제, 방탄복, 소방복 등에서 사용되는 브롬계 난연제 등이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

- 의류용을 포함하는 섬유산업의 환경규제 항목을 제품 응용별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3-11>과 같이 정리함

<표 3-11> 섬유산업의 환경규제 항목 및 근거

응용별 분류	세부산업	규제근거	규제 항목
수송용	자동차 내장재 및 타이어코드	ELV, 실내공기질법	세라믹 파이버, VOC, Pb, Cd, Hg, Cr(VI)
공업용	기름흡수제		
가정용	기저귀, 생리대, 각종필터류, 카펫	섬유에코라벨	HCHO, VOC, 중금속, Phthalates
의류용	기능성 의류, 입는 컴퓨터	섬유에코라벨, RoHS	유해아민, 알레르기염료, 중금속, TBTO, VOC, Pb, Cd, Hg, Cr(VI), 브롬계난연재(PBB&PBDE)
건축용	geotextile	실내공기질법	HCHO, VOC, 브롬계난연재(PBB&PBDE)
농업용	스펀본드 부직포	스톡홀름 협약	중금속을 비롯한 각종 POPs
부자재용	석면, 유리섬유	RoHS	석면, 유리섬유
포장용	부직포(티백)	PPW, 환경부	Pb, Cd, Hg, Cr(VI)
토목용	건축용과 유사		
스포츠용	의류와 비슷	섬유에코라벨	유해아민, 중금속, VOC, Phthalates
해양용	선박부자재	섬유에코라벨	TBT
보호용	방탄복, 소방복	섬유에코라벨	브롬계난연재, Phthalates

국제기구의 브롬계 난연제 규제동향

● EU

- 1980년대 후반 EU 국가 중에서 독일이 가장 먼저 PBBs 브롬계 난연제의 유럽내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여 1989년 독일 내 모든 화학 산업체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PBBs 브롬계 난연제의 생산을 금지하였고 이후 1990년대에 들어 EU에서도 이들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2000년 5월 모든 EU 국가에서 PBBs의 생산을 금지함
- 또한 EU는 2000년 6월에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과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RoHS)을 제안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률과 생산자에게 재활용에 관련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전자제품에 사용금지 물질의 목록을 제시하여 브롬계 난연제의 생산금지를 제안
- 초기에는 모든 할로젠화 난연제를 규제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PBBs와 PBDEs로 대상을 축소하였고, EU의 PBDEs에 대한 유해성 평가에서 확인된 결과 PBDEs는 유아의 새 골격을 성장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내분비

계 파괴물질로서는 신경적/발육적으로 재생 가능한 독성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이러한 PBDEs중에 penta-BDE와 octa-BDE는 그 유해성이 확연히 드러나 2004년 8월 15일부터 EU 내에서 모든 생산이 금지되었지만 deca-BDE 같은 경우 2004년 5월 유해성 평가에서 생물체의 낮은 흡수율과 유해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 물질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

-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전자제품 재활용업체 근무자들과 일반 가정의 산모의 모유에서 deca-BDE가 검출되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deca-BDE가 자외선이나 미생물에 의한 분해로 penta-BDE와 octa-BDE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deca-BDE도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추세임
- EU의 RoHS에서 PBBs와 penta_BDE 및 octa-BDE를 EU내에서 사용을 지침이 통과되어 EU 내에서의 생산은 물론, UE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내에서 제품 무게비의 0.1%이상 함유되는 것을 규제함
- 또한, EU는 이미 난연제가 사용된 제품의 안전한 폐기처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난연제 소각시 다이옥신 및 퓨란이 발생하고, 난연제 매립 시에는 난연 성분이 매립지에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임
- WEEE 결정사항으로는 첫째, 난연제에 PBB, penta-PBDE, octa-PBDE는 사용을 금지하고(2007년 7월) 둘째, 재활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대상을 정하고 상세한 사항은 EU 각국에서 추진하며, 연간 1인당 4 kg(약 25%)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난연성 플라스틱은 분리수거하며 브롬계 난연제는 회수하고 컴퓨터, 복사기, AV 기기 등에서는 75% 이상의 재활용을 목표로 하며 재활용 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3-12>에서는 유럽의 난연제별 제한 법규 현황을 나타냄

〈표 3-12〉 유럽의 난연제별 제한 법규 현황

브롬계 난연제물질	제한항목	법적규제	적용기한	EU 과학적 유해성 평가 현황
deca-BDE	재활용과 회수에서 우선하여 전기 및 전자제품에서 브롬계 난연제 함유 부품 분리처리	WEEE 지침	2006년 12월	유럽위원회의 유해성 평가는 2005년 10월에 완료되었고 deca-BDE는 RoHS 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새로 출시되는 전기 및 전자제품에서 사용 금지물질의 예외	RoHS 지침	지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유해성 평가는 2004년 5월 완료
	환경과 수질 기준에서 배출, 방류 및 손실 관리의 확립	수자원정책 분야에서 우선물질 목록에 수록된 EU 지침		

브롬계 난연제물질	제한항목	법적규제	적용기한	EU 과학적 유해성 평가 현황
octa-BDE	재활용과 회수에서 우선하여 전기 및 전자제품에서 브롬계 난연제 분리	WEEE 지침	2006년 12월	유해성 확정
	새로 출시되는 전기 및 전자제품에서 사용금지	RoHS 지침	2006년 7월	유해성 확정
	EU에서 생산 및 시장출시에 대한 모든 사용 금지	24번째 수정된 시장출시 및 사용금지 지침 (76/769/EEC)	2004년 8월 15일	유해성 확정
	환경과 수질 기준에서 배출, 방류 및 손실 관리의 확립	수자원정책 분야에서 우선물질 목록에 수록된 EU 지침		유해성 확정
penta-BDE	재활용과 회수에 우선하여 전기 및 전자제품에서 브롬계 난연제 분리	WEEE 지침	2006년 12월	유해성 확정
	새로 출시되는 전기 및 전자제품에서 사용금지	RoHS 지침	2006년 7월	유해성 확정
	환경으로 배출 중단	수자원정책 분야에서 우선물질 목록에 수록된 EU 지침	2020년	유해성 확정
	EU에서 생산 및 시장출시에 대한 모든 사용 금지	24번째 수정된 시장출시 및 사용금지 지침 (76/769/EEC)	2004년 8월 15일	유해성 확정
PBBs(2000년 이후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음)	EU에서 생산 및 시장에 출시된 직물에 적용금지	24번째 수정된 시장출시 및 사용금지 지침 (76/769/EEC)	1984년 11월	유해성 확정
	EU에서 생산 및 시장에 대한 모든 사용을 금지	RoHS 지침	2006년 7월	유해성 확정
TBBPA	재활용 회수에 우선하여 전기 및 전자제품에서 브롬계 난연제 분리	WEEE 지침	2006년 12월	유해성 확정

제4절 일본의 생활용품안전법제

1. 일본의 생활용품안전법제 개관

☐ 일본에서는 소비자 등이 사용하는 제품 중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그 제품을 지정하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이 기술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특별히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제품은 국가에 등록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음

- 제조·수입 사업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가 정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 사업자도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일본은 제품안전에 관하여 경제산업성이 관할하는 이른바 ‘제품안전 4법’이 존재하는데, 이는 생활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소비생활용품안전법’(1973년 6월 6일 법률 제 31호)(이하, ‘제품안전법’이라 함), 전기용품을 규율하는 ‘전기용품안전법’(1961년 11월 16일 법률 제234호)(이하, ‘전안법’이라 함), 석유관련용품을 규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67년 12월 28일 법률 제149호)(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가스 관련용품을 규율하는 ‘가스사업법’(1954년 3월 31일 법률 제51호)을 말함

- 한편 일상적인 가정용품의 표시를 규제하는 ‘가정용품품질표시법’(1962년 5월 4일 법률 제 104호)(이하, ‘가정용품표시법’이라 함)은 제품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품질표시의 목적은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상 제품안전의 표시에 관해서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음
- 또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정용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1973년 10월 12일 법률 제12호)(이하, ‘유해물질규제법’이라 함)은 소비자가 가정용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접촉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므로 역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음
- 이하에서는 이들 6개 법률의 실제 운영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일본 제품안전법제의 시사점에 대해 서술하기로 함

2. 일본 주요 제품안전 관련법

□ 경제산업성은 제품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해 제조·수입 단계에서는 법률에 의한 사전규제를, 판매 단계에서는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정책을 펴고 있으며,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해서는 사용 단계에서의 중대제품사고보고·공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제품안전법, 전안법, 액화석유가스법, 가스사업법이 라는 이른바 ‘제품안전 4법’이 있음

□ 먼저 제품안전을 둘러싼 제도적 발전사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의 <표3-13과> 같음

〈표 3-13〉 일본의 제품안전을 둘러싼 제도적 발전사

연도	내용
1961년	전기용품단속법 제정
1968년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1970년	가스사업법 제정
1973년	소비생활용품 제품안전법 제정
1994년	제조물책임법 제정
2001년	전기용품안전법 시행(구 전기용품단속법 개정)
2005년	구 파나소닉 전기산업주식회사 온풍난방기에 관련된 긴급명령 발동
2006년	전안법의 경과조치 기간 종료에 수반한 PSE소동의 발생
2006년	팔로마 공업 주식회사 가스 순간온수기에 관련된 긴급명령 발동
2007년	중대사고정보보고 · 공표제도 창설
2009년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 · 표시제도 창설
2009년	소비자청 설치, 소비자안전법 시행
2012년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설치
2013년	TDK 주식회사 가습기에 관련된 위해방지명령 발동

- 이하에서는 이른바 ‘제품안전 4법’과 추가로 가정용품에 대한 규제로서 소비자청이 관할하고 있는 ‘가정용품품질표시법’, 그리고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유해물질규제법’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함

3.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

가. 목적

- 제품안전법의 목적은 소비생활용품 제품에 따른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특정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하는 동시에 특정보수제품의 적절한 보수를 촉진하고, 아울러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로써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제품안전법 제1조)

나. 연혁

-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접어든 1970년대에 소득수준의 향상, 기술혁신의 진전 등에 따라 소비생활이 풍부해진 한편, 소비생활용품의 복잡화, 고성능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실제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와 민원이 증가하였다고 함⁶⁰⁾

60) 笹井かおり・加藤史憲(2006), 製品安全対策の強化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の改正, 立法と調査 (261),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화된 소비생활용품들을 포괄적으로 범주화하고 그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이 1974년에 시행되었음
- 시행 후 1999년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제품안전법의 규제는 검정, 등록, 승인 등 인증제도에 따른 제품 유통 전의 규제에 주력하였음
- 이후에 사고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사업자 측에서도 자주적인 안전 대책을 진전시켜가는 중에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방침⁶¹⁾을 배경으로 1999년에 법 개정이 이뤄졌음
- 법 개정의 요지는 제품안전규제의 중점이 제품 유통 전에서 유통 후로 이행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개정법에서는 정부에 의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의 자기책임원칙 하에 일부 제품에 대해 민간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고,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보고징수, 출입검사 대상제품의 확대, 벌칙 강화 등이 도입되었음
- 2006년에는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설비나 기구에 따른 사고 등이 발생해도 공급자 측의 대응이 늦어지는 현실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경제산업성은 설비나 기구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고보고 의무와 위험방지조치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품안전법의 개정을 실시했고, 2007년 5월에 시행되었음
- 2007년 2월, 소형 가스온수기 관련 사망 사고⁶²⁾ 등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제품의 노후화에 따른 것임이 밝혀지면서 제품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2007년 임시국회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보수하기 어려운 노후화에 의한 중대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기사용제품안전점검제도’가 마련되어 2009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음
- 이후에는 규제대상품목이 추가·변경되는 것 외에 큰 개정은 없었으며, 지금의 제도 실시체계에 이르고 있음

pp.9-14.

笹井かおり・加藤史憲(2006), 製品安全対策の強化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の改正, 立法と調査 (261), p.9.

61) 예컨대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1999년 3월 각의결정)을 들 수 있음

62) 도쿄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린나이 주식회사의 개방식 소형 가스온수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독된 사건

나. 타법과의 관계

- ☐ 제품안전법은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모두 그 대상이 되는 법률적 구성 방식⁶³⁾을 취하고 있지만, 예컨대 식품·식품첨가물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도로운송차량 등은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의약품·의약외품 등은 약사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므로 제품안전법의 대상에서 제외됨
- ☐ 또한 소비생활용 제품이지만 전안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들 법률에 의한 규제가 우선됨
- 즉, 제품안전 4법 중 제품안전법은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법은 제품안전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다. 제품안전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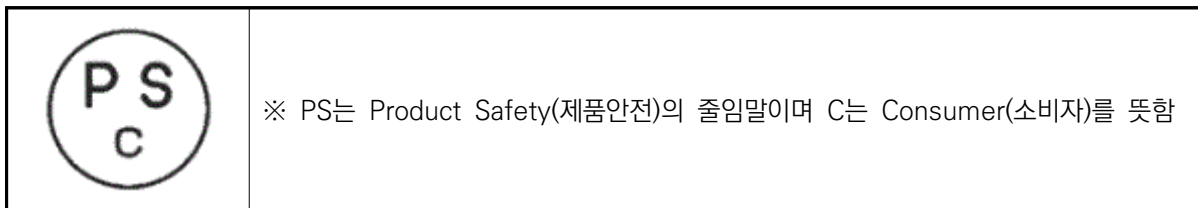
- ☐ 제품안전법의 주요 내용으로서 PSC마크제도와 제품사고정보 보고·공표제도,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표시제도를 들 수 있음

☐ PSC마크제도

- ☐ PSC마크제도는 다시 제품 유통 전의 조치사항과 제품 유통 후의 조치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제품 유통 전)** 소비생활용 제품 중 구조, 재질,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서 특히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특정제품”^{*}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제품안전법 제2조 제2항)
 - * 특정제품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승차용 헬멧, 등산용 로프, 석유 온수기, 석유 후로가마(목욕물을 데우는 아궁이나 보일러를 말함), 석유난로
 - 특정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행하는 자는 제품마다 성령으로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인 것이 아니면,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제품안전법 제4조 제1항)
 - 특정제품의 제조, 수입을 행하는 자는 사업신고를 하고 자체 검사에 따라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그것을 보존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면 원모양의 PSC마크를 붙일 수 있음(제품안전법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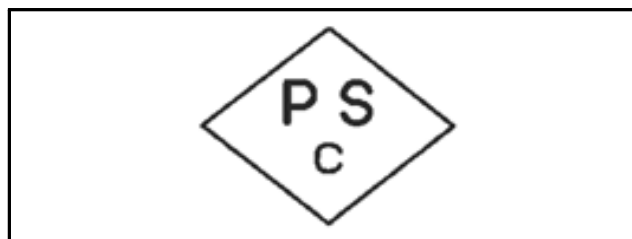
63) 제품안전법 제2조 제1항이 “이 법률에서 「소비생활용제품」은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별표에 열거한 것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대상은 소비생활용 제품 전반이지만, 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 3-9〉 PSC마크제도 상의 특정제품 표시



- 특정제품 중 그 제조, 수입을 행하는 자 중에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품질의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특별특정제품'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자체 검사에 따른 안전확보와 함께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음(제품안전법 제12조 제1항)
* 특별특정제품 : 유아용 침대, 휴대용 레이저 응용 장치, 욕조용 온수순환기, 라이터
- 특별특정제품의 경우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고,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존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면 마름모형의 PSC마크를 붙일 수 있음

〈그림 3-10〉 PSC마크제도 상의 특별특정제품 표시



- **(제품 유통 후)** 제품 유통 후의 조치로서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위해방지명령, 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주무대신에 대한 조사신청, 벌칙을 들 수 있음
- (개선명령) 주무대신(경제산업대신)은 신고사업자가 기준적합의무 등(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손해배상조치(법 제6조 제4호)가 법 제11조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신고사업자에 대해 특정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검사방법, 기타 업무 방법의 개선 또는 손해배상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음(법 제14조)
- (표시금지명령) 주무대신은 신고사업자가 기준 부적합의 특정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기록의 작성·보존을 하지 않거나, 또는 특별특정제품의 적합성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표시를 금지할 수 있음(법 제15조)

- (위해방지명령) 주무대신은 특정제품에 관하여 무표시 제품, 기준 부적합품 제조, 수입, 판매에 따른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위해의 발생 및 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음(법 제32조)
- 특정제품 이외의 소비생활용품 제품의 결함으로 중대한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기타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사업자의 책무)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소비생활용품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행하는 자에게 회수를 도모하는 것,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음(법 제39조)
- (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주무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생활용품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행하는 자 또는 특정정보제품 거래사업자 및 등록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상황을 보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하도록 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공장, 창고 또는 사업소에 들어가는 소비생활용품 제품, 업무상황,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법 제41조 제1항~제8항)하게 할 수 있음
- (주무대신에 대한 조사신청) 누구든지 소비생활용품 제품에 따른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대신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법 제52조 제1항)
 - 위 요구가 있었을 경우, 주무대신은 필요한 조사신청 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때에는 본법에 근거한 조치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법 제52조 제2항)
- (벌칙) 특정제품의 판매제한, 표시제한, 표시금지, 등록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체제정비명령, 위해방지명령의 위반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

■ 제품사고정보 보고 · 공표제도

- (제품사고의 정의) 제품사고란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고(법 제2조 제5항 제1호)나, 소비생활용품 제품이 멸실하거나 손상된 사고로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2조 제5항 제2호)을 말함
- (중대제품사고) 제품사고 중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가 중대한 것으로서, 해당 위해의 내용 또는 사고의 양태에 관하여 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제6항)

- (보고 및 공개)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행하는 자는 해당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중대제품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제품의 명칭 및 형식, 사고내용과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량을 주무대신에게 보고해야 함(법 제35조 제1항)
- (체제정비명령) 주무대신은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행하는 자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해당 소비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제조 또는 수입을 행하는 자에게 해당 소비생활용품에 대해서 생긴 중대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의 정비명령을 명할 수 있음(법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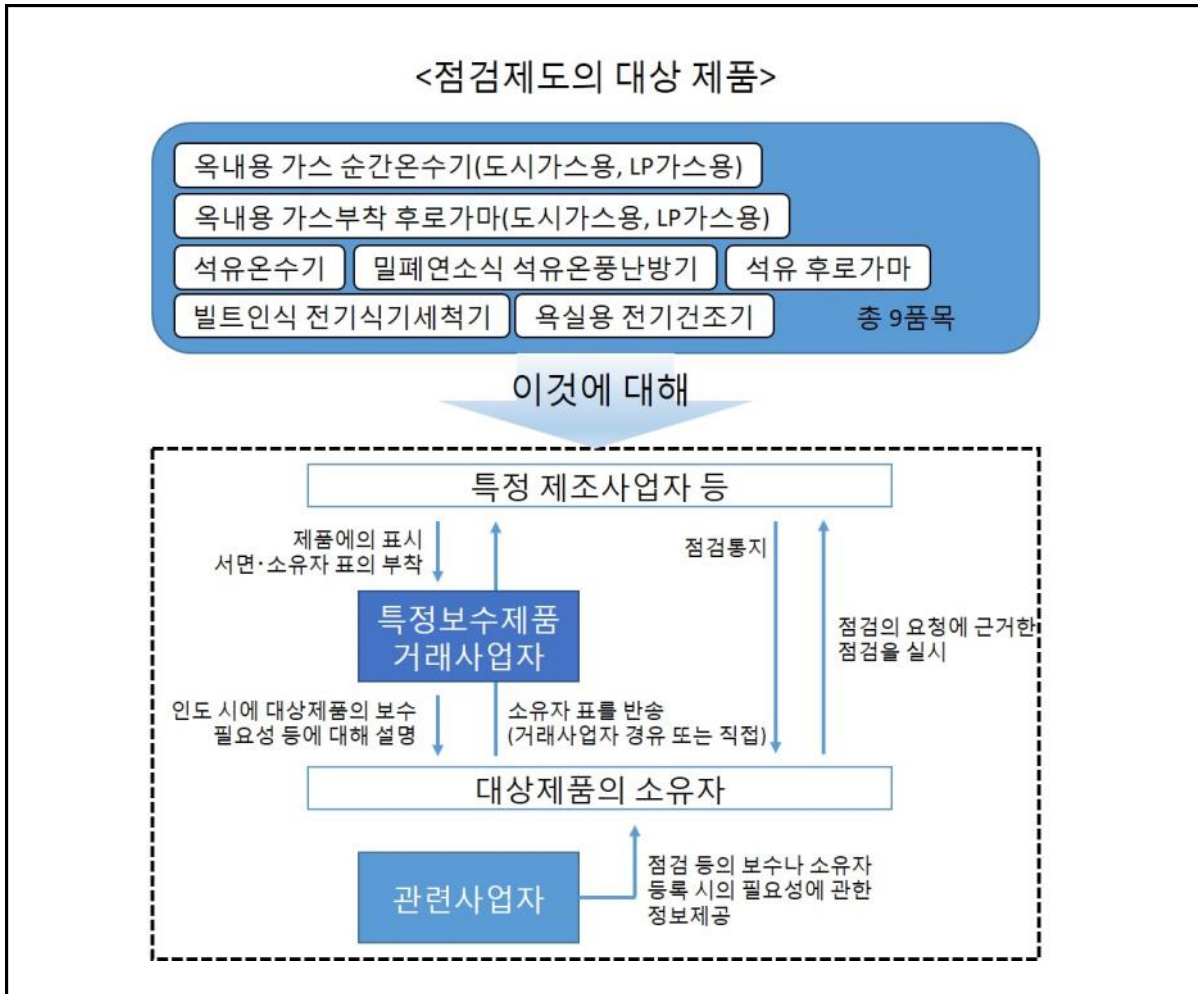
□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표시제도

- (개요) 소비생활용품 중 장기간 사용에 따른 열화(노화)에 의해 안전상 지장이 생기고,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특히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 사용상황을 감안하여 그 적절한 보수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특정보수제품’으로서 정령으로 지정(법 제2조 제4항)하고, 사업자가 보수를 위한 책무를 부담하고, 해당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을 위한 주의환기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표시제도’임
 - * 특정보수제품 : 옥내용 가스 순간온수기(도시가스, LP가스), 옥내식 가스부착 후로가마(도시가스, LP가스), 석유온수기, 밀폐연소식 석유온풍난방기, 빌트인식 전기식기세척기, 석유 후로가마, 욕실용 전기건조기
- (사업자의 책무) 특정보수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자는 특정보수제품의 점검이나 기타 보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법 제32조의3, 4 및 9~12), 특정보수제품의 점검이나 기타 보수체제정비(법 제32조의 15, 18 및 19)를 행하여야 함
 - 또한 특정보수제품 판매사업자는 인도시의 설명(법 제32조의 5) 및 소유자 정보제공에 대한 협력(법 제32조의 8)을 실시함
 -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거나, 수리 또는 설치 공사 등 관련 사업을 행하는 관련사업자는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에게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32조의 7)
- (소유자의 책무)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 등(임대인 포함)은 특정보수제품의 보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점검기간에 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보수에 노력하여야 함(법 제32조의 14 제1항 및 제2항)
- (국가의 역할) 주무대신은 특정보수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것, 기타 사정에 따라 특정보수제품의 점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때는 해당 특정보수제품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기술적 능력을 가진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법 제32조의 17)

- 지금까지 설명한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제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 3-11〉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제도 도식



* 国土交通省総合政策局不動産課(2008), 改正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のポイント解説 - 「長期使用製品安全点検制度」と不動産業者の義務・責務, 全国宅地建物取引業保証協会苦情解決業務委員会, 紙上研修 (82), pp.13.에서 참조

- (장기사용제품 안전표시제도) 점검을 실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되어 소비자 등에게 장기사용시의 주의환기를 촉구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임

* 대상품목 : 선풍기, 에어컨, 환기팬, 세탁기, 텔레비전

4. 전기용품안전법

가. 목적

- 전안법의 목적은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의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에 따라 전기용품에 따른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임(전안법 제1조)

나. 연혁

- 전안법의 모태는 전기용품단속법으로서 그 연혁은 전기사업법이 제정된 몇 년 후인 19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 1916년에 전기용품 제조 산업의 진흥 장려와 제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체신성 전기시험소(1891년 설립)에서 전기용품의 의뢰 시험을 시작하게 된 근거규정인 전기용품시험규칙(체신성령 제50호)이 만들어졌음
- 1935년에는 전기용품단속규칙(체신성령 제30호)이 만들어지면서 법규에 따른 전기용품의 단속을 시작하였는데, 일반주택에서 사용되는 11종류의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여 제조 면허 및 형식 승인 등을 하고, 수입품에 형식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음
- 1949년에는 전기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전기용품단속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제정하였고, 1961년에야 비로소 조악한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전기용품의 판매와 규제에 대한 벌칙도 강화시킨 전기용품단속법(법률 제234호)이 제정되었음
- 1968년에는 전기용품단속법을 개정하여 ‘갑종 전기용품’과 ‘을종 전기용품’으로 분류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을 갑종(정부인가제)으로, 기타의 것을 을종(자체 검사)으로 하여 규제를 2단계로 하였음
- 위와 같은 전기용품단속법이 ‘통상산업성 관련 기준·인증제도 등의 정리 및 합리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이 이뤄져 2001년부터 전기용품안전법으로 개정, 시행되었음
- 내용으로는 제조·수입사업자의 절차를 완화한 반면, 위반한 경우의 벌칙이 강화되고, 판매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었음
- 개정이 이뤄진 요인의 하나로서, 전기용품단속법에 대한 수입업자와 외국기업의 비판을 들 수 있음

- 전기용품단속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특히 해외에서는 지정검사기관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비관세장벽으로 파악되고 있었던 것임
- 또한 제품안전법, 액화석유가스법, 가스사업법과 함께 제품안전 4법으로서의 통일성을 갖게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함

 제정 전기용품안전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이하와 같음

-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기용품단속법에 따라 전기용품 제조 사업을 하려면 품목별 사업자로 등록을 받아야 했으나, 전안법에 따르면 사업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단, 품목별로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음
- (갑종 전기용품 형식승인 폐지) 종전에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용품은 갑종 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지정검사기관을 통해 형식승인을 받은 후 갑종 마크와 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했으나, 전안법으로 개정 후 이들이 '특정전기용품'으로 개칭되었음
 - 또한 안전성이 향상된 일부 갑종 품목에 대해 전안법 상에서는 특정 이외의 전기용품이나, 대상 외 제품 등으로 재분류되었음
- (을종 전기용품 기호 폐지와 부활) 종전에 갑종 이외의 전기용품은 을종 전기용품으로서 을종 마크를 표시하여야 했으나, 전기용품단속법 시행 중인 1995년에 이 마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하였음
 - 그러나 마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것이 을종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안법에서는 이를 특정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개칭하고 새로운 PSE 마크를 표시하도록 바뀌었음
- (제조·수입업자의 의무 확대) 종전에는 갑종에 대해서만 생산제품의 검사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었으나, 전안법으로 개정되면서 신고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전기용품에 기록·보존의무를 확대하였음
- (판매사업자의 추가 의무) 전안법에 근거하여 판매사업자에게 전기용품에 PSE마크 등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부과되었음
- (벌칙의 강화) 위반 내용에 따라 양형이 다르나, 전기용품단속법상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전안법상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음
 - 아울러 법인인 경우에는 1억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음

- 또한 종전에는 전기용품단속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전안법상으로는 PSE 표시 금지에 따른 사실상의 판매중지명령과 소비자의 안전을 감안하여 위반제품회수명령 등으로 변경되었음

- 2007년 이전까지 전안법의 주요 대상은 상용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리튬 이온 전지에 의한 사고 등을 감안하여 2007년 법을 개정하여 축전지도 규제의 대상으로 하였음
- 2011년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진보나 신제품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성능규정화'를 실시, 2012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음
 - 종전에는 전안법에 근거한 안전규제의 체계가 국가가 품목별로 치수, 형상 등의 상세를 정하는 이른바 '사양규정'이었으나, 이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날로 진화하는 기술·신제품이나, 국제적인 규제동향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를 '성능규정'으로 바꾼 것임
 - 본 개정에 따라 사업자는 소정의 안전성능을 충족시키면 족하기 때문에 설계의 자유도가 커져 신속하고 적합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음⁶⁴⁾

다. 관련 규정 및 개념

- (관련 규정) 전안법이 규율하는 전기용품에 관한 규정으로서 전기용품안전법(1961년 법률 제234호),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1962년 정령 제324호), 전기용품안전법 시행규칙(1962년 통상산업성령 제84호),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1962년 통상산업성령 제85호),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해석(2013년 상국 제3호)을 들 수 있음
- (전기용품의 정의) 전안법 제2조 제1항은 전기용품을 ① 일반용 전기공작물(전기사업법(1964년 법률 제170호)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용 전기공작물을 말함)의 부분이 되거나, 또는 이것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재료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② 휴대발전기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③ 축전지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정령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곧 전기용품이며 품목은 총 457품목으로 특정전기용품 116품목,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341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64) 経済産業省, 電気用品の技術基準省令の改正(性能規定化)について

라. 제품 유통 전의 조치

- ☐ (품목 지정) 전기용품을 구조 또는 사용방법 기타 사용상황을 감안하여 특히 위험 또는 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용품인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나누어 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음
- ☐ (사업 신고)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전기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조)
- ☐ (기준적합의무 및 특정전기용품의 적합성검사) 신고사업자는 신고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전기용품에 대해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함(법 제8조)
 - 신고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에 따른 전기용품이 특정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판매 시까지 등록검사기관의 기술기준 적합성검사를 받고 적합성 인정서를 교부받아 이를 저장해야 함
- ☐ (표시) 신고사업자는 위 의무를 이행하면 해당 전기용품에 성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표시를 붙일 수 있음(법 제10조)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누구도 전기용품에 이러한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해서는 안 됨(법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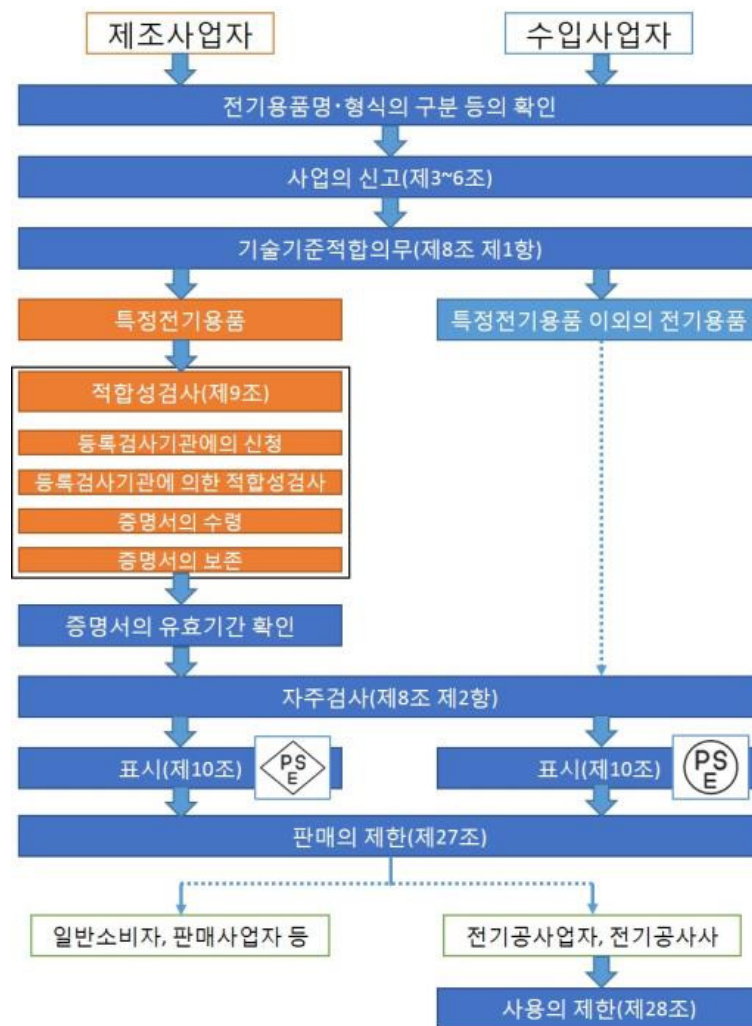
〈그림 3-12〉 전기용품의 표시

특정전기용품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이 마크 이외에 인증·승인검사기관의 마크, 제조사업자의 명칭, 정격전압, 정격소비전력 등이 표시됨 ** 전기온수기, 전열식 전동 장난감, 전기펌프, 전기마사지기, 자판기, 직류전원공급장치 등 총 116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 *** PS는 Product Safety를 말하며 E는 Electrical Appliances & Materials의 약자임	* 이 마크 이외에 제조사업자의 명칭, 정격전압, 정격소비전력 등이 표시 ** 전기난로, 전기냉장고,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텔레비전수신기, 음향기기, 리튬이온충전지 등 총 341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

□ (판매 제한)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사업을 하는 자는 위 마크가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면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됨(법 제27조)

□ 이러한 제품 유통 전의 조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 3-13〉 전기용품안전법의 업무 절차 흐름도(제품 유통 전)



* 経済産業省 製品安全課(2016), 電気用品安全法 法令業務実施ガイド(第3版), p.5.에서 인용

마. 제품 유통 후의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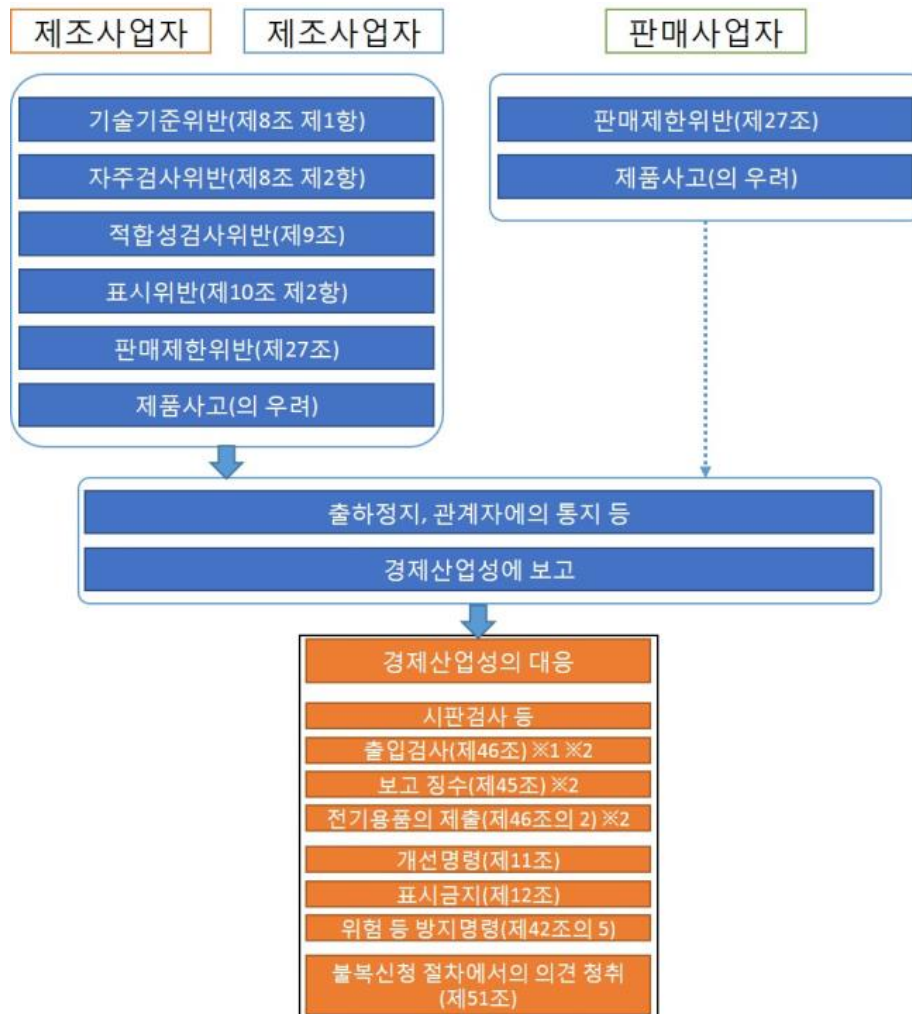
□ (보고 징수) 경제산업대신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법 제45조)

- (현장 검사) 경제산업대신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에게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사업을 실시하는 사무실, 공장, 사업장, 점포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전기용품,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음(법 제46조)

 - 단, 이 중 판매 사업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무실, 사업장, 점포 또는 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가 함(시행령 제5조)
- (개선명령) 경제산업대신은 신고사업자가 기준적합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사업자에게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또는 검사방법 기타 업무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법 제11조)
- (표시금지) 경제산업대신은 기준 부적합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위험 또는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검사기록의 작성·보존의무 및 특정전기용품 제조·수입에 관한 인정·승인 검사기관의 기술기준 적합성검사의 수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신고사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표시를 금지할 수 있음(법 제12조)
- (위험 등 방지명령) 경제산업대신은 신고사업자 등에 의한 미표시 제품 판매, 기준부적합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여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험 또는 장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회수를 도모하고, 기타 해당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법 제42조의 5)
- 이러한 제품 유통 후의 조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시판검사) 경제산업성은 제품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제품사고의 미연·재발방지를 위해 시판되고 있는 전기용품을 정기적으로 사들여 전기용품안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그 안전성을 확인,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할 데이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시판검사를 행하고 있음
 - 이 시판검사로 확인된 부적합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하는 경제산업국이 신고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을 위한 개선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림 3-14〉 전기용품안전법의 업무 절차 흐름도(제품 유통 후)



* 経済産業省 製品安全課(2016), 電気用品安全法 法令業務実施ガイド(第3版), p.7.에서 인용

※ 1 경제산업대신이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에 지시할 수 있는 사무

※ 2 경제산업대신이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장에 위임할 수 있는 판매사업자에 대한 사무

- ▣ (중대제품사고 보고·공표제도) 전기용품의 신고사업자는 전기용품이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에 따른 소비생활용 제품일 경우, 해당 제품과 관련된 사망사고, 중상사고, 후유장애사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나 화재 등의 중대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소비자청)에 대해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상의 '소비자 제품'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별표에 열거하는 것 제외)'으로, 전기용품안전법 상의 전기용품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상술한 바와 같이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은 다른 제품안전 3법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대제품사고 발생 시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상의 중대제품사고 보고·공표제도가 준용되어 적용되는 것임

** 중대제품사고 보고·공표제도의 상세한 사항은 위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부분을 참고

- ☐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표시제도)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열화에 따른 안전상 지장이 생기고, 특히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많은 품목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장기사용 제품 안전점검·표시제도도 위 중대제품사고 보고·공표제도와 마찬가지로 전기용품이 본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면 이에 따라야 함

*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표시제도의 상세한 사항은 위 ‘소비생활용품안전법’ 부분을 참고

5.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가. 목적

- ☐ 액화석유가스법은 일반소비자 등에 대한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거래를 적정화하며, 그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나. 주요 내용

- ☐ (적용범위) 액화석유가스법은 일반소비자등에 대한 LP가스의 판매, LP가스 기구 등의 제조·판매 등에 대해 적용됨
- ☐ (국가에 의한 안전규제 - PSLPG 마크 제도) 액화석유가스(LP가스)용 기구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취지의 PSLPG마크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고, 마크가 없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때 국가는 제조사업자 등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제대상품목은 자체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 및 구조·사용조건·사용상황을 감안하여 특히 재해 발생의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특정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이 있음

〈그림 3-15〉 액화석유가스법상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구분

특정액화석유가스기구 등	특정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이 아닌 액화석유가스기구 등
	
* 대상품목은 7품목으로 카트리지 가스난로, 액화석유가스용 순간온수기(반 밀폐식), 액화석유가스용 버너 부착 후로가마(반 밀폐식), 후로가마, 액화석유가스용 욕조 버너, 반 밀폐식 액화석유가스난로, 액화석유가스용 가스 밸브	* 대상품목은 9품목으로 조정기, 일반 가스난로, 액화석유가스용 순간온수기(개방식, 밀폐식, 야외식), 액화석유가스용 이음쇠 부착 고압 호스, 액화석유가스용 버너 부착 후로가마(밀폐식, 야외식), 액화석유가스용 난로(개방식, 밀폐식, 야외식), 액화석유가스용 가스 누설 경보기, 액화석유가스용 이음쇠 부착 저압 호스, 액화석유가스용 대 지진 자동 가스 차단기

- 액화석유가스법은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에 대한 규제에만 관련성이 있고, 주로 액화석유가스 자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므로 PSLPG 마크 제도만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함

6. 가스사업법

가. 목적

- 가스사업법은 가스사업의 운영을 조정하여 가스 사용자 이익의 보호 및 가스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스 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 가스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울러 공해의 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나. 주요 내용

- (국가에 의한 안전규제 - PSTG 마크 제도) 도시가스용 기구 중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 취지의 PSTG 마크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고, 마크가 없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때 국가는 제조사업자 등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제대상품목은 자체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가스용품과, 구조·사용조건·사용상황을 감안하여 특히 재해발생의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검사가 의무화된 특정가스용품이 있음

〈그림 3-16〉 가스사업법상 가스용품 등의 구분

특정가스용품	특정가스용품이 아닌 가스용품
	
* 대상품목은 4품목으로 반 밀폐 연소식 가스 순간온수기, 반 밀폐 연소식 가스난로, 반 밀폐 연소식 가스 버너 부착 후로가마, 가스 후로버너	* 대상품목은 4품목으로 개방 연소식 또는 밀폐 연소식 또는 야외식 가스 순간온수기, 개방 연소식 또는 밀폐 연소식 또는 야외식 가스난로, 밀폐 연소식 또는 야외식 가스 버너 부착 후로가마, 가스난로

- ❑ 가스사업법은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가스용품에 대한 규제에만 관련성이 있고, 주로 가스 자체나 가스사업에 대한 규제를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므로 PSTG 마크 제도만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함

7. 가정용품품질표시법

가. 목적

- ❑ 가정용품품질표시법(이하 ‘가표법’)은 일반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구매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를 적정하게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62년에 제정되었음
 - 이 당시 부적절한 품질표시 제품이 횡행하고, 제품의 품질에 관한 소비자 지식이 부족한 것을 배경으로 가표법이 제정된 것이었음
- ❑ 그 이후 품목 추가에 관한 수차례의 재검토를 거쳐왔고, 특히 1997년에는 소비생활에 관련된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한 운용의 대폭의 재검토를 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제품의 다양화, 고도화, 복잡화나 경제의 국제화의 진전, 더욱이는 인터넷 통신판매로 대표되는 새로운 판매형태의 대두에 추가로, 소비자의 상품지식 및 정보에의 접근의 향상 등의 변화를 감안한 재검토가 꾸준히 이뤄져 왔음

나. 대상 품목

□ 가표법 제2조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일반소비자가 통상 생활에 이용하는 것으로 섬유제품, 합성수지가공품, 전기기계기구, 잡화공산품이 여기에 해당되며 정령으로 지정하고 있음

● 이러한 대상 품목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14〉 가정용품품질표시법 상의 대상 품목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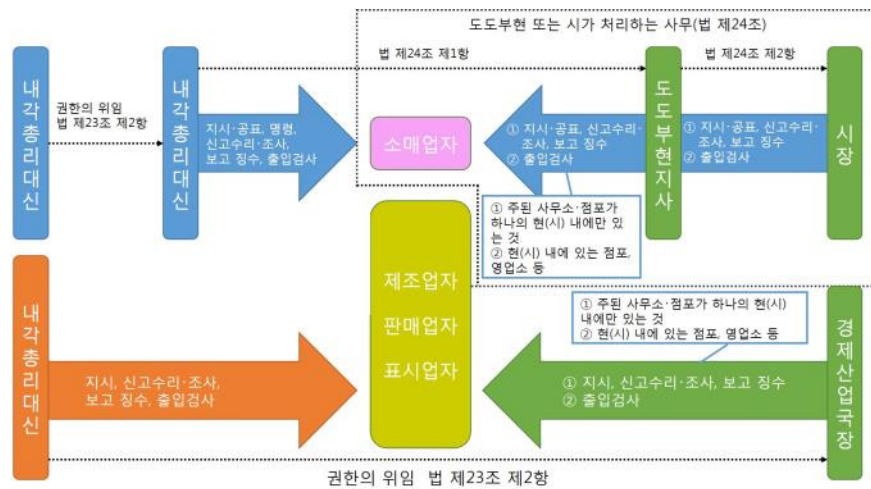
구분 (총 105품목)	품목
섬유제품 (38품목)	실, 직물·니트 직물·레이스 직물, 코트, 스웨터, 셔츠, 바지, 수영복, 드레스 및 홈드레스, 블라우스, 스커트, 사무 의류 및 작업복, 상의, 어린이용 바지 및 유아복, 속옷, 잠옷, 우직과 기모노, 양말, 장갑, 벨트, 버선, 모자, 손수건, 머플러 및 스카프·솔, 보자기, 앞치마 및 요리복, 넥타이, 우직띠 및 오비지메, 깔개, 담요, 무릎덮개, 외투, 이불커버, 침대 시트, 이불, 커튼, 테이블 덮개, 수건, 침대보, 담요 커버 및 베개 커버
합성수지가공품 (12품목)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폴리프로필렌 필름으로 만들어진 자루 식사를 위한 식탁용 또는 주방용품 : 부엌 등 용기 등 식사를 위한 식탁용 또는 주방용품 : 접시 등 식사를 위한 식탁용 또는 주방용품 : 도마 식사를 위한 식탁용 또는 주방용품 : 아이스용기·기구 식사를 위한 식탁용 또는 주방용품 : 식사용품 등 쟁반, 물병, 바구니, 통·물통·세면대 및 욕실용 그릇, 욕조, 이동식 변기와 화장실 용품
전기기계기구 (17품목)	에어컨, 텔레비전 수신기, 전기 패널 히터, 전기담요, 밥솥, 전자레인지, 전기 커피기, 전기 주전자, 전기 핫플레이트, 전기 로스터, 전기냉장고, 환풍기, 전기세탁기, 진공청소기, 전기면도기, 전기믹서 및 전기 과즙기, 테이블 램프용 형광등 기구
잡화공산품 (38품목)	휴지 및 화장지, 창호지, 의류용·부엌용·가정용 표백제, 도료, 선글라스, 정수기, 장바구니, 식사를 위한 식탁용 또는 부엌용 알루미늄 호일, 합성 고무기구, 합성 고무기구 : 접시 등, 합성 고무기구 : 도마, 합성 고무기구 : 아이스 용기, 합성 고무기구 : 식사 용품 등, 강화유리기구, 방형산 유리 또는 유리 세라믹 기구, 옷칠 또는 캐슈수지 도료 등을 바른 식사용·식탁용 또는 주방용 기구, 냄비, 주전자, 보온병, 가죽 또는 합성 가죽을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한 코트·스웨터·바지·드레스·스커트·상의, 가죽 또는 합성 가죽을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한 장갑, 가방, 양산, 신발, 장롱, 책상 및 테이블, 의자·발판 및 좌석 의자, 스프링 매트리스, 우레탄 폼 매트리스, 칫솔, 육아용품, 합성 세제, 세탁용 또는 주방용 비누, 주택용 또는 가구 세척제, 클렌저, 기타 광택제, 접착제, 주택용 또는 가구용 왁스

다. 주요 내용

● (대상 품목 지정) 소비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사용되는 섬유제품, 합성수지가공품, 전기기계기구, 잡화공산품 중 소비자가 구입에 있어서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고, 특히 품질을 확인할 필요성이 높은 것을 ‘품질표시가 필요한 가정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조 제1항)

- (표시 주체) 가정용품의 표시를 행하는 자는 생산업자, 판매업자, 또는 이들로부터 표시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표시업자 중 하나임(법 제2조 제2항)
- (표시기준)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것에는 통일된 표시방식(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성분, 성능, 용도, 취급상의 주의 등 품질에 대해 표시해야 할 사항(표시사항)과,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서 표시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이 품목별로 정해져 있음(법 제3조)
 - 이 표시의 표준은 학계, 소비자, 사업자의 대표자로 구성된 소비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지시·공표) 내각총리대신 또는 경제산업대신은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별로 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있을 경우 정해진 표시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의 명칭과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나 부적절한 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음(법 제4조)
- (표시명령) 내각총리대신은 지시나 공표만으로는 정확한 표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된 표시를 지키도록 벌칙을 가하고 강제하는 ‘적정표시명령’을 할 수 있으며(법 제5조), 또한 표시하지 않은 것의 판매를 금지하는 ‘강제표시명령’(법 제6조)을 할 수 있음
- (신고제도) 대상품목으로서 지정된 가정용품의 품질표시가 적정하게 행해지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손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내각총리대신 또는 경제산업대신에 대해 그 취지를 신고할 수 있음(법 제10조)
 - 이 신고가 있을 경우 내각총리대신 또는 경제산업대신은 그 상황에 따라 조사 등을 행하고, 부적정한 표시를 배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감독지도) 이 법률의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 또는 경제산업대신은 사업자에 대해 출입검사나 보고 징수 등을 행하고, 적절한 지시·공표를 행하게 되며, 출입검사 등의 권한은 지방경제산업국, 도도부현·시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법 제19조)
- 가표법에 따른 행정상의 집행체계를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3-17〉 가정용품품질표시법에 따른 행정상의 집행체계



* 消費者庁(2014), 家庭用品品質表示法の概要, p.2.에서 참조

8.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 목적

- 유해물질규제법은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에 대한 보건위생상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법 제1조)

나. 주요 내용

- 유해물질규제법은 섬유제품(가정용 의류)을 대상으로 섬유 가공과 화학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해물질규제법은 포름알데히드 수치 및 유기 수은 화합물 등의 항균 가공 등에 대해서 화학물질별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 3-15〉 유해물질규제법상의 화학물질 사용 규제

화학물질명	대상 섬유제품	기준	가공의 종류
트리페닐 주석 화합물	섬유 제품 중 기저귀, 기저귀 커버, 턱받이, 속옷, 위생 밴드, 위생 바지, 장갑 및 양말	미검출	방균·곰팡이 방지제
트리부틸 주석 화합물	섬유 제품 중 기저귀, 기저귀 커버, 턱받이, 속옷, 위생 밴드, 위생 바지, 장갑 및 양말	미검출	방균·곰팡이 방지제
유기 수은 화합물	섬유 제품 중 기저귀, 기저귀 커버, 턱받이, 속옷, 위생 밴드, 위생 바지, 장갑 및 양말	미검출	방균·곰팡이 방지제
4,6- 디클로로 -7-(2,4,5- 트리클로로페녹시)-2- 트리플루오로메틸 벤즈이미다졸(DTTB)	섬유제품 중 기저귀 커버, 속옷, 잠옷, 장갑, 양말, 중의, 겹옷, 모자, 침구 및 깔개, 가정용 털실	30ppm(시료 1g 당 30μg) 이하	방충 가공제
헥사클로로에폭시 옥타히드로엔드 엑소디메탄나프탈렌[델드린]	섬유제품 중 기저귀 커버, 속옷, 잠옷, 장갑, 양말, 중의, 겹옷, 모자, 침구 및 깔개, 가정용 털실	30ppm (시료 1g 당 30μg) 이하	방충 가공제
트리스(1-아지리니딜) 포스핀옥사이드(APO)	섬유제품 중 잠옷, 침구, 커튼 및 깔개	미검출	방염 가공제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TDBPP)	섬유제품 중 잠옷, 침구, 커튼 및 깔개	미검출	방염 가공제
비스 (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화합물 (BDBPP 화합물)	섬유제품 중 잠옷, 침구, 커튼 및 깔개	미검출	방염 가공제
포름 알데히드	1) 섬유제품 중 기저귀 커버, 턱받이, 속옷, 잠옷, 장갑, 양말, 중의, 겹옷, 모자, 침구로서 생후 24개월 이하의 유아에 대한 것 2) 섬유제품 중 속옷, 잠옷, 장갑, 양말 및 버선, 가발, 속눈썹, 수염이나 양말 고정에 사용되는 접착제	1) 흡광도 차이가 0.05 이하 또는 16ppm(시료 1g 당 16μg) 이하 2) 75 ppm (시료 1g 당 75 μg) 이하	수지제 (방축, 방추 등)

9. SG마크

가. 개요

☐ SG(Safe Goods의 약자)마크는 소비자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임의 제도로, 대상이 되는 제품은 유아용품, 복지용품, 가구, 가정용품, 주방용품,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등 100개가 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함

● 이러한 대상 제품마다 기준(SG 기준)이 정해져 있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제품에

는 SG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이는 1973년 소비생활용품 안전법에 근거하여 시작한 제도로, 제도의 운용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일반재단법인 제품안전협회가 하고 있음
 - 단, 소비생활용품 안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품안전협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의 제도이기 때문에 동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강제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됨
 - 즉,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실제로 구매하는 학교, 지자체 등에서는 SG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SG마크가 있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인신사고가 발생하면 당해 결함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협회가 피해자 당 최고 1억 엔의 손해배상을 하게 됨

나. 목적 및 특징

□ SG마크는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른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음

- 제품안전협회에 따르면 SG마크를 표시한 제품의 수량이 연간 약 1.1억 개에 달하고, 제품안전협회가 출범한 1973년 이후의 총 개수는 약 246억 개에 달한다고 하고 있음

□ 제품안전협회는 SG마크 제도가 4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안전 기준에 대한 신뢰성) SG마크는 그 안전에 대한 기준의 제정을 소비자 대표, 제조·수입업자 대표, 학계·중립위원의 세 주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식을 따라왔기 때문에 실용적인 기준과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함
- (심사의 신뢰성) SG마크의 부착을 위해서는 ‘공장 등록·형식 확인’ 또는 ‘로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두 절차 모두 높은 심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위탁 검사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함
- (소비자·유통관계자의 신뢰) 약 40년의 역사에 의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은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은 SG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하며, 특히 유통 및 판매 사업자에 따라서는 제품을 취급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판단기준으로 삼기도 한다고 함
- (사고 처리 등에 대한 신뢰성) SG마크는 1억 엔을 한도로 하는 대인배상보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고 처리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고 함
 - 즉, SG 제품의 결함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자 지원,

사고 원인 조사,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 손해배상 조치의 일체를 제품안전협회가 수행하여 높은 신뢰성이 있다고 함

☐ (피해자 구제 제도) SG마크의 피해자 구제 제도로서 배상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인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뤄지는 것이며, 물적인 손해는 배상하지 않음

☐ 아울러 SG마크의 피해자 구제 제도는 일본 국내의 협회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상이 되지 않음

* 이러한 점에서 SG마크 제도는 일종의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다. 소비생활용품 제품안전법상의 협회의 연혁

☐ 1973년에 소비생활용품 제품안전법이 제정·공포된 후로 동법에 따라 제품안전협회가 설립되었고, 동년 12월에 유모차에 대해 SG기준 첫 사례로서 통상산업대신(현재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아 SG마크 표시 업무를 개시하였음

☐ 1986년에는 동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의 출자금을 국고에 반환하고 민간법인화하였으며, 이어서 2000년의 법개정에 따라 제품안전협회에 관한 규정이 동법에서 삭제되었으며, 동년 12월에 '재단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게 됨

라. 비교

☐ (JIS마크와의 비교) 일본공업규격인 JIS마크는 산업 표준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국가표준이며, 기본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특화한 것이 아니므로 사고 발생 시의 배상 조치 등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 반면에 SG마크 제도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특화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고, 배상조치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JIS마크 제도와 차이가 있음

☐ (PSC마크와의 비교) PSC마크는 소비생활용품 제품안전법에 따른 마크로서 특정한 제품에 대해 위 마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고, 안전기준이므로 만약 마크 없이 제품을 판매하면 벌칙을 부과받게 됨

☐ 반면에 SG마크는 제조회사가 자체적으로(협회의 인정을 통해서) 붙이는 마크이므로 이 마크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즉, PSC마크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가에 의한 안전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SG마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마. 시사점

- ▣ SG마크는 민간인증이라는 점에서 ‘규제’로 볼 수 없음. 즉, 사업자에 따라서는 SG마크를 부착할 수도 부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임
- ▣ 실효성 담보, 즉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 제도가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제를 운용하고 있음. SG마크가 부착된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제품안전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 일본 국내의 민간 협회(재단법인)가 실시하는 일종의 사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입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 민간 인증이지만, 피해자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 등 신뢰성이 높아 ‘현실적인’ 영향력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10. ST마크

가. 개요

- ▣ ST(Safety Toy의 줄임말)마크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장난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완구업체가 완구안전기준(ST기준)을 책정하여 운용하는 제도임
- ST마크는 일본완구협회가 지정한 제3자 검사기관에 의한 ST기준적합검사에 합격한 장난감에만 표시되고 있는 마크임
- ST마크가 붙여진 장난감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대인사고, 대물사고에서 ST마크 계약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에 대해 공제금을 지불하는 제도임

나. 연혁

- ▣ 장난감의 안전 대책에 대해 1969년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에서 완구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하였고, 그 결과 1971년에 자율 규제에 따라 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신이 이뤄진 바 있음

- 이에 일본 완구협회가 ‘장난감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자율 규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것이 ST마크 제도의 시작임

다. 제도의 구조

- 이 제도는 ① 완구안전기준(ST기준)을 만들고, ② ST기준 적합검사를 검사기관을 통해 실시, ③ 사고발생 시 배상·보상의 구조로 되어 있음
- 본 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일본완구협회와 ST마크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ST마크를 넣고자 하는 장난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ST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그 검사에 합격하면 ST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 검사는 기계적·물리적 검사(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삼킬 우려가 없는지 등), 가연성 검사, 화학물질 검사로 구성되고, 화학물질 검사의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근거하여 확인함
 - * 일본 식품위생법의 경우 장난감에 대해서 준용하는 규정이 많음
- ST마크를 부착한 장난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배상을 하고 소비자의 사고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한 손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즉,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일단 피해자에게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배상을 실시하고, 그 기업의 손해에 대해 일본완구협회가 공제제도를 운용하여 배상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체계인 것임

라. 시사점

- ST마크 제도 역시 SG마크 제도와 마찬가지로 민간 협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규제가 아니며, 강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음
- SG마크와 비교해보면 ST마크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의 측면보다는 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려는 측면이 강한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 제품안전협회의 경우 재단법인이지만, 완구협회의 경우 사단법인이라는 차이도 존재함
- ST마크는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과는 관련성이 전무함. 오히려 사고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에 대한 공제제도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과 관련성이 있는 측면이 있음

11. 섬유제품 관련 인증제도

가. 개관

- 현행 가정용품품질표시법에 따르면 표시에 대해 경제산업성이나 각 지자체(도도부현)가 표시에 대한 감독·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시에 대해 제3자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함
- 가정용품품질표시법의 대상 품목은 섬유제품(38품목), 합성수지가공품(12품목), 전기기계기구(17품목), 잡화공산품(38품목)임
-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도 제3자 인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아울러 본 법은 표시에 관한 규율이 아닌 섬유 가공에 있어서 화학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이라는 측면에서 표시에 관한 법률이 아닌 바, 제3자 인증은 논리적으로도 불요함
- 화학물질의 규제치는 국가(후생노동대신)가 정하는 것으로 제3자의 인증이 불필요할뿐더러, 별도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임
- 양자는 모두 ‘섬유제품’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규율과 별도로 섬유제품을 자주관리하는 예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SEK 마크’와 ‘에코 마크’임

나. SEK 마크

- 가공 섬유제품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제품에 대한 표시로서 사단법인 ‘섬유평가기술협의회’가 자체적인 관리로서 표시하는 SEK 마크가 있음
- SEK 마크 인증사업은 가공 섬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피부 부착 시험 등을 통해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시험은 화학물질 시험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시험소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성 등의 심사는 제3자 등으로 구성된 ‘인증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SEK 마크는 그 대상제품과 용도에 따라 마크의 색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5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마크를 표시할 때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 SEK 마크, ② 협의회 명칭, ③ 인증번호, ④ 표시용어(‘항균방취가공’ 등), ⑤ 부기 용어(‘섬유의 세균...’), ⑥ 가공 부위(부분 사용 제품의 경우), ⑦ 시험방법, ⑧ 가공제 종류 표시, ⑨ 회사명 또는 상표, ⑩ 주의 표시임

다. 에코마크

- 에코 마크는 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에 걸쳐 환경 부하가 적고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 상품에 붙일 수 있는 마크임
- 에코 마크의 경우 의류, 속옷, 양말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제품안전 기준이 아닌 환경 부하의 저감을 위한 표시라는 점에서 본 과제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생략함

12. 소비자안전사고와 법제 강화

□ 소비생활용품 안전법의 개정

- 팔로마 온수기 사망 사고, 파나소닉 FF식 석유 온풍기 기계 결함 문제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06년에는 소비생활용품 제품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 중대한 제품사고의 발생을 안 제조자나 수입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의 명칭, 사고 내용 등을 주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도입(이른바 ‘제품사고정보보고·공표제도’)되었음

〈2006년 소비생활용품 제품안전법 개정에 영향을 준 제품사고 사례〉⁶⁵⁾

1. 믹서기에 의한 손가락 절단·부상사고
 - 1983~2006년 업무용 또는 가정용 믹서기에 어린이가 손가락을 넣어 다치는 사고가 15개사 제품에서 49건 발생하고, 11명이 손가락 절단, 31명이 열상 등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랐는데, 회사들은 제품의 결함이 없다고 하여 취급설명서에 주의사항을 기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2006년 3월에 동종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가 회사의 대응에 불만을 가지고 현지 소비생활센터에 민원을 제기,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를 거쳐 7월에 경제산업성에 알려지고, 공표되었음
2. 팔로마 온수기 사망 사고
 - 1985년부터 2005년까지 팔로마 공업회사에서 제조한 순간 온수기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음
 - 2006년 2월에는 1996년 3월에 도쿄도 미나토구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경시청이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 대한 의혹이 밝혀져 경제산업성에 수사 결과가 보고되었음
 - 이를 받아 경제산업성은 팔로마 공업의 실내 설치형 순간온수기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대한 보도를 발표⁶⁶⁾하고, 8월에 소비생활용품 제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대상 제품 회수 긴급명령을 내림(마츠시타 FF식 석유 온풍 난방기에 대한 최초의 긴급명령 이후 두 번째)
 - 이후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2012년 12월 21일 도쿄지방법원은 회사에 약 1억 2천만 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65) 辻明彦, 過去20年のおもな化学事故, 交通運輸事故, 製品事故, 安全工学 46(6), 2007., pp.422~425.

3. 린나이 개방식 소형 온수기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 2000~2004년 린나이의 실내 배기식 개방식 소형 온수기로 인해 4건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사망 2명, 중독 12명), 당초 린나이는 환기 부족에 의한 것으로 제품에는 결함이 없다고 주장
- 이후 2006년 경제산업성에 의한 총 점검에서 4건의 사고를 확인하였는데, 당시에는 공표를 보류하였으나, 2007년 2월에 동 기종에 의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여 사고 발생을 공표

4. 마츠시타 FF식 석유 온풍 난방기 사고

- 2005년 1월에 1990년에 제조된 마츠시타 FF식 석유 온풍 난방기 사용 중 일산화탄소로 인해 사망 1명, 중태 1명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마츠시타는 사고 원인이 호스의 균열(즉, 제품 결함)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표를 보류
- 하지만 동년 2월, 4월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다시 발생하여 사고 발생을 공표하였고, 경제산업성에 무료 점검 수리를 하겠다고 신고
- 이어서 2005년 11월에 수리되지 않은 석유 온풍 난방기로 인해 1명 사망, 1명 중태의 사고가 발생하자 경제산업성은 점검 수리 명령과 함께 동 제품의 회수, 위험성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에 근거한 긴급명령 발동(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에 따른 최초의 긴급명령)

- 뿐만 아니라 위 사건들은 2009년에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특히 마츠시타 FF식 석유 온풍 난방기 사고는 장기 사용에 따른 부품의 경년열화가 문제되었던 것으로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제도 도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09년에는 어린이들의 라이터 사용에 의한 화재 사고가 다발한 것을 배경으로 라이터를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의 규제 대상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음⁶⁷⁾

□ 전기용품안전법의 개정

- 경제산업성은 2008년에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발연·발화사고의 급증으로 인해 전기용품안전법을 개정하여 리튬 이온 배터리에도 전기용품안전법상의 PSE 마크를 붙일 것을 의무화하였음⁶⁸⁾

□ 특정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사고 건수가 급증하여 법 개정이 된 사례로 볼 수 있음

□ 일본에서도 새로운 상품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표시 기준을 강화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66) http://www.meti.go.jp/product_safety/recall/file/tokki/houdou_060828_1.pdf

67)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4577/016_01_02.pdf

68) http://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file/98_format/lithium_gaiyou.pdf

- 대표적인 예로, 최근 일본 소비자청은 지금까지 바지 안감에 대해서는 섬유 조성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소비자가 피부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14년 6월 24일 '규제개혁실시계획'에 근거하여 가정용품품질표시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2017년 3월 30일부터 바지 안감에 대한 섬유조성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2013년에도 '영유아가 사용하는 의자류'의 경우 '영유아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하고, 자동접이식우산의 "개폐시에 소비자가 얼굴 등 신체부위에서 멀리하여 사용할 것"을 제품에 표시하는 등 취급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가정용품품질표시법을 개정한 바 있음

제5절 중국의 생활용품안전관리제도

1. 중국의 상품인증제도의 개요

- 중국의 상품인증제도는 인증 종류에 따라 크게 강제성 상품인증과 비강제성(자율성) 상품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가.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 중국의 강제성 상품인증은 중국강제인증(中国强制认证,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줄여서 CCC, 3C라고도 한다)이라고도 하고,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표준제도의 일종임
 - 중국강제인증(CCC)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AQSIQ), 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고 한다.) 및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中国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CNCA), 이하 '국가 인감위'라고 한다)가 2001년 12월 3일 공포한 '강제성 상품인증 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에 따라 제정되었고, 국가질검총국이 집행하며,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나. 비강제성 상품인증제도

- 비강제성 상품인증은 국가 상품인증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인증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행동 하에 실시되는 것이라 '자율성 상품인증(自愿性产品认证)'이라고도 함
- 최근, 국가 인감위가 비준한 CECC(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인증센터)가 전력업계를 대표하여 기전상품 자율적 인증을 진행하는 제3자 기구이고,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소속의 유일하게 시스템인증과 기

전상품 인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구이며, 상품인증 범위는 20개 대분류 전력공업에 필요한 상품을 포괄하고 있음

〈표 3-16〉 중국의 제품안전관리체계

구분		중국
법령		• 제품품질법, 수출입상품검사법, 표준화법, 강제성제품관리규정 등
시장출시 前	사전규제	• 강제인증대상품목의 경우 CCC인증마크 부착 필수 • CCC대상 외의 제품의 경우에도 GB규격 적합이 강제됨 (섬유의 경우 CCC 대상이 아니라 GB 대상)
	수입제품	• 수입시 통관 전 CIQ(출입검역검역국)에서 GB규격의 적합여부와 CCC인증여부를 검사
	처벌 규정	• CCC인증에서 지정된 시험을 하지 않을 시 30,000위안 이하의 벌금 • 불법 인증마크 사용 시 10,000위안 이하의 벌금
시장출시 後	시장감시	• CQC, CTC 등 단속권한을 가진 기관의 시장 감시를 통한 사후관리 • CCC인증대상 제품에 한하여 주기적 공장심사
	정보관리	• AQSIQ, SAIC(공상행정관리국), CCA(중국소비자협회)에서 시장정보 수집
	사후조치	• GB규격 성적서 검사 등 시장 감시를 통해 부적합제품 리콜요청

2. 중국의 강제 상품인증제도의 개요

- 중국은 1978년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지위를 회복한 이래 국제규범에 따라 중국의 상품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건립하고 추진해 왔음.
- 중국국가감독검험검역총국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2001년 12월 3일 공동으로 ‘강제성 상품인증 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을 발표해, 19대 분류의 132종 상품에 대해 ‘목록 통일, 표준과 평가절차 통일, 마크와 비용 통일’의 강제성 상품인증관리를 시행했음.
- 중국강제인증은 2003년 5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고, 기존의 상품안전인증(CCEE)와 수입안전질량허가제도(CCIB)는 동시에 폐지되었음.
- 중국강제인증은 국가가 통일 목록을 공포하고,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표준, 기술규칙과 실시과정을 확정하며, 통일된 마크를 제정하고, 통일된 비용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특징으로 함.
- 국가는 중국강제인증을 실시하는 상품에 대해 상품목록 통일, 기술법규의 강제성 요구 및 표준과 합격평가절차 통일, 인증마크 통일, 비용기준을 통일함(‘강제성 상품인증 관리규정’ 제4조).

- 중국강제인증 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국가가 지정한 인정기관의 인증합격을 거쳐 관련 증서를 취득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한 이후에 출고, 수출, 판매 및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국가안전을 보호하고, 사기행위를 방지하며, 인체건강 혹은 안전을 보호하고, 동식물 생명 혹은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규정한 관련 상품은 인증을 거쳐야 하고, 동시에 인증마크를 표시한 이후에 출고, 판매, 수입 혹은 기타 경영활동 중에 사용할 수 있음(‘강제성 상품인증 관리규정’ 제2조).
- 중국강제인증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인증허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강제성 상품인증 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 상품인증 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 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机构、检查机构和实验室管理办法)’에 근거하여 국가인감위는 강제성 상품인증 지정 인증기구, 지정 검사기구 및 지정 실험실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함

3. 중국강제인증제도 관련 법령

- 중국강제인증은 중국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주요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등이 있음

가. 법률과 법규⁶⁹⁾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이하, ‘제품품질법’이라고 한다.)’은 1993년 2월, 제7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음
- 이후, 2000년 7월, 2009년 8월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개정에 관한 의견’,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두 차례 개정되었음.
- ‘제품품질법’은 상품질량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 질량의 수준을 향상하며, 상품질량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의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제1조).
- ‘제품품질법’ 제13조 1항은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공업상품은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을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69) 법규는 행정법규로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에서 헌법,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범성문건을 말함. 행정법규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 다음임.

부합해야 한다.” 2항은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의 표준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공업상품은 생산, 판매가 금지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험법(이하, ‘수출입 상품검험법’이라고 한다)’은 1989년 2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수출입 상품검험법’의 제정은 상품검사 업무가 법제 관리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함
- ‘수출입 상품검험법’은 수출입 상품검사를 강화하고, 상품질량을 보장하며, 대외무역 관련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경제무역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제1조)
- ‘수출입 상품검험법’ 제4조는 “수출입 상품검사는 인류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동물 혹은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사기행위를 방지하며, 국가안전 수호의 원칙을 근거로 국가상품검사부문이 검사를 실시하는 수출입 상품목록을 제정, 조정하고 동시에 공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이하, ‘표준화법’이라고 한다)’은 1988년 12월, 제7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표준화법’은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발전하고, 기술진보를 촉진하며, 상품질량을 개선하고, 사회경제 효과를 향상하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표준화 업무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대외경제관계 발전의 수호에 적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제1조).

- ‘표준화법’ 제7조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은 강제성 표준과 추천성 표준을 구분한다. 인체건강, 인신·재산안전을 보장하는 표준과 법률, 행정법규가 강제집행을 규정하는 표준은 강제성 표준이고, 기타 표준은 추천성 표준이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국강제인증 제도와 관련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험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국무원의 식품 등 상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质量监督管理的特别规定)’ 등이 있음

나. 규장(規章)⁷⁰⁾

- ▣ 중국강제인증의 근거가 되는 규장으로는 국가질검총국 등 정부부문이 제정한 ‘강제성 상품 인증관리 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 상품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 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机构、检查机构和实验室管理办法)’ 등이 있음.
- ‘강제성 상품 인증관리 규정’은 2001년 12월 3일 국가질검총국이 제정했고, 2009년 7월 3일 개정되어 국가질검총국 제117호령으로 공포되었음. ‘강제성 상품 인증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강제인증은 ‘4대 통일’을 기본원칙으로 CCC인증의 핵심요구를 명확히 하고 있음.
- ‘강제성 상품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 관리방법’은 2004년 6월 23일 국가질검총국이 제정했고, 이 ‘방법’은 중국강제인증 임무를 부담하는 인증기구와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지정 조건, 절차 및 감독관리 등을 규정했음.
- 아울러 관련 업종 주관부문이 제정한 특정 상품에 대한 관리규장 중에 상품에 대한 강제성 상품인증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제8호령인 ‘자동차 산업 발전정책(汽车产业发展政策)’, 공안부 제12호령인 ‘안전기술방법 상품 관리방법(安全技术防范产品管理办法)’ 등이 있음.

다. 규범성 문건⁷¹⁾

- ▣ 강제성 인증상품 목록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인감위는 CCC인증 실시과정 중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 규범성 문건을 제정, 발표했음
- 2014년 현재, 중국강제인증 관련 규범성 문건은 300여 건이 있고, 인증실시의 각 방면을 포괄하고 있음
- 중국강제인증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규범성 문건으로는 ‘강제성 상품인증 마크 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标志管理办法)’, ‘강제성 상품인증 검사원 관리방법(强制性产品认证检查员管理办法)’, ‘강제성 상품인증 증서 말소, 일시정지, 취소 실시규칙(强制性产品认证证书注销暂停撤销实施规则)’ 등이 있음

70) 규장은 행정규범으로서 제정기관에 따라 각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부문규장은 국무원의 각 부처 및 그 직속기관에서 제정한 것이고, 지방정부규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및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하는 시와 국무원에서 비준한 비교적 규모가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것임. 규장의 효력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보다 낮음.

71) 규범성 문건(规范性文件)이라 함은 각급 기관, 단체, 조직이 제정한 문건으로 법률의 형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가지는 문건을 말함.

4. 중국강제인증 제도 관련 기관

□ 중국강제인증제도의 감독관리 기관과 실시 기관은 다음과 같음

가. 감독관리 기관

1)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AQSIQ), 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고 한다.)은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질량, 계량, 출입국 상품검사, 출입국 동식물 검역, 수출입 식품안전과 인증인가, 표준화 등 업무를 주관함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 강제성 상품인증 업무를 주관함('강제성 상품인증 관리규정' 제3조 1항)

□ 국무원 수권에 따라 인증인가와 표준화 행정관리직능을 국가질검총국이 관리하는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中国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中国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에 각각 이관하여 담당하고 있음

● 국가질검총국의 주요업무는 중국강제인증의 규장과 제도를 제정하고, 인증관리조례를 심사, 비준하며 동시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연합하여 '목록'을 발표하고, 중국강제인증 관련 강령성 문건의 반포와 효력개시를 결정하는 부문임

2)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NCA, 이하, '국가인감위'라고 한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관리하는 사업단위로서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이 수권한 행정관리직능을 이행하고, 전국의 인증인가업무를 통일관리, 감독하고 종합적으로 협조하는 주관기구임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수권으로 중국강제인증제도의 건립,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1) '목록'을 초안, 조정하고 국가질검총국과 공동으로 '목록'을 대외에 공포, (2) '목록' 내 상품 인증실시 규칙 지정 및 공포, (3) 인증마크 제정·공포, 강제성 상품인증 증서의 요구 확정, (4) 인증기구, 검사기구 및 인증마크 지급기구 지정, (5) 인증 상품 및 관련 기업 공포, (6) 지방 질검기구의 강제성 상품인증 위법해위에 대한 조사처리 지도, (7) 고소·고발 접수 관련 업무, 중대인증 위법행위 조사처리, (8) 특수용도

상품의 강제성 인증 제외 사항 심사·비준 등 업무를 함

3) 지방인증감독관리부문

☐ 지방인증감독관리부문이라 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질량기술감독부문(地方各级质量技术监督部门)과 국무원 질량감독검험검역부문에 설립한 지방의 출입국 검험검역기구(出入境检验检疫机构)를 말함⁷²⁾

- 각 기구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1) 소재구 내 중국강제인증 관련 활동 감독관리, (2) 중국강제인증 위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 조사와 처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나. 실시기관

☐ 중국강제인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는 국가 인감위가 지정한 인증기구, 실험실, 검사기구와 인증마크 발급 관리기구가 담당함

- 지정인증기구는 중국강제인증 업무를 실시하는 주체로서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상품의 인증, 증서수여, 인증획득 상품의 추적검사, 고소·고발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지정실험실은 인증기구의 위탁을 받아 인증상품의 검측보고를 제공함
- 시장감독의 편리와 위조 방지를 위해 CCC 인증마크는 국가 인감위가 지정한 기구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함. 지정된 인증마크 발급기구는 비표준 규격의 인증마크 및 압축성형 등 기타 방식으로 사용되는 인증 마크의 사용방안에 대해 심사비준을 함. 동시에 지방 인증감독 부문에게 법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5. 인증대상의 종류

☐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는 국무원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목록을 제정하고 조정하며, 목록은 국가 질검총국, 국가인감위가 공동으로 반포하고 더불어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시행함(‘강제성 상품인증 관리규정’ 제4조 2항).

☐ 2001년 12월 3일, 국가 인감위는 가전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안전유리, 의료기계, 조명설비, 전선케이블 등 19개 대분류의 132종 상품이 포함된 최초의 중국강제인증(CCC) 목록을 공포했음.

- 2016년 말 현재, CCC 목록은 20개 158종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표 3-17〉 참조)

72) 지방 각급 질량기술감독부문과 각 지역 출입국 검험검역기구를 ‘지방질검양국’이라고도 함.

〈표 3-17〉 중국강제인증(CCC) 대상 범위

상품번호	상품명	종류
01	전선 및 케이블	4종
02	전기 스위치 및 보호기기 혹은 연결용 전기장치	6종
03	저전압 기기	9종
04	소형 모터	1종
05	전동 공구	16종
06	전기 용접기	15종
07	가정용 혹은 유사 용도 설비	18종
08	AV 설비	12종
09	정보기술 설비	11종
10	조명기기	2종
11	자동차 및 안전부품	16종
12	자동차 타이어	3종
13	안전유리	3종
14	농기제품	2종
15	전신단말설비	9종
16	소방 제품	15종
17	안전방법 제품	5종
18	무선랜 제품	1종
19	장식용 제품	3종
20	아동용품	7종

출처: 国家认监委2014年第45号公告《国家认监委关于发布强制性产品认证目录描述与界定表的公告》
(http://www.cnca.gov.cn/bsdt/ywzl/qzxcprz/mlmsyjd/201412/t20141224_48962.shtml)

□ 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생산자 혹은 판매자, 수입상은 국가 인감위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위탁하여 생산, 판매 혹은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인증을 해야 함. 기타 기업에 위탁하여 목록에 포함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탁기업 혹은 피위탁기업은 모두 인증기관에 인증위탁을 할 수 있음(‘강제성 상품인증 관리규정’ 제10조)

● 다만, CCC 목록에 포함된 상품이더라도 ‘강제 상품인증 관리규정’ 제42조(보수목적의 상품, 생산라인의 부대설비, 부품, 사업목적으로 전시 판매하지 않는 상품, 일시 입국 상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 상품인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목록에 포함된 상품이 인증을 거치지 않고는 임의로 출고, 판매, 수입되거나 혹은 기타 경영활동 중에 사용한 경우, 지방질검양국(지방 각급 질량기술감독부문과 각 지역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함

● 목록에 포함된 상품이 인증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출고, 판매, 수입 혹은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된 경우, 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함(‘인증인가조례’ 제47조)

□ 국가표준이 중국강제인증의 기술표준임.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강제성 상품 인증이 채용하고 있는 표준은 399개임

□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은 중국 표준을 국가표준(GB), 업종표준⁷³⁾, 지방표준(DB), 기업표준(QB)과 같이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국가표준은 중국에서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문이, 업종표준은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 부문이 제정함.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이 없는 경우, 기업표준을 제정해 생산의 근거로 삼아야 하고 동시에 관련 부문에 신고해야 함

□ 중국 국가표준 코드는 GB(강제성 국가표준)와 GB/T(추천성 국가표준)로 두 종류로 구분됨⁷⁴⁾. 국가표준의 일련번호는 국가표준의 코드, 국가표준의 발표 순번(시퀀스 번호)과 국가표준 발표 연도로 구성되어 있음⁷⁵⁾

- 국가표준은 강제성 조문과 추천성(자율성) 조문이 포함되어 있고, 전문이 강제성 조문일 경우, 추천성 조문은 포함되지 않으며, GB/T 코드 국가표준은 추천성 표준임.

□ 강제성 조문은 인체 건강, 인신,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표준과 법규 및 행정법규가 강행집행을 규정하는 국가표준이고, 추천성 국가표준은 생산, 검험, 사용 등 방면에서 경제수단 혹은 시장조절을 통해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국가표준을 말함.

- 하지만, 추천성 국가표준이 수락 그리고 채택되거나 혹은 쌍방이 동의하여 경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쌍방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근거가 되고, 법률상의 구속력을 가짐

73) 업종표준(行业标准, industry standard)라 함은 각 업종 범위 내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으로, 예를 들면, 기계, 전자, 건축, 화공, 치금, 경공, 방직, 교통, 에너지, 농업, 임업, 수리업 등이 업종표준을 모두 제정하고 있음. 업종표준 코드는 선박 CB, 전력 DL, 방직 FZ 등 각 업종의 중국어 병음 첫 글자를 사용하고 있음.

74) GB는 Guojia Biaozhun의 약자로 국가표준을 의미함. GB/T는 Guojia Biaozhun/Tuijian의 약자로 국가표준/추천을 의미함.

75) 예를 들어, 의류품 품질 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 규범 GB 18401-2010의 경우, GB는 국가표준 코드, 18401은 국가표준 발표 순번, 2010는 국가표준의 발표연도임.

6. 인증마크

- 인증마크 디자인은 기본 도안, 인증 스타일별 표기로 구성되고, 기본 도안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3-18〉 중국의 인증마크 기본도안



- S는 안전인증, EMC는 전자 양위성, S&E는 안전 및 EMC, F는 소방인증, I는 정보안전을 의미함

7. 신청절차

가. 신청자

- 중국강제인증의 상품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는 신청자로서 중국강제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인증실시에 대해서 상품의 생산자와 관련문서를 교환하고, 문서의 심사, 샘플 검측, 공장 심사, 마크 사용 및 증서 취득 후의 감독 등에 대해서 정해야 함
- 신청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대리인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등록자격을 취득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나. 신청서류

- (1) 신청자의 증명문서; (2) 총 조립도, 전기 원리도, 회로도, (3) 중요 부품 및 주요 원자재 리스트; (4) 기타 신청자가 설명해야 하는 문서; (5) 신청자가 판매자 또는 수입업자인 경우, 지정한 인증부분에 대한 판매자와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와 생산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부분도 함께 제출; (5) 신청자가 타인에게 목록 내 제품 인증신청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인증, 검측, 검사, 추적 검사 등의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수탁자가 동시에 지정한 인증부분에 위임장, 위탁계약의 부분, 기타 관계한 계약의 부분도 함께 제출

다. 인증절차

□ 중국강제인증의 최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음.

- (1) 인증의 신청: 신청자가 인증부문에 서면으로 신청을 함. 인증실시규칙과 인증부문의 요구에 따라 필요서류와 인증샘플을 제출한 후 관계 사항에 관한 인증 부문과 협의서를 체결함
- (2) 형식시험: 검측부문이 인증규칙과 인증부문의 요구에 따라 실시함. 예를 들어, 상품이 약간 크고 수송이 어려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식 시험은 인증기관이 국가인증인 가감독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사 공장에서 실시할 수도 있음. 동일한 신청자, 생산공장이 다른 동일 제품의 경우, 시험은 1회만 실시할 수 있음. 또한, 제품이 특수제품인 경우, 형식시험은 샘플 시험으로 변경됨
- (3) 공장 검사: 인증부문이 인증규칙의 요구에 따라 실시함. 공장검사에는 상품의 일치성 검사(상품구조, 규격형식 번호, 중요재료 또는 부품 등의 조합검사)와 공장의 품질보증능력 검사의 2가지의 검사가 포함됨
- (4) 샘플 시험: 상품이 형식시험을 실시하는데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공장검사시에 상품의 일치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기업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실시됨. 샘플 시험은 일반적으로 공장검사시에 하지만,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사전에 인원을 파견하여 샘플 시험을 하고, 검측에 합격한 후에 공장검사를 하는 것도 가능함
- (5) 인증결과의 평가와 허가: 인증부문은 검측과 공장검사의 결과에 따라 평가 및 인증결정을 하고, 신청자에 결과를 통지함. 원칙적으로 인증부문이 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인증결정을 할 때까지의 기간은 90일 이내임
- (6) 인증 취득 후의 감독: 인증증서의 지속적 유효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인증부문은 인증을 취득한 상품에 대해서 상품 특징에 기초하여 증서취득 후의 감독을 준비함. 증서의 취득 이후 감독은 상품 일치성 심사와 공장 품질 보증능력 심사가 포함됨

라. 인증증서

- 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임.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증서 취득자는 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음
- 실제의 상황에 따라 인증부문이 인증증서의 말소, 일시정지, 취소 또는 인증증서 취득자가 인증부문에 인증증서의 변경, 인증대상 범위 확대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8. 의류 제품 인증

가. 품질표준에 관한 규정

☐ 중국강제인증 대상품목이 아닌 의류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국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술요구, 상품사양설명 및 기타 필요사항에 관한 요구에 적합해야 함

☐ 섬유 및 가죽제품과 관련된 중국의 주요 국가표준은 다음과 같음

- GB 18401-2010 국가섬유제품 기본안전 기술규범(国家纺织产品基本安全技术规范, National general safety technical code for textile products), GB 31701-2015 유아 및 아동 섬유제품 안전기술규범, GB 20400-2006 가죽과 모피 유해물질 제한 규정 및 GB/T 5296.4-2012 제품 사용설명 - 제4부분 섬유제품과 의류 사용설명임
- 만약, 유아 및 아동제품을 제조할 경우 GB18401-2010 뿐만 아니라 GB 31701-2015 또한 준수해야 함
 - A류는 유아 섬유제품, B류는 아동 섬유제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섬유제품, C는 아동 섬유제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섬유제품을 의미함

항목		A류	B류	C류
흡마찰견뢰도 $\geq$		3	2-3	-
총 납(mg/kg) $\leq$		90	-	-
총 카드뮴(mg/kg) $\leq$		100	-	-
프탈레이트계(6종) (%) $\leq$	DEHP,DBP,BBP	0.1	-	-
	DINP,DIDP,DNOP	0.1	-	-
방화도		1급(정상 가연성)		
작은 부품		적합	-	-
날카로운 끝, 가장자리		적합		
코드 및 조임끈		적합		

* 출처: ‘GB31701-2015 유아 및 아동 섬유제품 안전기술규범’

- 또한, 중국은 GB/T 5296.4-2012 제품 사용설명 - 제4부분 섬유제품과 의류 사용설명, 즉 제품 품질표시사항에 대한 추천성 국가표준도 준수해야 함
 - 중국 내 판매되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적용되며, 일반적인 표기 요구사항 및 표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표기 요구사항으로는 제품 명칭, 제품 표준, 사이즈, 혼용률, 세탁기호, 품질 등급, 합격 증명, 회사 명칭과 주소 및 안전 유형이 있음
 - 표기방법에 있어서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한자(간체자)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어 병기가 가능하나 표준한자 크기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 의류품 품질에 대해서는 강제성 국가표준인 ‘GB18401-2010 국가섬유제품 안전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고, 포름 알데히드, PH치, 염색 견뢰도, 악취 및 가분해성 방향족 아민 염료(발암성 염료) 등 5개 항목에 합격해야 함
- ☐ 의류품의 라벨에 대해서는 강제성 국가표준(GB5296.4-2012 소비자품 사용설명 제4부분: 방직제품과 복장(消费品使用说明 第4部分: 纺织品和服装))에 적합해야 하고, 제품명, 생산자 및 주소, 종목 등 10항목의 내용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 ☐ ‘GB18401-2010 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요구’는 방직제품의 기본안전기술요구, 시험방법, 검사규칙 및 실시와 감독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방직제품의 기타요구는 관련 표준에 따라 집행됨
- ☐ ‘GB18401-2010 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요구’는 중국 국경 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의복용, 장식용 및 가정용 방직제품에 적용되고, 수출제품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음
- ☐ ‘GB18401-2010 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요구’에서 말하는 ‘방직제품(纺织产品, textile products)’이라 함은 천연섬유와 화학섬유를 주요 원료로 하여 방(纺), 직(织), 염(染) 등 가공공예 혹은 봉제, 복합 등 공예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예를 들면, 천을 짜는 실, 직물 및 그 완제품을 말함
- ☐ ‘GB18401-2010 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요구’에서 말하는 ‘기본안전기술요구’라 함은 방직제품의 인체건강에 대한 무해를 보증하기 위해 제출된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말함
- ☐ ‘GB18401-2010 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요구’에서 말하는 ‘영유아 방직제품’은 연령이 36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입거나 사용하는 방직 제품을 말함
- ☐ 제품은 최종적인 용도에 따라 (1) 영유아 방직제품, (2) 직접 피부에 접촉하는 방직제품, (3)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은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표 3-18〉 참조).

〈표 3-18〉 방직제품 분류 예시

분류	용도에 의한 분류
영아용 방직제품	기저귀, 내의, 턱받이, 잠옷, 장갑, 양말, 겹옷, 모자, 침상용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방직제품	내의, 셔츠, 치마, 바지, 양말, 침대보, 이불, 수건, 수영복, 모자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직제품	겹옷, 치마, 양말, 커튼, 침대 시트, 벽지,

*출처: ‘GB18401-2010 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요구’

- ☐ 사용자가 재가공 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예, 옷감, 원단, 옷 짜는 실)은 최종적인 용도에 따라 분류함

- 방직제품의 기본안전기술요구는 지표요구 정도에 따라 A, B, C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19〉 지표요구 정도에 따른 유형분류

구분		A류	B류	C류
포름 알데히드 함량(mg/kg)		≤20	≤75	≤300
Ph 값		4.0~7.5	4.0~8.5	4.0~9.0
염색견뢰도/급	물(변색,오염)	3-4	3	3
	땀(변색,오염)	3-4	3	3
	알카리(변색,오염)	3-4	3	3
	마찰	4	3	3
	침액(변색,오염)	4	-	-
냄새		무		
발암염료(mg/kg)		사용금지		
내습마찰색견뢰도/급		3(염색2-3)	2-3	-

출처: 'GB18401-2010 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요구'

- 영유아 방직제품은 A유형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은 적어도 B유형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제품은 적어도 C유형 요구에 부합해야 함. 이 중, 커튼 등 매달린 장식제품은 땀 변색 견뢰도는 심사하지 않음.
- 영유아 방직제품은 반드시 사용설명 상 '영유아용품' 문구를 표기해야 하고, 기타 제품은 사용설명 상에 부합하는 기본안전기술요구 유형을 표기해야 함
- 의류 제품과 관련한 기본안전기술요구의 실시와 감독은 '표준화법' 및 '표준화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직제품 과학연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기업)과 개인은 엄격하게 'GB18401-2010 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요구'를 집행해야 하고, 'GB18401-2010 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생산, 판매와 수입이 금지됨.
- 강제성 표준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생산, 판매와 수입을 할 수 없음('표준화법' 제14조).
 - 과학연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기업)과 개인은 강제성 표준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생산,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됨('표준화법 실시조례' 제23조).
 - 수출상품의 기술요구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표준화법' 제16조), 수출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중국 강제성 표준관리 범위에 속할 경우, 표준화 요구에 부합해야 함

(‘표준화법 실시조례’ 제25조).

- 기업이 신제품을 연구제작하고, 제품을 개량하며, 기술개조를 하는 경우 표준화 요구에 부합해야 함(‘표준화법’ 제17조)
- ‘표준화법’ 및 ‘표준화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모든 단위(기업), 개인은 ‘GB18401-2010 국가방직 제품 기본안전기술요구’에 위반하는 행위를 고발, 고소할 권한을 가짐
- ‘제품품질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는 방직 제품에 대해 표본을 주요 방식으로 하는 감독검사 제도를 실시함
- 방직제품의 기본안전방면에 관한 상품인증 등 업무는 국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함.
 -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행정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처리하고, 법률, 행정법규가 없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품과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더불어 벌금에 처함.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제품과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더불어 벌금에 처함.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함(‘표준화법’ 제20조)
 - 인증증서를 수여한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출하 판매하는 경우, 표준화 행정주관부문은 판매 정지를 명령하고, 더불어 벌금에 처함. 엄중한 경우, 인증부문이 그 인증증서를 회수함(‘표준화법’ 제21조)
- 섬유제품에 대한 중국의 국가 표준은 한국의 KC인증과 비교하여, KC와 같은 마크표시나 서류보관 의무는 없지만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유사하며, 표시 기준 등에서는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GB 18401-2010 국가섬유제품 기본안전 기술규범을 적용받는 제품들은 A류, B류 및 C류에 대한 안전기준 뿐만 아니라, 스웨터, 양말, 넥타이 등과 같이 그 세부품목에 있어 준수해야 할 표준 등이 존재함
 - 취급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도 세탁기호의 나열 순서를 준수해야할 만큼 엄격하게 관리함
 -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자들은 사드 배치 등의 외교적 환경으로 인해 GB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 수출에 큰 애로를 겪는 상황임

나. 의류 제품 라벨 관련 규정

- 의류 제품의 라벨과 관련해서는 강제성 국가표준인 'GB5296.4-2012 소비자품 사용설명 제4부분: 방직품과 복장(消费品使用说明第4部分: 纺织品和服装)'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제조자의 명칭과 주소, 제품명, 제품사이즈 혹은 규격, 섬유성분 및 함량, 유지방법, 안전유형, 사용과 보관주의 사항 등 8개 항목의 내용을 표시해야 함.
- 영유아복의 경우, 사용설명서에 표준번호 및 영유아용품을, 아동복은 사용설명서에 표준번호 및 부합하는 안전기술 유형을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9.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

- 중국정부는 지난해 4월 7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 허용 품목을 발표했음.
- 1, 2차 리스트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고, HS Code 8단위 기준 총 1,293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 의류품에 해당하는 HS CODE 61, 62류 중 221개 품목이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
- 중국정부는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의 수입을 허용하면서 일반무역과 마찬가지로 통관절차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다만,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함

10. 「제품품질법」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이하, '제품품질법'이라고 한다)」은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라고 한다)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입법 되었음
- 이후 2000년 7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통과하여 한 차례 수정되었음
-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된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2009년 8월 27일, 제2차 수정이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가. 총칙(제1조-제11조)

- ☐ 「제품품질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제품의 종합적인 품질수준을 제고시키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입법의 목적이 있음
- ☐ 본 법에서의 제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제작을 거쳐 판매되는 것을 가리킴
- ☐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자와 판매자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됨
- ☐ 국가는 제품의 생산에 관하여, 첨단 과학기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기업의 제품 품질이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도달하거나 또는 상회할 것을 장려하고, 제품의 품질이 국제선진적 수준에 달성될 경우 이를 포상함
 - 각 급의 인민정부 및 주요 행정부처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생산자와 판매자가 본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및 독촉하여야 함
 - 각 급의 인민정부 및 주요 행정부처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탐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함
 -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누구든지 제품품질 감독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확인결과 고발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 고발한 자의 신변 보호는 물론 고발한 자를 포상함

나. 제품품질의 감독(제12조-제25조)

- ☐ 제품은 반드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합격제품이어야 하며, 또한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한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모용할 수 없음을 규정함
 -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부과함
- ☐ 인체의 건강과 재산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공업제품의 생산은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을 반드시 준수해야함
 - 당해 공업제품의 생산과정과 관련된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이 없는 경우, 인체의 건강과 재산의 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인체의 건강과 재산의 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업제품은 생산 및 판매할 수 없으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의 품질시스템 인증제와 제품의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는 등의 여러 인증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본 법의 일부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시험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
 -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은 국무원의 제품품질 감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국무원의 수권부서가 인가한 인증기구에 의하여 진행됨
 - 표본검사는 무작위추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중복적 검사를 실시할 수 없고, 상급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하급에서 별도의 중복적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
 - 필요에 의하여 표본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표본검사에 사용되는 샘플의 수량은 합리적인 수요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사제품의 생산업체로부터 검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비용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출함
 -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표본검사를 진행한 제품품질 감독부서 또는 상급 제품품질 감독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생산자와 판매자는 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제품품질 시험 및 관리감독 절차를 거부할 수 없음
 -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표본검사를 진행한 제품의 품질이 불합격인 경우 제품품질 감독부서는 당해 제품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게 기한부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이 지남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제품품질 감독부서는 이를 공시하며 공시 후 재검사에서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고 기한부 정돈을 명령, 기한부 정돈 기간 이후 재검사를 거쳐 제품품질이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함
 - 모든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제품은 제품에 대한 인증표지를 부여하고 기업은 인증표지를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할 수 있음
- 현 급 이상의 제품품질 감독부서는 고발에 의한 당해 사업체의 제품을 조사할 시, 현장검사·위반 혐의가 있는 제품의 생산·판매상황 조사·당사자 관련 계약 및 영수증, 장부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열람·복제, 당해제품 및 당해제품의 원자재, 포장재, 생산수단 등에 대한 압류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제품품질 인증기구는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인증표지 사용을 허가한 제품에 대한 역추적을 실시하고 만일 인증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령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그 인증표지의 사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소비자는 제품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게 제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제품품질 감독부서 및 공상행정관리부처에 신고할 권한이 있으며 신고접수부서는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함

☐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무원과 성(省)·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의 품질상황을 공시하고 있음

☐ 제품품질 감독부서나 기타 국가기관은 생산자의 제품을 추천할 수 없고,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품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생산자·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제26조-제39조)

☐ (생산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생산자는 인신과 재산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보장하는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제품이 응당 구비하여야 할 성능을 구비하여야 함(단, 제품의 성능에 하자가 있음을 설명한 경우에는 해당 책임이 면제)

- 제품설명 및 실물견본 등의 방식으로 설명한 품질상황이 실제에 부합하여야 함

☐ 제품 또는 그 포장의 표시는 반드시 진실하여야 하며 제품에 대한 시험 합격 인증표지가 있어야 함

- 제품의 중문명칭·생산공장의 명칭·공장주소가 표기되어야 함

- 제품의 규격, 등급, 주요성분의 명칭, 함유량을 중문으로 명시하여야 함

-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의 경우는 뚜렷한 위치에 노출시키고 소비자에게 생산일자와 안전사용기간을 고시하여야 함

-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제품자체의 훼손 및 그로 인한 인체 및 재산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는 경고표지 또는 중문설명을 첨부하여야 함

- 비포장 식품 또는 제품에는 특징에 따라 제품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파손·폭발·훼손이 용이한 제품 또는 유독성·부식성·방사성 등 위험물질 그리고 보관·운송 중 특별히 취급하여야 하는 제품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표지나 중문으로 경고설명을 하여야 함
- 생산자는 국가에서 명문으로 생산을 금지하거나 도태시킨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
- 생산자는 생산지를 위조할 수 없으며, 생산 공장의 명칭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고 또한 인증표지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모방할 수 없음
- (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판매자는 입하검사 및 검수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제품의 합격증명과 기타 표지를 확인해야할 의무를 지님
 - 판매자는 판매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고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명문으로 생산을 금지하거나 도태시킨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판매자는 제품의 유효기간 또는 유통기간이 도과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판매자는 생산지를 위조할 수 없으며, 생산 공장의 명칭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고 또한 인증표지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모방할 수 없음

라. 손해배상(제40조-제48조)

- 판매자는, ① 제품이 응당 구비하여야 할 성능을 갖추지 못했고 이를 사전에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품이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명시된 제품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③ 제품이 제품설명·실물견본 등의 방식으로 제시된 품질상황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품의 수리·교환·반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판매자가 규정에 따라 제품을 수리·교환·반품한 후,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거나 판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한 자(납품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생산자 및 납품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매자가 규정에 따라 문제가 있는 제품을 수리·교환·반품하지 않을 경우, 제품품질 감독 부서 및 공상행정관리부처는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판매자가 결함제품의 생산자를 지목하지 못하고 결함제품의 납품자 또한 지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상의 책임을 짐

- 생산자는, ① 제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품의 유통 시 손해를 초래한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품의 유통 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인신 및 재산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품의 결함으로 인신 및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제품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만일 제품의 생산자에 책임이 속하나 판매자가 우선 배상한 경우 판매자는 생산자에게 배상청구권을 가지며 또한 제품의 판매자에게 책임이 속하나 생산자가 우선 배상한 경우에도 생산자는 판매자에게 배상청구권을 가짐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신 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자는 의료비용, 치료기간 간의 간호비용, 근무 중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손해비용 등을 배상하여야 함

 - 신체의 장애를 초래한 경우, 신체장애자의 생활보조용 기구 및 생활보조비용 일체, 신체장애 배상금 및 부양으로 소요되는 생활비용 일체를 배상함
 -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사망배상금 및 사망자의 생전 부양자의 생활비용 일체 등을 배상하여야 함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배상의 소송시효는 2년이고 침해 당사자가 그 권익이 침해받은 것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함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배상에 대한 청구권은 손해를 빚어낸 결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최초 교부하여 만 10년이 도과하면 상실됨(다만, 표시된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
- 제품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상 또는 조정을 거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만일 당사자가 협상 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협상 또는 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각 방의 합의에 따라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 당사자 각 방의 합의에 의한 중재기구의 중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중재기구 또는 인민법원은 본 법으로 규정한 제품품질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제품의 품질을 직접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마. 벌칙(제49조-제72조)

- 본 법의 벌칙규정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제품 가치의 30%이하부터 제품 가치의 3배 이하의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외에도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거나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처벌을 병과하고 있음
- 제품의 품질시험기관 또는 관련 인증기관이 결과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증명서를 작성 및 발급한 경우, 기관과 주관인원에 대한 양벌규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 각 급 인민정부의 주관인원 및 기타 정부의 인원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만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추궁함
 - 생산자 및 판매자 그리고 납품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추궁함
-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과 과태료 또는 벌금납부의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만일 그 재산으로 모두를 부담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바. 부칙(제73조-제74조)

- 군수산업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은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함
- 핵 시설 및 핵 제품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11.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중국의 「형법」 규정

- 중국 「형법」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중 “제1절 가짜·불량상품 생산·판매죄”로 9개의 죄목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매우 중한 범죄로 취급함
 - 제140조 가짜·불량상품 생산·판매죄 (生产·销售伪劣产品罪)
 - 제141조 위약 생산·판매죄 (生产·销售假药罪)

- 제142조 불량약품 생산·판매죄 (生产·销售劣药罪)
 - 제143조 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의 생산·판매죄 (生产·销售不符合安全标准的食品罪)
 - 제144조 유독성·유해성 식품의 생산·판매죄 (生产·销售有毒·有害食品罪)
 - 제145조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생기재의 생산·판매죄 (生产·销售不符合标准的医用器材罪)
 - 제146조 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의 생산·판매죄 (生产·销售不符合安全标准的产品罪)
 - 제147조 가짜 농약·수의약품·화학비료·종자의 생산·판매죄 (生产·销售伪劣农药·兽药·化肥·种子罪)
 - 제148조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의 생산·판매죄 (生产·销售不符合卫生标准的化妆品罪)
-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제품에 불순물 및 가짜를 혼합하여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또는 저질의 제품을 상질의 제품으로 둔갑하거나 불합격품을 합격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그 판매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범죄를 구성함
- 본 조항의 구성요건이 가짜·불량상품의 판매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므로 만일 가짜·불량상품의 판매금액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중국의 「제품품질법」을 적용함
- 가짜·불량상품 생산·판매죄의 9가지 죄목으로 열거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지만 각 조 규정의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판매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본 법의 제140조(가짜·불량상품 생산·판매죄)에 의거하여 처벌함
- 이 밖에도 제품의 생산·판매 시 생산자와 판매자가 국가표준·업계표준 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를 비교적 강력하게 규제 및 처벌을 부과하고 있음

12. 소비자제품안전사고 사례

- 중국의 경우 소비자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가 된 것은 식품안전사례만을 찾아볼 수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06년 수단홍 오리알 사건(苏丹红鸭蛋 사건)⁷⁶⁾

- (사건개요) 공업염료이자 발암물질인 수단홍을 식품에 첨가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전 중국 내의 식품위생안전에 경각심을 심어주게 만드는 사건
- (사건전개) 2005년 3월 4일 북경의 한 고추장 제조공장에서 제조과정 중에 있던 고추장에서 수단홍 1호 염료가 검출되고, 곧이어 전국 각지에서 수단홍 1호 염료가 첨가된 고춧가루 · 샐러드 · 돼지고기 · 닭고기 등이 발견되었음(중국 11개 성 30개 기업 88가지의 샘플에서 발견)
- (사건결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公安부문의 공동 조사 결과, 전국에서 수단홍 1호 염료가 가미된 식품이 발견되 해당 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시켰으며 당해 사업체의 주요 관리자는 같은 해 4월 9일 형사처벌을 받음

□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⁷⁷⁾



출처 : 바이두(www.baidu.com)

- (사건개요) 중국 유명 유제품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에서 공업용 원료인 멜라민이 검출되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
- (사건전개) 2008년 9월 8일 중국 감숙성에서 14명의 영아가 동시에 신장결석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고, 이후 3일 동안 총 59차례의 신장결석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의 여러 유명한 유제품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유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
- (사건결과) 사건의 용의자 19명이 구속되고 78명이 소환조사 되는 등 대대적인 조사에 돌입, 그 중 가장 현격하게 위법한 정황이 드러난 한 업체는 4937만 위안의 벌금을 물고 파산을

76) 텐센트 사회부 검색결과, 최종검색일 2017. 8. 30. (<http://mygd.qq.com/t-609211-1.htm>)

77) 텐센트 사회부 검색결과, 최종검색일 2017. 8. 30. (<http://mygd.qq.com/t-609211-1.htm>)

선고, 이사장은 무기징역, 주요관리직 임원은 징역 15년, 8년, 5년씩을 선고받았으며, 이 업체에 멜라민이 포함된 우유를 판매한 낙농업자 3명은 형법 및 제품품질법에 의거하여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음

▣ 2005-2011년 피혁우유 사건⁷⁸⁾



출처 : 바이두(www.baidu.com)

- (사건개요) 가죽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원료로 일부 사용한 저질우유가 생산되어 사회에 파장을 일으킴
- (사건전개) 피혁재료로 사용하다 남은 폐료나 동물의 모발 등을 가수 분해하여 분말상태로 만들어 유제품에 첨가, 유제품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데 사용하다 적발되었음
- (사건결과) 「식품안전법」에 의거하여 해당 기업은 영업허가증을 회수 당하였고, 업계에서 퇴출됨

78) 바이두 백과사전, 최종검색일 2017. 8. 30.

(<https://baike.baidu.com/item/%E7%9A%AE%E9%9D%A9%E5%A5%B6/5732120?fr=aladdin>)

제4장 국내 제품안전관리 입법례 분석

제1절 개관

□ 원료 및 원자재 제조단계에서 인증 획득 입법례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에게 등록의무와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함
- 화평법은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 구매대행업 부담 완화 입법례

- 구매대행업자의 의무를 면제시킨 국내법의 예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전파법」을 들 수 있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은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축산물의 표시 생략 가능
-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금하였으나 해당 조항 삭제(‘15.3.27)

□ 제품안전 및 사후규제 관련 입법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의무를 부여함
-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 안전확인대상: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완구,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등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면봉,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표시도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 사용

- (제품안전기본법) 사업자*에게 제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 시 제품 수거 및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함

* 사업자는 제품을 생산·조립·가공 또는 수입·판매·대여하는 자를 말함

-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증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함

- (제조물 책임법)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
- ※ 제조업자 등에게 인증 등의 사전규제 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여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하여 검토대상으로 포함

〈표 4-1〉 전안법 쟁점 대상에 관한 국내 유사제도 비교표

법률명	특 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 화학물질의 등록제도 - 화학물질의 수입·제조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들을 생산·등록 -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심사·평가하여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관리 2. 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 유해성 심사 :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고, 유해성심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유독물을 지정함 - 위해성 평가 : 위해우려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품목별로 제품 위해성 평가를 실시 3. 화학물질 정보제공 -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 및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등의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 4.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구매대행업자의 의무를 면제시킨 국내법의 예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전파법」을 들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제 -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수입 전에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를 거부하여 사전 등록관리되는 해외제조업소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식품사고 발생 시 해당 업소에 신속하게 알려 원인 규명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신규로 도입된 제도

법률명	특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인터넷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식약처장에게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생산품목 등⁷⁹⁾을 등록 2.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조건과 준수하여야 할 업무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현지실사 등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 3. 해외작업장 등록 -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는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작업장의 명칭, 소재지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해외작업장의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업종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변경하도록 함 - 이는 축산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잔류화학물질의 잔류 위험이 높고, 병원성미생물의 증식이 매우 빨라 대규모 식품위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에 관한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을 통해 등록하도록 함 4. 구매대행업 부담 완화 -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은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축산물의 표시 생략 가능
「전파법」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 -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구분됨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금하였으나 해당 조항 삭제('15.3.27) 2. 적합성평가 표시의무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반드시 제품과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의 행정처분이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 2015년 2월 24일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外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료가 면제되었음
제품안전 및 사후규제 관련 법률로는 대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의무 -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의무를 부여함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등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 규제대상이 되는 어린이 제품은 국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으로써 생산지나 브랜드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79) 해외제조업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영업의 종류, HACCP 적용여부 등 10개 항목을 말한다.

법률명	특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 판매 등의 금지 및 제재 -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판매중개업자와 구매·수입대행업자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이 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중개 또는 수입대행 할 수 없음 - 안전인증 등의 표시 및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는 벌금, 과태료, 판매중지 등의 제재를 함
「제품안전기본법」	1. 안전성 조사 -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 -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하는 제도 -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소비자 요청에 의한 안전성 조사, 수입제품의 안전성 조사가 있음 2. 리콜제도 -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리콜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음. 즉, ①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리콜을 실시하는 자발 리콜, ②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리콜을 실시하는 리콜 권고, ③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사업자가 리콜을 실시하는 리콜 명령으로 구분
「제조물 책임법」	1. 제조물책임 - 제조·가공된 유체물의 설계·제조·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해 그 제조·가공·판매자 등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 - 최근에는 제조업자 등에게 인증 등의 사전규제 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여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하여 검토대상으로 포함

제2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 개관

가. 제정배경

☐ 미지의 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 전 세계적으로 8천8백만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12만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 유통, 국내에서는 약 4만 여종 물질이 유통 추정

-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체계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정확한 용도 및 노출형태에 따른 건강상의 위협을 관리하기 곤란
-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심사·평가토록 하여 국가 내 물질 정보의 생산·공유·확산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가능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원인물질(PHMG, PGH 등)이 유해성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사용, 다수 국민의 폐손상 유발사고 발생
- 시장에 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에 대한 잠재적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예방

□ 화학물질 등록·평가체계의 선진화 필요성 대두

- '07.6월, EU REACH 도입, '10.4월 일본 「화학물질 신고 및 심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0.10월 중국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시행
- 국제 화학물질 교역시장에서는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유해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금지)' 원칙이 확립되어 감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화학물질규제 대응력 강화 필요
- 물질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촉진, 친환경물질 新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나. 제정 목적

□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⁸⁰⁾(有害性)·위해성⁸¹⁾(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물질 등록·평가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 등) 지정·변경

□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

80)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81) 위해성: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유해성 x 노출정도)

-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 · 공유하고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심사 · 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구성 체계

▣ 화평법은 총 8장 54조 및 부칙으로 구성

▣ 화평법은 크게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제도와 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로 구성

- (화학물질) 화학물질 보고 등록 →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심사 · 평가 → 유해화학물질 지정 → 정보공개 및 정보제공으로 구성
- (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 위해우려제품 지정 → 제품 위해성평가 → 안전 표시기준 설정 → 사후관리로 구성

〈표 4-2〉 화평법 체계도

구분	법령 조문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제7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등의 책무 • 화학물질의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제17조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의 지정 • 화학물질의 등록/등록면제, 변경등록/변경신고 등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 자료 및 방법 •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등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8조-제24조	•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 유독물질의 지정,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 위해성평가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5조-제28조	• 허가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제31조	• 화학물질 정보제공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6장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제32조-제37조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 제품의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 표시기준 등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정보제공,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제7장 보칙	제38조-제48조	• 국외 제조 · 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운영 • 녹색화학센터 지정 · 운영 • 보고와 검사, 서류의 기록 및 보존,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제8장 벌칙	제49조-제54조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2. 주요 내용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법 제8조)

- (보고자)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업체 기준)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
- (보고방법)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제조 수입 판매한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의 현황을 작성 제출(IT시스템 입력 가능)
- (보고시기) 매년 6월 30일까지(최초 보고는: '16년부터)
- (보고기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변경보고) 보고자 변경=> 1개월 이내, 용도 변경 =>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화학물질의 등록 (법 제10조)

- (등록신청 의무자)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업체기준)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등록신청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등록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3일(구체적 검토 필요시 7일) 이내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법 제9조)

- (등록대상의 지정) 기존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위해성 정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 고시
- (등록유예기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의 유예기간까지는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이 가능함(법 제10조제2항)

□ 소량 기존화학물질의 등록대상 지정(법 제10조제1항 단서)

- (등록대상 지정)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커서 등록대상으로 지정 고시(제출자료도 함께 고시)

☐ 화학물질 등록의 면제 (법 제11조)

- (등록면제확인 신청자)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
- (확인신청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법 제12조)

- (변경등록 신고자) 등록한 자, 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법 제13조)

- (제조 수입 금지) 등록여부 통지, 등록면제대상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조 수입 불가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법 제14조)

- (제출자료)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법 제15조)

- (공동제출 요건) 동일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신청하려는 경우
- (공동제출 방법)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개별제출)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으로부터 개별제출확인 필요

☐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법 제16조)

- (등록신청에 활용) 다른 등록자가 제출한 기존 물리적 화학적 특성, 유해성 자료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 가능

☐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

- (등록신청에 활용) 척추동물 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등록신청의 목적으로 활용 의무화
- (사용동의 거부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확인을 받고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유해성심사 (법 제18조)

- (심사기간)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 (추가자료 제출명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명령 가능

□ 유해성평가 등 (법 제19조)

- (평가방법) 등록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국립환경과학원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유해성평가 실시

□ 유독물질의 지정 및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법 제20~21조)

- (심사 평가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독물질로 지정·고시,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을 고시

□ 위해성평가 (법 제24조)

- (평가방법) 위해성자료가 제출된 물질, 유해성심사 결과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
- (추가자료 제출명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명령 가능

□ 허가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 (법 제25~26조)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물질
- (지정기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우려되거나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내분비계 장애, 축적성, 잔류성이 있는 물질 등을 허가물질로 지정·고시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 (법 제27~28조)

- (제한물질 금지물질) 특정 용도 또는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물질
- (지정기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제협약 등에 따라 규제하는 화학물질 등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고시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

- (정보제공의무자) 등록된 화학물질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
- (정보제공방법) 화학물질 혼합물을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화학물질안전정보서식에 따라 제공해야 함
- (영업비밀 제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불포함(영업비밀임을 기재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등록된 정보를 기록 제공하는 경우도 인정(이 경우 위해성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 (변경제공)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공한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법 제30조)

- (하위사용자 판매자의 정보제공) 화학물질 혼합물의 제조 수입자가 보고 및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제조 수입자의 정보제공) 하위사용자 판매자가 요청한 경우에 제조 수입자는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영업비밀 제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불포함(영업비밀임을 기재해야 함)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법 제32조)

- (신고의무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자
- (신고기준)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고,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 초과하는 경우
- (제품기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소비자에게 화학물질노출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만이 해당
- (유해화학물질 기준) 화평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해당
- (신고방법)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유해성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 등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법 제33조)

- (위해우려제품 지정) ①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②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살생물제(Biocide)중에서 지정
- (위해성평가) 제품의 품목별 위해성평가를 실시, 위해여부 결정

□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 (법 제34조)

- (안전·표시기준 고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표시기준을 고시
- (기준)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발산량 등의 기준 고시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35조)

- (제품 양도시 정보제공)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양도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명칭, 용도, 조건 등의 정보 제공
-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

□ 판매 등의 금지 (법 제36조)

- (부적합제품) 위해우려제품의 안전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증여 또는 수입 진열 보관 저장을 금지
- (미고시제품)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의 생산·수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회수명령 등 (법 제37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부적합하거나, 미고시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명령이 가능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명령 가능

제3절 제품안전기본법

1. 제정목적

- ☐ 제품안전에 대한 통일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소비자 중심의 시장 감시 기능의 정착, 정보의 공유, 기술개발의 지원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제품안전관리 정책 수행을 위하여 제정함
- ☐ 전기용품안전법과 공산품안전법상 안전성 조사를 제품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이관함
- ☐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리콜권고 및 리콜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하였음

2.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제도

- ☐ 제품안전기본법상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제도는 제품의 결함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안전성 조사 및 리콜제도를 들 수 있음
- ☐ 안전성 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함
 -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임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관리대상제품과 ②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의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③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나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⑤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⑥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음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 ☐ 안전성 조사의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시에는 안전성 조사결과와 해당 제품의 명칭모델명·제품사진과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

표자의 성명 등을 포함함(법 제15조의2, 령 제17조의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요청에 의한 안정성 조사(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2),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도 할 수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제도는 리콜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①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리콜하는 자발 리콜(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리콜을 실시하는 리콜권고(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사업자가 리콜을 실시하는 리콜명령(동법 제11조)의 3가지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상 사업자 자진리콜의 경우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한 결함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가 하여야 함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상의 리콜권고와 제11조상의 리콜 명령의 구별기준인 위해성 우려와 위해성 확인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며, 현실적으로 법률의 집행단계에서 권고와 명령 양자의 구분 실익이 모호
- 리콜 권고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그 자체에 대한 제재는 리콜명령을 실시하는 것이며, 단지 리콜 권고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이를 제재함
- 반복·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이나 제대수단이 미흡하며, 리콜명령에 대한 불성실 이해에 대한 제재 방안이 법률상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리콜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제품에 대한 리콜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리콜 실행의 완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제4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 개관

- 2015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을 시행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관리를 지정 품목 위주에서 포괄적인 안전관리체계로 관리 체계를 전환함으로써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함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외부 위험 노출에 취약하므로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 등의 제품에 대하여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높음

-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난감·학용품 등 211개 제품에서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성분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로 인한 어린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과 제도가 어린이제품법 제정 이전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외에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⁸²⁾
- 어린이제품법 제정 이전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제품의 부적합 비율이 매년 증가하였으며, 2015년 국내 리콜 건수 중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 비중이 가장 높아 어린이제품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제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제품법 제정함
- 2013년 어린이제품법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포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제품의 사고발생시 사업자의 보고의무 도입(안 제16조 및 제17조), 불법제품 유통사업자의 사업장 조사·검사권 도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통합·조정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어린이안전관리위원회 설립(안 제6조), 안전성조사와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어린이제품안전성평가센터의 신설(안 제5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음
- 이후 법률 검토 과정에서 어린이안전관리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전안전관리제도·리콜제도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와 기능 중복 등의 점을 고려하여 삭제되었고, 어린이제품안전성평가센터 신설도 정부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조상이 최종법안에서 삭제됨
- 2014년 11월 제정된 어린이제품법은 총 43개 조문과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1장 총칙 부분은 법률의 제정 목적(제1조), 어린이제품 등 용어 정의(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장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15조-제21조), 안전확인(제22조-제24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올바른 어린이제품 정보제공 부분은 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제31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제32조-제33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리고 제4장 보칙과 제5장 벌칙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위반사항 관련 판매중지 등 명

82) 이외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다.

령(제34조), 자료제출 요구(제35조), 과태료 및 벌칙 규정(제41조-제43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3〉 어린이제품법 체계도

구분	법령 조문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제5조	• 목적, 정의, 국가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제6조-제30조	• 안전성조사 및 조치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 어린이제품 안전정보 수집·관리 • 불법제품 판매제한 등
제3장 올바른 어린이제품 정보제공 등	제30조-제33조	• 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제4장 보칙	제34조-제40조	• 판매중지등의 명령 • 자료제출 요구 • 비밀유지의 의무 등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벌칙시 공무원 의제, 수수료, 청문
제5장 벌칙	제41조-제43조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제품의 정의

☐ 어린이제품법 제2조에 의하면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함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과 함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모두 어린이제품으로 정의되고 있음

- 행위주체가 어린이에게 국한되지 않으나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제품도 어린이제품에 포함됨으로써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 다만 ①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② 의료기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③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④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함

- ☐ 모든 어린이제품을 포괄적 안전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종래에 품공법에 따라 운영되어 온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일부 강화하여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전환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전시회나 박람회의 출품을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안전인증(법 제18조), 안전확인(법 제22조 제7항), 공급자적합성확인(법 제25조 제1항)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음

나. 안전인증제도(제17조)

-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전(또는 수입업자)에 모델별로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실시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제품으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이 이에 해당함(시행규칙 별표 1)
 - ☐ 안전인증 등의 표시와는 별도로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해야 함
-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더라도 연구·개발 또는 수출,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예정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등은 인증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법 제18조)
-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함(법 제19조)
-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일정한 경

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함(법 제21조)

-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이 현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됨(법 제15조)⁸³⁾

다. 안전확인제도(법 제22조)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전(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⁸⁴⁾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법 제22조)
-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함
-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등 총 17개 품목의 어린이제품이 안전확인제도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별표 2)⁸⁵⁾
 -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은 어린이제품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8월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주) 등이 있음

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법 제2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해야 함
- 공급자적합성안전기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해야 하는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임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과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어린이제품⁸⁶⁾은 각각의 개별안전기준 이외에 어린이제품의 공통안

83) <http://kats.go.kr/content.do?cmsid=496>.

84)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 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5) 이외에도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등이 있다.

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호)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함

라. 판매중개업자, 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의무 등

☐ 어린이제품을 생산, 조립, 가공하는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하는 유통업자와 판매중개업자, 구매·수입대행업자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이 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중개 또는 수입대행을 할 수 없음(법 제20조, 법 제24조, 제25조 제7항, 제30조)

- 사업자는 안전인증·안전확인표시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20조 제1항), 영업자는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동조 제2항)

☐ 안전인증 등의 표시 및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판매중지 등의 제재가 있음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22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안전인증표시, 안전확인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 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음
 -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86)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는 어린이용가족제품, 어린이용면봉, 어린이용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한다), 어린이용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키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있다.

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판매중지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판매중지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음(법 제34조)
- 판매중지 등의 명령이나 수거·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제5절 제조물책임법

1. 개관

가. 제정배경

-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제정되어 2000년 1월 공포되었으나, 기업이 제조물책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부칙에 의하여 동법의 시행을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 최근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제조물 책임(제3조), 결함 등의 추정(제3조의2), 면책사유(제4조), 연대책임(제5조), 면책특약의 제한(제6조), 소멸시효 등(제7조), 민법의 적용(제8조) 등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2. 2017년 개정

- ☐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
- ☐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일반의 상식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가슴기살균제사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소비자안전의 문제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됨
- ☐ 개정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 제조물을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3조제3항)
 -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 세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 ☐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상품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업자(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제5장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선방안

1. 물질안전관리제도와 연계된 규제이행비용 합리적 분담

□ 현행 전안법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19호]

- 고시에는 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를 규정하고 있음
- 부속서는 대체로 적용범위, 관련규격,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함
 - ‘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 및 ‘부속서3(가죽제품)’의 경우, 1.적용범위, 2.관련규격, 3.용어의 정의, 4.안전요건, 5.시험 방법, 6.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7.세부표시 방법의 목차로 구성됨
 - 특정물질의 시험 방법 등의 관련규격이나 표준을 명시하여, 그 기준을 인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전안법은 최종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최종제품이 다양한 원부자재 등을 투입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종제품 제조업자에게만 인증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은 불합리함

- 동법 제23조에 따르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모델별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함
- 색상이나 재질이 다른 여러 개의 원단을 하나의 완제품에 사용할 경우 그 원단별로 각각 시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가정용 섬유제품이 염색한 경우 적용되는 KS K 0147(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의 8. 시료 채취 및 준비 중 8.2 섬유 제품에 따르면,
 - “만약 섬유 제품이 의류와 같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부나 구강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섬유 제품의 다음과 같은 주 원단(들)*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시험편을 채취한다.”라고 규정 되어있음
 - * 다음과 같은 주 원단(들)은 안감(들), 주머니 감(들), 자수, 섬유 제품의 라벨(들), 줄라 매는 끈(들), 고정 장치(들), 인조 모피 및 재봉실임
- 한편, 하나의 원단은 한 명의 제조업자에게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조업자별로 동일한

원단에 대한 시험검사비가 이중으로 소요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 한편, 맞춤복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아니며, DIY 제품 또한 안전요건 관련 규정이 부재함

* DIY란, Do-It-Yourself의 약자로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반제품 상태의 제품 또는 원부자재 등을 동봉하여 판매하는 제품임

● ‘부속서1(가정용섬유제품)’에 따르면, 1.적용범위에서 “맞춤복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동법의 목적이라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서 맞춤복을 제외할 이유가 없음

● DIY 제품 역시 최종제품이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안법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함

□ 따라서, 원부자재 등에서 물질관리의 과정을 거친 후 완제품이 재단·봉제 등의 단순공정을 요구할 뿐이라면, 원부자재자의 인증을 완제품의 인증으로 갈음함으로써 전안법의 취지를 따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됨

● ‘부속서 1 (가정용섬유제품)’에 따르면 4.안전요건 중 4.1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주 12에서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안전기준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부자재 단계에서 안전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

● 또한, 원부자재가 안전요건을 충족한다면 맞춤복이나 DIY 제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결할 수 있음

가. 전안법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 전안법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대체로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포함하고 있음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41품목 중 20품목에서 유해물질과 관련된 안전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표 5-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분류	품목	유해물질 관련 목차
화학	가죽제품	4.2.유해물질 안전요건
	습기제거제	4.3.유해물질
	화장지	4.유해물질 안전요건
	폴리염화비닐관	4.2.화학적 특성
	양초	3.안전요건(납의 함유량)
생활	가구	4.1.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면봉	3.2.유해물질 안전요건
	선글라스	3.2.니켈 용출량(금속제)
	안경테	3.1.니켈 용출량(금속제)
	고령자용 신발	7.6 혀의 pH 값 시험, 7.8 안감의 pH 값 시험
	고령자 위치추적기	4.3.유해물질
	스테인레스 수세미	4.2 납 함유량
	접촉성 금속 장신구	4.2.유해원소
	쌍꺼풀용 테이프	3.1.유해물질 함유량 제품 중 윗 눈꺼풀에 붙이는 부분의 유해물질
	가 속눈썹	4.4.유해물질 함유량
	벽지 및 종이장판지	3.안전요건
	인테리어 필름	3.안전요건
섬유	가정용 섬유제품	4.안전요건
	양탄자	4.5.유해물질 안전요건
건축	물탱크	5.4 부속부품재료의 성능

□ 특히, 전안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가정용 섬유제품은 크게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에 따라 그 세부기준이 상이함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3. 용어의 정의

3.1 표시사항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1-3.1.3 (생략)

3.2 안전요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2.1 (생략)

3.2.2 “아동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36개월 초과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의류(3.2.3의 아동제품), 중의류(3.2.4의 아동제품), 외의류(3.2.5의 아동제품), 침구류(3.2.6의 아동제품), 가방(책가방 포함) 등을 말한다.

3.2.3 “내의류”라 함은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거들),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즈, 스타킹 포함), 복대 등을 말한다.

- 3.2.4 “중의류”라 함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등을 말한다.(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한다)
- 3.2.5 “외의류”라 함은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울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를 말하며,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등을 말한다.(재킷, 코트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한다).
- 3.2.6 “침구류”라 함은 잠을 자는 데 이용하는 제품으로서,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해먹, 카펫(면적이 1㎡미만) 등을 말한다.
- 3.2.7 “기타 제품류”라 함은 아동용 및 성인용 섬유제품 중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아동용가방 제외),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덮개, 커튼, 수의 등을 말하며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표 5-2〉 유해물질 안전요건(가정용 섬유제품)

유해물질명	제품명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 (mg/kg)		75 이하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mg/kg)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이하	-	-	-
유기주석화합물(mg/kg)-TBT (tributyltin)		1.0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0.1이하			
방염제		사용하지 말것			
납(mg/kg)		90이하	-	-	-
코드 및 조임끈		적합	-	-	-
알러지성 염료		사용하지 말것	사용하지 말것	-	-
pH		4.0 ~ 7.5	4.0 ~ 7.5	4.0 ~ 9.0	
니켈(Ni)의 용출량		0.5μg/cm ² /week이하			

- (아릴아민) 아릴아민의 경우, 염색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대상물질은 KS K 0147(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 방법), KS K 0734(폴리에스테르 섬유 제품 중 아릴아민 함유량 시험 방법)에 따른 24종 물질로 24종 전부가 3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표 5-3〉 아릴아민 종류

번호	아릴아민명	CAS 번호	번호	아릴아민명	CAS 번호
1	4-아미노디페닐	92-67-1	13	3,3'-디메틸-4,4'-디아미노비페닐메탄	838-88-0
2	벤지딘	92-87-5	14	파라-크레시딘(2-메톡시-5-메틸아닐린)	120-71-8
3	4-클로로-오르토-톨루이딘	95-69-2	15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101-14-4
4	2-나프틸아민	91-59-8	16	4,4'-옥시디아닐린	101-80-4
5	오르토아미노아조톨루엔	97-56-3	17	4,4'-티오디아닐린	139-65-1
6	2-아미노-4-니트로톨루엔	99-55-8	18	오르토-톨루이딘	95-53-4
7	파라-클로로아닐린	106-47-8	19	2,4-톨루일렌디아민	95-80-7
8	2,4-디아미노아니솔(4-메톡시-1,3-페닐렌디아민)	615-05-4	20	2,4,5-트리메틸아닐린	137-17-7
9	4,4'-디아미노비페닐메탄	101-77-9	21	오르토-아니시딘	90-04-0
10	3,3'-디클로로벤지딘	91-94-1	22	2,4-자일리딘	95-68-1
11	3,3'-디메톡시벤지딘	119-90-4	23	2,6-자일리딘	87-62-7
12	3,3'-디메틸벤지딘	119-93-7	24	4-아미노아조벤젠	60-09-3

* KS K 0147(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 방법), KS K 0734(폴리에스테르 섬유 제품 중 아릴아민 함유량 시험 방법) 참조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3종임

번호	물질명	CAS 번호
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2-ethylhexyl)phthalate(DEHP)	117-81-7
2	부틸벤질 프탈레이트 Butylbenzyl phthalate(BBP)	85-68-7
3	디부틸 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DBP)	84-74-2

- (유기주석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 TBT의 경우,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함.
 - 단, 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음
 - 화평법의 위해우려제품 중 코팅제와 접착제는 모두 유기주석화합물인 TBT(트리부틸주석 화합물)과 TPT(트리페닐주석화합물)를 사용제한 물질로 규정함
- (알러지성 염료) 알러지성 염료의 경우, 알러지 염료로 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736(섬유 제품의 알러지성 염료 분산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른 22종임
- 이 외에 가죽, 방염제 및 금속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다이메틸푸마레이트의 경우, 피혁 및 모피 등 가죽 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적용함
- (방염제) 방염제의 경우, 방염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 PentaBDE[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 [Octabromodiphenyl ethers]임
- (납) 납의 경우,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된 부분만 적용하되, 금속류의 경우는 기준치를 300mg/kg이하로 함
- (니켈) 니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을 제외한 제품은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제품이나 전자파차단 제품에 한하여 적용함
- 유해물질 중 폼알데하이드 및 PH를 제외하고는 섬유제품이 염색, 코팅제, 가죽 소재 및 금속류 함유 등의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임
- 따라서, 생지*가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 염색제 및 코팅제 등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종제품 역시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 생지란 가공하지 아니한 원단을 뜻함

나. 화평법의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 전안법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절반 가량이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두고 있는 바, 화평법과의 연계를 검토해볼 수 있음

☐ 화평법은 화학제품 중에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위해우려제품’으로 고시*하고 있음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6-25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위해우려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나.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품목별로 위해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해우려제품은 세제류, 코팅·접착제류, 방향제류, 염료·염색류 및 살생물제류로 분류하며, 세부 품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4〉 위해우려제품의 종류

품목	종류
1. 세제류	가.세정제 나.합성세제 다.표백제 라.섬유유연제
2. 코팅·접착제류	가.코팅제 나.방청제 다.김서림 방지제 라.접착제 마.다림질 보조제
3. 방향제류	가.방향제 나.탈취제
4. 염료·염색류	가.물체 탈·염색제 나.문신용 염료 다.인쇄용 잉크·토너
5. 살생물제류	가.소독제 나.방충제 다.방부제 라.살조제

-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일반소비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등이 주요 대상임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개별 제품의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현재(2017.9기준) 총 5,450개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품목별로는 세제류 1,068개, 코팅·접착제류 550개, 방향제류 2,478개, 염료·염색류 1,268개 및 살생물제류 86개임

〈그림 5-1〉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가든샵 길이형 방향제 바닐라코코넛

할유물질 ↓



인쇄하기 SNS 공유하기

제품정보 저장

기본 제품 정보

제품명(국문)	가든샵 길이형 방향제 바닐라코코넛
제품명(영문)	-
모델명	가든샵 길이형 방향제 바닐라코코넛
제품군	방향제
종류	실내공기용
액성	-
중량	12ml
성분	정제수, 에틸알콜, 향료

생산정보

가타정보

- 각 위해우려제품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별표 2]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에서 1.적용범위, 2.종류, 3.안전기준, 4.검사방법, 5.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3.안전기준에는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과 ‘사용제한 물질’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음

- ☐ 위해우려제품 중 전안법의 공급자적합성생활용품확인대상의 가정용섬유제품과 관련이 큰 ①코팅제
 ②접착제 ③물체 탈·염색제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다음과 같음

☐ **(코팅제)** 코팅제란 물체의 표면에 광택, 표면보호, 방수, 발수 등의 효과를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임

- (광택용) 광택용인 경우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포함한 7가지 유해물질 기준에 적합해야 함

〈표 5-5〉 물질별 적용기준

물질명	일반형*(mg/kg)	스프레이형(mg/kg)
폼알데하이드	50 이하	5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100 이하	6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200 이하	200 이하
나프탈렌	100 이하	20 이하
디메틸폼아마이드	90 이하	90 이하
벤젠	90 이하	90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400 이하

* 일반형은 스프레이형(그 리필용을 포함한다) 이외의 제형을 말함

※ 광택용 외 다른 용도를 포함할 경우 〈표3〉의 니켈에 대한 적용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함

- (표면보호 코팅용 등*) 표면보호 코팅용 등의 용도인 경우 광택용의 7가지 기준 외에도 니켈의 유해물질 기준에 적합해야 함

* 표면보호 코팅용, 발수·방수용, 정전기방지용, 미끄럼방지용, 기타용(광택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표 5-6〉 물질별 적용기준

물질명	일반형*(mg/kg)	스프레이형(mg/kg)
폼알데하이드	50 이하	5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700 이하	6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1,000 이하	1,000 이하
나프탈렌	200 이하	20 이하
디메틸폼아마이드	90 이하	90 이하
벤젠	180 이하	90 이하
니켈	10 이하	1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400 이하

* 일반형은 스프레이형(그 리필용을 포함한다) 이외의 제형을 말함

- (사용제한 물질) 가슴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으로 지목되고 있는 PHMG, PGH, MIT 및 CMIT 등을 포함한 9개의 물질을 사용제한 물질로 지정함
- 이들 물질은 흡입독성과 관련된 위험성이 제기되어 스프레이형 물질의 경우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표 5-7〉 사용제한 물질

번호	물질명	비고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스프레이형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스프레이형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스프레이형
4	트리페닐주석화합물	
5	트리부틸주석화합물	
6	유기수은화합물	
7	염화비닐	
8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스프레이형
9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스프레이형

□ (접착제) 접착제란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임

-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접착제의 유해물질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그 용도에 따라 기준이 상이함

〈표 5-8〉 물질별 적용기준

물질명	물체 접착용 기준치		가발용 기준치 (mg/kg)	속눈썹용, 쌍꺼풀용 기준치 (mg/kg)	네일용 기준치 (mg/kg)
	일반형* (mg/kg)	스프레이형 (mg/kg)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500 이하	5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
트리클로로에틸렌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5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1,000 이하	350 이하	-	-	-
클로로포름	1,00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톨루엔	5,000 이하	1,00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벤젠	1,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디메틸폼아마이드	1,000 이하	300 이하	-	-	-
디클로로메탄	800 이하	200 이하	20 이하	20 이하	800 이하
2-부톡시에탄올 (부틸 셀솔브)	10,00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10,000 이하
납	-	-	-	1 이하	-
비소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1 이하	20 이하

* 일반형은 스프레이형(그 리필용을 포함한다) 이외의 제형을 말한다.

** 다만,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접착제에 대해서는 1% 미만을 적용

- (사용제한 물질) 사용제한 물질은 TPT 및 TBT 등을 포함한 11개 물질임

〈표 5-9〉 사용제한 물질

번호	물질명	비고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스프레이형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스프레이형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스프레이형
4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5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6	유기수은화합물	
7	염화비닐	
8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9	아크릴로니트릴	
10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스프레이형
11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스프레이형

- (물체 탈·염색제) 물체 탈·염색제란 염색된 색상을 흡착하거나 분해하여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및 물체에 색을 입히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임

-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유해물질 기준은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두 종류에 대해 규정함

〈표 5-10〉 물질별 적용기준

물질명	기준치(mg/kg)	물질명	기준치(mg/kg)
벤젠	3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1 이하

- (사용제한 물질) 사용제한 물질은 다음과 같은 7개의 물질임
 - 이 중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는 아릴아민 종류 중 하나로 전안법에서는 가정용 섬유제품이 염색한 경우 아릴아민 24종이 1kg당 30mg이하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5-11〉 사용제한 물질

번호	물질명	비고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스프레이형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스프레이형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스프레이형
4	염화비닐	
5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6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스프레이형
7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스프레이형

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화평법의 연계를 통한 합리적 규제체계

□ 가정용 섬유제품 중 의류 등은 생지에 염색 및 가공공정을 거쳐 원단을 만든 후 단순 재단·봉제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제품이 완성됨

- 생지가 염색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염료가 사용되며, 의류 제조업자들은 염색공정이 끝난 원단을 구매하여 단순 재단 및 봉제의 과정을 거쳐 최종제품을 완성하므로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화학물질의 개입 여지가 없음
- 따라서, 염료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다면 이를 사용하여 완성된 제품 역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가죽 제품의 경우, 가죽 생산공정에서 유연제·염색제 등의 화학제품을 사용하지만, 제품 제작 단계에서는 재단·접합 등의 공정만 요구됨

- 가죽은 원피가죽가공 → 무두질(태닝) → 염색·건조 → 도장·마무리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화학제품이 사용됨
 - 무두질은 동물의 원피로부터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고 유제 등을 흡수시켜 사용하기 편리한 상태로 가죽을 만드는 공정임
 - * 타닌을 사용하는 타닌 무두질과 크로뮴화합물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크로뮴 무두질이 있음
 - 가죽제품의 안전요건에 무두질 등을 거친 경우에 6가 크로뮴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무두질은 가죽 생산공정에서 요구되는 공정이므로 가죽 생산업자가 안전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가죽제품은 도장·마무리를 거쳐 완성된 가죽을 구입하여 재단·접합 등을 통해 완성됨

〈표 5-12〉 유해물질 안전요건(가죽제품)

유해물질명	제품명	유아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및 기타제품
폼알데하이드(mg/kg)		20 이하	75 이하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염소화페놀류(PCP)(mg/kg)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6가 크로뮴(mg/kg)		0.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0.1 이하		
아릴아민(mg/kg)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DINP, DIDP, DNOP	0.1이하	0.1이하	-	-	-
유기주석	DBT(dibutyltin)	1.0 이하	-	-	-	-
화합물(mg/kg)	TBT(tributyltin)	0.5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납(mg/kg)		90 이하	90 이하	-	-	-
카드뮴(Cd)		75 이하	75 이하	-	-	-
니켈($\mu\text{g}/\text{cm}^2/\text{week}$)				0.5 이하		

- 따라서, 원단 및 가죽의 제조 단계에서 생지, 염료 및 안료, 접착제, 코팅제 및 유연제 등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면, 그 원단 및 가죽을 사용하되 단순 공정을 거쳐 생산된 최종제품 또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봐야함
- 현행 화평법의 위해우려제품은 일반 소비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위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투입되는 염료 및 안료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가죽제품 등을 만드는 소규모 공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염료 및 안료, 접착제와 이들을 사용해 완성된 최종제품의 안전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고려하여 각 제품 단계에서 안전확인이 필요함
- 따라서, 최종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제품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각 단계의 생산자가 그 생산품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위해우려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구매대행업자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의무 폐지

- 전안법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의 하나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인터넷 정보 게시 및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한 것임
- 논란이 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관련된 조항으로 제25조제4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과,
- 제26조제2항의 구매대행업자 등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구매를 대행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임
- 구매대행업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 제품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으로 국내 소비자의 개인 고유통관번호를 사용하여 수입하며 제품의 배송 역시 해외에서 소비자의 주소로 이루어짐
- 하지만, 일부 업자들의 경우 해외 현지 등에 재고를 보유해두는 사례들이 있는 바, 이들은 수입업자로 구매대행업자와는 구별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고유통관번호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국내 소비자 주소를 직배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매대행업의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구매대행업이 위의 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이는 불가함
- 해외 제품이 국내 KC인증을 획득하여 관련 안전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매대행업자들이 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 하나의 품목을 다수 수입해서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달리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품목을 소수 구매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각 품목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해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임
- 또한, 「전파법」 등에서 구매대행업의 의무를 면제시킨 국내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므로, 법적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기 관련 조항에서 구매대행업 삭제 필요
 - 「전파법」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금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함

3. 제품안전관리체계의 재설계

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소비자후생 감소 측면

-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안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와 검사 및 사후처분을 집행하지만(어린이제품 및 난연성 섬유),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실 상품성을 사업자가 강조(또는 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함
- 독일의 임의규정의 경우 강제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그 인증에는 소비자들의 선호가 뒷받침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인증항목 등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정부규제보다는 시장에 초점을 두어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함
- 제품안전규제라는 사회적 규제를 강화로 인하여 예견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규제부담비용이 높아져 영세·소상공인의 규제이행력 제고에 문제점 발생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서류보관의무 추가됨
-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수입대행업자, 구매대행업자, 대여업자 등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인증정보 게시의무 추가적으로 부담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규제의 목적과 그 수단의 적정성 다시 검토할 필요 있음
- 즉, 소비자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해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 체계 분리 여부 재검토

☐ 현행 전기용품생활안전법의 전부개정이유로 정부는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삼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들고 있음

- 하나의 법률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 경감
-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홈페이지에 제품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강화하려고 함

☐ 비교법적으로 볼 때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분리된 안전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전기용품안전법,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은 분리하여 안전관리규제를 하고 있음
- 미국 소비자안전개선법의 경우에도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제품 전체에 대하여 제3자 안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인증하는 외부시험연구소의 시험에 의하여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제품법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어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규제체계의 의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특성과 위해도 차이를 고려할 때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이라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통합된 관리법체 규제 적정성 재검토하여야 함

- 급변하는 기업환경 및 기술혁신 등을 고려할 때 사전적 품목규제방식은 안전관리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음
 - 제품안전규제라는 사회적 규제 강화로 인하여 자금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달리 공급자 적합성확인을 위한 자체 시험기관을 보유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규제부담비용이 높아져 규제이행력에 문제가 발생함
 -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규제보다는 시장에 초점을 두어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함
 - 어린이제품법에서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제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의무 부과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 있음
-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전적 관리규제를 계속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 생활용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문제가 될 수 있음

4. 사전규제 완화를 대비한 사적 책임 강화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사전적 규제와 위반시 과태료, 벌금 부과 등 사후적 규제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사전적 규제는 물질 및 제품의 위해성 정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 등 합리적 기준 설정이 어려움
 -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혁신 및 급속한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품목별 합리적 기준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규제공백 발생 가능
 - 사적 책임이 강화된 규제체계는 규제이행비용부담이 낮으며, 보험료 산정 및 면책기준 고려 등을 통한 자체 생활용품 안전관리의무 이행력 높일 수 있는 반면 사고 발생시 높은 배상금액으로 인한 제재 및 사회적 신용 저하로 인한 제품안전사고 억제 기능 높음
 -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보험, 기금 등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음
-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 특히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 원인자의 책임을 엄격히 부담하게 하고, 손해배상책임 등 그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제품안전사고 억제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임

〈표 5-13〉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관리제도 비교표

국가	관련규정	성격	인증	서류보관 의무	대상품목	규제대상	비고
미국	CPSLA	자율 (민간)	없음	없음	의류 및 신발	아릴아민, 알러지성염료,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어린이제품은 CPSC에서 기준준수를 의무 부과 및 CPC 제출의무 부과
EU	REACH규정	강제	없음	없음	가정용 섬유제품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다이메틸푸마레이 트, 니켈용출량	*민간자율제도(Oeko-T ex Standard 100) 병행
일본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관한 법률(후생성)	강제	없음	없음	유아용, 피부 직간접 접촉 섬유제품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수은화합물 등	기준 준수의무 부과 사후단속
중국	중국 표준화법 및 제품품질법/ GB	강제	없음	없음	유아용, 피부 직간접 접촉 섬유제품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 냄새, 견뢰도 등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사후단속으로 관리
한국	어린이제품법	강제	KC	○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 등	기준 준수, KC마크 표시, 서류보관 의무 부과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강제	KC	○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 준수, KC마크 표시, 서류보관 의무 부과

부 록 I



家庭用品品質表示法

家庭用品品質表示法 (昭和三十七年五月四日法律第四百号) 最終改正：平成二十三年一二月一四日法律第一二二号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家庭用品の品質に関する表示の適正化を図り、一般消費者の利益を保護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で「家庭用品」とは、次に掲げる商品をいう。 一 一般消費者が通常生活の用に供する繊維製品、合成樹脂加工品、電気機械器具及び雑貨工業品のうち、一般消費者がその購入に際し品質を識別する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り、かつ、その品質を識別することが特に必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 二 前号の政令で定める繊維製品の原料又は材料たる繊維製品のうち、需要者がその購入に際し品質を識別する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り、かつ、同号の政令で定める繊維製品の品質に関する表示の適正化を図るにはその品質を識別することが特に必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 2 この法律で「製造業者」とは、家庭用品の製造又は加工の事業を行う者をいい、「販売業者」とは、家庭用品の販売の事業を行う者をいい、「表示業者」とは、製造業者又は販売業者の委託を受けて家庭用品に次条第三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四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り告示された同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を表示する事業を行う者をいう。 (表示の標準) 第三条 内閣総理大臣は、家庭用品の品質に関する表示の適正化を図るため、家庭用品ごとに、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表示の標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1962년 5월 4일 법률 제104호) 최종개정：2011년 12월 14일 법률 제122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가정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일반소비자가 통상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섬유제품, 합성수지 제품, 전기 기계기구 및 잡화 공산품 중 일반소비자가 그 구입에 즈음하여 품질을 식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또한 그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2. 전호의 정령으로 정한 섬유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인 섬유제품 중 수요자가 구입에 즈음하여 품질을 식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또한 동호의 정령으로 정한 섬유제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함에는 그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 법률에서 "제조업자"는 가정용품의 제조 또는 가공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판매업자"는 가정용품 판매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표시업자"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정용품에 다음 조 제3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제1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동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표시 기준) 제3조 내각총리대신은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정용품별로 다음의 사항에 대해 표시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

ものとする。 一 成分、性能、用途、貯法その他品質に関し表示すべき事項 二 表示の方法その他前号に掲げる事項の表示に際して製造業者、販売業者又は表示業者が遵守すべき事項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表示の標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経済産業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内閣総理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表示の標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告示するものとする。 4 経済産業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表示の標準となるべき事項が定められることにより、家庭用品の生産又は流通の改善が図られると認め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に対して、当該事項の案を添えて、その策定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5 前三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定めた表示の標準となるべき事項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指示等) 第四条 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告示された同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以下「表示事項」という。)を表示せず、又は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告示された同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以下「遵守事項」という。)を遵守しない製造業者、販売業者又は表示業者(以下「違反業者」と総称する。)があ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又は経済産業大臣(違反業者が販売業者(卸売業者を除く。)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内閣総理大臣)は、当該違反業者に対して、表示事項を表示し、又は遵守事項を遵守すべき旨の指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次の各号に掲げる大臣は、単独で前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その指示の内容について、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大臣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一 内閣総理大臣 経済産業大臣 二 経済産業大臣 内閣総理大臣 3 内閣総理大臣は、第一項の指示に従わない違反	하는 것으로 한다. 1. 성분, 성능, 용도, 저장법 기타 품질에 관하여 표시해야 할 사항 2. 표시 방법 기타 전호에 열거한 사항의 표시에 있어서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표시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제산업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이 정해짐에 따라 가정용품의 생산 또는 유통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해 해당 사항의 안을 첨부하여 그 책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 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표시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지침 등) 제4조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동조 제1항제1호에 열거된 사항(이하 "표시 사항"이라 한다)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동조 제1항제2호에 열거된 사항(이하 "준수 사항"이라 한다)을 준수하지 않는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표시업자(이하 "위반업자"로 통칭한다.)가 있을 때에는 내각총리대신 또는 경제산업대신(위반업자가 판매업자(도매상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은 해당 위반업자에 대해 표시 사항을 표시하거나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열거된 대신은 단독으로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지시 내용에 대해서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내각총리대신 경제산업대신 2. 경제산업대신 내각총리대신 ③ 내각총리대신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위반

業者があるときは、その旨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4 経済産業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指示に従わない違反業者があ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に対し、前項の規定によりその旨を公表すること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表示に関する命令)

第五条 内閣総理大臣は、家庭用品の品質に関する表示の適正化を図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内閣府令で、製造業者、販売業者又は表示業者に対し、当該家庭用品に係る表示事項について表示をする場合には、当該表示事項に係る遵守事項に従つて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六条 内閣総理大臣は、生活必需品又はその原料若しくは材料たる家庭用品について、表示事項が表示されていないものが広く販売されており、これを放置しては一般消費者の利益を著しく害す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内閣府令で、製造業者又は販売業者に対し、当該家庭用品に係る表示事項を表示したものでなければ販売し、又は販売のために陳列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する場合には、当該表示事項に関し、現に前条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ている場合を除き、あわせて同条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条 内閣総理大臣は、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製造業者、販売業者又は表示業者によつては当該家庭用品に係る表示事項を適正に表示する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内閣府令で、製造業者又は販売業者に対し、当該家庭用品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が表示事項を表示したものでなければ販売し、又は販売のために陳列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업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한 경우에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 위반업자가 있을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공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표시에 관한 명령)

제5조 내각총리대신은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부령으로,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표시업자에 대해 해당 가정용품에 관한 표시 사항에 대해 표시할 경우에는 해당 표시 사항에 관한 준수 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내각총리대신은 생활필수품 또는 그 원료 또는 재료인 가정용품에 대한 표시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널리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부령으로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가정용품에 관한 표시 사항을 표시한 것이 아니면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해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시 사항에 관하여 실제로 전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울러 동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표시업자에 의해서는 해당 가정용품에 관한 표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부령으로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 해당 가정용품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이 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할 수 있다.

第八条 前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家庭用品ごとに、内閣総理大臣の認可を受けた者のした当該表示事項の表示は、同条の規定により内閣総理大臣がしたものと同みなす。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認可の申請をした者が、当該申請に係る家庭用品の品質を識別する能力があり、かつ、同項に規定する表示を公正に行う者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同項の認可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して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二 次項の規定により認可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三 法人であつて、その業務を行う役員のうちに前二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3 内閣総理大臣は、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者が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又は不正な手段により同項の認可を受けたときは、その認可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者は、当該認可に係る家庭用品の品質を識別するには、内閣府令で定める方法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者は、当該認可に係る家庭用品について表示事項を表示する場合には、当該表示事項に係る遵守事項に従つ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命令の変更又は取消し)

第九条 内閣総理大臣は、第五条から第七条まで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後において、その命令をする要件となつた事実が変更し、又は消滅したと認めるときは、その命令を変更し、又は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命令の要請)

第九条の二 経済産業大臣は、第五条、第六条第一項又は第七条の規定による命令が行われることにより、家庭用品の生産又は流通の改善が図られると認

제8조 전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가정용품별로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은 자가 행한 해당 표시 사항의 표시는 동조의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한 것으로 본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인가 신청을 한 자가 해당 신청에 관한 가정용품의 품질을 식별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동항에 규정한 표시를 공정하게 행할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항의 승인을 해야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에 전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부정한 수단에 의해 동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 인가에 관련된 가정용품의 품질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 인가에 관련된 가정용품에 대한 표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시 사항에 관한 준수 사항에 따라야 한다.

(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제9조 내각총리대신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후에 그 명령을 하는 요건이 된 사실이 변경되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명령 요청)

제9조의2 경제산업대신은 제5조,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 행해지는 것에 따라 가정용품의 생산 또는 유통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

め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に対し、当該命令をすること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内閣総理大臣又は経済産業大臣に対する申出) 第十条 何人も、家庭用品の品質に関する表示が適正に行われていないため一般消費者の利益が害され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又は経済産業大臣(当該家庭用品の品質に関する表示が販売業者(卸売業者を除く。)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内閣総理大臣。次項において同じ。)に対して、その旨を申し出て、適当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又は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出があつたときは、必要な調査を行い、その申出の内容が事実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三条から第七条までに規定する措置その他適当な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消費者委員会への諮問) 第十一条 内閣総理大臣は、第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五項の規定により表示の標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若しくは変更し、又は第五条から第七条まで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消費者委員会に諮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二条 削除 第十三条 削除 第十四条 削除 第十五条 削除 第十六条 削除 第十七条 削除 (手数料) 第十八条 第七条の規定による表示をすることを求めようとする者及び第八条第一項の認可を申請する者(内閣総理大臣に対して手続を行おうとする者に限る。)は、実費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額の手料を納めなければならない。 (報告及び立入検査)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해당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 또는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신청) 제10조 누구든지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일반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 또는 경제산업대신(해당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가 판매업자(도매업자를 제외한다)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 다음 항에서 같다)에 대해 그 취지를 신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 또는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된 조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위원회에의 자문) 제11조 내각총리대신은 제3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거나, 혹은 변경하거나, 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비자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수수료) 제18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는 것을 요구하려는 자 및 제18조제1항의 인가를 신청하는 자(내각총리대신에 대해 절차를 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보고 및 출입검사)

第十九条 内閣総理大臣又は経済産業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製造業者、販売業者（卸売業者に限る。）若しくは表示業者から報告を徴し、又はその職員に、これらの者の工場、事業場、店舗、営業所、事務所若しくは倉庫に立ち入り、家庭用品、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販売業者（卸売業者を除く。）から報告を徴し、又はその職員に、これらの者の工場、事業場、店舗、営業所、事務所若しくは倉庫に立ち入り、家庭用品、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人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5 次の各号に掲げる大臣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権限を単独で行使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結果を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大臣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一 内閣総理大臣経済産業大臣 二 経済産業大臣内閣総理大臣 （独立行政法人製品評価技術基盤機構による立入検査） 第二十条 経済産業大臣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職員に立入検査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独立行政法人製品評価技術基盤機構（以下「機構」という。）に、同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2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機構に立入検査を行わせる場合には、機構に対し、当該立入検査の場所その他必要な事項を示してこれを実施すべきことを指示するものとする。 3 機構は、前項の指示に従つて第一項に規定する立入検査を行つたときは、その結果を経済産業大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9조 내각총리대신 또는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판매업자(도매업자에 한한다), 또는 표시업자로부터 보고를 징수하거나, 그 직원에게 이러한 자의 공장, 사업장, 상점, 영업소, 사무소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가정용품,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자(도매업자를 제외한다)로부터 보고를 징수하거나, 그 직원에게 이러한 자의 공장, 사업장, 상점, 영업소, 사무소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가정용품,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⑤ 다음 각 호의 대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한 때에는 신속히 그 결과를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대신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1. 내각총리대신 경제산업대신 2. 경제산업대신 내각총리대신 (독립행정법인 제품 평가 기술 기반기구에 의한 출입검사) 제20조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원에게 출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독립행정법인 제품 평가 기술 기반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동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 출입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구에 대하여 해당 출입검사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나타내 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기구는 전항의 지시에 따라 제1항에 규정하는 출입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제산업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経済産業大臣は、第一項に規定する立入検査について前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受け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内容を内閣総理大臣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5 第一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をする機構の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人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機構に対する命令) 第二十一条 経済産業大臣は、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立入検査の業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対し、当該業務に関し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内閣総理大臣への資料提供等) 第二十二条 内閣総理大臣は、この法律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経済産業大臣に対し、資料の提供、説明その他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権限の委任) 第二十三条 内閣総理大臣は、この法律による権限(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を消費者庁長官に委任する。 2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経済産業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済産業局長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都道府県又は市が処理する事務) 第二十四条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消費者庁長官に委任された権限及びこの法律に規定する経済産業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務の一部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知事が行うことと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が行うこととされた事務の一部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長が行うこととすることができる。 (罰則) 第二十五条 第五条から第七条までの規定による命令又は第八条第五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二十万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입검사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기구의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기구에 대한 명령) 제21조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업무의 적절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에의 자료 제공 등) 제22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산업대신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23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에 따른 권한(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을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국장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도도부현 또는 시가 처리하는 사무) 제24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된 권한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것으로 된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벌칙) 제25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만 엔 이

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二十六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五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八条第四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二 第十九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者 三 第十九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又は忌避した者 第二十七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前二条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各本条の刑を科する。 第二十八条 第二十一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場合に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機構の役員は、二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전 2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 제28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기관의 임원은 2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 록 Ⅱ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昭和四十八年六月六日法律第三十一号)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1973년 6월 6일 법률 제31호)
最終改正：平成二六年六月一三日法律第六九号	최종개정：2016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第一章總則(第一条・第二条)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第二章特定製品	제2장 특정제품
第一節基準並びに販売及び表示の制限(第三条―第五条)	제1절 기준 및 판매 및 표시 제한(제3조-제5조)
第二節事業の届出等(第六条―第十五条)	제2절 사업의 신고 등(제6조-제15조)
第三節検査機関の登録(第十六条―第十九条)	제3절 검사기관 등록(제16조-제19조)
第四節国内登録検査機関(第二十条―第二十九条)	제4절 국내 등록 검사기관(제20조-제29조)
第五節外国登録検査機関(第三十条・第三十一条)	제5절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제30조·제31조)
第六節危害防止命令(第三十二条)	제6절 위해 방지 지침(제32조)
第二章の二特定保守製品等	제2장외2 특정보수제품 등
第一節特定保守製品の点検その他の保守に関する情報の提供等(第三十二条の二―第三十二条の十七)	제1절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타 보수에 관한 정보 제공 등(제32조의2-제32조의17)
第二節特定保守製品の点検その他の保守の体制の整備(第三十二条の十八―第三十二条の二十)	제2절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타 보수 체제의 정비(제32조의18-제32조의20)
第三節経年劣化に関する情報の収集及び提供(第三十二条の二十一・第三十二条の二十二)	제3절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제32조의21·제32조의22)
第三章製品事故等に関する措置	제3장 제품사고 등에 관한 조치
第一節情報の収集及び提供の責務(第三十三条・第三十四条)	제1절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책임(제33조·제34조)
第二節重大製品事故の報告等(第三十五条―第三十七条)	제2절 중대한 제품사고보고 등(제35조-제37조)
第三節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第三十八条・第三十九条)	제3절 위험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38조·제39조)
第四章雜則(第四十条―第五十七条)	제4장 잡칙(제40조-제57조)
第五章罰則(第五十八条―第六十二条)	제5장 벌칙(제58조-제62조)
附則	부칙
第一章總則	제1장 총칙
(目的)	(목적)
第一条 この法律は、消費生活用製品による一般消	제1조 이 법률은 소비생활용제품에 따른 일반소비

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危害の防止を図るため、特定製品の製造及び販売を規制するとともに、特定保守製品の適切な保守を促進し、併せて製品事故に関する情報の収集及び提供等の措置を講じ、もって一般消費者の利益を保護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消費生活用製品」とは、主として一般消費者の生活の用に供される製品(別表に掲げるものを除く。)をいう。 2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製品」とは、消費生活用製品のうち、構造、材質、使用状況等からみて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して特に危害を及ぼすおそれが多いと認められる製品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3 この法律において「特別特定製品」とは、そ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のうちに、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危害の発生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品質の確保が十分でない者がいると認められる特定製品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4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保守製品」とは、消費生活用製品のうち、長期間の使用に伴い生ずる劣化(以下「経年劣化」という。)により安全上支障が生じ、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して特に重大な危害を及ぼすおそれが多いと認められる製品であつて、使用状況等からみてその適切な保守を促進することが適当な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5 この法律において「製品事故」とは、消費生活用製品の使用に伴い生じた事故のうち、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であつて、消費生活用製品の欠陥によつて生じたものでないことが明らかな事故以外のもの(他の法律の規定によつて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ことができると認められる事故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をいう。 一 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危害が発生した事故 二 消費生活用製品が滅失し、又はき損した事故で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과 동시에, 특정보수제품의 적절한 보수를 촉진하고, 아울러 제품사고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로써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소비생활용품"이란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별표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특정제품"이란 소비생활용품 중 구조, 재질, 사용 상황 등으로 보아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특히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특별특정제품"이란 그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 중에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제품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률에서 "특정보수제품"이란 소비생활용품 중 장기간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열화(이하 "경년열화"라 한다)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생기고,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특히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사용 상황 등으로 보아 그 적절한 보수를 촉진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률에서 "제품사고"란 소비생활용품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사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비생활용품의 결함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사고 이외의 것(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고 2. 소비생활용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사고로서

あつて、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危害が発生するおそれのあるもの 6 この法律において「重大製品事故」とは、製品事故のうち、発生し、又は発生するおそれがある危害が重大であるものとして、当該危害の内容又は事故の態様に関し政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 第二章 特定製品 第一節 基準並びに販売及び表示の制限 (基準) 第三条 主務大臣は、特定製品について、主務省令で、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危害の発生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技術上の基準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特定製品について、政令で定める他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危害の発生を防止するための規格又は基準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規格又は基準に相当する部分以外の部分について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ものとする。 2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技術上の基準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内閣総理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販売の制限) 第四条 特定製品の製造、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は、第十三条の規定により表示が付されているものでなければ、特定製品を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陳列しては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者が次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適用しない。 一 輸出用の特定製品を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陳列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たとき。 二 輸出用以外の特定の用途に供する特定製品を販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⑥ 이 법률에서 "중대한 제품사고"란 제품사고 중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가 중대한 것으로서 해당 피해의 내용 또는 사고의 양태에 관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특정제품 제1절 기준 및 판매 및 표시 제한 (기준) 제3조 주무대신은 특정제품에 대해 주무성령으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특정제품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격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격 또는 기준에 상당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내각총리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판매 제한) 제4조 특정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행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따라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특정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 특정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한 때. 2. 수출용 이외의 특정 용도로 제공하는 특정제품

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陳列する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の承認を受けたとき。 三 第十一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届出又は同項第二号の承認に係る特定製品を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陳列するとき。 (表示の制限) 第五条 次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以下「届出事業者」という。)が同条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型式(以下単に「届出に係る型式」という。)の特定製品について第十三条の規定により表示を付する場合でなければ、何人も、特定製品に同条の主務省令で定める方式による表示又はこれと紛らわしい表示を付してはならない。 第二節事業の届出等 (事業の届出) 第六条 特定製品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は、主務省令で定める特定製品の区分(以下単に「特定製品の区分」という。)に従い、次の事項を主務大臣に届け出ることができる。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二 主務省令で定める特定製品の型式の区分 三 当該特定製品を製造する工場又は事業場の名称及び所在地(特定製品の輸入の事業を行う者にあつては、当該特定製品の製造事業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四 当該特定製品の欠陥により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ついて損害が生じ、その被害者に対してその損害の賠償を行う場合に備えてとるべき措置 (承継) 第七条 届出事業者が当該届出に係る事業の全部を譲り渡し、又は届出事業者について相続、合併若しくは分割(当該届出に係る事業の全部を承継させるものに限る。)があつたときは、その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た者又は相続人(相続人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全員の同意により事業を承継すべ	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 3.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동항 제2호의 승인에 관한 특정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때. (표시 제한) 제5조 다음 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업자"라 한다)가 동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형식(이하 단순히 "신고와 관련된 형식"이라 한다)의 특정제품에 대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특정제품에 동조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제2절 사업의 신고 등 (사업의 신고) 제6조 특정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특정제품의 구분(이하 단순히 "특정제품의 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특정제품 형식의 구분 3. 해당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특정제품의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에 있어서는 해당 특정제품의 제조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해당 특정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그 피해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취해야 할 조치 (승계) 제7조 신고사업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고사업자에 대해 상속, 합병 또는 분할(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 또는 상속인(상속인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사업을 승계할 상

き相続人を選定したときは、その者)、合併後存続する法人若しくは合併により設立した法人若しくは分割によりその事業の全部を承継した法人は、その届出事業者の地位を承継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届出事業者の地位を承継した者は、遅滞なく、その事実を証する書面を添えて、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変更の届出) 第八条 届出事業者は、第六条各号の事項に変更があつ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変更が主務省令で定める軽微なもの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廃止の届出) 第九条 届出事業者は、当該届出に係る事業を廃止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届出事項に係る情報の提供) 第十条 何人も、主務大臣に対し、第六条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係る情報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基準適合義務等) 第十一条 届出事業者は、届出に係る型式の特定製品を製造し、又は輸入する場合においては、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上の基準(以下「技術基準」という。)に適合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輸出用の特定製品を製造し、又は輸入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たとき。 二 輸出用以外の特定の用途に供する特定製品を製造し、又は輸入する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の承認を受けたとき。 三 試験用に製造し、又は輸入するとき。 2 届出事業者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前項の特定製品(同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製造され、又は輸入	속인을 선정했을 때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그 신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신고) 제8조 신고사업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지의 신고) 제9조 신고사업자는 해당 신고에 관한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0조 누구든지 주무장관에 대해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적합 의무 등) 제11조 신고사업자는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특정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술상의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용 특정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한 경우. 2. 수출용 이외의 특정 용도로 제공하는 특정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 3. 시험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② 신고사업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전항의 특정제품(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

され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検査を行い、その検査記録を作成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届出事業者は、第六条第四号の措置が主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特別特定製品の適合性検査) 第十二条 届出事業者は、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前条第一項の特定製品 (同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製造され、又は輸入されるものを除く。) が特別特定製品である場合には、当該特別特定製品を販売する時までに、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掲げるものについて、主務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の次項の規定による検査 (以下「適合性検査」という。) を受け、かつ、同項の証明書の交付を受け、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特別特定製品と同一の型式に属する特別特定製品について既に第二号に係る同項の証明書の交付を受けこれを保存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当該証明書の交付を受けた日から起算して特別特定製品ごとに政令で定める期間を経過していないとき又は同項の証明書と同等な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保存してい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当該特別特定製品 二 試験用の特別特定製品及び当該特別特定製品に係る届出事業者の工場又は事業場における検査設備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2 前項の登録を受けた者は、同項各号に掲げるものについて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検査を行い、これらが技術基準又は主務省令で定める同項第二号の検査設備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関する基準に適合している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記載した証明書を当該届出事業者に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表示) 第十三条 届出事業者は、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特定製品の技術基準に対する適合性について、第十一条第二項 (特別特定製品の場合にあつては、同項及び前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義務を履行したときは、当該特定製品に主務省令で定める方式による表	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업자는 제6조제4호의 조치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특정제품의 적합성 검사) 제12조 신고사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전조 제1항의 특정제품(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을 제외한다)이 특별특정제품일 경우 해당 특별특정제품을 판매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열거한 것에 대해서, 주무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이하 "적합성 검사"라 한다)을 받고, 동항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특정제품과 동일한 형식에 속하는 특별특정제품에 대해 이미 제2호에 관한 동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이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특별특정제품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때 또는 동항의 인증서와 동등한 것으로서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별특정제품 2. 시험을 위한 특별특정제품 및 해당 특별특정제품에 관한 신고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검사 설비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전항의 등록을 받은 자는 동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이것이 기술 기준 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동항 제2호의 검사 설비 기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기재한 증명서를 해당 신고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표시) 제13조 신고사업자는 그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특정제품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제11조 제2항(특별특정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항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특정제품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示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改善命令) 第十四条 主務大臣は、次の場合には、届出事業者に対し、特定製品の製造、輸入若しくは検査の方法その他の業務の方法の改善又は第六条第四号の措置の改善に関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届出事業者が第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き。 二 第六条第四号の措置が第十一条第三項の主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とき。 (表示の禁止) 第十五条 主務大臣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届出事業者に対し、一年以内の期間を定めて当該各号に定める届出に係る型式の特定製品に第十三条の規定により表示を付す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届出事業者が製造し、又は輸入した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特定製品(第十一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製造し、又は輸入したものを除く。)が技術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危害の発生を防止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き。当該技術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特定製品の属する届出に係る型式 二 届出事業者が製造し、又は輸入した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特定製品について、第十一条第二項又は第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当該違反に係る特定製品の属する届出に係る型式 三 届出事業者が製造し、又は輸入した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特定製品について、前条第一号の場合における同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当該違反に係る特定製品の属する届出に係る型式 2 主務大臣は、届出事業者が前条第二号の場合における同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は、当該届出事業者に対し、一年以内の期間を定めてその届出に係る特定製品の区分に属する届出に係る型式の特定製品に第十三条の規定により表示を付するこ	표시를 붙일 수 있다. (개선 명령) 제14조 주무대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사업자에 대해 특정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검사 방법 기타 업무 방법의 개선 또는 제6조제4호 조치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신고사업자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제6조제4호의조치가 제11조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표시의 금지) 제15조 주무대신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경우에는 신고사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특정제품에 제13조 규정에 따라 표시를 붙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 신고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그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특정제품(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을 제외한다)이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제품이 속하는 신고에 관한 형식 2. 신고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그 신고에 관한 형식의 특정제품에 대해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해당 위반에 관한 특정제품이 속하는 신고에 관한 형식 3. 신고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그 신고에 관한 형식의 특정제품에 대해 전조 제1호의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해당 위반에 관한 특정제품이 속하는 신고에 관한 형식 ② 주무대신은 신고사업자가 전조 제2호의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 신고사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에 관한 특정제품의 구분에 속하는 신고에 관한 형식의 특정제품에 제13조 규정에 따라 표시를

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節 検査機関の登録 (登録) 第十六条 第十二条第一項の登録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主務省令で定める特別特定製品の区分(以下単に「特別特定製品の区分」という。)ごとに、適合性検査を行おうとする者の申請により行う。 2 主務大臣(第五十四条第一項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の規定により、経済産業大臣が主務大臣となる場合に限る。第二十九条第二項、第三十一条第三項、第三十二条の二十一第二項、第三十六条第四項、第四十一条第五項から第七項まで、第四十三条及び第四十九条において同じ。)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独立行政法人製品評価技術基盤機構(以下「機構」という。)に、当該申請が第十八条第一項各号に適合し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必要な調査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欠格条項) 第十七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第十二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二 第二十七条又は第三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三 法人であつて、その業務を行う役員のうちに前二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登録の基準) 第十八条 主務大臣は、第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申請した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登録申請者」という。)が次に掲げる要件のすべてに適合しているときは、その登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3절 검사기관의 등록 (등록) 제16조 제12조제1항의 등록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특별특정제품의 구분(이하 단순히 「특별특정제품의 구분」이라 한다.)에 대해 적합성 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② 주무대신(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이 주무대신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1제2항, 제36조제4항, 제41조제5항에서 제7항까지, 제43조 및 제49에서 같다)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독립행정법인 제품 평가 기술 기반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해당 신청이 제18조제1항 각 호에 적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결격조항) 제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는 것이 없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에 전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등록 기준) 제18조 주무대신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이하 이 항에서 "가입 신청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필요한

この場合において、登録に関して必要な手続は、主務省令で定める。 一 国際標準化機構及び国際電気標準会議が定めた製品の認証を行う機関に関す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こと。 二 登録申請者が、第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適合性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される特別特定製品を製造し、又は輸入する届出事業者（以下この号及び第二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受検事業者」という。）に支配されているものとし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でないこと。 イ登録申請者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受検事業者がその親法人（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第八百七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親法人をいう。）であること。 ロ登録申請者の役員（持分会社（会社法第五百七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持分会社をいう。）にあって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に占める受検事業者の役員又は職員（過去二年間に当該受検事業者の役員又は職員であつた者を含む。）の割合が二分の一を超えていること。 ハ登録申請者（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権を有する役員）が、受検事業者の役員又は職員（過去二年間に当該受検事業者の役員又は職員であつた者を含む。）であること。 2 第十二条第一項の登録は、検査機関登録簿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てするものとする。 一 登録年月日及び登録番号 二 登録を受けた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三 登録を受けた者が適合性検査を行う特別特定製品の区分 四 登録を受けた者が適合性検査を行う事業所の名称及び所在地 （登録の更新） 第十九条 第十二条第一項の登録は、三年を下らない政令で定める期間ごとにその更新を受けなければ、その期間の経過によつて、その効力を失う。 2 前三条の規定は、前項の登録の更新に準用する。	절차는 주무성령으로 정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 표준 회의가 정한 제품의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2. 등록 신청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별특정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신고사업자(이하 이 호 및 제24조 제2항에서 "수검 사업자"라 한다)에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 가. 등록 신청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수검 사업자가 그 모법인(회사법 (2005년 법률 제86호) 제 879조제1항에 규정하는 모법인을 말한다)인 것. 나. 등록 신청자의 임원(지분회사(회사법 제57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분회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에서 차지하는 수검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간 해당 수검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 다. 등록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권을 가진 임원)가 수검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간 해당 수검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인 것. ② 제12조제1항의 등록은 검사기관 등록부에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2. 등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3. 등록을 받은 자가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특별특정제품의 구분 4. 등록을 받은 자가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록 갱신） 제19조 제12조제1항의 등록은 3년을 밑돌지 않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록의 갱신에 준용한다.

第四節国内登録検査機関 (適合性検査の義務) 第二十条 第十二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者(国内にある事業所において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につき、その登録を受けた者に限る。以下「国内登録検査機関」という。)は、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を求められ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遅滞なく、適合性検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内登録検査機関は、公正に、かつ、技術基準に適合する方法により適合性検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所の変更の届出) 第二十一条 国内登録検査機関は、適合性検査を行う事業所の所在地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変更しようとする日の二週間前までに、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業務規程) 第二十二条 国内登録検査機関は、適合性検査の業務に関する規程(以下「業務規程」という。)を定め、適合性検査の業務の開始前に、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業務規程には、適合性検査の実施方法、適合性検査に関する料金の算定方法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定め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業務の休廃止の届出) 第二十三条 国内登録検査機関は、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休止し、又は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財務諸表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第二十四条 国内登録検査機関は、毎事業年度経過後三月以内に、その事業年度の財産目録、貸借対照表及び損益計算書又は収支計算書並びに事業報告書(これらのものが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	제4절 국내 등록 검사기관 (적합성 검사 의무) 제20조 제12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국내에 있는 사업소에서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 그 등록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라 한다)는 적합성 검사를 할 것을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합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내 등록 검사기관은 공정하고, 기술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적합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변경 신고) 제21조 국내 등록 검사기관은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주일 전까지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 규정) 제22조 국내 등록 검사기관은 적합성 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 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적합성 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업무 규정에는 적합성 검사의 실시 방법, 적합성 검사에 관한 요금의 산정 방법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해두어야 한다. (업무의 휴폐지의 신고) 제23조 국내 등록 검사기관은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제24조 국내 등록 검사기관은 매 사업 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그 사업 연도의 재산 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및 사업보고서(이러한 것이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的方式その他の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で作成され、又は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の作成が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を含む。次項及び第六十一条第二号において「財務諸表等」という。)を作成し、五年間事業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受検事業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は、国内登録検査機関の業務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の請求をするには、国内登録検査機関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財務諸表等が書面をもつ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前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請求

三 財務諸表等が電磁的記録をもつ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四 前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その他の情報通信の技術を利用する方法をいう。第三十二条の十二第二項において同じ。)であつ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当該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適合命令)

第二十五条 主務大臣は、国内登録検査機関が第十八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適合しなくなつたと認めるときは、その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これらの規定に適合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改善命令)

第二十六条 主務大臣は、国内登録検査機関が第二十条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適合性検査を行うべきこと又は適合性検査の方法その他の業務の方法の改善に関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작성되거나 그 작성에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다음 항 및 제61조제2호에서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5년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검 사업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국내 등록 검사기관의 업무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등이 서면으로서 작성되는 때에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전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3. 재무제표 등이 전자적 기록으로서 작성된 때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전자 정보 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기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2조의12 제2항에서 같다)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제공의 청구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적합 명령)

제25조 주무대신은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국내 등록 검사기관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선 명령)

제26조 주무대신은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국내 등록 검사기관에 대하여 적합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또는 적합성 검사 방법 기타 업무 방법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登録の取消し等) 第二十七条 主務大臣は、国内登録検査機関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登録を取り消し、又は期間を定めて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第十七条第一号又は第三号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 二 第二十条、第二十一条、第二十二条第一項、第二十三条、第二十四条第一項又は次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三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第二十四条第二項各号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んだとき。 四 前二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 五 不正の手段により第十二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とき。 (帳簿の記載) 第二十八条 国内登録検査機関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帳簿を備え、適合性検査に関し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主務大臣による適合性検査業務実施等) 第二十九条 主務大臣は、第十二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る者がいないとき、第二十三条の規定による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休止又は廃止の届出があつたとき、第二十七条の規定により同項の登録を取り消し、又は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とき、国内登録検査機関が天災その他の事由により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実施することが困難となつたときその他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自ら行う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当該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3 主務大臣が前二項の規定により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自ら行い、又は機構に行わせる場合における適合性検査の業務の引継ぎその他	(등록의 취소 등) 제27조 주무대신은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 한 때. 4. 전 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제12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때. (장부의 기재) 제28조 국내 등록 검사기관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적합성 검사에 관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주무대신 의한 적합성 검사 업무 실시 등) 제29조 주무대신은 제12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닌 때, 제23조 규정에 따른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가 있는 때, 제27조 규정에 따라 동항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국내 등록 검사기관에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했을 때,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해당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이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실시 또는 기구에 실시하게 하는 경우의 적합성 검사의 업무 인

の必要な事項については、主務省令で定める。 第五節 外国登録検査機関 (適合性検査の義務等) 第三十条 第十二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者(外国にある事業所において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につき、その登録を受けた者に限る。以下「外国登録検査機関」という。)は、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を求められ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遅滞なく、適合性検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二十条第二項、第二十一条から第二十六条まで及び第二十八条の規定は、外国登録検査機関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二十五条及び第二十六条中「命ずる」とあるのは、「請求す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登録の取消し等) 第三十一条 主務大臣は、外国登録検査機関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一 第十七条第一号又は第三号に該当するに至ったとき。 二 前条第一項の規定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条第二項、第二十一条、第二十二条第一項、第二十三条、第二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十八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三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前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四条第二項各号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んだとき。 四 前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五条又は第二十六条の規定による請求に応じなかつたとき。 五 不正の手段により第十二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とき。 六 主務大臣が、外国登録検査機関が前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認めて、期間を定めて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を請求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請求に応じなかつたとき。 七 主務大臣が必要があると認めて外国登録検査機関に対しその業務に関し報告を求めた場合におい	수인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무성령에서 정한다. 제5절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 (적합성 검사 의무 등) 제30조 제12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외국에 있는 사업소에서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 그 등록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이라 한다)는 적합성 검사를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합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 규정은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및 제26조 중 “명한다”는 “청구한다”로 본다.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 주무대신은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전조 제1항의 규정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또는 제28조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거부한 때. 4. 전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제12조제1항의 등록을 받았을 때. 6. 주무대신이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이 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청구한 경우에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주무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

て、その報告がされず、又は虚偽の報告がされたとき。 八 主務大臣が必要があると認めてその職員に外国登録検査機関の事務所又は事業所において第四十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事項についての検査をさせようと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検査が拒まれ、妨げられ、又は忌避されたとき。 九 次項の規定による費用の負担をしないとき。 2 前項第八号の検査に要する費用(政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は、当該検査を受ける外国登録検査機関の負担とする。 3 主務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第一項第八号の規定による検査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4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機構に検査を行わせる場合には、機構に対し、当該検査の場所その他必要な事項を示してこれを実施すべきことを指示するものとする。 5 機構は、前項の指示に従つて第三項に規定する検査を行つたときは、その結果を主務大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한 경우에 그 보고가 이뤄지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가 이뤄진 때. 8. 주무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직원에게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서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 그 검사가 거절, 방해 또는 기피된 때. 9.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않을 때. ② 전항 제8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은 해당 검사를 받는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③ 주무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구에 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 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구에 대하여 해당 검사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나타내 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⑤ 기구는 전항의 지시 사항에 따라 제3항에 규정한 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주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六節危害防止命令 第三十二条 主務大臣は、次の各号に掲げる事由により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ついて危害が発生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おいて、当該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各号に規定する者に対し、販売した当該特定製品の回収を図ることその他当該特定製品による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特定製品の製造、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が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特定製品を販売したこと。 二 届出事業者が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特定製品で技術基準に適合しないものを製造し、輸入し、又は販売したこと(第十一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	제6절 위해 방지 명령 제32조 주무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각호에 규정하는 자에게 판매한 해당 특정제품의 회수를 도모하는 기타 해당 특정제품에 의한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제품을 판매한 것. 2. 신고사업자가 그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특정제품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것(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用を受けて製造し、又は輸入した場合を除く。)。 第二章の二特定保守製品等 第一節特定保守製品の点検その他の保守に関する情報の提供等 (事業の届出) 第三十二条の二 特定保守製品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以下「特定製造事業者等」という。)は、事業開始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次の事項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二 主務省令で定める特定保守製品の区分及び主務省令で定める特定保守製品の型式の区分 三 当該特定保守製品を製造する工場又は事業場の名称及び所在地(特定保守製品の輸入の事業を行う者にあつては、当該特定保守製品の製造事業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2 第七条から第九条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に準用する。 (点検期間等の設定) 第三十二条の三 特定製造事業者等は、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特定保守製品について、主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つて、次の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輸出用の特定保守製品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標準的な使用条件の下で使用した場合に安全上支障がなく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標準的な期間として設計上設定される期間(次号及び次条において「設計標準使用期間」という。) 二 設計標準使用期間の経過に伴い必要となる経年劣化による危害の発生を防止するための点検(以下この節において単に「点検」という。)を行うべき期間(以下「点検期間」という。) (製品への表示等) 第三十二条の四 特定製造事業者等は、その製造又	받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장의2 특정보수제품 등 제1절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타 보수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사업의 신고) 제32조의2 특정보수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이하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특정보수제품의 구분 및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특정보수제품의 형식의 구분 3. 해당 특정보수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특정보수제품의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에 있어서는 해당 특정보수제품의 제조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 준용한다. (점검 기간 등의 설정) 제32조의3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특정보수제품에 대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특정보수제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표준적인 사용조건 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에 지장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기간으로 설계 설정된 기간(다음 호 및 다음 조에서 "설계 표준 사용 기간"이라 한다) 2. 설계 표준 사용 기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경년열화에 따른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하 이 절에서 단순히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할 기간(이하 "점검 기간"이라 한다) (제품에의 표시 등) 제32조의4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그 제조 또는

は輸入に係る特定保守製品を販売する時まで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特定保守製品に次の事項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特定製造事業者等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二 製造年月 三 設計標準使用期間 四 点検期間の始期及び終期 五 点検その他の保守に関する問合せを受けるための連絡先 六 特定保守製品を特定するに足りる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2 特定製造事業者等は、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特定保守製品を販売する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特定保守製品に次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設計標準使用期間の算定の根拠 二 点検を行う事業所の配置その他の特定保守製品の点検を実施する体制の整備に関する事項 三 特定保守製品の点検の結果必要となると見込まれる特定保守製品の整備に要する部品の保有期間 四 その他特定保守製品の点検その他の保守に関し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3 特定製造事業者等は、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特定保守製品を販売する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特定保守製品に、当該特定保守製品の所有者（所有者となるべき者を含む。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がそ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当該特定保守製品の所在場所並びに当該特定保守製品を特定するに足りる事項（以下「所有者情報」という。）を当該特定製造事業者等に提供するための書面（以下「所有者票」という。）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所有者票には、第三十二条の九第一項各号の事項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が記載さ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各項の規定は、特定製造事業者等が輸出用の特定保守製品を販売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수입에 관한 특정보수제품을 판매할 때까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보수제품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제조연월 3. 설계 표준 사용 기간 4. 점검 기간 시기 및 종기 5. 점검 기타 보수에 관한 문의를 받기 위한 연락처 6. 특정보수제품을 특정함에 족한 사항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특정보수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보수제품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 표준 사용 기간 산정의 근거 2.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소의 배치 기타 특정보수제품 점검을 실시하는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결과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보수제품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보유 기간 4. 기타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타 보수에 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특정보수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보수제품에 해당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소유자가 될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해당 특정보수제품의 소재 장소 및 해당 특정보수제품을 특정함에 족한 사항(이하 "소유자 정보"라 한다)을 해당 특정 제조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면(이하 "소유자 표"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표에는 제32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⑤ 전 각 항의 규정은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이 수출용 특정보수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引渡時の説明等) 第三十二条の五 特定保守製品を、売買その他の取引により、又は特定保守製品以外の物に関する取引に付随して取得しようとする者(特定保守製品を再度譲渡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取得しようとする者及び主務省令で定める者を除く。第三十二条の八第三項において「取得者」という。) に対し、当該取引の相手方たる事業者(以下「特定保守製品取引事業者」という。) は、当該特定保守製品の引渡しに際し、次の事項について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特定保守製品の点検期間が経過している場合その他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特定保守製品は、経年劣化により危害を及ぼすおそれが多く、適切な保守がなされる必要がある旨 二 当該特定保守製品に係る特定製造事業者等に対して所有者情報を提供した場合には第三十二条の十二第一項に規定する点検通知事項の通知がある旨 三 その他特定保守製品の点検その他の保守に関し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2 特定保守製品取引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説明するに当たっては、特定保守製品に所有者票が添付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旨を併せて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勧告及び公表) 第三十二条の六 主務大臣は、特定保守製品取引事業者が前条の規定を遵守し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当該特定保守製品取引事業者に対し、同条の規定により説明を行うべきこと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勧告を受けた者がその勧告に従わなかっ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関連事業者の責務) 第三十二条の七 特定保守製品に関する取引の仲介、特定保守製品の修理又は設置工事その他の特定保守製品に関連する事業を行う者は、特定保守製品の所有者に対して、第三十二条の五第一項各号の事項に係る情報が円滑に提供され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인도 시의 설명 등) 제32조의5 특정보수제품을 매매 기타 거래에 의하거나, 또는 특정보수제품 이외의 물건에 관한 거래에 부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자(특정보수제품을 재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자 및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2조의8제3항에서 "취득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상대방인 사업자(이하 "특정보수제품 거래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특정보수제품의 인도에 즈음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보수제품은 경년열화에 따라 위해를 미칠 우려가 많고,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 2. 해당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특정 제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소유자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32조의12제1항에 규정하는 점검통지사항의 통지가 있다는 것 3. 기타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타 보수에 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정보수제품 거래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설명함에 있어서 특정보수제품 소유자 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아울러 설명해야 한다. (권고 및 공표) 제32조의6 주무대신은 특정보수제품 거래 사업자가 전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보수제품 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관련 사업자의 책무) 제32조의7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거래의 중개, 특정보수제품의 수리 또는 설치 공사 기타 특정보수제품 관련 사업을 행하는 자는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에게 제32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所有者情報の提供) 第三十二条の八 特定保守製品の所有者は、当該特定保守製品に係る特定製造事業者等に対して、所有者票の送付その他の方法により、所有者情報を提供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当該特定保守製品の点検期間が経過してい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所有者情報に変更を生じたときも、同項と同様とする。 3 特定保守製品取引事業者は、取得者の承諾を得て当該取得者に代わつて所有者票を送付する等の方法により、当該取得者による特定製造事業者等に対する所有者情報の提供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所有者情報の利用目的等の公表) 第三十二条の九 特定製造事業者等は、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特定保守製品(その者が、他の特定製造事業者等からその特定保守製品に係る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た者又は他の特定製造事業者等について相続、合併若しくは分割(その特定保守製品に係る事業の全部を承継す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条及び第三十二条の十一第二項において同じ。))があつた場合における相続人(相続人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全員の同意により事業を承継すべき相続人を選定したときは、その者)、合併後存続する法人若しく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若しくは分割によりその事業の全部を承継した法人(次項において「承継人」という。)であるときは、その事業の全部を譲り渡した者又は被相続人、合併により消滅した法人若しくは分割をした法人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特定保守製品を含む。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に係る所有者情報を取得するに当たっては、あらかじめ、次の事項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所有者情報の利用の目的(以下「利用目的」という。) 二 所有者情報の提供を受けるための連絡先 2 特定製造事業者等が承継人である場合であつてその事業の全部の譲受け又は相続、合併若しくは分	(소유자 정보의 제공) 제32조의8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는 해당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특정 제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소유자 표의 송부 기타 방법으로 소유자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해당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유자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항과 같다. ③ 특정보수제품 거래 사업자는 취득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취득자에 대신하여 소유자 표를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취득자에 의한 특정 제조 사업자 등에 대한 소유자 정보의 제공에 협력해야 한다. (소유자 정보의 이용 목적 등의 공표) 제32조의9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특정보수제품(그 자가 다른 특정 제조 사업자 등으로부터 그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 또는 다른 특정 제조 사업자 등 대해 상속, 합병 또는 분할(그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승계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11제2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상속인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사업을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했을 때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다음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자 또는 피상속인, 합병에 따라 소멸된 법인 또는 분할 법인의 제조 또는 수입에 따른 특정보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자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먼저 다음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자 정보의 이용 목적(이하 "이용 목적"이라 한다) 2. 소유자 정보의 제공을 받기 위한 연락처 ② 특정 제조 사업자가 승계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양수 또는 상속, 합병 또는

割に伴つて所有者情報を取得したときは、当該特定製造事業者等は、速やかに、利用目的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特定製造事業者等は、前二項の規定により公表した事項を変更した場合には、遅滞なく、その変更した事項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利用目的の制限) 第三十二条の十 特定製造事業者等は、第三十二条の十二第一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よる通知並びに第三十二条の十五の規定による点検の実施以外の目的を利用目的として定めてはならない。 (所有者名簿等) 第三十二条の十一 特定製造事業者等は、第三十二条の八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特定保守製品に係る所有者情報を提供した者について名簿(以下「所有者名簿」という。)を作成し、これに所有者情報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特定製造事業者等は、第三十二条の八第二項の規定により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特定保守製品に係る所有者情報の変更について提供を受けたときは、速やかに、所有者名簿(その者が特定保守製品に係る事業の全部の譲受け又は相続、合併若しくは分割に伴つて取得した所有者情報に係る所有者名簿を含む。次項及び次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おける当該所有者情報の記載又は記録を変更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特定製造事業者等は、所有者名簿に所有者情報が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者(以下この項及び次条において「名簿記載者」という。)に係る特定保守製品の点検期間が経過するまでの間、当該名簿記載者に係る所有者情報を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 (点検その他の保守に関する事項の通知) 第三十二条の十二 特定製造事業者等は、名簿記載者に対して、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名簿記載者に係る特定保守製品の点検期間の始期の到来前における主務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書面を	분할에 수반하여 소유자 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해당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신속하게 이용 목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용 목적의 제한) 제32조의10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제32조의1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및 제32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실시 이외의 목적을 이용 목적으로서 정해서는 안 된다. (소유자 명부 등) 제32조의11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제32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특정 보수제품에 관한 소유자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명부(이하 "소유자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소유자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②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제32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소유자 정보의 변경에 대해 제공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유자 명부(그 자가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수 또는 상속, 합병 또는 분할에 수반하여 취득한 소유자 정보에 관한 소유자 명부를 포함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 제3항에서 같다)의 해당 소유자 정보의 기재 또는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③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소유자 명부에 소유자 정보가 포함되거나 기록된 자(이하 이 항 및 다음 조에서 "명부 기재자"라 한다)에 관한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명부 기재자에 관한 소유자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점검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의 통지) 제32조의12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명부 기재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명부 기재자에 관한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간의 시기 도래 이전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もつて、当該特定保守製品について、点検を行うことが必要である旨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第四項において「点検通知事項」という。）の通知を發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特定製造事業者等は、前項の書面による通知の發出に代えて、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名簿記載者の承諾を得て、電磁的方法であつ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より通知を發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特定製造事業者等は、同項の書面による通知を發したものとみなす。

3 前二項の名簿記載者に対する通知は、所有者名簿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その者の住所に、その者が別に通知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当該特定製造事業者等に通知したとき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にあてて發すれば足りる。

4 特定製造事業者等は、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特定保守製品に関し、名簿記載者に対して、点検通知事項のほか、特定保守製品の適切な保守に資する事項を通知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所有者情報の管理）

第三十二条の十三 特定製造事業者等は、第三十二条の九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り公表した利用目的の達成に必要な範囲を超えて、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特定保守製品に係る所有者情報を取り扱つてはならない。ただし、本人の同意がある場合、第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場合その他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特定製造事業者等は、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特定保守製品に係る所有者情報の漏えい、滅失又はき損の防止その他の所有者情報の安全管理のために必要かつ適切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特定保守製品の所有者等の責務）

第三十二条の十四 特定保守製品の所有者は、当該特定保守製品について、経年劣化に起因する事故が生じた場合に他人に危害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ことに留意し、特定保守製品の保守に関する情報を収集

서면으로서 해당 특정보수제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서 "점검 통지 사항"이라 한다)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전항의 서면에 따른 통지 발출 대신에,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부 기재자의 승낙을 얻어 전자적 방법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동항의 서면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본다.

③ 전 2항의 명부 기재자에 대한 통지는 소유자 명부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그 사람의 주소에 그 사람이 별도로 통지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해당 특정 제조 사업자 등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에 발송하면 족하다.

④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특정보수제품에 관하여 명부 기재자에 대하여 점검 통지 사항 외에 특정보수제품의 적절한 보수에 이바지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유자 정보의 관리）

제32조의13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제32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한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소유자 정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소유자 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기타 소유자 정보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 등의 책무）

제32조의14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는 해당 특정보수제품에 경년열화에 기인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고, 특정보수제품의 보수에 대한 정보를 수

するとともに、点検期間に点検を行う等その保守に努めるものとする。 2 特定保守製品を賃貸の用に供することを業として行う者は、特定保守製品の保守に関する情報を収集するとともに、点検期間に点検を行う等その保守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点検実施義務) 第三十二条の十五 特定製造事業者等は、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特定保守製品について、その点検期間及びその始期の到来前における主務省令で定める期間において、点検の実施を求められ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第三十二条の二第一項第二号の型式ごとに主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当該特定保守製品の点検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改善命令) 第三十二条の十六 主務大臣は、特定製造事業者等が第三十二条の三、第三十二条の四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第三十二条の九から第三十二条の十一まで、第三十二条の十二第一項、第三十二条の十三又は前条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特定製造事業者等に対し、当該違反を是正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主務大臣による公表) 第三十二条の十七 主務大臣は、特定製造事業者等がその事業の全部を廃止したことその他の事情により特定保守製品の点検の実施に支障が生じているときは、当該特定保守製品について、点検を行う技術的能力を有する事業者に関する情報を収集し、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節 特定保守製品の点検その他の保守の体制の整備 (特定製造事業者等の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 第三十二条の十八 主務大臣は、特定製造事業者等による特定保守製品の経年劣化による危害の発生を防止するための点検(以下この節において単に「点検」という。)その他の保守を適切に行うために必	집합과 동시에, 점검 기간에 점검을 하는 등 그 보수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② 특정보수제품을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특정보수제품의 보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점검 기간에 점검을 하는 등 그 보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점검 실시 의무) 제32조의15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특정보수제품에 대해 해당 점검 기간 및 그 시기의 도래 이전의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점검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2조의2제1항제2호의 형식별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보수제품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선 명령) 제32조의16 주무대신은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이 제32조의3, 제32조의4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32조의9에서 제32조의11까지,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 또는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특정 제조 사업자 등에게 해당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주무대신에 따른 공표) 제32조의17 주무대신은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이 그 사업의 전부를 폐지한 것 기타 사정에 따라 특정보수제품 점검의 실시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특정보수제품에 대해 점검을 행하는 기술적 능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절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기타 보수 체제의 정비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제32조의18 주무대신은 특정 제조 사업자 등에 따른 특정보수제품의 경년열화에 따른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하 이 절에서 단순히 "점검"이라 한다) 기타 보수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要な体制の整備を促進するため、主務省令で、次の事項に関し、特定製造事業者等の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一 点検を行う事業所の配置、点検の料金の設定及び公表その他の特定保守製品の点検の実効の確保に関する事項 二 特定保守製品の点検に必要な手引の作成及び管理に関する事項 三 特定保守製品の点検の結果必要となると見込まれる特定保守製品の整備に要する部品の保有に関する事項 四 特定保守製品の点検その他の保守に関する情報の一般消費者に対する提供に関する事項 五 その他特定保守製品の点検その他の保守に関し必要な事項 2 前項に規定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は、当該特定保守製品に係る技術水準、点検その他の保守の体制の整備の状況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定めるものとし、これらの事情の変動に応じて必要な改定をするものとする。 (特定製造事業者等による点検その他の保守の体制の整備) 第三十二条の十九 特定製造事業者等は、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勘案して、特定保守製品の点検その他の保守を適切に行うために必要な体制を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勧告及び命令) 第三十二条の二十 主務大臣は、特定製造事業者等による特定保守製品の点検その他の保守を適切に行うために必要な体制の整備が第三十二条の十八第一項に規定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に照らして著しく不十分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特定製造事業者等に対し、その判断の根拠を示して、当該体制の整備に関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旨の勧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前項に規定する勧告を受けた者がその勧告に従わなかっ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필요한 체제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주무성령으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특정 제조 사업자 등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점검을 행하는 사업소의 배치, 점검의 요금 설정 및 공표 기타 특정보수제품 점검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특정보수제품의 점검에 필요한 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결과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보수제품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보유에 관한 사항 4.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타 보수에 관한 정보의 일반소비자에 대한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타 보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전항에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기술 수준, 점검 기타 보수 체제의 정비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이러한 사정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정 제조 사업자 등에 의한 점검 기타 보수 체제의 정비) 제32조의19 특정 제조 사업자는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감안하여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타 보수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권고 및 명령) 제32조20 주무대신은 특정 제조 사업자 등에 의한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타 보수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가 제32조의18제1항에 규정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야 사항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 제조 사업자 등에게 그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 해당 체제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에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3 主務大臣は、第一項に規定する勧告を受けた者が、正当な理由がなくてその勧告に係る措置をとらなかつた場合において、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危害の発生の防止を図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特定製造事業者等に対し、その勧告に係る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三節 経年劣化に関する情報の収集及び提供

(主務大臣による情報の収集等)

第三十二条の二十一 主務大臣は、特定保守製品その他消費生活用製品のうち経年劣化により安全上支障が生じ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して重大な危害を及ぼすおそれが多いと認められる製品(以下この節において「特定保守製品等」という。)について、経年劣化に起因し、又は起因すると疑われる事故に関する情報を収集し、及び分析し、その結果として得られる劣化しやすい部品及び材料の種類に関する情報その他の特定保守製品等の経年劣化に関する情報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2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公表につき、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特定保守製品等の経年劣化に関する技術上の調査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事業者の責務)

第三十二条の二十二 特定保守製品等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公表された特定保守製品等の経年劣化に関する情報を活用し、設計及び部品又は材料の選択の工夫、経年劣化に関する情報の製品への表示又はその改善等を行うことにより、当該特定保守製品等の経年劣化による危害の発生を防止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特定保守製品等の製造、輸入又は小売販売(一般消費者に対する販売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第三十四条において同じ。)の事業を行う者は、その製造、輸入又は小売販売に係る特定保守製品等の経年劣化による危害の発生の防止に資する情報を収集

③ 주무대신은 제1항에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 제조 사업자 등에게 그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절 経年열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무대신에 의한 정보의 수집 등)

제32조의21 주무대신은 특정보수제품 기타 소비생활용품 중 経年열화에 의해 안전상 지장이 생길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이하 이 절에서 "특정보수제품 등"이라 한다)에 대해 経年열화에 기인하거나 기인한다고 의심되는 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그 결과로서 얻어진 열화하기 쉬운 부품 및 재료의 종류에 관한 정보 기타 특정 보수제품 등의 経年열화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특정보수제품 등의 経年열화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책무)

제32조의22 특정보수제품 등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특정보수제품 등의 経年열화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설계 및 부품 또는 재료 선택의 연구, 経年열화에 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그 개선 등을 실시하여 해당 특정보수제품 등의 経年열화에 따른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정보수제품 등의 제조, 수입 또는 소매판매(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4조에서 같다)의 사업을 행하는 자는 그 제조, 수입 또는 소매판매에 관한 특정보수제품 등의 経年열화에 따른 피해 발생의 방지에 이바지하는 정

し、当該情報を一般消費者に対し適切に提供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章製品事故等に関する措置 第一節情報の収集及び提供の責務 (内閣総理大臣及び主務大臣の責務) 第三十三条 内閣総理大臣及び主務大臣は、重大製品事故に関する情報の収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者の責務) 第三十四条 消費生活用製品の製造、輸入又は小売販売の事業を行う者は、その製造、輸入又は小売販売に係る消費生活用製品について生じた製品事故に関する情報を収集し、当該情報を一般消費者に対し適切に提供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消費生活用製品の小売販売、修理又は設置工事の事業を行う者は、その小売販売、修理又は設置工事に係る消費生活用製品について重大製品事故が生じたことを知つたときは、その旨を当該消費生活用製品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に通知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節重大製品事故の報告等 (内閣総理大臣への報告等) 第三十五条 消費生活用製品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は、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消費生活用製品について重大製品事故が生じたことを知つたときは、当該消費生活用製品の名称及び型式、事故の内容並びに当該消費生活用製品を製造し、又は輸入した数量及び販売した数量を内閣総理大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報告の期限及び様式は、内閣府令で定める。 3 内閣総理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当該報告の内容について、主務大臣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4 内閣総理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受	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일반소비자에게 적절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제품사고 등에 관한 조치 제1절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책임 (내각총리대신 및 주무대신의 책무) 제33조 내각총리대신 및 주무대신은 중대한 제품사고 정보 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책무) 제34조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수입 또는 소매판매 사업을 행하는 자는 그 제조, 수입 또는 소매판매에 관한 소비생활용품에 대해 발생한 제품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일반소비자에게 적절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생활용품의 소매판매, 수리 또는 설치 공사의 사업을 행하는 자는 그 소매판매, 수리 또는 설치 공사에 관련된 소비생활용품에 중대한 제품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중대한 제품사고의 보고 등 (내각총리대신에의 보고 등) 제35조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소비생활용품에 중대한 제품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해당 소비생활용품의 명칭 및 형식 사고 내용 및 해당 소비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수량 및 판매 수량을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기한 및 양식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보고의 내용에 대해 주무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けた場合において、当該報告に係る重大製品事故による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危害の発生及び拡大が政令で定める他の法律の規定によつて防止されるべきものと認めるときは、直ちに、当該報告の内容について、当該政令で定める他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事務を所掌する大臣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内閣総理大臣による公表)

第三十六条 内閣総理大臣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受けた場合その他重大製品事故が生じたことを知った場合において、当該重大製品事故に係る消費生活用製品による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重大な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場合を除き、当該重大製品事故に係る消費生活用製品の名称及び型式、事故の内容その他当該消費生活用製品の使用に伴う危険の回避に資する事項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公表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主務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内閣総理大臣及び主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表につき、消費生活用製品の安全性に関する調査を行う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共同して、これを行うものとする。

4 主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表につき、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消費生活用製品の安全性に関する技術上の調査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体制整備命令)

第三十七条 内閣総理大臣は、消費生活用製品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が第三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報告を怠り、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消費生活用製品の安全性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消費生活用製品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

받은 경우에 해당 보고에 관한 중대한 제품사고로 인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가 정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해당 보고의 내용에 대해 해당 정령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는 사무를 소관하는 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공표)

제36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기타 중대한 제품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해당 중대 제품사고에 관련된 소비생활용품에 따른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대 제품사고에 관련된 소비생활용품의 명칭 및 형식, 사고 내용 기타 해당 소비생활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 회피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무대신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 및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에 대해 소비생활용품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④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소비생활용품 안전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체제정비 명령)

제37조 내각총리대신은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소비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또

う者に対し、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消費生活用製品について生じた重大製品事故に関する情報を収集し、かつ、これを適切に管理し、及び提供するために必要な体制の整備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主務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主務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に対し、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すること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소비생활용품에 대해 발생한 중대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대신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무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第三節 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 (事業者の責務) 第三十八条 消費生活用製品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は、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消費生活用製品について製品事故が生じた場合には、当該製品事故が発生した原因に関する調査を行い、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消費生活用製品の回収その他の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をと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消費生活用製品の販売の事業を行う者は、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がとろうとする前項の回収その他の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に協力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消費生活用製品の販売の事業を行う者は、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が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てとる措置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危害防止命令) 第三十九条 主務大臣は、消費生活用製品の欠陥により、重大製品事故が生じた場合その他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ついて重大な危害が発生し、又は発生する急迫した危険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三十二条の規定又は政令で定める他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	제3절 위험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업자의 책무) 제38조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소비생활용품에 대해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관한 조사를 행하여 피해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소비생활용품의 회수 기타 피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생활용품 판매 사업을 행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가 취하려 하는 전항의 회수 기타 피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생활용품 판매 사업을 행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가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아 취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위해 방지 명령) 제39조 주무대신은 소비생활용품의 결함에 따라 중대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있는 경우에 해당 피해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2조 규정 또는 정령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를命ずることができる場合を除き、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消費生活用製品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に対し、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当該消費生活用製品の回収を図ることその他当該消費生活用製品による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重大な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章雜則

(報告の徴収)

第四十条 主務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費生活用製品の製造、輸入若しく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又は特定保守製品取引事業者に対し、その業務の状況(届出事業者に対しては業務又は経理の状況)に関し報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その業務又は経理の状況に関し報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内閣総理大臣は、前章第二節の規定を施行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費生活用製品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に対し、その業務の状況に関し報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立入検査)

第四十一条 主務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職員に、消費生活用製品の製造、輸入若しく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又は特定保守製品取引事業者の事務所、工場、事業場、店舗又は倉庫に立ち入り、消費生活用製品、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職員に、国内登録検査機関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 또는 수입과 관련된 해당 소비생활용품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 기타 해당 소비생활용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잡칙

(보고의 징수)

제40조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 또는 특정보수제품 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내 등록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장 제2절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

제41조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원에게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 또는 특정보수제품 거래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점포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소비생활용품, 장부, 서류 기타의 것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원에 국내 등록 검사

の事務所又は事業所に立ち入り、業務の状況又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内閣総理大臣は、前章第二節の規定を施行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職員に、消費生活用製品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の事務所、工場、事業場、店舗又は倉庫に立ち入り、消費生活用製品、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前三項の規定により職員が立入検査を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者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主務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6 内閣総理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主務大臣に対し、機構に、第三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を行わせること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7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要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機構の業務の遂行に支障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第三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を行わせるものとする。 8 主務大臣は、第五項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機構に立入検査を行わせる場合には、機構に対し、当該立入検査の場所その他必要な事項を示してこれを実施すべきことを指示するものとする。 9 機構は、前項の指示に従つて第五項又は第七項に規定する立入検査を行つたときは、その結果を主務大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10 主務大臣は、第七項の規定により機構に立入検査を行かせた場合において、前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受けたときは、その内容を内閣総理大臣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11 第五項又は第七項の規定により機構の職員が立入検査を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者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2 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의 것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장 제2절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원에게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점포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소비생활용품, 장부, 서류 기타의 것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전 3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주무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구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내각총리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대신에게 기구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기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⑧ 주무대신은 제5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 출입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구에 대하여 해당 현장 검사의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나타내 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⑨ 기구는 전항의 지시에 따라 제5항 또는 제7항에 규정하는 출입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주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주무대신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 출입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 직원이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消費生活用製品の提出) 第四十二条 主務大臣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職員に立入検査をさせ、又は同条第五項若しくは第七項の規定により機構に立入検査を行わせた場合において、その所在の場所において検査をさせ、又は検査を行わせる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ると認められる消費生活用製品があつたときは、その所有者又は占有者に対し、期限を定めて、これを提出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その職員に立入検査をさせた場合において、その所在の場所において検査をさせ、又は検査を行わせる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ると認められる消費生活用製品があつたときは、その所有者又は占有者に対し、期限を定めて、これを提出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国(前二項の規定に基づく内閣総理大臣又は主務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務を第五十五条の規定に基づく政令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又は市長が行うこととされ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都道府県又は市)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よつて生じた損失を所有者又は占有者に対し補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規定により補償すべき損失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より通常生ずべき損失とする。 (機構に対する命令) 第四十三条 主務大臣は、第三十一条第三項に規定する検査又は第四十一条第五項若しくは第七項に規定する立入検査の業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対し、当該業務に関し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承認の条件) 第四十四条 第四条第二項第二号又は第十一条第一項第二号の承認には、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条件は、承認に係る事項の確実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最少限度のものに限り、かつ、承認を受ける者に不当な義務を課することとなるもので	(소비생활용품 제출) 제42조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원에게 출입검사를 하게 하거나 동조 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 출입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소재의 장소에서 검사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비생활용품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원에게 출입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 그 소재의 장소에서 검사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비생활용품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전 2항의 규정에 근거한 내각총리대신 또는 주무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5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정령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도부현 또는 시)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손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의해 통상 생기는 손실로 한다. (기구에 대한 명령) 제43조 주무대신은 제31조제3항에 규정하는 검사 또는 제41조제5항 또는 제7항에 규정하는 출입검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구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승인조건) 제44조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전항의 조건은 승인에 관한 사항의 확실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정하며, 승인을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게

あつてはならない。 (手数料) 第四十五条 第二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主務大臣の行う適合性検査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機構の行う適合性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実費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額の手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手数料は、主務大臣の行う適合性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者の納付するものについては国庫の、機構の行う適合性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者の納付するものについては機構の収入とする。 (公示) 第四十六条 主務大臣は、次の場合には、その旨を官報に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十二条第一項の登録をしたとき。 二 第十五条の規定により表示を付することを禁止したとき。 三 第二十一条(第三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 四 第二十三条(第三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 五 第二十七条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し、又は適合性検査の業務の停止を命じたとき。 六 第二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主務大臣が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自ら行うものとするとき、又は自ら行っていた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行わないこととするとき。 七 第二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主務大臣が機構に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行わせることとするとき、又は機構に行わせていた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行わせないこととするとき。 八 第三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したとき。 (消費経済審議会への諮問等) 第四十七条 主務大臣は、第二条第二項から第四項	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수수료) 제45조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대신이 행하는 적합성 검사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가 행하는 적합성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수수료는 주무대신이 행하는 적합성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고의, 기구가 실시하는 적합성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구의 수입으로 한다. (공시) 제46조 주무대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등록을 한 때. 2. 제15조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한 때. 3. 제21조(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던 때. 4. 제23조(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던 때. 5. 제27조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대신이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행하는 것으로 한 때, 또는 스스로 행하고 있었던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기로 한 때. 7.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대신이 기구에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하는 것으로 한 때, 또는 기구에 행하게 한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 때.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 (소비경제심의회에의 자문 등) 제47조 주무대신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までの政令の制定又は改廃の立案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消費経済審議会に諮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主務大臣は、第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場合は、三週間以内に、その旨を消費経済審議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聴聞の方法の特例) 第四十八条 第二十七条又は第三十一条の規定による処分に係る聴聞の期日における審理は、公開により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聴聞の主宰者は、行政手続法（平成五年法律第八十八号）第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処分に係る利害関係人が当該聴聞に関する手続に参加することを求めたときは、これを許可しなければならない。 (機構の処分等に係る審査請求) 第四十九条 機構が行う適合性検査に係る処分又はその不作為について不服がある者は、主務大臣に対して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行政不服審査法（平成二十六年法律第六十八号）第二十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四十六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四十九条第三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機構の上級行政庁とみなす。 (審査請求の手続における意見の聴取) 第五十条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る処分又はその不作為についての審査請求に対する裁決は、行政不服審査法第二十四条の規定により当該審査請求を却下する場合を除き、審査請求人に対し、相当な期間をにおいて予告をした上、同法第十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審理員が公開による意見の聴取をした後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意見の聴取に際しては、審査請求人及び利害関係人に対し、当該事案について証拠を提示し、意見を述べ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に規定する審査請求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第三十一条の規定は適用せず、同項の意見の聴取については、同条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려고 할 때에는 소비경제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② 주무대신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그 취지를 소비경제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문 방법의 특례) 제48조 제27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관한 청문 기일의 심리는 공개로 해야 한다. ② 전항의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해당 청문에 관한 절차에 참가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기구의 처분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제49조 기구가 행하는 적합성 검사에 관한 처분 또는 그 부작위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주무대신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무대신은 행정 불복 심사법(2014년 법률 제68호)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기구의 상급 행정청으로 본다. (심사 청구의 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제50조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그 부작위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 불복 심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한 후, 동법 제11조제2항에 규정하는 심리원이 공개로 의견 청취를 한 후 해야 한다. ② 전항의 의견 청취 시 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행정 불복 심사법 제31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동항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동조 제2항에서 제5항까

の規定を準用する。 (適合性検査についての申請及び主務大臣の命令) 第五十一条 届出事業者は、その製造し、又は輸入する特別特定製品について、国内登録検査機関が適合性検査を行わない場合又は国内登録検査機関の適合性検査の結果に異議のある場合は、主務大臣に対し、国内登録検査機関が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又は改めて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を命ずべきこと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前項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申請に係る国内登録検査機関が第二十条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申請に係る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第二十六条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主務大臣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第二十六条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又は命令をしないことの決定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当該申請をした届出事業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三項の規定は、外国登録検査機関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中「命ずべき」とあるのは「請求すべき」と、第二項中「第二十条の規定」とあるのは「第三十条第一項の規定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条第二項の規定」と、同項及び前項中「第二十六条」とあるのは「第三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六条」と、「命令」とあるのは「請求」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内閣総理大臣等に対する申出) 第五十二条 何人も、消費生活用製品による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危害の発生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がとられていないため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ついて危害が発生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前章第二節の規定による重大製品事故に関する措置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に、その他の事項については主務大臣に対し、その旨を申し出て、適当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又は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出があつたときは、必要な調査を行い、その申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적합성 검사에 대한 신청 및 주무대신의 명령) 제51조 신고사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하는 특별 특정제품에 대해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내 등록 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대신에 대해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적합성 검사를 행할 것 또는 다시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것을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에 관련된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신청에 관한 국내 등록 검사기관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주무대신은 전항의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신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외국 등록 검사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 중 “명해야 한다”는 “청구해야 한다”로, 제2항 중 “제20조의 규정”은 “제30조 제1항의 규정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으로, 동항 및 전항 중 “제26조”는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6조”로, “명령”은 “청구”로 본다. (내각총리대신 등에 대한 신청) 제52조 누구든지 소비생활용품에 따른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장 제2절 규정에 따른 중대 제품사고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에 대해 그 취지를 신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 또는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出の内容が事実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の法律に基づく措置その他適当な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経過措置) 第五十三条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命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命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主務大臣及び主務省令) 第五十四条 この法律における主務大臣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技術基準の決定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当該製品の製造の事業を所管する大臣 二 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消費経済審議会への諮問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当該製品の製造の事業を所管する大臣 三 第四条第二項(第三号を除く。)の規定による届出の受理及び承認、第二章第二節の規定による特定製品に係る届出の受理に関する事項、同章第三節から第五節までの規定による国内登録検査機関又は外国登録検査機関の登録に関する事項、第三十二条の規定による命令、第三十三条の規定による情報の収集、前章第二節の規定による重大製品事故の報告等に関する事項、第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関する事項並びに第五十一条第一項の申請の受理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製品の製造、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所管する大臣 四 第二章の二第一節の規定による特定保守製品の点検その他の保守に関する情報の提供等に関する事項、同章第二節の規定による特定保守製品の点検その他の保守の体制の整備に関する事項並びに同章第三節の規定による経年劣化に関する情報の収集及び提供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製品の製造若しくは輸入の事業又は当該特定保守製品取引事業者が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	그 신청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법률에 따른 조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과조치) 제53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는 그 명령에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수반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의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주무대신과 및 주무성령) 제54조 이 법률에서의 주무대신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2.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경제심의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3. 제4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승인, 제2장 제2절에 따른 특정제품에 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동장 제3절에서 제5절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 등록 검사기관 또는 외국 등록 검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32조 규정에 따른 명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전장 제2절 규정에 따른 중대 제품사고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 및 제51조제1항의 신청의 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4. 제2장의2 제1절의 규정에 따른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타 보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동장 제2절에 따른 특정보수제품 점검 기타 보수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및 동장 제3절에 따른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 또는 해당 특정보수제품 거래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五 第四十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る報告の徴収、第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に関する事項並びに第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出の受理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製品の製造、輸入若しくは販売の事業又は当該特定保守製品取引事業者が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 2 この法律における主務省令は、前項第一号に定める事項に関しては、同号に定める主務大臣の発する命令とし、同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定める事項に関し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れぞれ同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定める主務大臣の発する命令とする。 (都道府県又は市が処理する事務) 第五十五条 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消費者庁長官に委任された権限及びこの法律に規定する主務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務の一部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知事又は市長が行うこととすることができる。 (権限の委任) 第五十六条 内閣総理大臣は、この法律による権限(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を消費者庁長官に委任する。 2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主務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項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地方支分部局の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主務大臣の指示) 第五十七条 主務大臣は、特定製品による一般消費者の生命又は身体に対する危害の発生の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おいて、当該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都道府県知事又は市長に対し、第五十五条の規定に基づく政令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又は市長が行うこととされる事務のうち政令で定めるものに関し、当該危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指示をすることができる。	5.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징수,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검사에 관한 사항 및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 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 또는 해당 특정보수제품 거래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② 이 법률의 주무성령은 전항 제1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동호에서 정하는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하고, 동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동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정하는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도도부현 또는 시가 처리하는 사무) 제55조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된 권한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주무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장이 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56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따른 권한(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을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지분 부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무대신의 지시) 제57조 주무대신은 특정제품에 따른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장에 대하여 제55조 규정에 근거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는 사무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해당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第五章罰則 第五十八條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一 第四條第一項又は第五條の規定に違反した者 二 第十五條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による禁止に違反した者 三 第二十七條の規定による業務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た者 四 第三十二條又は第三十九條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五 第三十二條の十六、第三十二條の二十第三項又は第三十七條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第五十九條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六條の規定による届出をする場合において虚偽の届出をした者 二 第十一條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検査を行わず、検査記録を作成せず、若しくは虚偽の検査記録を作成し、又は検査記録を保存しなかつた者 三 第十二條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証明書の交付を受けず、又は証明書を保存しなかつた者 四 第二十三條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五 第二十八條の規定に違反して同条に規定する事項の記載をせず、虚偽の記載をし、又は帳簿を保存しなかつた者 六 第三十二條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七 第四十條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者 八 第四十一條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又は忌避した者 九 第四十二條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第六十條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	제5장 벌칙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5조제1항(제1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금지에 위반한 자 - 제27조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 명령에 위반한 자 - 제32조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 제32조의16, 제32조의20제3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검사 기록을 작성하거나 검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명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인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제28조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제4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제6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に対して当該各号に定める罰金刑を、その人に対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一 第五十八条第二号又は第四号一億円以下の罰金刑 二 第五十八条第一号、第三号若しくは第五号又は前条各本条の罰金刑 第六十一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二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一 第七条第二項、第八条又は第九条(これらの規定を第三十二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二 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財務諸表等を備えて置かず、財務諸表等に記載すべき事項を記載せず、若しくは虚偽の記載をし、又は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同条第二項各号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んだ者 第六十二条 第四十三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場合に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機構の役員は、二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벌금형을, 그 사람에 대해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58조제2호 또는 제4호의 1억 엔 이하의 벌금형 2. 제58조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 또는 전조 각 본조의 벌금형 제6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 제8조 또는 제9조(이들 규정을 제3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재무제표 등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자 제6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기관의 임원은 2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 록 Ⅲ



電氣用品安全法

電氣用品安全法 (昭和三十六年十一月十六日法律第二百三十四号) 最終改正：平成二六年六月一八日法律第七二号 第一章總則(第一条・第二条) 第二章事業の届出等(第三条一第七条) 第三章電氣用品の適合性検査等(第八条一第二十六条) 第四章販売等の制限(第二十七条・第二十八条) 第五章検査機関の登録等 第一節検査機関の登録(第二十九条一第三十二条) 第二節国内登録検査機関(第三十三条一第四十二条の二) 第三節外国登録検査機関(第四十二条の三・第四十二条の四) 第五章の二危険等防止命令(第四十二条の五) 第六章雜則(第四十三条一第五十六条) 第七章罰則(第五十七条一第六十一条) 附則 第一章總則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電氣用品の製造、販売等を規制するとともに、電氣用品の安全性の確保につき民間事業者の自主的な活動を促進することにより、電氣用品による危険及び障害の発生を防止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電氣用品」とは、次に掲げる物をいう。 一 一般用電氣工作物(電氣事業法(昭和三十九年法律第百七十号)第三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一般用電氣工作物をいう。)の部分となり、又はこれに接続して用いられる機械、器具又は材料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	전기용품안전법 (1961년 11월 16일 법률 제234호) 최종 개정：2014년 6월 18일 법률 제72호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사업의 신고 등(제3조-제7조) 제3장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등(제8조-제26조) 제4장 판매 등의 제한(제27조·제28조) 제5장 검사기관의 등록 등 제1절 검사기관의 등록(제29조-제32조) 제2절 국내 등록 검사기관(제33조-제42조의2) 제3절 외국 등록 검사기관(제42조의3·제42조의4) 제5장의2 위험 등 방지 명령(제42조의5) 제6장 잡칙(제43조-제56조) 제7장 벌칙(제57조-제61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전기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일반용 전기공작물(전기사업법(1964년 법률 제170호) 제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일반용 전기공작물을 말한다.)의 부분이 되거나, 이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재료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二 携帯発電機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 三 蓄電池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 2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電気用品」とは、構造又は使用方法その他の使用状況からみて特に危険又は障害の発生するおそれが多い電気用品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第二章事業の届出等 (事業の届出) 第三条 電気用品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電気用品の区分に従い、事業開始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次の事項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二 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電気用品の型式の区分 三 当該電気用品を製造する工場又は事業場の名称及び所在地(電気用品の輸入の事業を行う者にあつては、当該電気用品の製造事業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承継) 第四条 前条の届出をした者(以下「届出事業者」という。)が当該届出に係る事業の全部を譲り渡し、又は届出事業者について相続、合併若しくは分割(当該届出に係る事業の全部を承継させるものに限る。)があつたときは、その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た者又は相続人(相続人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全員の同意により事業を承継すべき相続人を選定したときは、その者)、合併後存続する法人若しくは合併により設立した法人若しくは分割によりその事業の全部を承継した法人は、その届出事業者の地位を承継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届出事業者の地位を承継した者は、遅滞なく、その事実を証する書面を添えて、その旨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変更の届出)	2. 휴대 발전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3. 축전지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 법률에서 "특정 전기용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방법 기타 사용상황에서 볼 때 특히 위험 또는 장애 발생 위험이 많은 전기용품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신고 등 (사업의 신고) 제3조 전기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전기용품 형식의 구분 3. 해당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전기용품의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에 있어서는 해당 전기용품 제조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승계) 제4조 전조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신고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고 사업자에 대해 상속, 합병 또는 분할(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 또는 상속인(상속인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사업을 승계해야 할 상속인을 선정했을 때는 그 사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해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그 신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신고)

第五条 届出事業者は、第三条各号の事項に変更があつ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変更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軽微なもの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廃止の届出) 第六条 届出事業者は、当該届出に係る事業を廃止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届出事項に係る情報の提供) 第七条 何人も、経済産業大臣に対し、第三条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係る情報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章電気用品の適合性検査等 (基準適合義務等) 第八条 届出事業者は、第三条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型式(以下単に「届出に係る型式」という。)の電気用品を製造し、又は輸入する場合において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以下「技術基準」という。)に適合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特定の用途に使用される電気用品を製造し、又は輸入する場合において、経済産業大臣の承認を受けたとき。 二 試験的に製造し、又は輸入するとき。 2 届出事業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前項の電気用品(同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製造され、又は輸入され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検査を行い、その検査記録を作成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特定電気用品の適合性検査) 第九条 届出事業者は、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前条第一項の電気用品(同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製造され、又は輸入されるものを除く。)が	제5조 신고 사업자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지의 신고) 제6조 신고 사업자는 해당 신고에 관한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7조 누구든지 경제산업대신에 대해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장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등 (기준 적합 의무 등) 제8조 신고 사업자는 제3조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형식(이하 단순히 "신고와 관련된 형식"이라 한다)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이하 "기술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은 때. 2. 시험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② 신고 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전항의 전기용품(동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 검사를 행하고 그 검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제9조 신고 사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전조 제1항의 전기용품(동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을 제외한다)이 특정

特定電気用品である場合には、当該特定電気用品を販売する時までに、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掲げるものについて、経済産業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の次項の規定による検査（以下「適合性検査」という。）を受け、かつ、同項の証明書の交付を受け、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特定電気用品と同一の型式に属する特定電気用品について既に第二号に係る同項の証明書の交付を受けこれを保存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当該証明書の交付を受けた日から起算して特定電気用品ごとに政令で定める期間を経過していないとき又は同項の証明書と同等なものとし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を保存してい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当該特定電気用品 二 試験用の特定電気用品及び当該特定電気用品に係る届出事業者の工場又は事業場における検査設備その他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 2 前項の登録を受けた者は、同項各号に掲げるものについ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検査を行い、これらが技術基準又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同項第二号の検査設備その他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に関する基準に適合している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記載した証明書を当該届出事業者に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表示） 第十条 届出事業者は、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電気用品の技術基準に対する適合性について、第八条第二項（特定電気用品の場合にあつては、同項及び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義務を履行したときは、当該電気用品に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方式による表示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2 届出事業者が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電気用品について前項の規定により表示を付する場合でなければ、何人も、電気用品に同項の表示又はこれと紛らわしい表示を付してはならない。 （改善命令） 第十一条 経済産業大臣は、届出事業者が第八条第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이하 "적합성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동항의 인증서를 교부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정 전기용품과 동일한 형식에 속하는 특정 전기용품에 대해 이미 제2호에 관련된 동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이를 보존하는 경우에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특정 전기용품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때 또는 동항의 인증서와 동등한 것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정 전기용품 2. 시험용 특정 전기용품 및 해당 특정 전기용품에 관한 신고 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검사 설비 기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 ② 전항의 등록을 받은 자는 동항 각 호에 열거된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이 기술 기준 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동항 제2호의 검사 설비 기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기재한 증명서를 해당 신고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표시） 제10조 신고 사업자는 그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제8조제2항(특정 전기용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항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전기용품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표시를 붙일 수 있다. ② 신고 사업자가 그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를 붙인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전기용품에 동항의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붙여서는 안 된다. （개선 명령） 제11조 경제산업대신은 신고 사업자가 제18조제1

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場合には、届出事業者に対し、電気用品の製造、輸入又は検査の方法その他の業務の方法の改善に関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업자에 대해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또는 검사 방법 기타 업무 방법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表示の禁止) 第十二条 経済産業大臣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届出事業者に対し、一年以内の期間を定めて当該各号に定める届出に係る型式の電気用品に第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表示を付す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届出事業者が製造し、又は輸入した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電気用品(第八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製造し、又は輸入したものを除く。)が技術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危険又は障害の発生を防止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当該技術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電気用品の属する届出に係る型式 二 届出事業者が製造し、又は輸入した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電気用品について、第八条第二項又は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当該違反に係る電気用品の属する届出に係る型式 三 届出事業者が製造し、又は輸入した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電気用品について、前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当該違反に係る電気用品の属する届出に係る型式	(표시의 금지) 제12조 경제산업대신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는 신고 사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를 붙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 신고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그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제8조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을 제외한다)이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위험 또는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용품이 속하는 신고와 관련된 형식 2. 신고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그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에 대해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해당 위반에 관한 전기용품이 속하는 신고와 관련된 형식 3. 신고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그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에 대해 전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해당 위반에 관한 전기용품이 속하는 신고와 관련된 형식
第十三条 削除	제13조 삭제
第十四条 削除	제14조 삭제
第十五条 削除	제15조 삭제
第十六条 削除	제16조 삭제
第十七条 削除	제17조 삭제
第十八条 削除	제18조 삭제
第十九条 削除	제19조 삭제
第二十条 削除	제20조 삭제
第二十一条 削除	제21조 삭제
第二十二条 削除	제22조 삭제
第二十三条 削除	제23조 삭제
第二十四条 削除	제24조 삭제
第二十五条 削除	제25조 삭제

第二十六条 削除 第四章販売等の制限 (販売の制限) 第二十七条 電気用品の製造、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は、第十条第一項の表示が付されているものでなければ、電気用品を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陳列しては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者が次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適用しない。 一 特定の用途に使用される電気用品を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陳列する場合において、経済産業大臣の承認を受けたとき。 二 第八条第一項第一号の承認に係る電気用品を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陳列するとき。 (使用の制限) 第二十八条 電気事業法第二条第一項第十七号に規定する電気事業者、同法第三十八条第四項に規定する自家用電気工作物を設置する者、電気工事士法(昭和三十五年法律第百三十九号)第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電気工事士、同法第三条第三項に規定する特種電気工事資格者又は同条第四項に規定する認定電気工事従事者は、第十条第一項の表示が付されているものでなければ、電気用品を電気事業法第二条第一項第十八号に規定する電気工作物の設置又は変更の工事に使用してはならない。 2 電気用品を部品又は附属品として使用して製造する物品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の製造の事業を行う者は、第十条第一項の表示が付されているものでなければ、電気用品をその製造に使用してはならない。 3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二項の場合に準用する。 第五章検査機関の登録等 第一節検査機関の登録	제26조 삭제 제4장 판매 등의 제한 (판매 제한) 제27조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행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자가 다음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에,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은 때. 2. 제8조제1항제1호의 승인에 관한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할 때. (사용의 제한) 제28조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전기 사업자, 동법 제38조제4항에 규정하는 자가 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 전기기술사법(1960년 법률 제139호) 제2조제4항에 규정하는 전기기술사, 동법 제3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종 전기 공사 자격자 또는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인정 전기 공사 종사자는 제10조제1항의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전기용품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전기용품을 부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사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제조 사업을 행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전기용품을 그 제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장 검사기관의 등록 등 제1절 검사기관의 등록

(登録) 第二十九条 第九条第一項の登録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特定電気用品の区分(以下単に「特定電気用品の区分」という。)ごとに、適合性検査を行おうとする者の申請により行う。 2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独立行政法人製品評価技術基盤機構(以下「機構」という。)に、当該申請が第三十一条第一項各号に適合し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必要な調査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欠格条項) 第三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第九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処分に違反し、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二 第四十一条又は第四十二条の四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三 法人であつて、その業務を行う役員のうちに前二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登録の基準) 第三十一条 経済産業大臣は、第二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申請した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登録申請者」という。)が次に掲げる要件のすべてに適合しているときは、その登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登録に関して必要な手続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一 国際標準化機構及び国際電気標準会議が定めた製品の認証を行う機関に関する基準に適合すること。 二 登録申請者が、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適合性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される特定電気用品を製造し、又は輸入する届出事業者(以下こ	(등록) 제29조 제9조제1항의 등록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특정 전기용품의 구분(이하 단순히 「특정 전기용품의 구분」이라고 한다.)별로 적합성 검사를 하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독립행정법인 제품 평가 기술 기반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해당 신청이 제31조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결격조항) 제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 또는 제4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에 전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등록 기준) 제31조 경제산업대신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이하 이 항에서 "가입 신청자"라 한다)가 다음에 열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필요한 절차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 표준 회의가 정한 제품의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등록 신청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된 특정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신고 사업자(이하 이 호

の号及び第三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受検事業者」という。)に支配されているものとし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でないこと。 イ登録申請者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受検事業者がその親法人(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第八百七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親法人をいう。)であること。 ロ登録申請者の役員(持分会社(会社法第五百七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持分会社をいう。)にあって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に占める受検事業者の役員又は職員(過去二年間に当該受検事業者の役員又は職員であつた者を含む。)の割合が二分の一を超えていること。 ハ登録申請者(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権を有する役員)が、受検事業者の役員又は職員(過去二年間に当該受検事業者の役員又は職員であつた者を含む。)であること。 2 第九条第一項の登録は、検査機関登録簿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てするものとする。 一 登録年月日及び登録番号 二 登録を受けた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三 登録を受けた者が適合性検査を行う特定電気用品の区分 四 登録を受けた者が適合性検査を行う事業所の名称及び所在地 (登録の更新) 第三十二条 第九条第一項の登録は、三年を下らない政令で定める期間ごとにその更新を受けなければ、その期間の経過によつて、その効力を失う。 2 前三条の規定は、前項の登録の更新に準用する。 第二節 国内登録検査機関 (適合性検査の義務) 第三十三条 第九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者(国内にある事業所において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につき、その登録を受けた者に限る。以下「国内登録検査機関」という。)は、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を求	및 제37조제2항에서 "수검 사업자"라 한다)에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 가. 등록 신청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수검 사업자가 그 모법인(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8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법인을 말한다)인 것. 나. 등록 신청자의 임원(지분회사(회사법 제57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분회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에서 차지하는 수검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간 해당 수검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 다. 등록 신청자(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권을 가진 임원)가 수검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간 해당 수검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인 것. ② 제9조제1항의 등록은 검사기관 등록부에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2. 등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3. 등록을 받은 자가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특정 전기용품의 구분 4. 등록을 받은 자가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록 갱신) 제32조 제9조제1항의 등록은 3년을 밑돌지 않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록의 갱신에 준용한다. 제2절 국내 등록 검사기관 (적합성 검사 의무) 제33조 제9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국내에 있는 사업소에서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 그 등록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라 한다)는 적합성 검사를 할 것을 요구받은

められ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遅滞なく、適合性検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内登録検査機関は、公正に、かつ、技術基準に適合する方法により適合性検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所の変更) 第三十四条 国内登録検査機関は、適合性検査を行う事業所の所在地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変更しようとする日の二週間前までに、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業務規定) 第三十五条 国内登録検査機関は、適合性検査の業務に関する規定(以下「業務規定」という。)を定め、適合性検査の業務の開始前に、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業務規定には、適合性検査の実施方法、適合性検査に関する料金の算定方法その他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を定め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業務の休廃止) 第三十六条 国内登録検査機関は、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休止し、又は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その旨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財務諸表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第三十七条 国内登録検査機関は、毎事業年度経過後三月以内に、その事業年度の財産目録、貸借対照表及び損益計算書又は収支計算書並びに事業報告書(これらのものが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の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で作成され、又は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の作成が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	때에는 正当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합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내 등록 검사기관은 공정하고, 기술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적합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변경) 제34조 국내 등록 검사기관은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주일 전까지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 규정) 제35조 국내 등록 검사기관은 적합성 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 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적합성 검사 업무의 개시 전에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업무 규정에는 적합성 검사의 실시 방법, 적합성 검사에 관한 요금의 산정 방법 기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해두어야 한다. (업무의 휴폐지) 제36조 국내 등록 검사기관은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제37조 국내 등록 검사기관은 매 사업 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그 사업 연도의 재산 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및 사업보고서(이러한 것이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작성되거나 그 작성에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전자적

当該電磁的記録を含む。次項及び第六十条第二号において「財務諸表等」という。)を作成し、五年間事業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受検事業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は、国内登録検査機関の業務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の請求をするには、国内登録検査機関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財務諸表等が書面をもつ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前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請求 三 財務諸表等が電磁的記録をもつ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四 前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つ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当該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第三十八条 削除 第三十九条 削除 (適合命令) 第四十条 経済産業大臣は、国内登録検査機関が第三十一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適合しなくなつたと認めるときは、その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これらの規定に適合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改善命令) 第四十条の二 経済産業大臣は、国内登録検査機関が第三十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適合性検査を行うべきこと又は適合性検査の方法その他の業務の方法の改善に関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登録の取消し等) 第四十一条 経済産業大臣は、国内登録検査機関が	기록을 포함한다. 다음 항 및 제60조제2호에서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5년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검 사업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국내 등록 검사기관의 업무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에 열거된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함에는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등이 서면으로 작성되는 때에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전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3. 재무제표 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제공하는 것의 청구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적합 명령) 제40조 경제산업대신은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국내 등록 검사기관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선 명령) 제40조의2 경제산업대신은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국내 등록 검사기관에 대하여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것 또는 적합성 검사 방법 기타 업무방법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 등) 제41조 경제산업대신은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다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登録を取り消し、又は期間を定めて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一 第三十条第一号又は第三号に該当するに至ったとき。
- 二 第三十三条、第三十四条、第三十五条第一項、第三十六条、第三十七条第一項又は次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 三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第三十七条第二項各号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んだとき。
- 四 前二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
- 五 不正の手段により第九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とき。

(帳簿の記載)

第四十二条 国内登録検査機関は、帳簿を備え、適合性検査に関し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帳簿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経済産業大臣による適合性検査業務実施等)

第四十二条の二 経済産業大臣は、第九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る者がいないとき、第三十六条の規定による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休止又は廃止の届出があつたとき、第四十一条の規定により同項の登録を取り消し、又は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とき、国内登録検査機関が天災その他の事由により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実施することが困難となつたときその他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自ら行うことができる。

- 2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国立研究開発法人産業技術総合研究所(以下「研究所」という。)又は機構に、当該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 3 経済産業大臣が前二項の規定により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自ら行い、又は研究所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기에 이른 때.
2.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때.
4. 전 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5.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19조제1항의 등록을 받았을 때.

(장부의 기재)

제42조 국내 등록 검사기관은 장부를 갖추어 적합성 검사에 관하여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장부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적합성 검사 업무 실시 등)

제42조의2 경제산업대신은 제9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가 없을 때, 제36조 규정에 따른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가 있는 때, 제41조 규정에 따라 동항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국내 등록 검사기관에 대해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했을 때,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할 수 있다.

-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연구 개발 법인 산업 기술 종합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또는 기구에 해당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경제산업대신이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실시 또는

若しくは機構に行わせる場合における適合性検査の業務の引継ぎその他の必要な事項について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第三節 外国登録検査機関 (適合性検査の義務等) 第四十二条の三 第九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者(外国にある事業所において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につき、その登録を受けた者に限る。以下「外国登録検査機関」という。)は、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を求められ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遅滞なく、適合性検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三十三条第二項、第三十四条から第三十七条まで、第四十条、第四十条の二及び第四十二条の規定は、外国登録検査機関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四十条及び第四十条の二中「命ずる」とあるのは、「請求す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登録の取消し等) 第四十二条の四 経済産業大臣は、外国登録検査機関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一 第三十条第一号又は第三号に該当するに至ったとき。 二 前条第一項の規定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十三条第二項、第三十四条、第三十五条第一項、第三十六条、第三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四十二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三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前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十七条第二項各号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んだとき。 四 前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四十条又は第四十条の二の規定による請求に応じなかつたとき。 五 不正の手段により第九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とき。 六 経済産業大臣が、外国登録検査機関が前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認めて、期間を定めて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を請求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請求に応じなかつたとき。	연구소 또는 기구에 실시하게 하는 경우의 적합성 검사 업무의 인수인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제3절 외국 등록 검사기관 (적합성 검사 의무 등) 제42조의3 제9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외국에 있는 사업소에서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 그 등록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이라 한다)는 적합성 검사를 행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적합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2항,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2조 규정은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0조 및 제40조의2 중 “명한다”는 “청구한다”로 본다. (등록의 취소 등) 제42조의4 경제산업대신은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기에 이른 때. 2. 전조 제1항의 규정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때. 4. 전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제19조제1항의 등록을 받았을 때. 6. 경제산업대신이 외국 등록 검사기관이 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청구한 경우에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七 経済産業大臣が必要があると認めて外国登録検査機関に対しその業務に関し報告を求めた場合において、その報告がされず、又は虚偽の報告がされたとき。

八 経済産業大臣が必要があると認めてその職員に外国登録検査機関の事務所又は事業所において第四十六条第二項に規定する事項についての検査をさせ、又は関係者に質問をさせようと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検査が拒まれ、妨げられ、若しくは忌避され、又はその質問に対して、正当な理由なく陳述がされず、若しくは虚偽の陳述がされたとき。

九 次項の規定による費用の負担をしないとき。

2 前項第八号の検査に要する費用(政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は、当該検査を受ける外国登録検査機関の負担とする。

3 経済産業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第一項第八号の規定による検査又は質問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4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機構に検査又は質問を行わせる場合には、機構に対し、当該検査の場所その他必要な事項を示してこれを実施すべきことを指示するものとする。

5 機構は、前項の指示に従つて第三項に規定する検査又は質問を行つたときは、その結果を経済産業大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章の二危険等防止命令

(危険等防止命令)

第四十二条の五 経済産業大臣は、次の各号に掲げる事由により危険又は障害が発生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おいて、当該危険又は障害の拡大を防止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各号に規定する者に対し、販売した当該電気用品の回収を図ることその他当該電気用品による危険及び障害の拡大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電気用品の製造、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が第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電気用品を販売したこと。

7. 경제산업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 그 보고가 이뤄지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가 이뤄진 때.

8. 경제산업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직원에게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서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한 경우에, 그 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하거나 그 질문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이 이뤄지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진술이 이뤄진 때.

9. 다음 항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않을 때.

② 전항 제8호 검사에 필요한 비용(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은 해당 검사를 받는 외국인 등록 검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구에 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구에 대해 해당 검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여 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⑤ 기구는 전항의 지시에 따라 제3항에 규정하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제산업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의2 위험 등 방지 명령

(위험 등 방지 명령)

제42조의5 경제산업대신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유로 인하여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험 또는 장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해 판매한 해당 전기용품의 회수를 도모하는 기타 해당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용품을 판매한 것.

二 届出事業者が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電気用品で技術基準に適合しないものを製造し、輸入し、又は販売したこと（第八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製造し、又は輸入した場合を除く。）。) 第六章雑則 （承認の条件） 第四十三条 第八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十七条第二項第一号の承認には、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条件は、承認に係る事項の確実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最小限度のものに限り、かつ、承認を受ける者に不当な義務を課することとなるものであつてはならない。 （公示） 第四十四条 経済産業大臣は、次の場合には、その旨を官報に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九条第一項の登録をしたとき。 二 第十二条の規定により表示を付することを禁止したとき。 三 第三十四条（第四十二条の三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 四 第三十六条（第四十二条の三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 五 第四十一条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し、又は適合性検査の業務の停止を命じたとき。 六 第四十二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経済産業大臣が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自ら行うものとするとき、又は自ら行っていた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行わないこととするとき。 七 第四十二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経済産業大臣が研究所若しくは機構に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行わせることとするとき、又は研究所若しくは機構に行かせていた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行わせることとするとき。 八 第四十二条の四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したとき。	2. 신고 사업자가 그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것(제18조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장 잡칙 （승인조건） 제43조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2항제1호의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전항의 조건은 승인에 관한 사항의 확실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고, 또한 승인을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공시） 제44조 경제산업대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등록을 한 때. 2. 제12조 규정에 따라 표시를 붙이는 것을 금지한 때. 3. 제34조(제42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던 때. 4. 제36조(제42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던 때. 5.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 6.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이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 때 또는 스스로 행하고 있었던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 때. 7.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이 연구소 또는 기구에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하는 것으로 한 때, 또는 연구소 또는 기구에 행하게 하고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않도록 한 때. 8.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

(報告の徴収) 第四十五条 経済産業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電気用品の製造、輸入若しく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又は第二十八条第二項に規定する事業を行う者に対し、その業務に関し報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経済産業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その業務又は経理の状況に関し報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立入検査等) 第四十六条 経済産業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職員に、電気用品の製造、輸入若しく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又は第二十八条第二項に規定する事業を行う者の事務所、工場、事業場、店舗又は倉庫に立ち入り、電気用品、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又は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経済産業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職員に、国内登録検査機関の事務所又は事業所に立ち入り、業務の状況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又は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又は質問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者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経済産業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又は質問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5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機構に立入検査又は質問を行わせる場合には、機構に対し、当該立入検査の場所その他必要な事項を示してこれを実施すべきことを指示するものとする。 6 機構は、前項の指示に従って第四項に規定する立入検査又は質問を行つたときは、その結果を経済産業大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第四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又は質問をする機構の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者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権限は、犯罪捜	(보고의 징수) 제45조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 또는 제28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국내 등록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 등) 제46조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에게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 또는 제28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점포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전기용품,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에게 국내 등록 검사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구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 현장검사 또는 질문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구에 대하여 해당 현장 검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나타내 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⑥ 기구는 전항의 지시에 따라 제4항에 규정된 현장검사 또는 질문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제산업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기구의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은 범죄

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電気用品の提出) 第四十六条の二 経済産業大臣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職員に検査をさせ、又は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機構に検査を行わせた場合において、その所在の場所において検査をさせ、又は検査を行わせる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ると認められる電気用品があつたときは、その所有者又は占有者に対し、期限を定めて、これを提出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国(前項の規定に基づく経済産業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務を第五十五条の二の規定に基づく政令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又は市長が行うこととされ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都道府県又は市)は、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よつて生じた損失を所有者又は占有者に対し補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り補償すべき損失は、第一項の命令により通常生ずべき損失とする。 (機構に対する命令) 第四十六条の三 経済産業大臣は、第四十二条の四第三項に規定する検査若しくは質問又は第四十六条第四項に規定する立入検査若しくは質問の業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対し、当該業務に関し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七条 削除 第四十八条 削除 第四十九条 削除 (研究所又は機構の処分等についての審査請求) 第五十条 研究所又は機構が行う適合性検査に係る処分又はその不作為について不服がある者は、経済産業大臣に対して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経済産業大臣は、行政不服審査法(平成二十六年法律第六十八号)第二十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四十六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	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전기용품의 제출) 제46조의2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원에게 검사를 하게 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 그 소재의 장소에서 검사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국가(전항의 규정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55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정령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도부현 또는 시)는 동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할 손실은 제1항의 명령에 따라 통상 생길 수 있는 손실로 한다. (기구에 대한 명령) 제46조의3 경제산업대신은 제42조의4제3항에 규정한 검사, 질문 또는 제46조 제4항에 규정된 현장검사 또는 질문의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연구소 또는 기구의 처분 등에 대한 심사 청구) 제50조 연구소 또는 기구가 행하는 적합성 검사에 관한 처분 또는 그 부작위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제산업대신은 행정 불복 심사법(2014년 법률 제68호)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びに第四十九条第三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研究所又は機構の上級行政庁とみなす。

(審査請求の手續における意見の聴取)

第五十一条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る処分又はその不作為についての審査請求に対する裁決は、行政不服審査法第二十四条の規定により当該審査請求を却下する場合を除き、審査請求人に対し、相当な期間をにおいて予告をした上、同法第十一条第二項 に規定する審理員が公開による意見の聴取をした後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意見の聴取に際しては、審査請求人及び利害関係人に対し、当該事案について証拠を提示し、意見を述べ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に規定する審査請求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第三十一条の規定は適用せず、同項の意見の聴取については、同条第二項 から第五項 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

(適合性検査についての申請及び経済産業大臣の命令)

第五十二条 届出事業者は、その製造し、又は輸入する特定電気用品について、国内登録検査機関が適合性検査を行わない場合又は国内登録検査機関の適合性検査の結果に異議のある場合は、経済産業大臣に対し、国内登録検査機関が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又は改めて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を命ずべきこと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2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申請に係る国内登録検査機関が第三十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申請に係る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第四十条の二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第四十条の二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又は命令をしないことの決定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当該申請をした届出事業者에게 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三項の規定は、外国登録検査機関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中「命ずべき」とあるのは「請求すべき」と、第二項中「第三十三条の規定」とあるのは「第四十二条の三第一項の規定又は同条

는 연구소 또는 기구의 상급 행정청으로 본다.

(심사 청구의 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제51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그 부작위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 불복 심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한 후, 동법 제11조제2항에 규정하는 심리원이 공개로 의견 청취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의견 청취 시 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행정 불복 심사법 제31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동항의 의견 청취 내용은 동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적합성 검사에 대한 신청 및 경제산업대신의 명령)

제52조 신고 사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하는 특정 전기용품에 대해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내 등록 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에 대해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적합성 검사를 행할 것 또는 다시 적합성 검사를 행할 것을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한 국내 등록 검사기관이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에 관한 국내 등록 검사기관에 대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경우에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신고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외국 등록 검사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명해야 하는”은 “청구해야 하는”으로, 제2항 중 “제33조의 규정”은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十三条第二項の規定」と、同項及び前項中「第四十条の二」とあるのは「第四十二条の三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四十条の二」と、「命令」とあるのは「請求」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手数料) 第五十三条 第四十二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経済産業大臣の行う適合性検査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研究所若しくは機構の行う適合性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実費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額の手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手数料は、経済産業大臣の行う適合性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者の納付するものについては国庫の、研究所の行う適合性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者の納付するものについては研究所の、機構の行う適合性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者の納付するものについては機構の収入とする。 (輸出用電気用品の特例) 第五十四条 輸出用の電気用品については、政令で、この法律の一部の適用を除外し、その他必要な特例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経過措置) 第五十五条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政令又は経済産業省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れぞれ、政令又は経済産業省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都道府県又は市が処理する事務) 第五十五条の二 この法律に規定する経済産業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務の一部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知事又は市長が行うこととすることができる。 (権限の委任) 第五十六条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経済産業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項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제33조제2항의 규정”으로, 동항 및 전항 중 “제40조의2”는 “제42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의2”로, “명령”은 “청구”로 본다. (수수료) 제53조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이 실시하는 적합성 검사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소 또는 기구가 행하는 적합성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수수료는 경제산업대신이 실시하는 적합성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고의, 연구소가 실시하는 적합성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기구가 실시하는 적합성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구의 수입으로 한다. (수출용 전기용품의 특례) 제54조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이 법률의 일부 적용을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경과조치) 제55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령 또는 경제산업성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는 각 정령 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의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도도부현 또는 시가 처리하는 사무) 제55조의2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56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経済産業局長又は産業保安監督部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章罰則 第五十七条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一 第十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表示を付した者 二 第十二条（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による禁止に違反した者 三 第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電気用品を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陳列した者 四 第二十八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電気用品を使用した者 五 第四十一条の規定による業務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た者 六 第四十二条の五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第五十八条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三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二 第八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検査を行わず、検査記録を作成せず、若しくは虚偽の検査記録を作成し、又は検査記録を保存しなかつた者 三 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証明書の交付を受けず、又は証明書を保存しなかつた者 四 第三十六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五 第四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同項に規定する事項の記載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記載をし、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帳簿を保存しなかつた者 六 第四十五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者 七 第四十六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て、正当な理由なく陳述をせず、若	경제산업국장 또는 산업보안감독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5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붙인 자 - 제12조(제1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금지에 위반한 자 -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 명령에 위반한 자 - 제42조의5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검사 기록을 작성하거나 검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인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향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자 -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향의 규정에 따른 질문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하지 않거

しくは虚偽の陳述をした者 八 第四十六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第五十九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に対して当該各号に定める罰金刑を、その人に対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一 第五十七条(第二号及び第六号に係る部分に限る。)一億円以下の罰金刑 二 第五十七条(第二号及び第六号に係る部分を除く。)又は前条各本条の罰金刑 第六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二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一 第四条第二項、第五条又は第六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二 第三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財務諸表等を備えて置かず、財務諸表等に記載すべき事項を記載せず、若しくは虚偽の記載をし、又は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同条第二項各号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んだ者 第六十一条 第四十六条の三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場合に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機構の役員は、二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나, 혹은 허위의 진술을 한 자 8.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제59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규정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벌금형을, 그 사람에 대해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57조(제2호 및 제6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1억 엔 이하의 벌금형 2. 제57조(제2호 및 제6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전 조 각 조의 벌금형 제6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재무제표 등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동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자 제61조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기구의 임원은 2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 록 IV



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

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 (昭和四十八年十月十二日法律第百十二号) 最終改正：平成二五年一二月一三日法律第一〇三号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について保健衛生上の見地から必要な規制を行なうことにより、国民の健康の保護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家庭用品」とは、主として一般消費者の生活の用に供される製品(別表に掲げるものを除く。)をいう。 2 この法律において「有害物質」とは、家庭用品に含有される物質のうち、水銀化合物その他の人の健康に係る被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物質として政令で定める物質をいう。 (事業者の責務) 第三条 家庭用品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なう者は、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家庭用品に含有される物質の人の健康に与える影響をはあくし、当該物質により人の健康に係る被害が生ずることの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家庭用品の基準) 第四条 厚生労働大臣は、保健衛生上の見地から、厚生労働省令で、家庭用品を指定し、その家庭用品について、有害物質の含有量、溶出量又は発散量に関し、必要な基準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厚生労働大臣は、保健衛生上の見地から、厚生労働省令で、毒物及び劇物取締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三百三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毒物又は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劇物である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を指定し、その家庭用品について、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73년 10월 12일 법률 제112호) 최종개정일자：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3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에 대한 보건 위생상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가정용품"은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별표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유해물질"이라 함은 가정용품에 함유된 물질 중 수은화합물 기타 사람의 건강에 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사업자의 책무) 제3조 가정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가정용품에 함유된 물질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해당 물질에 의해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용품의 기준) 제4조 후생노동대신은 보건 위생상의 관점에서 후생노동성령에서 가정용품을 지정하고, 그 가정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보건 위생상의 관점에서 후생노동성령에서 독물 및 극물단속법(1950년 법률 제3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물 또는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극물인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을 지정하고 그 가정용품에 대하여 그 용기

その容器又は被包に関し、必要な基準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3 厚生労働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り基準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薬事・食品衛生審議会の意見を聴くとともに、消費者庁長官及び当該家庭用品についての主務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販売等の禁止) 第五条 前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基準が定められた家庭用品の製造、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行なう者は、その基準に適合しない家庭用品を販売し、授与し、又は販売若しくは授与の目的で陳列してはならない。 (回収命令等) 第六条 厚生労働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保健所を設置する市又は特別区にあつては、市長又は区長とする。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は、第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基準が定められた家庭用品の製造、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がその基準に適合しない家庭用品を販売し、又は授与したことにより人の健康に係る被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おいて、当該被害の発生を防止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当該家庭用品の回収を図ることその他当該被害の発生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厚生労働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家庭用品によるものと認められる人の健康に係る重大な被害が生じた場合において、当該被害の態様等からみて当該家庭用品に当該被害と関連を有すると認められる人の健康に係る被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物質が含まれている疑いがあるときは、当該被害の拡大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家庭用品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なう者に対し、当該家庭用品の回収を図ることその他当該被害の拡大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応急の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또는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소비자청장관 및 해당 가정용품에 대한 주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판매 등의 금지) 제5조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가정용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품을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회수 명령 등) 제6조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는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가정용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품을 판매 또는 수여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에 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해당 가정용품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 기타 해당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가정용품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건강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피해의 형태 등으로 보아 해당 가정용품에 해당 피해와 관련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건강에 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가정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 해당 가정용품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 기타 해당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立入検査等) 第七条 厚生労働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家庭用品の製造、輸入若しく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に対し、必要な報告をさせ、又は食品衛生監視員、薬事監視員その他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職員のうちからあらかじめ指定する者に、当該事業を行う者の事務所、工場、事業場、店舗若しくは倉庫に立ち入り、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関係者に質問させ、若しくは試験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家庭用品を収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者は、家庭用品衛生監視員と称す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家庭用品衛生監視員が立入検査、質問又は収去を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者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質問及び収去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事務の区分) 第八条 第六条及び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保健所を設置する市又は特別区が処理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事務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一号 法定受託事務とする。 (経過措置) 第九条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命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命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罰則) 第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五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	(출입검사 등) 제7조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용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식품위생감시원, 약사감시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직원 중에서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을 행하는 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점포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하거나 시험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가정용품을 수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는 가정용품 위생 감시원이라고 칭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정용품 위생 감시원이 현장검사, 질문 또는 수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질문 및 수거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사무의 구분) 제8조 제6조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1945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 사무로 한다. (경과조치) 제9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의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벌칙)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규정에 위반한 자

二 第六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第十一条 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同項の規定による検査若しくは収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た者は、五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十二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前二条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2.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제11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한 자는 5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록 V



液化石油ガスの保安の確保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液化石油ガスの保安の確保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昭和四十二年十二月二十八日法律第百四十九号) 最終改正：平成二七年六月二四日法律第四七号 (最終改正までの未施行法令) 平成二十七年六月二十四日法律第四十七号(未施行) 第一章総則(第一条・第二条) 第二章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第三条-第二十六条の三) 第三章保安業務(第二十七条-第三十五条の五) 第三章の二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の認定(第三十五条の六-第三十五条の十) 第四章貯蔵施設等及び充てんのための設備(第三十六条-第三十八条) 第四章の二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 第一節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第三十八条の二-第三十八条の十三) 第二節指定試験機関(第三十八条の十四-第三十八条の二十八) 第五章液化石油ガス器具等 第一節販売及び表示の制限(第三十九条・第四十条) 第二節事業の届出等(第四十一条-第五十条) 第三節検査機関の登録(第五十一条-第五十四条) 第四節国内登録検査機関(第五十五条-第六十二条) 第五節外国登録検査機関(第六十三条・第六十四条) 第六節災害防止命令(第六十五条-第八十条) 第六章雑則(第八十一条-第九十五条の二) 第七章罰則(第九十六条-第一百四条) 附則 第一章総則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一般消費者等に対する液化石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1967년 12월 28일 법률 제149호0) 최종개정：2015년 6월 24일 법률 제47호 (최종개정까지의 미시행 법령) 2015년 6월 24일 법률 제47호(미시행)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제3조-제26조의3) 제3장 보안 업무(제27조-제35조의5) 제3장의2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인정(제35조의6-제35조의10) 제4장 저장시설 등 및 충전을 위한 설비(제36조-제38조) 제4장의2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제1절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제38조의2-제38조의13) 제2절 지정 시험 기관(제38조의14-제38조의28) 제5장 액화석유가스기구 등 제1절 판매 및 표시 제한(제39조·제40조) 제2절 사업의 신고 등(제41조-제50조) 제3절 검사 기관 등록(제51조-제54조) 제4절 국내 등록 검사 기관(제55조-제62조) 제5절 외국인 등록 검사 기관(제63조·제64조) 제6절 재해 방지 명령(제65조-제80조) 제6장 잡칙(제81조-제95조의2) 제7장 벌칙(제96조-제104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일반소비자 등에 대한 액화석유가

油ガスの販売、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製造及び販売等を規制することにより、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を防止するとともに液化石油ガスの取引を適正にし、もつて公共の福祉を増進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液化石油ガス」とは、プロパン、ブタンその他政令で定める炭化水素を主成分とするガスを液化したもの(その充てんされた容器内又はその容器に附属する気化装置内において気化したものを含む。)をいう。

2 この法律において「一般消費者等」とは、液化石油ガスを燃料(自動車用のもの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として生活の用に供する一般消費者及び液化石油ガスの消費の態様が一般消費者が燃料として生活の用に供する場合に類似している者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3 この法律において「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とは、液化石油ガスを一般消費者等に販売する事業(ガス事業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五十一号)第二条第十項のガス事業及び同法第二十三条又は第二十四条の届出をして行う事業を除く。)をいう。

4 この法律において「供給設備」とは、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の用に供する液化石油ガスの供給のための設備(船舶内のものを除く。)及びその附属設備であつ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5 この法律において「消費設備」とは、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を行うことについて次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者が一般消費者等に販売する液化石油ガスに係る消費のための設備(供給設備に該当するものと及び船舶内のものを除く。)をいう。

6 この法律において「液化石油ガス設備士」とは、液化石油ガス設備士免状の交付を受けている者をいう。

7 この法律において「液化石油ガス器具等」とは、主として一般消費者等が液化石油ガスを消費する場合に用いられる機械、器具又は材料(一般消費者等が消費する液化石油ガスの供給に用いられるものを含む。)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스 판매,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액화석유가스의 거래를 적정하게 하고, 그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 부탄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액화한 것(그 충전된 용기 내 또는 그 용기에 부속하는 기화장치 내에서 기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일반소비자 등"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자동차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생활용으로 이용하는 일반소비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소비 형태가 일반소비자가 연료로서 생활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가스사업법(1954년 법률 제51호) 제2조제10항의 가스사업 및 동법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신고를 실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이 법률에서 "공급설비"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위한 설비(선박의 것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 설비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률에서 "소비설비"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다음 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가 일반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된 소비를 위한 설비(공급설비에 해당하는 것 및 선박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⑥ 이 법률에서 "액화석유가스 설비사"란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졸업 증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⑦ 이 법률에서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이란 주로 일반소비자 등이 액화석유가스를 소비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재료(일반소비자 등이 소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とは、構造、使用条件、使用状況等からみて特に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の発生のおそれが多いと認められる液化石油ガス器具等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第二章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 (事業の登録) 第三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を行おうとする者は、二以上の都道府県の区域内に販売所を設置してその事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にあつては経済産業大臣の、一の都道府県の区域内にのみ販売所を設置してその事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販売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次の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を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二 販売所の名称及び所在地 三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の用に供する液化石油ガスの貯蔵施設(以下「貯蔵施設」という。)の位置及び構造 四 液化石油ガスの販売契約を締結する一般消費者等について第二十七条第一項に掲げる業務を行う第二十九条第一項の認定を受けた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その事業所の所在地 五 その販売した液化石油ガスにより一般消費者等の生命、身体又は財産について損害が生じ、その被害者に対してその損害の賠償を行うべき場合に備えてとるべき措置 3 前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は、第十一条ただし書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場合にあつては、同項の申請書に記載することを要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貯蔵施設を所有又は占有しない理由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二項の申請書には、第四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ことを誓約する書面その他の経済	⑧ 이 법률에서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이란 구조, 사용조건, 사용 상황 등으로 보아 특히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사업의 등록) 제3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둘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판매소를 설치하여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하나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서만 판매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판매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이하 "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위치 및 구조 4. 액화석유가스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소비자 등에 대해 제27조제1항에 열거된 업무를 수행하는 제29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사업장의 위치 5. 그 판매 한 액화석유가스에 의해 일반소비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에 대해 그 손해의 배상을 실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취해야 할 조치 ③ 전항 제3호에 열거하는 사항은 제11조 단서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항의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 저장시설을 소유 또는 점유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서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서약하는 서면 기타 경

産業省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登録の実施) 第三条の二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前条第二項の登録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拒否する場合を除くほか、前条第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の事項並びに登録の年月日及び登録番号を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登録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登録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申請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何人も、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に対し、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登録簿の謄本の交付又は閲覧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登録の拒否) 第四条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第三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又は同条第二項の申請書若しくは同条第四項の添付書類のうちに重要な事項について虚偽の記載があり、若しくは重要な事実の記載が欠けているときは、その登録を拒否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この法律若しくは高压ガス保安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二百四号）又はこれら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二 第二十六条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三 成年被後見人 四 法人であつて、その業務を行う役員のうちに前三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五 第三条第二項第五号の措置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者 2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規定により第三条第一項の登録を拒否したときは、同時に、その理由を示して、その旨を申請者に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의 실시) 제3조의2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 제2항의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및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를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등록부 등본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 거부) 제4조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3조제1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동조 제2항의 신청서 또는 동조 제4항의 첨부 서류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또는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1. 이 법률 또는 고압가스 보안법(1951년 법률 제 240호)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성년피후견인 4. 법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에 전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제3조제2항제5호의조치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②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3조제1항의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五条 削除 (登録行政庁の変更の場合における届出等) 第六条 第三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者(以下「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という。)は、同項の登録を受けた後次の各号の一に該当して引き続き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第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他の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の地位を承継したことにより次の各号の一に該当して引き続き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を除く。)において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た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その旨を従前の登録をした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経済産業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が一の都道府県の区域内にのみ販売所を有することとなつたとき。 二 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た者が当該都道府県の区域内における販売所を廃止して、他の一の都道府県の区域内に販売所を設置することとなつたとき。 三 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た者が二以上の都道府県の区域内に販売所を有することとなつたとき。 (標識の掲示) 第七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販売所ごとに、公衆の見やすい場所に、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様式の標識を掲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以外の者は、前項の標識又はこれに類似する標識を掲示してはならない。 (販売所等の変更の届出) 第八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第三条第二項各号の事項を変更した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その登録をした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条 削除	제5조 삭제 (등록 행정청 변경의 경우의 신고 등) 제6조 제3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라 한다)는 동항의 등록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속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속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종전의 등록을 한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하나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서만 판매소를 갖는 것으로 한 때. 2.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판매소를 폐지하고 다른 하나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판매소를 설치하게 된 때. 3.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자가 둘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판매소를 갖는 것으로 한 때. (표지의 게시) 제7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판매소마다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양식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매소 등의 변경 신고) 제8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한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承継) 第十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がその事業の全部を譲り渡し、又は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について相続、合併若しくは分割(その事業の全部を承継させるものに限る。)があつたときは、その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た者又は相続人(相続人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全員の同意により事業を承継すべき相続人を選定したときは、その者)、合併後存続する法人若しくは合併により設立した法人若しくは分割によりその事業の全部を承継した法人は、その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の地位を承継する。ただし、当該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た者又は相続人(相続人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全員の同意により事業を承継すべき相続人を選定したときは、その者)、合併後存続する法人若しくは合併により設立した法人若しくは分割により当該事業の全部を承継した法人が第四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の地位を承継した者は、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場合には、自ら第三条第一項の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た事業又は当該承継に係る事業であつて同項の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たものについて、当該承継の時に同項の経済産業大臣の登録を受けたものとみなす。 一 第三条第一項の経済産業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が同項の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た者の地位を承継したとき。 二 第三条第一項の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た者が同項の経済産業大臣の登録又は他の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た者の地位を承継したとき。 三 第三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ていない者が、同時に、同項の経済産業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の地位及び同項の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た者の地位を承継したとき又は同項の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た二以上の者の地位を承継したとき(その登録をした都道府県知事が同一であるときを除く。)。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の地位を承継した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その旨を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	(승계) 제10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에 대해 상속, 합병 또는 분할(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 또는 상속인(상속인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사업을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했을 때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그 액화가스 판매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 또는 상속인(상속인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사업을 승계 할 상속인을 선정했을 때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제3조제1항의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사업 또는 해당 승계에 관한 사업으로서 동항의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승계 시 동항의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3조제1항의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동항의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2. 제3조제1항의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자가 동항의 경제산업대신의 등록 또는 다른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3. 제3조제1항의 등록을 받지 않은 자가 동시에 동항의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지위 및 동항의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또는 동항의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둘 이상의 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그 등록을 한 도도부현 지사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제산업대신 또는

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貯蔵施設) 第十一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己の用に供する液化石油ガスの貯蔵施設を所有し、又は占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液化石油ガスを貯蔵しないでその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を円滑に行うことができる場合等とし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場合にあっ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十二条 削除 (規格に適合しない液化石油ガスの販売の禁止等) 第十三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液化石油ガスの規格とし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に適合しない液化石油ガスの一般消費者等に対する販売(液化石油ガスを一般消費者等に現に引き渡しその消費された液化石油ガスのみについて代金を受領する販売の場合には、引渡し)をしてはならない。 2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その登録をした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が前項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販売した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が発生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に対し、その販売に係る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の発生の防止に関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書面の交付) 第十四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一般消費者等と液化石油ガスの販売契約を締結したときは、遅滞なく、次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当該一般消費者等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交付した書面に記載した事項を変更したときは、当該変更した部分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一 液化石油ガスの種類 二 液化石油ガスの引渡しの方法 三 供給設備及び消費設備の管理の方法 四 第二十七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調査の方法及び同項第三号に規定する周知の方法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저장시설) 제11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 용도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소유 또는 점유해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지 않고 그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삭제 (규격에 맞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금지 등) 제13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규격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은 액화석유가스의 일반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액화석유가스를 일반소비자 등에 실제로 인도하여 소비된 액화석유가스 대해서만 대금을 수령하는 판매의 경우에는 인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그 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그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에 대하여 그 판매에 관한 액화석유가스에 따른 재해의 발생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서면의 교부) 제14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일반소비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판매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일반소비자 등에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교부한 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다. 1. 액화석유가스의 종류 2. 액화석유가스의 인도 방법 3.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의 관리 방법 4. 제2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조사 방법 및 동항 제3호에 규정하는 주지의 방법

五 当該一般消費者等について第二十七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業務を行う第二十九条第一項の認定を受けた者の氏名又は名称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 2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その登録を受けた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が前項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においては、当該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に対し、同項の規定による書面を交付し、又は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再交付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十五条 削除 (基準適合義務等) 第十六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その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の用に供する貯蔵施設を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 (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量以上の液化石油ガスを貯蔵する貯蔵施設にあつては、第三十七条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第三項において同じ。) に適合するように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つて液化石油ガスの販売 (販売に係る貯蔵を含む。次項、第二十条第一項、第二十一条第一項及び第八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 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その登録を受けた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の貯蔵施設又は販売の方法が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又は前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技術上の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貯蔵施設を修理し、改造し、若しくは移転し、又はその基準に従つて液化石油ガスの販売を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十六条の二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供給設備を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 (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供給設備 (以下「特定供給設備」という。) にあつては、第三十七条の経済産業省令で定	5. 해당 일반소비자 등에 대해 제2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29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6.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그 등록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에 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거나 동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재교부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기준 적합 의무 등) 제16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저장시설을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양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시설에 있어서는 제37조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 제3항에서 같다)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판매에 관련된 저장을 포함한다. 다음 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서 같다)를 해야 한다. ③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그 등록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판매의 방법이 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 또는 제2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저장시설을 수리, 개조, 또는 이전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공급설비를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공급설비(이하 "특정 공급설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제37조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

める技術上の基準。次項、第二十七条第一項第一号、第三十八条の二及び第三十八条の八第一項において同じ。)に適合するように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その登録を受けた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の供給設備が前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技術上の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供給設備を修理し、改造し、又は移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勧告等)

第十七条 経済産業大臣は、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の事業の運営が適正を欠いているため、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の発生の防止又は一般消費者等の利便の確保に支障を生じ、又は生じ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産業構造審議会の意見を聴いて、当該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に対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

2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勧告をした場合において、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がその勧告に従わなかっ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保安教育)

第十八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その従業者に保安教育を施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高压ガス保安協会(以下「協会」という。)は、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の防止に資するため、前項の保安教育を施すに当たって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作成し、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業務主任者)

第十九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販売所ごとに、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って、販売主任者免状(高压ガス保安法第二十八条第一項の高压ガス販売主任者免状であつ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種類のものをいう。以下同じ。)の交付を受けている者であつ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液化石油ガスの販売に関する経験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液化石

는 기술상의 기준. 다음 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38조의2 및 제38조의8 제1항에서 같다)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그 등록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공급설비가 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공급설비를 수리, 개조하거나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권고 등)

제17조 경제산업대신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사업 운영의 적정성이 부족하여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의 발생의 방지 또는 일반소비자 등의 편의 확보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 구조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한 경우에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보안 교육)

제18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그 직원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 보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의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항의 보안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업무 주임자)

제19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판매소마다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매 주임자책임자 증서(고압가스 보안법 제28조제1항의 고압가스 판매 주임자 증서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받은 자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액화석유가스 업무

油ガス業務主任者（以下「業務主任者」という。）を選任し、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業務主任者の職務を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業務主任者を選任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その登録をした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解任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3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業務主任者に協会又は高压ガス保安法第三十一条第三項 の指定講習機関の行う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講習を受け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業務主任者の職務等） 第二十条 業務主任者は、液化石油ガスの販売に係る保安に関し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職務を行なう。 2 業務主任者は、誠実にその職務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に従事する者は、業務主任者が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実施を確保するためにする指示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業務主任者の代理者） 第二十一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販売所ごとに、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販売主任者免状の交付を受けている者であつ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液化石油ガスの販売に関する経験を有する者又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条件に適合する液化石油ガスの販売に関する知識経験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あらかじめ、業務主任者の代理者を選任し、業務主任者が旅行、疾病その他の事故によつてその職務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その職務を代行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前項の代理者を選任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その登録をした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解任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3 第一項の代理者は、業務主任者の職務を代行す	주임자(이하 "업무 주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 주임자의 직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 주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그 등록을 한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주임자 협회 또는 고압가스 보안법 제31조제3항 지정 강습 기관이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 발생의 방지에 관한 강습을 받게 하여야 한다. （업무 주임자의 직무 등） 제20조 업무 주임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보안에 관하여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업무 주임자는 성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 주임자가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침을 따라야 한다. （업무 주임자의 대리인） 제21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판매소마다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 책임자 졸업 증서의 교부를 받은 자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지식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미리 업무 주임자의 대리인을 선임하고, 업무 주임자가 여행,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전항의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그 등록한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대리인은 업무 주임자의 직무를 대행하

る場合は、この法律及び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業務主任者とみなす。

(業務主任者等の解任命令)

第二十二條 經濟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業務主任者若しくはその代理者がこの法律若しくは高压ガス保安法 若しくはこれら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又はこれらの者にその職務を行わせることが公共の安全の維持若しくは災害の發生の防止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登録を受けた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に対し、当該業務主任者又はその代理者を解任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廃止の届出)

第二十三條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を廃止したときは、經濟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その旨をその登録をした經濟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登録の失効)

第二十四條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が第六條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經濟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の登録を受けたときは、その者に係る従前の經濟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の同項の登録は、その効力を失う。

2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が第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三条第一項の都道府県知事又は經濟産業大臣の登録を受けたものとみなされたときは、それぞれ、その者に係る従前の經濟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の同項の登録は、その効力を失う。

3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がその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を廃止したときは、その者に係る第三条第一項の經濟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の登録は、その効力を失う。

(登録の取消し等)

第二十五條 經濟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その登録を受けた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が正当な理

는 경우에는 이 법률 및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업무 주임자로 본다.

(업무 주임자 등의 해임 명령)

제22조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업무 주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 법률 또는 고압가스 보안법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그 자에게 그 직무를 행하게 하는 것이 공공 안전의 유지 또는 재해 발생의 방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 주임자 또는 그 대리인을 해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폐지의 신고)

제23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그 등록한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제24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자에 관한 종전의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동항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조제1항의 도도부현 지사 또는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사람에 관한 종전의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동항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람에 관한 제3조제1항의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등록의 취소 등)

제25조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그 등록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정당한 이

由がないのに、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を一年以内に開始せず、又は一年以上引き続き休止したときは、そ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二十六条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その登録を受けた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が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登録を取り消し、又は期間を定めてその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第四条第一項第一号、第三号、第四号又は第五号に該当するに至ったとき。 二 第八条の規定に違反して第三条第二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の事項を変更したとき。 三 第十一条、第十三条第一項、第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又は第二十七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四 第十三条第二項、第十四条第二項、第十六条第三項、第十六条の二第二項又は第二十二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 五 第三十七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貯蔵施設（第十六条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量以上の液化石油ガスを貯蔵するものに限る。）又は特定供給設備を使用したとき。 六 高压ガス保安法第三十九条第一号 若しくは第三号 の規定による命令又は同条第二号 の規定による禁止若しくは制限に違反したとき。 七 不正の手段により第三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とき。 （登録の消除） 第二十六条の二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の登録がその効力を失ったときは、その登録を消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 （経済産業省令への委任） 第二十六条の三 この章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の登録の手續その他この章の規定の実施に関し必要な手続的事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유 없이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지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그 등록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8조 규정에 위반하여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한 때. 3. 제11조, 제13조 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 또는 제27조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5. 제3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장시설(제16조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양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특정 공급설비를 사용한 때. 6. 고압가스 보안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때. 7. 부정한 수단으로 제3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때. （등록 취소） 제26조의2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등록이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제26조의2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의 등록 절차 기타 이 장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第三章保安業務 (保安業務を行う義務) 第二十七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その販売契約を締結している一般消費者等について次に掲げる業務(以下「保安業務」という。)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供給設備を点検し、その供給設備が第十六条の二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しないと認めるときは、遅滞なく、その技術上の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するためにとるべき措置及びその措置をとらなかつた場合に生ずべき結果をその供給設備により液化石油ガスを供給している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に通知する業務 二 消費設備を調査し、その消費設備が第三十五条の五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しないと認めるときは、遅滞なく、その技術上の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するためにとるべき措置及びその措置をとらなかつた場合に生ずべき結果をその所有者又は占有者に通知する業務 三 液化石油ガスを消費する一般消費者等に対し、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の発生の防止に関し必要な事項であつ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を周知させる業務 四 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が発生し、又は発生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液化石油ガスに係る一般消費者等からその事実を通知され、これに対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を求められたとき、又は自らその事実を知つたときに、速やかにその措置を講ずる業務 2 前項の規定は、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が第二十九条第一項の認定を受けた者(以下「保安機関」という。)にその認定に係る保安業務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委託しているときは、その委託している保安業務の範囲において、その委託に係る一般消費者等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保安業務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自ら行おうとするときは、第二十九条第一項の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제3장 보안 업무 (보안 업무를 수행할 의무) 제27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반소비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보안 업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공급설비를 점검하고 그 공급설비가 제16조의2 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생길 수 있는 결과를 그 공급설비에 의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업무 ② 소비설비를 조사하여 그 소비설비가 제35조의5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생길 수 있는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는 업무 ③ 액화석유가스를 소비하는 일반소비자 등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 발생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업무 4.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된 일반소비자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지받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을 때, 또는 스스로 그 사실을 안 때, 신속하게 그 조치를 강구하는 업무 ② 전항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보안 기관"이라 한다)에 그 인증에 관한 보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위탁하고 있는 보안 업무의 범위에서 그 위탁에 관련된 일반소비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보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스스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保安業務の委託) 第二十八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及び保安機関は、保安業務につき委託契約を締結するときは、次の事項を書面に記載し、署名又は記名押印をして相互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委託に係る一般消費者等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二 委託に係る保安業務の範囲及び期間並びに実施の方法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 (認定) 第二十九条 保安業務を行おうとする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保安業務の区分(以下「保安業務区分」という。)に従い、二以上の都道府県の区域に設置される販売所の事業として販売される液化石油ガスの一般消費者等についての保安業務を行う場合にあっては経済産業大臣の、一の都道府県の区域内に設置される販売所の事業として販売される液化石油ガスの一般消費者等についての保安業務を行う場合にあっては当該販売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の認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認定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を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二 保安業務区分 三 保安業務を行う事業所の所在地 3 第一項の認定の申請は、保安業務に係る一般消費者等の数の範囲を定め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欠格条項) 第三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前条第一項の認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 この法律若しくは高压ガス保安法 又はこれら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	(보안 업무의 위탁) 제28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및 보안 기관은 보안 업무에 대해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 위탁에 관한 일반소비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위탁에 관한 보안 업무의 범위 및 기간 및 실시 방법 3. 전 2호에 정한 것 외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인증) 제29조 보안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보안 업무의 구분(이하 “보안 업무 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둘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에 설치된 판매소의 사업으로서 판매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반소비자 등에 대한 보안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하나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설치된 판매소의 사업으로서 판매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반소비자 등에 대한 보안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보안 업무 구분 3.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소재지 ③ 제1항의 인정의 신청은 보안 업무에 관한 일반 소비자 등의 수의 범위를 정하여 해야 한다. (결격조항) 제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률 또는 고압가스 보안법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二 第三十五条の三の規定により認定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三 成年被後見人 四 法人であつて、その業務を行う役員のうちに前三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認定の基準) 第三十一条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第二十九条第一項の認定の申請が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適合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その認定をしてはならない。 一 保安業務に係る技術的能力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こと。 二 その保安業務により一般消費者等の生命、身体又は財産について損害が生じ、その被害者に対してその損害の賠償を行うべき場合に備えてとるべき措置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こと。 三 法人にあつては、その役員又は法人の種類に応じ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構成員の構成が保安業務の公正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ないものであること。 四 保安業務以外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きは、その業務を行うことによつて保安業務の適確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ないものであること。 (保安機関の認定の更新) 第三十二条 第二十九条第一項の認定は、五年以上十年以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期間ごとにその更新を受けなければ、その期間の経過によつて、その効力を失う。 2 第二十九条第二項及び第三項並びに前条の規定は、前項の認定の更新に準用する。 (一般消費者等の数の増加の認可等) 第三十三条 保安機関は、その保安業務に係る一般消費者等の数を第二十九条第三項の数の範囲を超えて増加しようとする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認定をした経済産業大臣又は都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성년피후견인 4. 법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에 전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인증 기준) 제31조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29조제1항의 인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 모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그 인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보안 업무에 관한 기술적 능력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2. 그 보안 업무에 따라 일반소비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해 그 손해의 배상을 실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3.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구성원의 구성이 보안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4. 보안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보안 업무의 정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보안 기관의 인증 갱신) 제32조 제29조제1항의 인정은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29조제2항 및 제3항 및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인정 갱신에 준용한다. (일반소비자 등의 수 증가의 인가 등) 제33조 보안 기관은 그 보안 업무에 관한 일반소비자 등의 수를 제29조제3항 수의 범위를 넘어 증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한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

道府県知事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保安機関は、その保安業務に係る一般消費者等の数を第二十九条第三項の数の範囲を超えて減少した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その旨をその認定をした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三十一条（第三号及び第四号を除く。）の規定は、第一項の認可に準用する。 （保安機関の業務等） 第三十四条 保安機関は、保安業務を行うべき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つて、その保安業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供給設備又は消費設備の設置の場所その他保安業務を行うべき場所に立ち入ることにつき、その所有者又は占有者の承諾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保安機関は、保安業務を行うべき場合において、これを他人に委託してはならない。 3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その認定を受けた保安機関が保安業務を行うべき場合において、その保安業務を行わず、又はその方法が適当でないときは、当該保安機関に対し、その保安業務を行い、又はその方法を改善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保安業務規程） 第三十五条 保安機関は、保安業務に関する規程（以下この章において「保安業務規程」という。）を定め、その認定をした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保安業務規程で定めるべき事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3 第一項の認可をした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その認可をした保安業務規程が保安業務の適確な遂行上不適当となつたと認めるときは、その保安機関に対し、その保安業務規程を変更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안 기관은 그 보안 업무에 관한 일반소비자 등의 수를 제29조제3항 수의 범위를 넘어 감소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그 인정을 한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준용한다. （보안 기관의 업무 등） 제34조 보안 기관은 보안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보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공급설비 또는 소비설비의 설치장소 기타 보안 업무를 수행할 장소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안 기관은 보안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이를 타인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③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인증을 받은 보안 기관이 보안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그 보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 적당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보안 기관에 대하여 그 보안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방법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보안 업무 규정） 제35조 보안 기관은 보안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장에서 "보안 업무 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인정을 한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안 업무 규정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인가를 한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그 인가를 한 보안 업무 규정이 보안 업무의 적확한 수행에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보안 기관에 대하여 그 보안 업무 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適合命令) 第三十五条の二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その認定を受けた保安機関が第三十一条各号に適合しなくなつたと認めるときは、その保安機関に対し、これらの規定に適合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認定の取消し) 第三十五条の三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その認定を受けた保安機関が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認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一 第三十条第一号、第三号又は第四号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 二 第三十三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ないで保安業務に係る一般消費者等の数を増加したとき。 三 第三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四 第三十四条第三項、第三十五条第三項又は前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 五 第三十五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保安業務規程によらないで保安業務を行つたとき。 六 第八十四条第一項の条件に違反したとき。 七 不正の手段により第二十九条第一項の認定又はその更新を受けたとき。 (準用規定) 第三十五条の四 第六条、第八条、第十条、第二十三条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は、保安機関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六条、第十条第二項及び第二十四条中「第三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二十九条第一項」と、第六条、第八条、第十条第二項、第二十三条及び第二十四条中「登録」とあるのは「認定」と、第六条、第二十三条及び第二十四条第三項中「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とあるのは「保安業務」と、第六条中「第十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三十五条の四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条第一項」と、第六条第一号及び第三号中「販売所を有する」とあるのは「設置される販売所の事業として販売される液化石油ガスの一般消費者等についての保安業務を行う」と、同条第二号中「おける販売所」とあるのは「設置される販売所の事業として販売される液化石油ガスの一般	(적합 명령) 제35조의2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인증을 받은 보안 기관이 제31조 각 호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보안 기관에 이러한 규정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인증의 취소) 제35조의3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인증을 받은 보안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33조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보안 업무에 관한 일반소비자 등의 수를 증가한 때.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 한 때. 5. 제35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르지 않고 보안 업무를 행한 때. 6. 제84조제1항의 조건에 위반한 때. 7. 부정한 수단으로 제29조제1항의 인정 또는 갱신을 받은 때. (준용 규정) 제35조의4 제6조, 제8조, 제10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보안 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조, 제10조제2항 및 제24조 중 “제3조제1항”은 “제29조제1항”으로, 제6조, 제8조, 제10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등록”은 “인정”으로, 제6조, 제23조 및 제24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은 “보안 업무”로, 제6조 중 “제10조제1항”은 “제35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0조제1항”으로, 제6조제1호 및 제3호 중 “판매소를 가지는”은 “설치된 판매소의 사업으로서 판매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반소비자 등에 대한 보안 업무를 행하는”으로, 동 조 제2호 중 “에서 판매소”는 “설치된 판매소 사업으로 판매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반소비자 등에 대한 보안 업무”로, “판매소를 설치한다”는 “설치된 판매소의 사업으로서 판매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일

消費者等についての保安業務」と、「販売所を設置する」とあるのは「設置される販売所の事業として販売される液化石油ガスの一般消費者等についての保安業務を行う」と、第八条中「第三条第二項各号」とあるのは「第二十九条第二項第一号及び第三号」と、第十条第一項中「第四条第一項各号」とあるのは「第三十条各号」と、第二十四条第一項中「第六条」とあるのは「第三十五条の四において準用する第六条」と、同条第二項中「第十条第二項」とあるのは「第三十五条の四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条第二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基準適合命令) 第三十五条の五 都道府県知事は、消費設備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所有者又は占有者に対し、その技術上の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消費設備を修理し、改造し、又は移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三章の二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の認定 (保安の確保の方法等の認定) 第三十五条の六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液化石油ガスの販売契約を締結している一般消費者等の保安を確保するための機器であつ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以下「保安確保機器」という。)の設置及び管理の方法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その登録をした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の認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認定に関し必要な事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認定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の報告義務) 第三十五条の七 前条第一項の認定を受けた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以下「認定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という。)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販売契約を締結している一般消費者等の数及び保安確保機器に係る一般消費者等の数をその認定をした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반소비자 등에 대한 보안 업무를 행한다”로, 제8조 중 “제3조제2항 각 호”는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제10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각 호”는 “제30조 각 호”로, 제24조제1항 중 “제6조”는 “제35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6조”로, 동조 제2항 중 “제10조제2항”은 “제35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0조 제2항”으로 본다. (기준 적합 명령) 제35조의5 도도부현 지사는 소비설비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그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비설비를 수리, 개조하거나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장의2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인증 (보안의 확보 방법 등의 인정) 제35조의6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반소비자 등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기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이하 “보안 확보 장비”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방법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등록을 한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보고 의무) 제35조의7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이하 “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라 한다)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반소비자 등의 수 및 보안 확보 기기에 관한 일반소비자 등의 수를 그 인정을 한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認定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等に係る特例) 第三十五条の八 認定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選任すべき業務主任者の数その他業務主任者の選任の方法につい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つて業務主任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五条の九 認定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が販売契約を締結している一般消費者等であつて、保安確保機器により保安が確保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の保安業務を行う保安機関は、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供給設備の点検の方法その他保安業務の方法につい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つて保安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認定の取消し) 第三十五条の十 経済産業大臣及び都道府県知事は、その認定を受けた認定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の保安確保機器の設置及び管理の方法が第三十五条の六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遅滞なく、その認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経済産業大臣及び都道府県知事は、その認定を受けた認定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が第三十五条の七の報告をしない場合であつて、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がその認定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に対し十日以上の相当な期間を定めて報告すべきことを催告し、当該認定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がその期間内に報告をしないときは、当該認定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に係る認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四章貯蔵施設等及び充てんのための設備 (貯蔵施設等の設置の許可) 第三十六条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貯蔵施設又は特定供給設備ごとに、その貯蔵施設又は特定供給設備の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十六条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量以上の液化石油ガスを貯蔵するための貯蔵施設 (以下こ	(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의8 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해야 할 업무 주임자 수 기타 업무 주임자의 선임 방법에 대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 주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의9 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반소비자 등으로서, 보안 확보 기기에 의해 보안이 확보되어 있는 자에 대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 기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설비의 점검 방법 기타 보안 업무의 방법에 대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업무를 할 수 있다. (인증의 취소) 제35조의10 경제산업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는 그 인증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보안 확보 기기의 설치 및 관리 방법이 제35조의6 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는 그 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제35조의7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그 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해당 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에 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저장시설 등 및 충전을 위한 설비 (저장시설 등의 설치 허가) 제3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저장시설 또는 특정 공급설비에 대해 그 저장시설 또는 특정 공급설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양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이하

の章において「貯蔵施設」という。)を設置しようとする者 二 特定供給設備を設置して液化石油ガスを供給しようとする者 2 前項の許可の申請は、貯蔵施設又は特定供給設備の所在地を管轄する消防長(消防本部を置かない市町村にあつては、市町村長。以下同じ。)又は消防署長の意見書を添え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許可の基準) 第三十七条 都道府県知事は、前条第一項の許可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申請に係る貯蔵施設又は特定供給設備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すると認めるときは、許可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変更の許可) 第三十七条の二 第三十六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貯蔵施設の位置、構造若しくは設備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又は特定供給設備の位置、構造、設備若しくは装置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許可をした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貯蔵施設の撤去その他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軽微な変更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前項ただし書の貯蔵施設の撤去その他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軽微な変更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その許可をした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条の規定は、第一項の許可に準用する。 (完成検査) 第三十七条の三 第三十六条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は、貯蔵施設を設置し、若しくはその位置、構造若しくは設備を変更したとき、又は特定供給設備を設置し、若しくはその位置、構造、設備若しくは装置を変更したときは、当該貯蔵施設又は当該特定供給設備につき、その許可をした都道府県知事が行う完成検査を受け、これらが第三十七条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이 장에서 "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특정 공급설비를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② 전항의 허가 신청은 저장시설 또는 특정 공급설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장(소방본부를 두지 않는 시정촌에 있어서는 시정촌장. 이하 같다) 또는 소방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허가의 기준) 제37조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 제1항의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저장시설 또는 특정 공급설비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변경 허가) 제37조의2 제36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저장시설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 공급설비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철거 기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저장시설의 철거 기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그 허가를 한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에 준용한다. (완성 검사) 제37조의3 제36조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저장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또는 특정 공급설비를 설치하거나, 혹은 그 위치, 구조, 설비 또는 장치를 변경한 때에는 해당 저장시설 또는 해당 특정 공급설비에 대해 그 허가를 한 도도부현 지사가 수행하는 완성 검사를 받고, 이것이 제37조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

技術上の基準に適合していると認められた後でなければ、これを使用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当該貯蔵施設又は当該特定供給設備につき、協会又は高压ガス保安法第二十条第一項 ただし書の指定完成検査機関（以下「指定完成検査機関」という。）が行う完成検査を受け、これらが第三十七条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していると認められ、その旨を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協会又は指定完成検査機関は、前項ただし書の完成検査を行つ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結果を都道府県知事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都道府県知事、協会又は指定完成検査機関が行う完成検査の方法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充てん設備の許可）

第三十七条の四 供給設備に液化石油ガス（高压ガス保安法第二条 の高压ガスであ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項、次条第二項及び第四項、第九十八条第五号並びに第九十八条の二第一号において同じ。）を充てんしようとする者は、供給設備に液化石油ガスを充てんするための設備（以下「充てん設備」という。）ごとに、そ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許可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申請に係る充てん設備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すると認めるときは、許可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三十七条の二の規定は、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者（以下「充てん事業者」という。）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中「貯蔵施設の位置、構造若しくは設備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又は特定供給設備の位置、構造、設備若しくは装置」とあるのは「充てん設備の第三十七条の四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所在地、構造、設備又は装置」と、同項及び同条第二項中「貯蔵施設の撤去」とあるのは「充てん設備の撤去」と、同条第三項中「前条」とあるのは「第三十七条の四第二項」と、「第一項」とあるのは「第三十七条の四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十七条の二

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저장시설 또는 해당 특정 공급설비에 대해 협회 또는 고압가스 보안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지정 완성 검사 기관(이하 "지정 완성 검사 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완성 검사를 받아 이것이 제37조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회 또는 지정 완성 검사 기관은 제1항 단서의 완성 검사를 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도도부현 지사, 협회 또는 지정 완성 검사 기관이 실시하는 완성 검사 방법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충전 설비의 허가）

제37조의4 공급설비에 액화석유가스(고압가스 보안법 제2조의 고압가스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다음 조 제2항 및 제4항, 제98조제5호 및 제98조의2 제1호에서 같다)를 충전하려고 하는 자는 공급설비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이하 "충전 설비"이라 한다)마다 그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른 충전 설비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충전 사업자"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저장시설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 공급설비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장치"는 "충전 설비의 제37조의4 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소재지, 구조, 설비 또는 장치"로, 동항 및 동조 제2항 중 "저장시설의 철거"는 "충전 설비의 철거"로, 동조 제3항 중 "전조"는 "제37조의4 제2항"으로, "제1항"은 "제37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7조의2 제1항"으로 본다.

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4 前条の規定は、充てん事業者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中「貯蔵施設を設置し、若しくはその位置、構造若しくは設備を変更したとき、又は特定供給設備を設置し、若しくは」とあるのは「充てん設備を設置し、又は」と、「当該貯蔵施設又は当該特定供給設備」とあるのは「当該充てん設備」と、「第三十七条」とあるのは「第三十七条の四第二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液化石油ガスの充てんの作業等)

第三十七条の五 充てん事業者は、その設備が前条第二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充てん事業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従って供給設備に液化石油ガスを充てん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都道府県知事は、充てん事業者の充てん設備又は充てんの方法が前条第二項又は前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技術上の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充てん設備を修理し、改造し、若しくは移転し、又はその基準に従って充てん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4 充てん事業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協会又は経済産業大臣が指定する養成施設において、液化石油ガスの充てんを行う者となるのに必要な知識及び技能に関する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講習の課程を修了した者に、その設備による供給設備への液化石油ガスの充てんを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項の指定に関し必要な事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保安検査)

第三十七条の六 充てん事業者は、充てん設備につい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定期に、その許可をした都道府県知事が行う保安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充てん設備につい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協会又は高压ガス保安法第三十五条第一項第一号の指定保安検査機関(以下「指定保安検査機関」という。)が

④ 전조의 규정은 충전 사업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저장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했을 때, 또는 특정 공급설비를 설치하거나, 또는”은 “충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또는”으로, “해당 저장시설 또는 해당 특정 공급설비”는 “해당 충전 설비”로, “제37조”는 “제37조의4 제2항”으로 본다.

(액화석유가스 충전 작업 등)

제37조의5 충전 사업자는 설비가 전조 제2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충전 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공급설비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해야 한다.

③ 도도부현 지사는 충전 사업자의 충전 설비 또는 충전 방법이 전조 제2항 또는 전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 하도록 충전 설비를 수리, 개조, 또는 이전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충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충전 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양성 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을 할 자가 됨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강습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그 설비에 의한 공급설비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안전 점검)

제37조의6 충전 사업자는 충전 시설에 대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허가를 한 도도부현 지사가 행하는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충전 시설에 대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고압가스 보안법 제35조 제1항제1호 지정 보안 검사 기관(이하 "지정 보안 검사 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보안 검사를 받아

行う保安検査を受け、その旨を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保安検査は、充てん設備が第三十七条の四第二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し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行う。

3 協会又は指定保安検査機関は、第一項ただし書の保安検査を行つ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結果を都道府県知事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都道府県知事、協会又は指定保安検査機関が行う保安検査の方法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許可の取消し等)

第三十七条の七 都道府県知事は、第三十六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者又は充てん事業者が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貯蔵施設、特定供給設備若しくは充てん設備の許可を取り消し、又はその貯蔵施設、特定供給設備若しくは充てん設備の使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第十六条第三項、第十六条の二第二項又は第三十七条の五第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

二 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第三十七条の四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を許可を受けないでしたとき。

三 第三十七条の三第一項(第三十七条の四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完成検査を受けないで、貯蔵施設、特定供給設備又は充てん設備を使用したとき。

2 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規定により、特定供給設備の使用の停止を命ずる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特定供給設備により液化石油ガスを供給されている一般消費者等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経済産業省令への委任)

第三十八条 この章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貯蔵施設の設置の許可の手續、完成検査の手續その他この章の規定の実施に関し必要な手続的事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보안 검사는 충전 설비가 제37조의4 제2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시한다.

③ 협회 또는 지정 보안 검사 기관은 제1항 단서의 보안 검사를 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도도부현 지사, 협회 또는 지정 보안 검사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방법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허가의 취소 등)

제37조의7 도도부현 지사는 제36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충전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저장시설, 특정 공급설비 또는 충전 시설의 허가를 취소 또는 그 저장시설, 특정 공급설비 또는 충전 설비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2항 또는 제3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37조의2 제1항(제37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못한 때.

3. 제37조의3 제1항(제37조의4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저장시설, 특정 공급설비 또는 충전 설비를 사용한 때.

②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 공급설비의 사용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 공급설비에 의해 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일반소비자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제38조 이 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저장시설의 설치 허가 절차, 완성 검사의 절차, 기타 이 장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第四章の二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 第一節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 (基準適合義務) 第三十八条の二 供給設備又は消費設備の設置又は変更の工事(以下「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という。)は、供給設備についてのものにあつてはその供給設備が第十六条の二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消費設備についてのものにあつてはその消費設備が第三十五条の五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それぞれ、適合するようになしなければならない。 (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の届出) 第三十八条の三 学校、病院、興行場その他の多数の者が出入する施設又は多数の者が居住する建築物であつ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に係る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をした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その旨を当該施設又は建築物の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液化石油ガス設備士免状) 第三十八条の四 液化石油ガス設備士免状は、都道府県知事が交付する。 2 液化石油ガス設備士免状は、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でなければ、その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 液化石油ガス設備士試験に合格した者 二 協会又は経済産業大臣が指定する養成施設におい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液化石油ガス設備士となるのに必要な知識及び技能に関する講習の課程を修了した者 三 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二号に掲げる者と同等以上の知識及び技能を有していると都道府県知事が認定した者 3 都道府県知事は、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に対しては、液化石油ガス設備士免状の交付を行わな	제4장의2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제1절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기준 적합 의무) 제38조의2 공급설비 또는 소비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이하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라 한다)는 공급설비에 대한 것은 그 공급설비가 제16조의2 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소비설비에 대한 것은 그 소비설비가 제35조의5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각각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시설 공사의 신고) 제38조의3 학교, 병원, 흥행장 기타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 또는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를 한 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증서) 제38조의4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증서는 도도부현 지사가 교부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그 교부를 받을 수 없다. 1.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시험에 합격한 자 2. 협회 또는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양성 시설에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설비사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강습 과정을 수료한 자 3.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2호에 열거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것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자 ③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증서의

いことができる。 一 次項の規定により液化石油ガス設備士免状の返納を命ぜられ、その日から一年を経過しない者 二 この法律、高压ガス保安法 若しくは特定ガス消費機器の設置工事の監督に関する法律 (昭和五十四年法律第三十三号) 若しくはこれらの法律に基づく命令又はガス事業法第四十条の四の規定に違反し、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4 都道府県知事は、液化石油ガス設備士がこの法律、高压ガス保安法 若しくは特定ガス消費機器の設置工事の監督に関する法律 若しくはこれらの法律に基づく命令又はガス事業法第四十条の四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は、その液化石油ガス設備士免状の返納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5 前各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液化石油ガス設備士免状の交付、再交付、書換え及び返納に関し必要な事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免状交付事務の委託) 第三十八条の四の二 都道府県知事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の章に規定する液化石油ガス設備士免状に関する事務(液化石油ガス設備士免状の返納に係る事務その他政令で定める事務を除く。次項において「免状交付事務」という。)の全部又は一部を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法人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免状交付事務の委託を受けた法人の役員若しくは職員又はこれらの職にあつた者は、当該委託に係る免状交付事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 (液化石油ガス設備士試験) 第三十八条の五 液化石油ガス設備士試験は、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並びに供給設備及び消費設備に係る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の発生の防止に関して必要な知識及び技能について行う。 2 液化石油ガス設備士試験は、都道府県知事が行う。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증서의 반납을 명령받고, 그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이 법률, 고압가스 보안법 또는 특정 가스 소비 기기의 설치 공사의 감독에 관한 법률(1979년 법률 제33호) 또는 이들 법률에 근거한 명령 또는 가스사업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도도부현 지사는 액화석유가스 설비사가 이 법률, 고압가스 보안법 또는 특정 가스 소비 기기의 설치 공사의 감독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 또는 가스사업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증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⑤ 전 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증서의 교부, 재교부, 재기록 및 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증서 교부 사무의 위탁) 제38조의4의2 도도부현 지사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규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증서에 관한 사무(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증서의 반납에 관한 사무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증서 교부 사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증서 교부 사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위탁에 관한 증서 교부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시험) 제38조의5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시험은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및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에 관한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 발생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 실시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시험은 도도부현 지사가 한다.

3 液化石油ガス設備士試験の試験科目、受験手続その他液化石油ガス設備士試験の実施細目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第三十八条の六 都道府県知事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協会又は経済産業大臣が指定する者（以下「指定試験機関」という。）に、液化石油ガス設備士試験の実施に関する事務（以下「試験事務」という。）の全部又は一部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2 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規定により協会又は指定試験機関にその試験事務の全部又は一部を行わせることとしたときは、当該試験事務の全部又は一部を行わないものとす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協会又は指定試験機関にその試験事務を行わせることとした都道府県知事は、当該行わせることとした試験事務を行わせ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六月前までに、その旨を協会又は指定試験機関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の作業に関する制限） 第三十八条の七 液化石油ガス設備士でなければ、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の作業（特別の知識及び技能を必要とし、かつ、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の発生の防止上重要と認められる作業であつ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以下同じ。）に従事してはならない。 （液化石油ガス設備士の義務） 第三十八条の八 液化石油ガス設備士は、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の作業に従事するときは、当該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が供給設備についてのもの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供給設備が第十六条の二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当該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が消費設備についてのもの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消費設備が第三十五条の五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それぞれ、適合するように、その作業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液化石油ガス設備士は、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の作業に従事するときは、液化石油ガス設備士免状を携帯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시험의 시험 과목, 응시 절차 기타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시험의 실시 특성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6 도도부현 지사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 시험 기관"이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이하 "시험 사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에 따라 협회 또는 지정 시험 기관에 그 시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 또는 지정 시험 기관에게 그 시험 사무를 행하게 하기로 한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행하게 하기로 한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 때에는 그 6월 전까지 그 취지를 협회 또는 지정 시험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의 작업에 관한 제한） 제38조의7 액화석유가스 설비사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작업(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 발생의 방지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한다. （액화석유가스 설비사의 의무） 제38조의8 액화석유가스 설비사는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의 작업에 종사하는 때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가 공급설비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급설비가 제16조의2 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가 소비설비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소비설비가 제35조의5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각각 적합하도록 그 작업을 해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설비사는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의 작업에 종사하는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증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

(液化石油ガス設備士の講習) 第三十八条の九 液化石油ガス設備士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協会又は経済産業大臣が指定する者の行う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並びに供給設備及び消費設備に係る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講習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指定に関し必要な事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業の届出) 第三十八条の十 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の作業を伴うものとし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以下「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という。)の事業を行う者(以下「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業業者」という。)は、事業所ごとに、当該事業所における事業の開始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次の事項を当該事業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二 事業所の名称及び所在地 三 その他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 2 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業業者は、前項各号の事項に変更があつたとき又は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の事業を廃止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その届出をした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施工後の表示) 第三十八条の十一 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業業者は、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をした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に係る供給設備又は消費設備の見やすい場所に、氏名又は名称、施工年月日その他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表示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 (記録の保存等) 第三十八条の十二 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業	(액화석유가스 설비사의 강습) 제38조의9 액화석유가스 설비사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및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에 관한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 발생의 방지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사업의 신고) 제38조의10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의 작업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이하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라 한다)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해당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기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사업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의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그 신고를 한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공 후의 표시) 제38조의11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사업자는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다음 조 제1항에서 같다)를 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에 따른 공급설비 또는 소비설비의 보기 쉬운 장소에 성명 또는 명칭, 시공 연월일 기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시를 붙여야 한다. (기록의 보존 등) 제38조의12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사업자

者は、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をした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に関する記録を作成し、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記録と当該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に係る配管図面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事業者は、供給設備又は消費設備の所有者又は占有者から当該供給設備又は当該消費設備に係る前項に規定する記録又は配管図面を閲覧し、又は謄写したい旨の申出があつ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これを拒んではならない。 (器具の備付け) 第三十八条の十三 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事業者は、その事業所ごとに、気密試験用器具その他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器具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節 指定試験機関 (指定) 第三十八条の十四 第三十八条の六第一項の指定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試験事務を行おうとする者の申請により行う。 (欠格条項) 第三十八条の十五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第三十八条の六第一項の指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二 第三十八条の二十六第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三 その業務を行う役員のうちに、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者 イ 第一号に該当する者 ロ 第三十八条の二十二の規定による命令により解任され、解任の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는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를 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록과 해당 특정 액화석유가스 시설 공사와 관련된 배관도면을 보존해야 한다. ②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사업자는 공급설비 또는 소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해당 공급설비 또는 해당 소비설비에 관한 전항에 규정하는 기록 또는 배관 도면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싶다는 취지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구의 배치) 제38조의13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기밀 시험용 기구 기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2절 지정 시험 기관 (지정) 제38조의14 제38조의6 제1항의 지정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사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결격조항) 제38조의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의6 제1항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의2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제38조의22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해임되고,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指定の基準) 第三十八条の十六 経済産業大臣は、第三十八条の六第一項の指定の申請が次の各号に適合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その指定をしてはならない。 一 職員、設備、試験事務の実施の方法その他の事項についての試験事務の実施に関する計画が、試験事務の適確な実施のために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二 前号の試験事務の実施に関する計画を適確に実施するに足る経理的基礎及び技術的能力があること。 三 一般社団法人又は一般財団法人であること。 四 試験事務以外の業務を行つている場合には、その業務を行うことによつて試験事務が不公正になるおそれがないものであること。 (変更の届出) 第三十八条の十七 指定試験機関は、その名称又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変更しようとする日の二週間前までに、その旨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指定試験機関は、その名称又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第三十八条の六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指定試験機関にその試験事務を行わせることとした都道府県知事(以下「委任都道府県知事」という。)に、試験事務を取り扱う事務所の所在地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関係委任都道府県知事に、それぞれ、その変更をしようとする日の二週間前までに、その旨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試験事務規程) 第三十八条の十八 指定試験機関は、試験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程(以下「試験事務規程」という。)を定め、経済産業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指定試験機関は、前項後段の規定により試験事務規程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委任都道府県知事の意見を聴かななければならない。 3 試験事務規程で定めるべき事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4 経済産業大臣は、第一項の認可をした試験事務規程が試験事務の公正な実施上不適當となつたと認	(지정 기준) 제38조의16 경제산업대신은 제38조의6 제1항의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그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 1. 직원, 설비, 시험 사무의 실시 방법 기타 사항에 대한 시험 사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시험 사무의 정확한 실시를 위해 적절한 것일 것. 2. 전호의 시험 사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정확하게 실시할만한 회계 기초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일 것. 4. 시험 사무 이외의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시험 사무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변경 신고) 제38조의17 지정 시험 기관은 그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주일 전에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 시험 기관은 그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정 시험 기관에 그 시험 사무를 행하게 하는 것으로 한 도도부현 지사(이하 "위임 도도부현 지사"라 한다)에게 시험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위임 도도부현 지사에게 각각 그 변경을 하려는 날의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험 사무 규정) 제38조의18 지정 시험 기관은 시험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시험 사무 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 시험 기관은 전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험 사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험 사무 규정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인가를 한 시험 사무 규정이 시험 사무의 공정한 수행에 부적당하게 되

めるときは、指定試験機関に対し、試験事務規程を変更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試験事務の休廃止) 第三十八条の十九 指定試験機関は、経済産業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試験事務の全部又は一部を休止し、又は廃止してはならない。 2 経済産業大臣は、指定試験機関の試験事務の全部又は一部の休止又は廃止により試験事務の適正かつ確実な実施が損なわれ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前項の許可をしてはならない。 3 経済産業大臣は、第一項の許可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関係委任都道府県知事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4 経済産業大臣は、第一項の許可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関係委任都道府県知事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計画等) 第三十八条の二十 指定試験機関は、毎事業年度開始前に(第三十八条の六第一項の指定を受けた日の属する事業年度にあつては、その指定を受けた後遅滞なく)、その事業年度の事業計画及び収支予算を作成し、経済産業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指定試験機関は、事業計画及び収支予算を作成し、又は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委任都道府県知事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指定試験機関は、毎事業年度経過後三月以内に、その事業年度の事業報告書及び収支決算書を作成し、経済産業大臣及び委任都道府県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役員の選任及び解任) 第三十八条の二十一 指定試験機関の役員の選任及び解任は、経済産業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 시험 기관에 시험 사무 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험 사무의 휴폐지) 제38조의19 지정 시험 기관은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시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지정 시험 기관의 시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에 따라 시험 사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가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가 아니면 전항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위임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위임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 등) 제38조의20 지정 시험 기관은 매 사업 연도 개시 전에(제38조의6 제1항의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있어서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업 연도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을 작성하여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 시험 기관은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임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정 시험 기관은 매 사업 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그 사업 연도의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제산업대신 및 위임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38조의21 지정 시험 기관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役員の解任命令) 第三十八条の二十二 経済産業大臣は、指定試験機関の役員が、この法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若しくは試験事務規程に違反したとき、又は試験事務に関し著しく不適当な行為をしたときは、指定試験機関に対し、その役員を解任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試験委員) 第三十八条の二十三 指定試験機関は、試験事務を行うときは、液化石油ガス設備士として必要な知識及び技能を有するかどうかの判定に関する事務については、試験委員に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指定試験機関は、試験委員を選任しようとする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要件を備える者のうちから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指定試験機関は、試験委員を選任した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済産業大臣にその旨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試験委員に変更があつたときも、同様とする。 4 前条の規定は、試験委員に準用する。 (秘密保持義務等) 第三十八条の二十四 指定試験機関の役員若しくは職員(試験委員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又はこれらの職にあつた者は、試験事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 2 試験事務に従事する指定試験機関の役員又は職員は、刑法 (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 その他の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法令により公務に従事する職員とみなす。 (適合命令等) 第三十八条の二十五 経済産業大臣は、指定試験機関が第三十八条の十六各号(第三号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一に適合しなくなつたと認めるときは、指定試験機関に対し、当該各号に適合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試験事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	(임원의 해임 명령) 제38조의22 경제산업대신은 지정 시험 기관의 임원이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 또는 시험 사무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시험 사무에 관하여 현저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지정 시험 기관에 대해 그 임원을 해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험 위원) 제38조의23 지정 시험 기관은 시험 사무를 실시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설비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시험 위원이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정 시험 기관은 시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지정 시험 기관은 시험 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험 위원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전조의 규정은 시험 위원에 준용한다. (비밀 유지 의무 등) 제38조의24 지정 시험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시험 위원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또는 이러한 직무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험 사무에 종사하는 지정 시험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1871년 법률 제45호) 기타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적합 명령 등) 제38조의25 경제산업대신은 지정 시험 기관이 제38조의16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하나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 시험 기관에 대해 해당 각 호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시험 사무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めるときは、指定試験機関に対し、試験事務に関し監督上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委任都道府県知事は、その行わせることとした試験事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指定試験機関に対し、当該試験事務の適正な実施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指定の取消し等) 第三十八条の二十六 経済産業大臣は、指定試験機関が第三十八条の十六第三号に適合しなくなつた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経済産業大臣は、指定試験機関が次の各号の—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し、又は期間を定めて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三十八条の十五第一号又は第三号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 二 第三十八条の十八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試験事務規程によらないで試験事務を行つたとき。 三 第三十八条の十八第四項、第三十八条の二十二 (第三十八条の二十三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又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 四 第三十八条の十九第一項、第三十八条の二十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又は第三十八条の二十三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五 第八十四条第一項の条件に違反したとき。 六 不正の手段により第三十八条の六第一項の指定を受けたとき。 3 経済産業大臣は、第一項若しくは前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取り消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り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ときは、その旨を関係委任都道府県知事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委任都道府県知事による試験事務の実施) 第三十八条の二十七 委任都道府県知事は、指定試験機関が第三十八条の十九第一項の許可を受けて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休止したとき、経済産業大臣が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試験機関に対	인정할 때에는, 지정 시험 기관에 시험 사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위임 도도부현 지사는 그 행하게 하기로 한 시험 사무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 시험 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험 사무의 적정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지정의 취소 등) 제38조의26 경제산업대신은 지정 시험 기관이 제38조의16 제3호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지정 시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8조의15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38조의18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시험 사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험 업무를 행한 때. 3. 제38조의18 제4항, 제38조의22(제38조의23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38조의19 제1항, 제38조의20 제1항 또는 제3항 또는 제38조의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84조 제1항의 조건에 위반한 때. 6. 부정한 수단으로 제38조의6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때.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했을 때는, 그 취지를 관계 위임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임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시험 사무의 실시) 제38조의27 위임 도도부현 지사는 지정 시험 기관이 제38조의19 제1항의 허가를 받아 시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한 때, 경제산업대신이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시험 기관에 시험 사무

し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とき、又は指定試験機関が天災その他の事由により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実施することが困難となつた場合において経済産業大臣が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試験事務の全部又は一部を自ら行うものとする。 2 経済産業大臣は、委任都道府県知事が前項の規定により試験事務を行うこととなるとき、又は委任都道府県知事が同項の規定により試験事務を行うこととなる事由がなくなつ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当該委任都道府県知事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経済産業省令への委任) 第三十八条の二十八 この法律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試験事務の引継ぎに関し必要な事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第五章液化石油ガス器具等 第一節販売及び表示の制限 (販売の制限) 第三十九条 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製造、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は、第四十八条の規定により表示が付されているものでなければ、液化石油ガス器具等を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陳列しては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者が次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適用しない。 一 輸出用の液化石油ガス器具等を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陳列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旨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たとき。 二 輸出用以外の特定の用途に供する液化石油ガス器具等を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陳列する場合において、経済産業大臣の承認を受けたとき。 三 第四十六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届出又は同項第二号の承認に係る液化石油ガス器具等を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陳列するとき。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했을 때, 또는 지정 시험 기관이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시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경제산업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위임 도도부현 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사무를 실시하게 된 때, 또는 위임 도도부현 지사가 동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해당 위임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제38조의28 이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 시험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제5장 액화석유가스기구 등 제1절 판매 및 표시 제한 (판매 제한) 제39조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자가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한 때. 2. 수출용 이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할 경우,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은 때. 3.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동항 제2호의 승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때.

(表示の制限) 第四十条 次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以下「届出事業者」という。)が同条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型式(以下単に「届出に係る型式」という。)の液化石油ガス器具等について第四十八条の規定により表示を付する場合でなければ、何人も、液化石油ガス器具等に同条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方式による表示又はこれと紛らわしい表示を付してはならない。 第二節事業の届出等 (事業の届出) 第四十一条 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製造又は輸入の事業を行う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区分に従い、次の事項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ることができる。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二 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型式の区分 三 当該液化石油ガス器具等を製造する工場又は事業場の名称及び所在地(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輸入の事業を行う者にあつては、当該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製造事業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承継) 第四十二条 届出事業者が当該届出に係る事業の全部を譲り渡し、又は届出事業者について相続、合併若しくは分割(当該届出に係る事業の全部を承継させるものに限る。)があつたときは、その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た者又は相続人(相続人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全員の同意により事業を承継すべき相続人を選定したときは、その者)、合併後存続する法人若しくは合併により設立した法人若しくは分割によりその事業の全部を承継した法人は、その届出事業者の地位を承継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届出事業者の地位を承継した者は、遅滞なく、その事実を証する書面を添えて、	(표시 제한) 제40조 다음 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 사업자"라 한다)가 동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형식(이하 단순히 "신고와 관련된 형식"이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에 대해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에 동조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제2절 사업의 신고 등 (사업의 신고) 제41조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형식의 구분 3. 해당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수입 사업을 하는 자에 있어서는 해당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승계) 제42조 신고 사업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고 사업자에 대해 상속, 합병 또는 분할(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를 승계받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 또는 상속인(상속인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해 사업을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했을 때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그 신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その旨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変更の届出) 第四十三条 届出事業者は、第四十一条各号の事項に変更があつ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変更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軽微なもの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廃止の届出) 第四十四条 届出事業者は、当該届出に係る事業を廃止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届出事項に係る情報の提供) 第四十五条 何人も、経済産業大臣に対し、第四十一条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係る情報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基準適合義務等) 第四十六条 届出事業者は、届出に係る型式の液化石油ガス器具等を製造し、又は輸入する場合において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輸出用の液化石油ガス器具等を製造し、又は輸入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旨を経済産業大臣に届出したとき。 二 輸出用以外の特定の用途に供する液化石油ガス器具等を製造し、又は輸入する場合において、経済産業大臣の承認を受けたとき。 三 試験用に製造し、又は輸入するとき。 2 届出事業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前項の液化石油ガス器具等(同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製造され、又は輸入され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検査を行い、その検査記録を作成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부하여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신고) 제43조 신고 사업자는 제41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변경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지의 신고) 제44조 신고 사업자는 해당 신고에 관한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45조 누구든지 경제산업장관에 대해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적합 의무 등) 제46조 신고 사업자는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용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한 때. 2. 수출용 이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은 때. 3. 시험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② 신고 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전항의 액화석유가스기구 등(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適合性検査) 第四十七条 届出事業者は、その製造又は輸入に係る前条第一項の液化石油ガス器具等(同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製造され、又は輸入されるものを除く。)が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である場合には、当該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を販売する時までに、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掲げるものについて、経済産業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の次項の規定による検査(以下「適合性検査」という。)を受け、かつ、同項の証明書の交付を受け、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と同一の型式に属する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について既に第二号に係る同項の証明書の交付を受けこれを保存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当該証明書の交付を受けた日から起算して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ごとに政令で定める期間を経過していないとき又は同項の証明書と同等なものとし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を保存してい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当該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 二 試験用の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及び当該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に係る届出事業者の工場又は事業場における検査設備その他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 2 前項の登録を受けた者は、同項各号に掲げるものについ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検査を行い、これらが前条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又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前項第二号の検査設備その他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に関する基準に適合している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記載した証明書を当該届出事業者に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表示) 第四十八条 届出事業者は、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第四十六条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対する適合性について、同条第二項(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場合にあっては、同項及び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義務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적합성 검사) 제47조 신고 사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전조 제1항의 액화석유가스기구 등(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을 제외한다)이 특정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을 판매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열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이하 "적합성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동항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과 동일한 형식에 속하는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제2호에 따른 동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이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항의 증명서와 동등한 것으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 2. 시험용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 및 해당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에 관한 신고 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검사 설비 기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 ② 전항의 등록을 받은 자는 동항 각 호에 열거하는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전조 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 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전항 제2호의 검사 설비 기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기재한 증명서를 해당 신고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표시) 제48조 신고 사업자는 그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액화석유가스기구 등 제46조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동조 제2항(특정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의 경우에는 동항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を履行したときは、当該液化石油ガス器具等に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方式による表示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改善命令) 第四十九条 経済産業大臣は、届出事業者が第四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場合には、届出事業者に対し、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製造、輸入又は検査の方法その他の業務の方法の改善に関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表示の禁止) 第五十条 経済産業大臣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届出事業者に対し、一年以内の期間を定めて当該各号に定める届出に係る型式の液化石油ガス器具等に第四十八条の規定により表示を付す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届出事業者が製造し、又は輸入した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液化石油ガス器具等(第四十六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製造し、又は輸入したものを除く。)が同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一般消費者等の生命又は身体についての災害の発生を防止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当該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属する届出に係る型式 二 届出事業者が製造し、又は輸入した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液化石油ガス器具等について、第四十六条第二項又は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当該違反に係る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属する届出に係る型式 三 届出事業者が製造し、又は輸入した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液化石油ガス器具等について、前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当該違反に係る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属する届出に係る型式 第三節 検査機関の登録 (登録) 第五十一条 第四十七条第一項の登録は、経済産業	때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표시를 붙일 수 있다. (개선 명령) 제49조 경제산업대신은 신고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업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수입 또는 검사 방법 기타 업무 방법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표시의 금지) 제50조 경제산업대신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 사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에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 신고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그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제46조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을 제외한다)이 동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소비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이 속하는 신고와 관련된 형식 2. 신고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그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에 대하여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해당 위반에 따른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이 속하는 신고와 관련된 형식 3. 신고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그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해당 위반에 따른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이 속하는 신고와 관련된 형식 제3절 검사 기관 등록 (등록) 제51조 제47조제1항의 등록은 경제산업성령에서

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区分（以下単に「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区分」という。）ごとに、適合性検査を行おうとする者の申請により行う。 2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独立行政法人製品評価技術基盤機構（以下「機構」という。）に、当該申請が第五十三条第一項各号に適合し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必要な調査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欠格条項） 第五十二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第四十七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二 第六十一条又は第六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三 法人であつて、その業務を行う役員のうちに前二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登録の基準） 第五十三条 経済産業大臣は、第五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申請した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登録申請者」という。）が次に掲げる要件のすべてに適合しているときは、その登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登録に関して必要な手続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一 国際標準化機構及び国際電気標準会議が定めた製品の認証を行う機関に関す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こと。 二 登録申請者が、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適合性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される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を製造し、又は輸入する届出事業者（以下この号及び第五十八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受検事業者」という。）に支配されているものとし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でないこと。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구분(이하 단순히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구분”이라 한다)별로 적합성 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독립행정법인 제품 평가 기술 기반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해당 신청이 제53조제1항 각 호에 적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결격조항） 제5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7조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61조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에 전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등록 기준） 제53조 경제산업대신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이하 이 항에서 "가입 신청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필요한 절차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 표준 회의가 정한 제품의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등록 신청자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된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신고 사업자(이하 이 호 및 제58조의2 제2항에서 "수검 사업자"라 한다)에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

イ登録申請者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受検事業者がその親法人(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第八百七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親法人をいう。)であること。

ロ登録申請者の役員(持分会社(会社法第五百七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持分会社をいう。)にあって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に占める受検事業者の役員又は職員(過去二年間に当該受検事業者の役員又は職員であつた者を含む。)の割合が二分の一を超えていること。

ハ登録申請者(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権を有する役員)が、受検事業者の役員又は職員(過去二年間に当該受検事業者の役員又は職員であつた者を含む。)であること。

2 第四十七条第一項の登録は、検査機関登録簿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てするものとする。

一 登録年月日及び登録番号

二 登録を受けた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三 登録を受けた者が適合性検査を行う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区分

四 登録を受けた者が適合性検査を行う事業所の名称及び所在地

(登録の更新)

第五十四条 第四十七条第一項の登録は、三年を下らない政令で定める期間ごとにその更新を受けなければ、その期間の経過によつて、その効力を失う。

2 前三条の規定は、前項の登録の更新に準用する。

第四節 国内登録検査機関

(適合性検査の義務)

第五十五条 第四十七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者(国内にある事業所において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につき、その登録を受けた者に限る。以下「国内登録検査機関」という。)は、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を求められ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遅滞なく、適合性検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内登録検査機関は、公正に、かつ、第四十六

가. 등록 신청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수검 사업자가 그 모법인(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879조제1항에 규정하는 모법인을 말한다)인 것.

나. 등록 신청자의 임원(지분회사(회사법 제575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분회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에서 차지하는 수검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간 해당 수검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

다. 등록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권을 가진 임원)가 응시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간 해당 수검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인 것.

② 제47조제1항의 등록은 검사 기관 등록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2. 등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3. 등록을 받은 자가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구분

4. 등록을 받은 자가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록 갱신)

제54조 제47조제1항의 등록은 3년을 밑돌지 않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록의 갱신에 준용한다.

제4절 국내 등록 검사 기관

(적합성 검사 의무)

제55조 제47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국내에 있는 사업소에서 적합성 검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 그 등록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이라 한다)는 적합성 검사를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합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은 공정하고, 제46조제1항

条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する方法により適合性検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所の変更の届出) 第五十六条 国内登録検査機関は、適合性検査を行う事業所の所在地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変更しようとする日の二週間前までに、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業務規程) 第五十七条 国内登録検査機関は、適合性検査の業務に関する規程(以下「業務規程」という。)を定め、適合性検査の業務の開始前に、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業務規程には、適合性検査の実施方法、適合性検査に関する料金の算定方法その他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を定め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業務の休廃止の届出) 第五十八条 国内登録検査機関は、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休止し、又は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その旨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財務諸表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第五十八条の二 国内登録検査機関は、毎事業年度経過後三月以内に、その事業年度の財産目録、貸借対照表及び損益計算書又は収支計算書並びに事業報告書(これらのものが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の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で作成され、又は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の作成が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を含む。次項及び第百三条の二第二号において「財務諸表等」という。)を作成し、五年間事業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受検事業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は、国内登録検	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적합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변경 신고) 제56조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은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주일 전에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 규정) 제57조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은 적합성 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 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적합성 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업무 규정에는 적합성 검사의 실시 방법, 적합성 검사에 관한 요금의 산정 방법 기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해두어야 한다. (업무의 휴폐지의 신고) 제58조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은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제58조의2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은 매 사업 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그 사업 연도의 재산 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및 사업보고서(이러한 것이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작성되거나 그 작성에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다음 항 및 제103조의2 제2호에서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 5년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검 사업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국내 등록 검사

査機関の業務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の請求をするには、国内登録検査機関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財務諸表等が書面をもつ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前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請求

三 財務諸表等が電磁的記録をもつ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四 前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つ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当該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適合命令)

第五十九条 経済産業大臣は、国内登録検査機関が第五十三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適合しなくなつたと認めるときは、その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これらの規定に適合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改善命令)

第六十条 経済産業大臣は、国内登録検査機関が第五十五条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適合性検査を行うべきこと又は適合性検査の方法その他の業務の方法の改善に関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登録の取消し等)

第六十一条 経済産業大臣は、国内登録検査機関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登録を取り消し、又は期間を定めて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五十二条第一号又は第三号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

二 第五十五条、第五十六条、第五十七条第一項、第五十八条、第五十八条の二第一項又は第八十一条

기관의 업무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등이 서면으로서 생성되는 때에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전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3. 재무제표 등이 전자적 기록을 가지고 생성된 때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것의 청구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적합 명령)

제59조 경제산업대신은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이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국내 등록 검사 기관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선 명령)

제60조 경제산업대신은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이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국내 등록 검사 기관에 대하여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것 또는 적합성 검사 방법 기타 업무 방법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 등)

제61조 경제산업대신은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55조, 제56조,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1항 또는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三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第五十八条の二第二項各号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んだとき。 四 前二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 五 不正の手段により第四十七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とき。 (経済産業大臣による適合性検査業務実施等) 第六十二条 経済産業大臣は、第四十七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る者がいないとき、第五十八条の規定による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休止又は廃止の届出があつたとき、前条の規定により同項の登録を取り消し、又は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とき、国内登録検査機関が天災その他の事由により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実施することが困難となつたときその他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自ら行うことができる。 2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当該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3 経済産業大臣が前二項の規定により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自ら行い、又は機構に行わせる場合における適合性検査の業務の引継ぎその他の必要な事項について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第五節 外国登録検査機関 (適合性検査の義務等) 第六十三条 第四十七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者 (外国にある事業所において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につき、その登録を受けた者に限る。以下「外国登録検査機関」という。) は、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を求められ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遅滞なく、適合性検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五十五条第二項、第五十六条から第六十条までの規定は、外国登録検査機関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五十九条及び第六十条中「命ずる」と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때. 4. 전 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제47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때.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적합성 검사 업무 실시 등) 제62조 경제산업대신은 제47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닌 때,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가 있는 때, 전조의 규정에 따라 동항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국내 등록 검사 기관에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했을 때,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이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할 수 있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해당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제산업대신이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실시 또는 기구에 실시하게 하는 경우의 적합성 검사 업무의 인수인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제5절 외국인 등록 검사 기관 (적합성 검사 의무 등) 제63조 제47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외국에 있는 사업소에서 적합성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그 등록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외국인 등록 검사 기관"이라 한다)는 적합성 검사를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합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55조제2항,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은 외국인 등록 검사 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 및 제60조 중 “명한다”는 “청구한다”로 본다.

あるのは、「請求す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登録の取消し等) 第六十四条 経済産業大臣は、外国登録検査機関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一 第五十二条第一号又は第三号に該当するに至ったとき。 二 前条第一項の規定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五条第二項、第五十六条、第五十七条第一項、第五十八条若しくは第五十八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八十一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三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前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八条の二第二項各号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んだとき。 四 前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九条又は第六十条の規定による請求に応じなかつたとき。 五 不正の手段により第四十七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たとき。 六 経済産業大臣が、外国登録検査機関が前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認めて、期間を定めて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を請求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請求に応じなかつたとき。 七 経済産業大臣が必要があると認めて外国登録検査機関に対しその業務に関し報告を求めた場合において、その報告がされず、又は虚偽の報告がされたとき。 八 経済産業大臣が必要があると認めてその職員に外国登録検査機関の事務所又は事業所において第八十三条第五項に規定する事項についての検査をさせ、又は関係者に質問をさせようと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検査が拒まれ、妨げられ、若しくは忌避され、又はその質問に対して答弁がされ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がされたとき。 九 次項の規定による費用の負担をしないとき。 2 前項第八号の検査に要する費用(政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は、当該検査を受ける外国登録検査機関の負担とする。	(등록의 취소 등) 제64조 경제산업대신은 외국인 등록 검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전조 제1항의 규정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5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또는 제58조의2 제1항 또는 제8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의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때. 4. 전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9조 또는 제60조 규정에 따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제47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때. 6. 경제산업대신이 외국 등록 검사 기관이 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기간을 정해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청구한 경우에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경제산업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 등록 검사 기관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 그 보고가 이뤄지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가 이뤄진 때. 8. 경제산업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직원에게 외국인 등록 검사 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서 제83조제5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한 경우에 그 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하거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한 때. 9.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않은 때. ② 전항 제8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은 해당 검사를 받는 외국인 등록 검사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3 経済産業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第一項第八号の規定による検査又は質問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4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機構に検査又は質問を行わせる場合には、機構に対し、当該検査の場所その他必要な事項を示してこれを実施すべきことを指示するものとする。 5 機構は、前項の指示に従って第三項に規定する検査又は質問を行つたときは、その結果を経済産業大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節災害防止命令 (災害防止命令) 第六十五条 経済産業大臣は、次の各号に掲げる事由により一般消費者等の生命又は身体について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が発生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おいて、当該災害の拡大を防止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各号に規定する者に対し、その販売し、又は製造した当該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回収を図ることその他当該液化石油ガス器具等による一般消費者等の生命又は身体についての災害の拡大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製造、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が第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液化石油ガス器具等を販売したこと。 二 届出事業者がその届出に係る型式の液化石油ガス器具等で第四十六条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しないものを製造し、輸入し、又は販売したこと(第四十六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製造し、又は輸入した場合を除く。)。 第六十六条 削除 第六十七条 削除 第六十八条 削除 第六十九条 削除 第七十条 削除 第七十一条 削除	③ 경제산업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구에 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 검사 또는 질문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구에 대하여 해당 검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나타내 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⑤ 기구는 전항의 지시 사항에 따라 제3항에 규정하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제산업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절 재해 방지 명령 (재해 방지 명령) 제65조 경제산업대신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해 일반소비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판매, 또는 제조한 해당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 기타 해당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에 의한 소비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자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을 판매한 것. 2. 신고 사업자가 그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에서 제46조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것(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68조 삭제 제69조 삭제 제70조 삭제 제71조 삭제

第七十二条 削除	제72조 삭제
第七十三条 削除	제73조 삭제
第七十四条 削除	제74조 삭제
第七十五条 削除	제75조 삭제
第七十六条 削除	제76조 삭제
第七十七条 削除	제77조 삭제
第七十八条 削除	제78조 삭제
第七十九条 削除	제79조 삭제
第八十条 削除	제80조 삭제
第六章 雜則	제6장 잡칙
(帳簿の記載)	(장부의 기재)
第八十一条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保安機関及び充てん事業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帳簿を備え、その業務に関し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81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보안 기관 및 충전 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그 업무에 관하여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指定試験機関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帳簿を備え、試験事務に関し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지정 시험 기관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시험 사무에 관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3 国内登録検査機関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帳簿を備え、適合性検査に関し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적합성 검사에 관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4 前項の規定は、外国登録検査機関に準用する。	④ 전항의 규정은 외국 등록 검사 기관에 준용한다.
(報告の徴収)	(보고의 징수)
第八十二条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保安機関、液化石油ガス設備士、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事業者又は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製造、輸入若しく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に対し、その業務又は経理の状況に関し報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제82조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보안 기관,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 都道府県知事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充てん事業者に対し、その業務又は経理の状況に関し報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②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 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3 経済産業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	③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において、指定試験機関に対し、その業務又は経理の状況に関し報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経済産業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その業務又は経理の状況に関し報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5 委任都道府県知事は、その行わせることとした試験事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指定試験機関に対し、当該試験事務の状況に関し報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立入検査等)

第八十三条 経済産業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職員に、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又は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製造、輸入若しく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の事務所、営業所、工場、液化石油ガス又は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保管場所その他その業務を行う場所に立ち入り、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関係者に質問させ、又は試験のため必要な最少限度の分量に限り液化石油ガスを収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経済産業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職員に、その認定を受けた保安機関の事務所又は事業所に立ち入り、業務の状況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又は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都道府県知事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職員に、その登録を受けた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その許可を受けた充てん事業者又は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事業者の事務所、営業所、液化石油ガス、充てん設備若しくは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に使用する機械、器具若しくは材料の保管場所、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の施工場所その他その業務を行う場所に立ち入り、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関係者に質問させ、又は試験のため必要な最少限度の分量に限り液化石油ガスを収去さ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特定液化石油ガス設備工事の施工場所には、当該施工場所の管理者の承諾を得た場合でなければ、立ち入らせてはならない。

에서 지정 시험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국내 등록 검사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임 도도부현 지사는 그 행하게 하는 것으로 한 시험 사무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 시험 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험 사무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 등)

제83조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보관 장소 기타 그 업무를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시험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분량에 한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에게 그 인증을 받은 보안 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에게 그 등록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그 허가를 받은 충전 사업자 또는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사업자 사무소, 영업소, 액화석유가스, 충전 설비 또는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또는 재료의 보관 장소,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의 시공 장소 기타 그 업무를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시험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분량에 한해 액화석유가스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의 시공 장소에는 해당 시공 장소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가 아니면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都道府県知事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職員に、その認定を受けた保安機関の事務所又は事業所に立ち入り、業務の状況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又は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5 経済産業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職員に、国内登録検査機関の事務所又は事業所に立ち入り、業務の状況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又は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6 経済産業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職員に、指定試験機関の事務所に立ち入り、業務の状況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又は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7 委任都道府県知事は、その行わせることとした試験事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職員に、当該試験事務を取り扱う指定試験機関の事務所に立ち入り、当該試験事務の状況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又は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8 前各項の規定により職員が立ち入るとき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者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9 経済産業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第一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又は質問(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製造、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に係るものに限る。)又は第五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又は質問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10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機構に立入検査又は質問を行わせる場合には、機構に対し、当該立入検査の場所その他必要な事項を示してこれを実施すべきことを指示するものとする。 11 機構は、前項の指示に従って第九項に規定する立入検査又は質問を行つたときは、その結果を経済産業大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12 第九項の規定により機構の職員が立ち入るとき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者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3 第一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よる権限は、	④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에게 그 인증을 받은 보안 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에게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에게 지정 시험 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임 도도부현 지사는 그 행하게 하는 것으로 한 시험 사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원에게 해당 시험 사무를 취급하는 지정 시험 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해당 시험 사무의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⑧ 전 각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⑨ 경제산업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구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질문(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관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⑩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구에 대하여 해당 현장 검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나타내 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⑪ 기구는 전항의 지시에 따라 제9에 규정하는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제산업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 직원이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⑬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은 범

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提出) 第八十三条の二 経済産業大臣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職員に、又は同条第九項の規定により機構に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製造、輸入又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の事務所、営業所、工場、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保管場所その他その業務を行う場所に立ち入り、検査をさせ、又は検査を行わせた場合において、その所在の場所において検査をさせ、又は検査を行わせる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ると認められる液化石油ガス器具等があつたときは、その所有者又は占有者に対し、期限を定めて、これを提出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国(前項の規定に基づく経済産業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務を第九十四条の二の規定に基づく政令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又は市長が行うこととさ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都道府県又は市)は、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よつて生じた損失を所有者又は占有者に対し補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り補償すべき損失は、第一項の命令により通常生ずべき損失とする。 (機構に対する命令) 第八十三条の三 経済産業大臣は、第六十四条第三項に規定する検査若しくは質問又は第八十三条第九項に規定する立入検査若しくは質問の業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対し、当該業務に関し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許可等の条件) 第八十四条 許可、指定、認定又は承認には、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条件は、許可、指定、認定又は承認に係る事項の確実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最少限度のものに限り、かつ、許可、指定、認定又は承認を受ける者に不当な義務を課することとなるものであつてはならない。	죄 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출) 제83조의2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원에게, 또는 동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보관 장소 기타 그 업무를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검사를 행하게 한 경우에, 그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국가(전항의 규정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94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정령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또는 시)는 동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손실은 제1항의 명령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기구에 대한 명령) 제83조의3 경제산업대신은 제64조제3항에 규정하는 검사 또는 질문 또는 제83조제9항에 규정하는 출입검사 또는 질문의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허가 등의 조건) 제84조 허가, 지정 인증 또는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전항의 조건은 허가, 지정 인증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의 확실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며, 허가, 지정, 인정 또는 승인을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第八十五条 削除 (手数料) 第八十六条 次に掲げる者(経済産業大臣、産業保安監督部長又は機構に対して手続を行おうとする者に限る。)は、実費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額の手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三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 二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登録簿の謄本の交付を請求しようとする者 三 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登録簿の閲覧を請求しようとする者 四 第二十九条第一項の認定及びその更新を受けようとする者 五 第三十三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ようとする者 六 第三十五条の六第一項の認定を受けようとする者 六の二 第三十七条の五第四項の指定を受けようとする者 七 削除 八 削除 九 削除 十 削除 十一 第六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経済産業大臣の行う適合性検査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機構の行う適合性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者 2 前項の手数料は、経済産業大臣が行う第六十二条第一項の適合性検査、経済産業大臣若しくは産業保安監督部長が行う第三条第一項の登録、第二十九条第一項の認定及びその更新、第三十三条第一項の認可、第三十五条の六第一項の認定、第三十七条の五第四項の指定を受け又は経済産業大臣若しくは産業保安監督部長に対し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登録簿の謄本の交付若しくは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登録簿の閲覧を請求しようとする者の納付するものについては国庫の、機構が行う第六十二条第二項の適合性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者の納付するものについては機構の収入とする。 第八十六条の二 都道府県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第二百二十七条の規定に	제85조 삭제 (수수료) 제86조 다음에 열거하는 자(경제산업대신, 산업보안감독부장 또는 기구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제1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 -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등록부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 - 제29조제1항의 인정 및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 - 제33조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 제35조의6 제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제37조의5 제4항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이 수행하는 적합성 검사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가 수행하는 적합성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② 전항의 수수료는 경제산업대신이 실시하는 제62조 제1항의 적합성 검사, 경제산업대신 또는 산업보안감독부장이 행하는 제3조제1항의 등록, 제29조제1항의 인정 및 갱신, 제33조제1항의 허가, 제35조의6 제1항의 인정, 제37조의5 제4항의 지정을 받거나 또는 경제산업대신 또는 산업보안감독부장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등록부 등본의 교부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등록부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고의, 기구가 행하는 제62조제2항의 적합성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86조의2 도도부현은 지방자치법(1889년 법률 제67호) 제227조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基づき液化石油ガス設備士試験に係る手数料を徴収する場合においては、第三十八条の六第一項の規定により協会又は指定試験機関が行う液化石油ガス設備士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者に、条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手数料を協会又は当該指定試験機関へ納めさせ、その収入とすることができる。

(関係行政機関への通報等)

第八十七条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第三条第一項の登録をし、第三十六条第一項、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第三十七条の四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四第一項の許可をし、第六条、第八条、第二十三条、第三十七条の二第二項(第三十七条の四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若しくは第三十八条の三の規定による届出若しくは第十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届出(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係るものに限る。) を受理し、第二十五条若しくは第二十六条の規定により登録の取消しをし、又は第三十七条の七第一項の規定により許可の取消しをした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都道府県知事、国家公安委員会若しくは都道府県公安委員会又は消防庁長官若しくは消防長に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消防庁長官又は消防長は、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者の液化石油ガスの貯蔵施設、供給設備若しくは充てん設備又は販売若しくは充てんの方法が第十六条第一項、第十六条の二第一項、第三十七条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四第二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又は第十六条第二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基準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五第二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場合その他災害の予防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に対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3 経済産業大臣は、第十六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十六条の二第一項、第三十五条の五、第三十七条、第三十七条の四第二項又は第三十七条の五第二項の基準を定める経済産業省令の制定又は改廃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消防庁長官の意見を聴かなけ

시험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 또는 지정 시험 기관이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협회 또는 해당 지정 시험 기관에 납입하게 하고, 그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관계 행정 기관에의 통보 등)

제87조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3조 제1항의 등록을 하거나, 제36조제1항, 제37조의2 제1항(제37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의4 제1항의 허가를 하거나, 제6조, 제8조, 제23조, 제37조의2 제2항(제37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수리하거나,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를 하거나 제37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의 취소를 한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또는 소방청장관 또는 소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관 또는 소방장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공급설비 또는 충전 설비 또는 판매 또는 충전 방법이 제16조제1항, 제16조의2 제1항, 제37조 또는 제37조의4 제2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 또는 제16조제2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제37조의5 제2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타 재해의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6조의2 제1항, 제35조의5, 제37조, 제37조의4 제2항 또는 제37조의5 제2항의 기준을 정하는 경제산업성령의 제정 또는 개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청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ればならない。 4 消防庁長官は、火災その他の災害の予防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前項の基準の変更に関し経済産業大臣に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公示) 第八十八条 経済産業大臣は、次の場合には、その旨を官報に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三十五条の六第一項の認定をしたとき。 一の二 第三十五条の六第一項の認定を取り消したとき。 二 第三十七条の五第四項の指定をしたとき。 二の二 第三十八条の四第二項第二号の指定をしたとき。 二の三 第三十八条の六第一項の指定をしたとき。 二の四 第三十八条の九第一項の指定をしたとき。 二の五 第三十八条の十七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 二の六 第三十八条の十九第一項の許可をしたとき。 二の七 第三十八条の二十六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取り消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り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とき。 三 第四十七条第一項の登録をしたとき。 四 第五十条の規定により表示を付することを禁止したとき。 五 第五十六条 (第六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 六 第五十八条 (第六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 七 第六十一条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し、又は適合性検査の業務の停止を命じたとき。 八 第六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経済産業大臣が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自ら行うものとするとき、又は自ら行っていた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行わないこととするとき。 九 第六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経済産業大臣が機構に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行わせることとするとき、又は機構に行わせていた適合性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行わせないこと	④ 소방청장관은 화재 기타의 재해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기준 변경에 관하여 경제산업대신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시) 제88조 경제산업대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6 제1항의 인정을 한 때. 1의2. 제35조의6 제1항의 인정을 취소한 때. 2. 제37조의5 제4항 지정을 한 때. 2의2. 제38조의4 제2항 제2호의 지정을 한 때. 2의3. 제38조의6 제1항의 지정을 한 때. 2의4. 제38조의9 제1항의 지정을 한 때. 2의5. 제38조의1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던 때. 2의6. 제38조의19 제1항의 허가를 한 때. 2의7. 제38조의26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 3. 제47조제1항의 등록을 한 때. 4. 제50조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한 때. 5. 제56조(제6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던 때. 6. 제58조(제6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던 때. 7. 제61조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 8.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이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 때 또는 스스로 행하고 있었던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 때. 9.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이 기구에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하는 것으로 한 때, 또는 기구에 행하게 했던 적합성 검사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행하지 않는 것

とするとき。 十 第六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したとき。 2 都道府県知事は、次の場合には、その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三十五条の六第一項の認定をしたとき。 一の二 第三十五条の六第一項の認定を取り消したとき。 一の三 第三十八条の六第一項の規定により協会又は指定試験機関に試験事務を行わせることとしたとき。 二 第三十八条の六第一項の規定により協会又は指定試験機関に行わせることとした試験事務を協会又は指定試験機関に行わせないこととしたとき。 三 第三十八条の十七第二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ったとき。 四 第三十八条の二十七第一項の規定により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自ら行うこととするとき、又は同項の規定により自ら行っていた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行わないこととするとき。 (協会の意見の聴取) 第八十九条 経済産業大臣は、第十六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十六条の二第一項、第三十五条の五又は第三十七条の基準を定める経済産業省令の制定又は改廃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協会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聴聞の特例) 第九十条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第二十六条の規定による命令又は第五十条の規定による禁止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行政手続法 (平成五年法律第八十八号) 第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意見陳述のための手続の区分にかかわらず、聴聞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二十二條、第二十五條、第二十六條、第三十五条の三、第三十八条の四第四項、第三十八条の二十二 (第三十八条の二十三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十八条の二十六第一項若しく	으로 한 때. 10.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 ②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6 제1항의 인정을 한 때. 1의2. 제35조의6 제1항의 인정을 취소한 때. 1의3. 제38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 또는 지정 시험 기관에 시험 사무를 행하게 하는 것으로 한 때. 2. 제38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 또는 지정 시험 기관에 행하게 하는 것으로 한 시험 업무를 협회 또는 지정 시험 기관에 행하게 하지 않도록 한 때. 3. 제38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던 때. 4. 제38의2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행하는 것으로 한 때, 또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행하고 있던 시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 때. (협회의 의견 청취) 제89조 경제산업대신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6조의2 제1항, 제35조의5 또는 제37조의 기준을 정하는 경제산업성령의 제정 또는 개폐를 하려고 할 때에는 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문의 특례) 제90조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50조 규정에 따른 금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절차의 구분에 관계없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5조의3, 제38조의4 제4항, 제38조의22(제38조의23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의26 제1항 또는 제2항, 제50조, 제61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처

は第二項、第五十条、第六十一条又は第六十四条の規定による処分に係る聴聞の期日における審理は、公開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聴聞の主宰者は、行政手続法第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処分に係る利害関係人が当該聴聞に関する手続に参加することを求めたときは、これを許可しなければならない。 (機構、協会又は指定試験機関の処分等についての審査請求) 第九十一条 機構が行う適合性検査又は協会若しくは指定試験機関が行う試験事務に係る処分又はその不作為について不服がある者は、経済産業大臣に対して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経済産業大臣は、行政不服審査法(平成二十六年法律第六十八号)第二十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四十六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四十九条第三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機構、協会又は指定試験機関の上級行政庁とみなす。 (審査請求の手続における意見の聴取) 第九十二条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る処分又はその不作為についての審査請求に対する裁決は、行政不服審査法第二十四条の規定により当該審査請求を却下する場合を除き、審査請求人に対し、相当な期間において予告をした上、同法第十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審理員が公開による意見の聴取をした後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意見の聴取に際しては、審査請求人及び利害関係人に対し、その事案について証拠を提示し、意見を述べ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に規定する審査請求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第三十一条の規定は適用せず、同項の意見の聴取については、同条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 (適合性検査についての申請及び経済産業大臣の命令) 第九十二条の二 届出事業者は、その製造し、又は輸入する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について、国内登録検査機関が適合性検査を行わない場合又は国内登	분에 관한 청문 기일의 심리는 공개로 해야 한다. ③ 전항의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해당 심의 절차에 참가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기구, 협회 또는 지정 시험 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심사 청구) 제91조 기구가 실시하는 적합성 검사 또는 협회 또는 지정 시험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사무에 관한 처분 또는 그 부작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경제산업 대신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산업 대신은 행정 불복 심사법(2014년 법률 제68호)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기관, 협회 또는 지정 시험 기관의 상급 행정청으로 본다. (심사 청구 절차에서 의견 청취) 제92조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그 부작위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 불복 심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한 후, 동법 제11조제2항에 규정하는 심리원이 공개로 의견 청취를 한 후 해야 한다. ② 전항의 의견 청취 시 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안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심사 청구는 행정 불복 심사법 제31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동항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동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적합성 검사에 대한 신청 및 경제산업대신의 명령) 제92조의2 신고 사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하는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에 대하여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이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録検査機関の適合性検査の結果に異議のある場合は、経済産業大臣に対し、国内登録検査機関が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又は改めて適合性検査を行うことを命ずべきこと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2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申請に係る国内登録検査機関が第五十五条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申請に係る国内登録検査機関に対し、第六十条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第六十条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又は命令をしないことの決定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当該申請をした届出事業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三項の規定は、外国登録検査機関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中「命ずべき」とあるのは「請求すべき」と、第二項中「第五十五条の規定」とあるのは「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五条第二項の規定」と、同項及び前項中「第六十条」とあるのは「第六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六十条」と、「命令」とあるのは「請求」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経過措置)

第九十三条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政令又は経済産業省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れぞれ、政令又は経済産業省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適用除外)

第九十四条 第二章から第四章の二までの規定は、高压ガス保安法第三条第一項第八号 の政令で定める液化石油ガス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都道府県又は市が処理する事務)

第九十四条の二 この法律に規定する経済産業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務の一部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知事又は市長が行うこととすることができる。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의 적합성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이 적합성 검사를 행할 것 또는 다시 적합성 검사를 하는 것을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한 국내 등록 검사 기관이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에 관한 국내 등록 검사 기관에 대해 제60조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경우에 제60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신고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외국 등록 검사 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명해야 한다”는 “청구해야 한다”로, 제2항 중 “제55조의 규정”은 “제63조제1항의 규정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으로, 동항 및 전항 중 “제60조”는 “제6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0조”로, “명령”은 “청구”로 본다.

(경과조치)

제93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령 또는 경제산업성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는 각 정령 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적용 제외)

제94조 제2장부터 제4장의2까지의 규정은 고압가스 보안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도부현 또는 시가 처리하는 사무)

제94조의2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権限の委任) 第九十五条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経済産業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項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済産業局長又は産業保安監督部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経済産業大臣の指示) 第九十五条の二 経済産業大臣は、液化石油ガスによる災害の発生の防止のため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都道府県知事又は市長に対し、この法律又は第九十四条の二の規定に基づく政令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又は市長が行うこととされる事務に関し、必要な指示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章罰則 第九十六条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一 第三十九条第一項又は第四十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 二 第五十条(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 の規定による禁止に違反した者 三 第六十一条の規定による業務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た者 四 第六十五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第九十六条の二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一 第三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ずに液化石油ガス販売事業を行つた者 二 第二十六条の規定による事業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た者 三 第三十七条の七第一項の規定による貯蔵施設、特定供給設備又は充てん設備の使用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た者 第九十六条の三 第三十八条の四の二第二項又は第三十八条の二十四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一	(권한의 위임) 제95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국장 또는 산업보안감독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제산업대신의 지시) 제95조의2 경제산업대신은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장에 대하여 이 법률 또는 제94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정령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는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9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0조(제1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금지에 위반한 자 3. 제61조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65조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제96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등록을 받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행한 자 2.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지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7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장시설, 특정 공급설비 또는 충전 설비의 사용 정지 명령에 위반한 자 제96조의3 제38조의4의2 제2항 또는 제38조의2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九十七条 第三十八条の二十六第二項の規定による業務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た場合に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指定試験機関の役員又は職員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九十八条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六月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一 削除 二 第十一条、第十九条第一項、第二十一条第一項、第三十七条の三第一項（第三十七条の四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三十七条の六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三 第三十六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ずに貯蔵施設又は特定供給設備を設置した者 四 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貯蔵施設の位置、構造若しくは設備又は特定供給設備の位置、構造、設備若しくは装置を変更した者 五 第三十七条の四第一項の許可を受けずに供給設備に液化石油ガスを充てんした者 六 第三十七条の四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充てん設備の第三十七条の四第一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所在地、構造、設備又は装置を変更した者 第九十八条の二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三月以下の懲役又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三十七条の五第四項の規定に違反して同項の課程を修了した者以外の者に液化石油ガスの充てんを行わせた者 二 第三十八条の七の規定に違反した者 第九十九条 第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百条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제38조의26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지정 시험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삭제 2. 제11조,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37조의3 제1항(제37조의4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장시설 또는 특정 공급설비를 설치한 자 4.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장시설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또는 특정 공급설비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 5. 제37조의4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급설비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자 6. 제37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충전 설비의 제37조의4 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소재지, 구조, 설비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 제98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과정을 수료한 자 이외의 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을 실시하게 한 자 2. 제38조의7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99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第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一の二 第十六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二 第十六条の二第二項、第三十四条第三項、第三十五条の五又は第三十七条の五第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三 削除 四 削除 五 第三十八条の十三の規定に違反して器具を備えなかつた者 六 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する場合において虚偽の届出をした者 七 第四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検査を行わず、検査記録を作成せず、虚偽の検査記録を作成し、又は検査記録を保存しなかつた者 八 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証明書の交付を受けず、又は証明書を保存しなかつた者 九 第五十八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十 第八十一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同項に規定する事項の記載をせず、虚偽の記載をし、又は帳簿を保存しなかつた者 十一 第八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者(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製造、輸入若しく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に限る。) 十二 第八十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者 十三 第八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検査若しくは収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た者(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製造、輸入若しくは販売の事業を行う者に限る。) 十四 第八十三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た者 十五 第八十三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第百一条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二十万円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1의2.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의2 제2항, 제34조 제3항, 제35조의5 또는 제3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3. 삭제 4. 삭제 5. 제38조의1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7.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검사 기록을 작성하거나, 검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명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증명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12.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3.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한 자(액화 석유 및 가스기구 등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14.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한 자 15.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제10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七条又は第三十八条の二の規定に違反した者 二 第十九条第二項、第二十一条第二項、第二十三条又は第三十八条の十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三 第八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同項に規定する事項の記載をせず、虚偽の記載をし、又は帳簿を保存しなかつた者 四 第八十二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者（前条第十一号の規定に該当する者を除く。） 五 第八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検査若しくは収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これら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た者（前条第十三号の規定に該当する者を除く。） 六 第八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た者 第百二条 次の各号の一に掲げる違反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指定試験機関の役員又は職員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三十八条の十九第一項の許可を受けなくて試験事務の全部を廃止したとき。 二 第八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同項に規定する事項の記載をせず、虚偽の記載をし、又は帳簿を保存しなかつたとき。 三 第八十二条第三項又は第五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とき。 四 第八十三条第六項又は第七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これら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たとき。 第百三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に対して当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 또는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또는 제38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전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이러한 규정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한 자(전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한 자 제10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열거한 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지정 시험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의19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험 사무의 전부를 폐지한 때. -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 제82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제83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이러한 규정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한 때. 제10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該各号に定める罰金刑を、その人に対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一 第九十六条第二号又は第四号一億円以下の罰金刑 二 第九十六条第一号若しくは第三号、第九十六条の二、第九十八条又は第九十九条から第一百一条まで各本条の罰金刑 第百三条の二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二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一 第四十二条第二項、第四十三条又は第四十四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二 第五十八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財務諸表等を備えて置かず、財務諸表等に記載すべき事項を記載せず、若しくは虚偽の記載をし、又は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同条第二項各号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んだ者 第百三条の三 第八十三条の三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場合に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機構の役員は、二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第百四条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一 第六条（第三十五条の四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八条（第三十五条の四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十条第三項（第三十五条の四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十三条第二項、第三十七条の二第二項、第三十八条の三又は第三十八条の十第二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二 正当な理由なく、第三十八条の四第四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て液化石油ガス設備士免状を返納しなかつた者 三 第三十八条の十一の規定に違反して表示をせず、又は虚偽の表示をした者 四 第三十八条の十二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記録を作成せず、若しくは虚偽の記録を作成し、又は記録若しくは配管図面を保存しなかつた者	대하여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벌금형을, 그 사람에 대해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96조제2호 또는 제4호 - 1억 엔 이하의 벌금형 2. 제96조제1호 또는 제3호, 제96조의2, 제98조 또는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 각 본조의 벌금형 제103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42조제2항, 제43조 또는 제44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5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재무제표 등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자 제103조의3 제83조의3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기관의 임원은 2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10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5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제35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제3항(제35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2항, 제37조의2 제2항, 제38조의3 또는 제38조의10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증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11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4. 제38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기록을 작성하거나, 기록 또는 배관 도면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 록 VI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중국어표준화법」
(1988년12월29일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11号 发布)	(1988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11호 공포)
第一章 总 则	제1장 총 칙
第一条 为了发展社会主义商品经济,促进技术进步,改进产品质量,提高社会经济效益,维护国家和人民的利益,使标准化工作适应社会主义现代化建设和发展对外经济关系的需要。制定本法。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발전을 추진하며 상품의 질을 개선하며 사회경제의 이익을 높이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및 대외경제관계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자 표준화 사업을 본 법으로 제정한다.
第二条 对下列需要统一的技术要求,应当制定标准: (一)工业产品的品种、规格、质量、等级或者安全、卫生要求。 (二)工业产品的设计、生产、检验、包装、储存、运输、使用的方法或者生产、储存、运输过程中的安全、卫生要求。 (三)有关环境保护的各项技术要求和检验方法。 (四)建设工程的设计、施工方法和安全要求。 (五)有关工业生产、工程建设和环境保护的技术术语、符号、代号和制图方法。	제2조 통일할 필요가 있는 아래의 기술요구에 대해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 (1) 공산품의 종류, 규격, 품질, 등급 또는 안전, 위생요구 (2) 공산품의 설계, 생산, 검사, 포장, 저장, 운송, 사용방법 또는 생산, 저장, 운송과정에서의 안전, 위생요구. (3) 환경보호 관련 제반 기술요구와 검사방법. (4) 건설공사 설계, 시공방법과 안전요구. (5) 공업생산, 건설공사 및 환경보호 관련 기술용어, 기호, 부호와 작도법.
重要农产品和其他需要制定标准的项目,由国务院规定。	중요 농산물과 기타 기준의 제정이 필요한 항목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第三条 标准化工作的任务是制定标准、组织实施标准和对标准的实施进行监督。	제3조 표준화 사업의 임무는 표준의 제정 및 표준의 실시에 대한 감독수행이다.
标准化工作应当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	표준화 사업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第四条 国家鼓励积极采用国际标准。	제4조 국가는 국제표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第五条 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统一管理全国标准化工作。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分工管理本部门、本行业的标准化工作。	제5조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표준화 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무원의 관련행정 주관부서는 본 부문, 본 업계의 표준화 사업을 분담하여 관리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标准化行政主管部门统一管理本行政区域的标准化工作。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行政主管部门分工管理本行政区域内本部门、本行业的标准化工作。 市、县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有关行政主管部门，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的各自的职责，管理本行政区域内的标准化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표준화 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관련 행정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내의 본 부문, 본 업계의 표준화 사업을 분담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 현금 표준화 행정주관부서와 관련 행정주관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정부가 규정한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표준화 사업을 관리한다.
第二章 标准的制定	제2장 표준의 제정
第六条 对需要在全国范围内统一的技术要求，应当制定国家标准。国家标准由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制定。对没有国家标准而又需要在全国某个行业范围内统一的技术要求，可以制定行业标准。行业标准由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制定，并报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备案，在公布国家标准之后，该项行业标准即行废止。对没有国家标准和行政标准而又需要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统一的工业产品的安全、卫生要求，可以制定地方标准。地方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标准化行政主管部门制定，并报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备案，在公布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之后，该项地方标准即行废止。	제6조 전국적 범위 내에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기술요구에 관하여 국가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표준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국가표준은 없지만 전국 특정 업계 범위 내에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기술요구에 관하여 업계표준을 정할 수 있다. 업계표준은 국무원의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며 국가표준이 발표된 후 해당 업계표준은 즉시 폐지한다.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은 없지만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공산품의 안전 및 위생요구는 지방표준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표준화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며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이 공표된 후 해당 지방표준은 즉시 폐지한다.
企业生产的产品没有国家标准和行业标准的，应当制定企业标准，作为组织生产的依据。企业的产品标准须报当地政府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有关行政主管部门备案。已有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国家鼓励企业制定严于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企业标准，在企业内部适用。 法律对标准的制定另有规定的，依照法律的规定执行。	기업의 생산제품이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이 없을 경우 기업표준을 제정해야 하며 생산 활동의 근거로 해야 한다. 기업의 제품표준은 현지 정부의 표준화 행정주관부서와 관련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이 있을 시 국가는 기업이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보다 엄한 기업표준을 제정하여 기업내부에서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표준의 제정에 대해 법률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第七条 国家标准、行业标准分为强制性标准和推荐性标准。保障人体健康，人身、财产安全的标准和法律、行政法规规定强制执行的标准是强制性标准，其他标准是推荐性标准。	제7조 국가표준, 업계표준은 강제성 표준과 추천성 표준으로 나눈다. 인체건강을 확보하고 인신 및 재산안전의 표준과 법률, 행정법규에서 강제 집행하도록 규정한 표준은 강제성 표준이며 기타 표준은 추천성 표준이다.
省、自治区、直辖市标准化行政主管部门制定的工业产品的安全、卫生要求的地方标准，在本行政区域内是强制性标准。	성, 자치구, 직할시 표준화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 공산품의 안전, 위생요건에 관한 지방표준은 해당 행정구역내에서의 강제성 표준이다.
第八条 制定标准应当有利于保障安全和人民的身体健康，保护消费者的利益，保护环境。	제8조 표준의 제정은 안전 확보와 국민의 신체건강에 유리해야 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第九条 制定标准应当有利于合理利用国家资源，推广科学技术成果，提高经济效益，并符合使用要求，有利于产品的通用互换，做到技术上先进，经济上合理。	제9조 표준의 제정은 국가자원의 합리적 이용, 과학기술성과 보급, 경제적 효과와 이익의 향상에 유리해야하고 사용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제품의 통용, 교환에 유리하며 기술적 우수성 및 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해야 한다.
第十条 制定标准应当做到有关标准的协调配套。	제10조 표준의 제정은 관련 표준과의 조정 및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第十一条 制定标准应当有利于促进对经济技术合作和对外贸易。	제11조 표준의 제정은 대외경제기술의 협력과 대외무역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第十二条 制定标准应当发挥行业协会、科学研究机构和学术团体的作用。	제12조 표준의 제정은 업계협회, 과학연구기관과 학술단체의 작용을 발휘시켜야 한다.
制定标准的部门应当组织由专家组成的标准化技术委员会，负责标准的草拟，参加标准草案的审查工作。	표준제정부문은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기술위원회를 설립하여 표준의 초안 작성을 책임지며 표준초안의 심사업무에 참가하도록 한다.
第十三条 标准实施后，制定标准的部门应当根据科学技术的发展和经济建设的需要适时进行复审，以确认现行标准继续有效或者予以修订、废止。	제13조 표준실시 후 표준제정부문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건설의 수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재심을 수행하여 현행 표준의 지속 유효 또는 개정, 폐지에 대해 확인한다.

第三章 标准的实施	제3장 표준의 실시
第十四条 强制性标准，必须执行。不符合强制性标准的产品，禁止生产、销售和进口。推荐性标准，国家鼓励企业自愿采用。 第十五条 企业对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产品，可以向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或者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授权的部门申请产品质量认证。认证合格的，由认证部门授予认证证书，准许在产品或者其包装上使用规定的认证标志。 已经取得认证证书的产品不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以及产品未经认证或者认证不合格的，不得使用认证标志出厂销售。 第十六条 出口产品的技术要求，依照合同的约定执行。 第十七条 企业研制新产品、改进产品、进行技术改造，应当符合标准化要求。 第十八条 县级以上政府标准化行政主管部门负责对标准的实施进行监督检查。 第十九条 县级以上政府标准化行政主管部门，可以根据需要设置检验机构，或者授权其他单位的检验机构，对产品是否符合标准进行检验。法律、行政法规对检验机构另有规定的，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处理有关产品是否符合标准的争议，以前款规定的检验机构的检验数据为准。	제14조 강제성 표준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생산, 판매와 수입을 금지한다. 추천성 표준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국가가 권장한다. 제15조 기업은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가 권한을 위임한 부서에 제품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에 합격할 시 인증부문은 인증증서를 수여하고 제품 또는 그 포장에 규정된 인증표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이미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이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제품이 인증을 거치지 않았거나 인증에 합격되지 않을 시 인증표지의 사용 및 출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6조 수출제품의 기술요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다. 제17조 기업이 신규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기존 제품을 개선하며 기술 개선 시에는 표준화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정부의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는 표준의 실시에 대해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한다. 제19조 현급 이상 정부의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는 수요에 따라 검사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타 업체의 검사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여 제품이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검사기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관련 제품의 표준부합 여부에 대한 쟁의처리는 전항 규정의 검사기관의 검사데이터를 그 기준으로 한다.

第四章 法律责任	제4장 법률책임
第二十条 生产、销售、进口不符合强制性标准的产品，由法律、行政法规规定的行政主管部门依法处理，法律、行政法规未作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没收产品的违法所得，并处罚款；造成严重后果构成犯罪的，对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	제20조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 또는 수입 시,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행정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 행정 관리부서에서 해당 제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형에 처한다.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른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第二十一条 已经授予认证证书的产品不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而使用认证标志出厂销售的，由标准化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销售，并处罚款；情节严重的，由认证部门撤销其认证证书。	제21조 이미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이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증 표지를 사용하여 출하,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 표준화 행정주관부서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를 명하며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인증부서가 그 인증증서를 철회한다.
第二十二条 产品未经认证或者认证不合格而擅自使用认证标志出厂销售的，由标准化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销售，并处罚款。	제22조 인증을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인증에 합격하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지를 사용하거나 출하, 판매한 경우 표준화 행정주관부서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를 명하며 벌금형에 처한다.
第二十三条 当事人对没收产品、没收违法所得和罚款的处罚不服的，可以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15日内，向作出处罚决定的机关的上一级机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复议决定之日起15日内，向人民法院起诉。当事人也可以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15日内，直接向人民法院起诉。当事人逾期不申请复议或者不向人民法院起诉又不履行处罚决定的，由作出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제23조 당사자가 제품 및 위법소득 몰수와 벌금 처벌에 대해 불복할 경우, 처벌통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의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결정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벌통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재심의 신청 또는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거나 처벌결정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第二十四条 标准化工作的监督、检验、管理人员违法失职、徇私舞弊的，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24조 표준화 사업의 감독, 검사, 관리인원이 법을 어기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五章 附 则	제5장 부 칙
第二十五条 本法实施条例由国务院制定。	제25조 본 법의 실시조례는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第二十六条 本法自1989年4月1日起施行。	제26조 본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부 록 VII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1장 총칙

第一条 为了加强对产品质量的监督管理,提高产品质量水平,明确产品质量责任,保护消费者的合法权益,维护社会经济秩序,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产品生产、销售活动,必须遵守本法。本法所称产品是指经过加工、制作,用于销售的产品。

建设工程不适用本法规定;但是,建设工程使用的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属于前款规定的产品范围的,适用本法规定。

第三条 生产者、销售者应当建立健全内部产品质量管理制度,严格实施岗位质量规范、质量责任以及相应的考核办法。

第四条 生产者、销售者依照本法规定承担产品质量责任。

第五条 禁止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禁止伪造产品的产地,伪造或者冒用他人的厂名、厂址;禁止在生产、销售的产品中掺杂、掺假,以假充真,以次充好。

第六条 国家鼓励推行科学的质量管理方法,采用先进的科学技术,鼓励企业产品质量达到并且超过行业标准、国家标准和国际标准。

对产品质量管理先进和产品质量达到国际先进水平、成绩显著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第七条 各级人民政府应当把提高产品质量纳入国民

제1조 제품의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수준을 제고시키며,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종사하는 제품 생산과 판매활동은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의 제품이란, 가공, 제작단계를 거쳐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건축구조물, 부품 및 설비가 전 항에서 규정한 제품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생산자, 판매자는 그 내부의 제품품질관리 제도를 건전히 하고, 근무 중의 품질규범, 품질책임 및 상응하는 검정방법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생산자, 판매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인증마크 등 품질표지는 위조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제품의 산지, 타인의 회사명칭이나 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생산·판매 제품에 잡물이나 위조제품을 혼합할 수 없으며, 제품을 위조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사칭하지 못한다.

제6조 국가는 과학적인 품질관리 방법을 보급시키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기업의 제품품질이 업계표준,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도달하거나 초월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품품질관리가 선진적이고 제품품질을 국제선진수준에 도달시켰거나 성과가 뚜렷한 단위와 개인을 포상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제품품질의 제고를 국민경

经济和社会发展规划，加强对产品质量工作的统筹规划和组织领导，引导、督促生产者、销售者加强产品质量管理，提高产品质量，组织各有关部门依法采取措施，制止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保障本法的施行。

第八条 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主管全国产品质量监督工作。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产品质量监督工作。

县级以上地方产品质量监督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产品质量监督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产品质量监督工作。

法律对产品质量的监督部门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执行。

第九条 各级人民政府工作人员和其他国家机关工作人员不得滥用职权、玩忽职守或者徇私舞弊，包庇、放纵本地区、本系统发生的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或者阻挠、干预依法对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进行查处。

各级地方人民政府和其他国家机关有包庇、放纵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的，依法追究其主要负责人的法律责任。

第十条 任何单位和个人有权对违反本法规定的行为，向产品质量监督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检举。

产品质量监督部门和有关部门应当为检举人保密，并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规定给予奖励。

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제품품질 관련 업무의 통합 계획과 조직지도를 강화하며, 생산자와 판매자의 제품품질관리 강화와 제품품질 제고를 장려 및 촉진하여야 하고, 각 유관부문을 조직하여 법에 따라 제품생산·판매에서 이 법 규정위반 행위를 제지함으로써 이 법의 시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문은 전국 제품품질감독업무를 관장한다. 국무원 유관부문은 각 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제품품질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현(县)급 이상 지방 제품품질감독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제품품질감독업무를 관장한다.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유관부문은 각 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제품품질감독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법률에서 제품품질 감독부문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 공무원과 기타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서는 아니 되며, 본 지역 및 본 계통에서 발생한 제품 생산·판매중 발생하는 이 법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 생산·판매중 발생하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방해하거나 간여할 수 없다.

각 급 지방인민정부와 기타 국가기관이 제품생산·판매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임한 경우, 법에 따라 그 주요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문에 고발할 수 있다.

제품품질감독부문과 기타 부문은 고발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증하여야 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규정에 따라 포상하여야 한다.

第十一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排斥非本地区或者非本系统企业生产的质量合格产品进入本地区、本系统。

제11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본 지역, 본 계통 이외의 기업이 생산한 품질 합격제품이 본 지역, 본 계통으로의 진입을 배척하지 못한다.

제2장 제품품질의 감독

第十二条 产品质量应当检验合格，不得以不合格产品冒充合格产品。

제12조 제품품질은 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며 불합격 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하지 못한다.

第十三条 可能危及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工业产品，必须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未制定国家标准、行业标准的，必须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要求。

제13조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에 해로운 공업 제품은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 보장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禁止生产、销售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标准和要求的工业产品。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 보장에 대한 표준이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공업제품은 생산할 수 없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第十四条 国家根据国际通用的质量管理标准，推行企业质量体系认证制度。企业根据自愿原则可以向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认可的或者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授权的部门认可的认证机构申请企业质量体系认证。经认证合格的，由认证机构颁发企业质量体系认证证书。

제14조 국가는 국제통용 품질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의 품질체계인증 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자율적 원칙에 따라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인가하거나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문의 수권부문이 인가한 인증기관에 기업 품질체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거쳐 합격한 경우, 인증기관은 기업 품질체계인증증서를 발급한다.

国家参照国际先进的产品标准和技术要求，推行产品质量认证制度。企业根据自愿原则可以向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认可的或者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授权的部门认可的认证机构申请产品质量认证。经认证合格的，由认证机构颁发产品质量认证证书，准许企业在产品或者其包装上使用产品质量认证标志。

국가는 국제 선진적인 제품표준과 기술요구를 참조하여 제품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자율적 원칙에 따라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인가하거나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문의 수권부문이 인가한 인증기관에 제품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거쳐 합격한 경우, 인증기관은 제품품질인증증서를 발급하며 기업은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제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第十五条 国家对产品质量实行以抽查为主要方式的监督检查制度，对可能危及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产品，影响国计民生的重要工业产品以及消费者、有关组织反映有质量问题的产品进行抽查。抽查的样品应当在市场上或者企业成品仓库内的待销产品中随机抽取。监督抽查工作由国务院产品质量监督

제15조 국가는 제품품질에 대한 표본추출을 주요 방식으로 하는 감독검사 제도를 실시하고,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 국가 계획과 대중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업제품 및 소비자와 관련 조직이 품질문제를 반영한 제품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표본검사

部门规划和组织。县级以上地方产品质量监督部门在本行政区域内也可以组织监督抽查。法律对产品质量的监督抽查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执行。

国家监督抽查的产品，地方不得另行重复抽查；上级监督抽查的产品，下级不得另行重复抽查。

根据监督抽查的需要，可以对产品进行检验。检验抽取样品的数量不得超过检验的合理需要，并不得向被检查人收取检验费用。监督抽查所需检验费用按照国务院规定列支。

生产者、销售者对抽查检验的结果有异议的，可以自收到检验结果之日起十五日内向实施监督抽查的产品质量监督部门或者其上级产品质量监督部门申请复检，由受理复检的产品质量监督部门作出复检结论。

第十六条 对依法进行的产品质量监督检查，生产者、销售者不得拒绝。

第十七条 依照本法规定进行监督抽查的产品质量不合格的，由实施监督抽查的产品质量监督部门责令其生产者、销售者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产品质量监督部门予以公告；公告后经复查仍不合格的，责令停业，限期整顿；整顿期满后复查产品质量仍不合格的，吊销营业执照。

监督抽查的产品有严重质量问题的，依照本法第五章的有关规定处罚。

샘플은 시장에서 또는 기업 완제품 창고내의 재고품에서 무작위 추출하여야 한다. 표본검사는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에서 계획하고 기획한다. 현급 이상 지방의 제품품질감독부도 본 행정구역 내의 표본검사를 담당할 수 있다. 법률이 제품품질 표본검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지방에서 별도의 중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며, 상급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하급에서 별도의 중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한다.

제품검사는 품질감독 검사의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검사를 실시할 때 추출하는 샘플의 수량은 검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며, 검사대상으로부터 검사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표본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생산자, 판매자가 표본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를 입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품질감독부 또는 상급 제품품질감독부문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결론은 재검사를 수리한 제품품질감독부에서 내린다.

제16조 생산자, 판매자는 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품품질감독검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7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의 품질이 불합격한 경우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품질감독부문은 생산자, 판매자에게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간이 지나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 제품품질감독부문은 이를 공시한다. 공시 후의 재검사에도 여전히 불합격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하고, 기한부 워크아웃(整顿)을 명령한다. 정돈기간이 만료된 후 재검사를 거치어 제품품질이 여전히 불합격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표본검사 제품에 심각한 품질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 법 제5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第十八条 县级以上产品质量监督部门根据已经取得的违法嫌疑证据或者举报，对涉嫌违反本法规定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行使下列职权：

- (一) 对当事人涉嫌从事违反本法的生产、销售活动的场所实施现场检查；
- (二) 向当事人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和其他有关人员调查、了解与涉嫌从事违反本法的生产、销售活动有关的情况；
- (三) 查阅、复制当事人有关的合同、发票、帐簿以及其他有关资料；
- (四) 对有根据认为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产品或者有其他严重质量问题的产品，以及直接用于生产、销售该项产品的原辅材料、包装物、生产工具，予以查封或者扣押。

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范围，对涉嫌违反本法规定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行使前款规定的职权。

第十九条 产品质量检验机构必须具备相应的检测条件和能力，经省级以上人民政府产品质量监督部门或者其授权的部门考核合格后，方可承担产品质量检验工作。法律、行政法规对产品质量检验机构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二十条 从事产品质量检验、认证的社会中介机构必须依法设立，不得与行政机关和其他国家机关存在隶属关系或者其他利益关系。

第二十一条 产品质量检验机构、认证机构必须依法按照有关标准，客观、公正地出具检验结果或者认证证明。

产品质量认证机构应当依照国家规定对准许使用认证标志的产品进行认证后的跟踪检查；对不符合认证标准而使用认证标志的，要求其改正；情节严重的，

责令停止认证活动，撤销其认证标志，并处五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应当对认证机构实施跟踪检查的情况进行监督检查。

- (一) 이 법을 위반한 혐의 당사자의 생산·판매활동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 (二) 당사자의 법정대표자와 주요책임자, 기타 직원을 통해 이 법 위반혐의가 있는 생산·판매활동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파악한다.
- (三) 당사자의 관련 계약, 전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제한다.
- (四)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품, 품질문제가 심각한 기타 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에 직접 사용한 원부자재, 포장재, 생산수단을 차압하거나 압류한다.

현 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범위에 따라 이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 처리할 때 전 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제품품질검사기관은 상응하는 검사여건과 능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그 수권부문의 검정을 거치어 합격된 후에야 제품품질검사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 품질검사기관 관련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0조 제품품질 검사, 인증에 종사하는 사회중개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이어야 하며, 행정기관이나 기타 국가기관과 예측관계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1조 제품품질 검사기관, 인증기관은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또는 인증증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제품품질인증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후의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함에도

取消其使用认证标志的资格。

불구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인증마크 사용자격을 취소한다.

第二十二条 消费者有权就产品质量问题，向产品的生产者、销售者查询；向产品质量监督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及有关部门申诉，接受申诉的部门应当负责处理。

제22조 소비자는 제품 생산·판매자에게 제품품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품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유관부문에 신고할 권한이 있으며, 신고 접수부문은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第二十三条 保护消费者权益的社会组织可以就消费者反映的产品质量问题建议有关部门负责处理，支持消费者对因产品质量造成的损害向人民法院起诉。

제23조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은 소비자가 반영한 제품품질문제를 입수한 후 관련부문에 처리하도록 건의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품질로 인하여 받은 손해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第二十四条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产品质量监督部门应当定期发布其监督抽查的产品质量状况公告。

제24조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제품품질감독부문은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의 품질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第二十五条 产品质量监督部门或者其他国家机关以及产品质量检验机构不得向社会推荐生产者的产品；不得对产品进行监制、监销等方式参与产品经营活动。

제25조 제품품질감독부문이나 기타 국가기관, 또는 제품품질검사기관은 사회에 생산자의 제품을 추천하지 못하며 제품의 제조, 판매를 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품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생산자·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1절 생산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第二十六条 生产者应当对其生产的产品质量负责。产品质量应当符合下列要求：

제26조 생산자는 자체 생산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一) 不存在危及人身、财产安全的不合理的危险，有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应当符合该标准；

제품품질은 다음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一) 인신, 재산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불합리한 위험이 없으며,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있을 경우 당해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二) 具备产品应当具备的使用性能，但是，对产品存在使用性能的瑕疵作出说明的除外；

(二) 제품이 구비하여야 할 사용성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제품 사용성능에 하자가 존재함을 설명한 경우, 해당책임이 면제된다.

(三) 符合在产品或者其包装上注明采用的产品标准，符合以产品说明、实物样品等方式表明的质量状况。

(三) 제품이나 그 포장에 명기한 제품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설명, 실물샘플 등의 방식으로 표명한 품질상황에 부합되어야 한다.

第二十七条 产品或者其包装上的标识必须真实,并符合下列要求:

- (一) 有产品质量检验合格证明;
- (二) 有中文标明的产品名称、生产厂厂名和厂址;
- (三) 根据产品的特点和使用要求,需要标明产品规格、等级、所含主要成份的名称和含量的,用中文相应予以标明;需要事先让消费者知晓的,应当在外包装上标明,或者预先向消费者提供有关资料;
- (四) 限期使用的产品,应当在显著位置清晰地标明生产日期和安全使用期或者失效日期;
- (五) 使用不当,容易造成产品本身损坏或者可能危及人身、财产安全的产品,应当有警示标志或者中文警示说明。

裸装的食品和其他根据产品的特点难以附加标识的裸装产品,可以不附加产品标识。

第二十八条 易碎、易燃、易爆、有毒、有腐蚀性、有放射性等危险物品以及储运中不能倒置和其他有特殊要求的产品,其包装质量必须符合相应要求,依照国家有关规定作出警示标志或者中文警示说明,标明储运注意事项。

第二十九条 生产者不得生产国家明令淘汰的产品。

第三十条 生产者不得伪造产地,不得伪造或者冒用他人的厂名、厂址。

第三十一条 生产者不得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

第三十二条 生产者生产产品,不得掺杂、掺假,不得以假充真、以次充好,不得以不合格产品冒充合格产品。

제27조 제품 또는 그 포장의 표지는 정확하여야 하며, 다음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 (一) 제품품질검사 합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 (二) 제품의 중문명칭, 생산회사 명칭 및 회사주소가 있어야 한다.
- (三) 제품의 특징과 사용요구에 따라 필요한 제품 사이즈, 등급, 주요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명시하여야 하는 경우, 중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외부 포장에 표시하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四)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은 눈에 띄는 위치에 생산일자와 안전사용기간 또는 실효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五) 사용 부당으로 제품자체의 훼손을 초래하기 쉽거나 인신, 재산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는 경고표지 또는 중문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포장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제품의 특징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기 어려운 기타 비포장 제품에는 제품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파손, 연소, 폭발이 용이하거나 유독, 부식성, 방사성 등의 위험물, 또는 보관, 운수중 도치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요구가 있는 제품은 그 포장 품질이 상응하는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유관 규정에 따라 경고표지나 중문 경고설명을 첨부하고, 보관, 운송 주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 생산자는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킨 제품은 생산하지 못한다.

제30조 생산자는 산지를 위조하지 못하며 타인의 회사명칭, 회사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31조 생산자는 인증마크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32조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에는 잡물이나 위조제품을 혼합하지 못하며, 제품을 위조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사칭하지 못한다.

제2절 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第三十三条 销售者应当建立并执行进货检查验收制度，验明产品合格证明和其他标识。	제33조 판매자는 입하 검사 및 검수제도를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합격증명과 기타 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第三十四条 销售者应当采取措施，保持销售产品的质量。	제34조 판매자는 조치를 취해 판매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第三十五条 销售者不得销售国家明令淘汰并停止销售的产品和失效、变质的产品。	제35조 판매자는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키고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과 실효, 변질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第三十六条 销售者销售的产品的标识应当符合本法第二十七条的规定。	제36조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표지는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第三十七条 销售者不得伪造产地，不得伪造或者冒用他人的厂名、厂址。	제37조 판매자는 산지를 위조하지 못하며, 타인의 회사명칭, 회사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第三十八条 销售者不得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	제38조 판매자는 인증마크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第三十九条 销售者销售产品，不得掺杂、掺假，不得以假充真、以次充好，不得以不合格产品冒充合格产品。	제39조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에는 잡물이나 위조제품을 혼합하지 못하며, 제품을 위조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사칭하지 못하며 불합격 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하지 못한다.

제4장 손해배상

第四十条 售出的产品有下列情形之一的，销售者应当负责修理、更换、退货；给购买产品的消费者造成损失的，销售者应当赔偿损失：	제40조 판매한 제품에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수리·교체·반품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一) 不具备产品应当具备的使用性能而事先未作说明的；	(一) 제품이 구비하여야 할 사용성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二) 不符合在产品或者其包装上注明采用的产品标准的；	(二)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명시된 제품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三) 不符合以产品说明、实物样品等方式表明的质量状况的。	(三) 제품설명, 실물샘플 등의 방식으로 제시된 품질상황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销售者依照前款规定负责修理、更换、退货、赔偿损失后，属于生产者的责任或者属于向销售者提供产品的其他销售者（以下简称供货者）的责任的，销售者	판매자가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교체·반품·손실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거나 판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한 기타 판매자(이하

有权向生产者、供货者追偿。

销售者未按照第一款规定给予修理、更换、退货或者赔偿损失的，由产品质量监督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

生产者之间，销售者之间，生产者与销售者之间订立的买卖合同、承揽合同有不同约定的，合同当事人按照合同约定执行。

第四十一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人身、缺陷产品以外的其他财产（以下简称他人财产）损害的，生产者应当承担赔偿责任。

生产者能够证明有下列情形之一的，不承担赔偿责任：

- （一）未将产品投入流通的；
- （二）产品投入流通时，引起损害的缺陷尚不存在的；
- （三）将产品投入流通时的科学技术水平尚不能发现缺陷的存在的。

第四十二条 由于销售者的过错使产品存在缺陷，造成人身、他人财产损害的，销售者应当承担赔偿责任。销售者不能指明缺陷产品的生产者也不能指明缺陷产品的供货者的，销售者应当承担赔偿责任。

第四十三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人身、他人财产损害的，受害人可以向产品的生产者要求赔偿，也可以向产品的销售者要求赔偿。属于产品的生产者的责任，产品的销售者赔偿的，产品的销售者有权向产品的生产者追偿。属于产品的销售者的责任，产品的生产者赔偿的，产品的生产者有权向产品的销售者追偿。

第四十四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受害人人身伤害的，侵害人应当赔偿医疗费、治疗期间的护理费、因

‘납품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생산자, 납품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교체·반품 또는 손실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품 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그에게 시정을 명령한다.

생산자 간, 판매자 간, 생산자와 판매자 지간에 체결한 매매계약, 수주계약에 같지 않은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1조 제품의 하자로 인해 인신 손해를 입었거나 하자제품 이외 기타 재산(이하 ‘타인의 재산’)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생산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생산자가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一) 제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二) 제품 유통 투입 시, 손실을 초래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 (三) 제품 유통 투입 시, 그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 판매자의 과오로 인하여 제품에 하자가 생기고, 인신손해나 타인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하자제품의 생산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하자제품의 납품자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3조 제품의 하자로 인해 인신손해, 타인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해자는 제품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제품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품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나 판매자가 배상을 한 경우, 제품 판매자는 제품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품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나 제품 생산자가 배상을 한 경우, 제품 생산자는 그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신손해를 초래한 경우, 가해자는 의료비, 치료기간의 간

误工减少的收入等费用；造成残疾的，还应当支付残疾者生活自助具费、生活补助费、残疾赔偿金以及由其扶养的人所必需的生活费等费用；造成受害人死亡的，并应当支付丧葬费、死亡赔偿金以及由死者生前扶养的人所必需的生活费等费用。

因产品存在缺陷造成受害人财产损失的，侵害人应当恢复原状或者折价赔偿。受害人因此遭受其他重大损失的，侵害人应当赔偿损失。

第四十五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损害要求赔偿的诉讼时效期间为二年，自当事人知道或者应当知道其权益受到损害时起计算。

因产品存在缺陷造成损害要求赔偿的请求权，在造成损害的缺陷产品交付最初消费者满十年丧失；但是，尚未超过明示的安全使用期的除外。

第四十六条 本法所称缺陷，是指产品存在危及人身、他人财产安全的不合理的危险；产品有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是指不符合该标准。

第四十七条 因产品质量发生民事纠纷时，当事人可以通过协商或者调解解决。当事人不愿通过协商、调解解决或者协商、调解不成的，可以根据当事人各方的协议向仲裁机构申请仲裁；当事人各方没有达成仲裁协议或者仲裁协议无效的，可以直接向人民法院起诉。

第四十八条 仲裁机构或者人民法院可以委托本法第十九条规定的产品质量检验机构，对有关产品质量进行检验。

호비, 근무 중단으로 감소한 수입 등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 신체장애자의 생활자조 보조기 비용, 생활보조비, 신체장애 배상금 및 그 부양자의 필요한 생활비 등의 비용도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사망배상금 및 그 생전 부양자의 생활비 등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손실이 초래된 경우, 가해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감가(折价)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기타 중대 손실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그 손실도 배상하여야 한다.

제45조 제품의 하자로 초래된 손해배상의 소송시효는 2년이며, 당사자가 그 권익이 침해받은 것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여야 하는 시점부터 기산된다.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초래한 하자제품을 소비자에게 최초 교부한 날로부터 만 10년이 지나면 상실된다. 단, 표시된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이 법에서의 하자란, 제품에 인신 또는 타인의 재산안전에 해를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함을 말한다. 제품에 적용되는,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에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있는 경우, 당해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 제품의 품질문제로 인해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협상 또는 조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을 거절하거나 협상, 조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 각 방의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각 방이 중재에 회부하는 데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중재합의가 무효한 경우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8조 중재기관 또는 인민법원은 이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제품품질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第四十九条 生产、销售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产品的，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包括已售出和未售出的产品，下同）货值金额等值以上三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条 在产品中掺杂、掺假，以假充真，以次充好，或者以不合格产品冒充合格产品的，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百分之五十以上三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一条 生产国家明令淘汰的产品的，销售国家明令淘汰并停止销售的产品的，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等值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第五十二条 销售失效、变质的产品的，责令停止销售，没收违法销售的产品，并处违法销售产品货值金额二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三条 伪造产品产地的，伪造或者冒用他人厂名、厂址的，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的，责令改正，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等值以下的罚款；有

제49조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 보장 관련 국가 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의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생산·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생산·판매 제품(기 판매 또는 미 판매 제품 포함, 이하 동일)의 제품가치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도 함께 몰수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 제품에 잡물이나 위조제품을 섞거나 제품을 모조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 불합격 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한 경우, 생산·판매의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생산·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생산·판매 제품가치의50%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도 몰수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또는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키고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 생산·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생산·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판매 제품가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함께 몰수하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제52조 실효, 변질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판매제품을 몰수하며, 불법 판매 제품가치의2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도 함께 몰수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말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53조 제품의 산지를 위조한 경우, 타인의 회사명칭이나 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인증마크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생산·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

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第五十四条 产品标识不符合本法第二十七条规定的，责令改正；有包装的产品标识不符合本法第二十七条第（四）项、第（五）项规定，情节严重的，责令停止生产、销售，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百分之三十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

第五十五条 销售者销售本法第四十九条至第五十三条规定禁止销售的产品，有充分证据证明其不知道该产品为禁止销售的产品并如实说明其进货来源的，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

第五十六条 拒绝接受依法进行的产品质量监督检查的，给予警告，责令改正；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情节特别严重的，吊销营业执照。

第五十七条 产品质量检验机构、认证机构伪造检验结果或者出具虚假证明的，责令改正，对单位处五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取消其检验资格、认证资格；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产品质量检验机构、认证机构出具的检验结果或者证明不实，造成损失的，应当承担相应的赔偿责任；造成重大损失的，撤销其检验资格、认证资格。

产品质量认证机构违反本法第二十一条第二款的规定，对不符合认证标准而使用认证标志的产品，未依法要求其改正或者取消其使用认证标志资格的，对因

生产、 판매제품가치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도 함께 몰수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제54조 제품표지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포장제품상의 표지가 이 법 제27조 제(四)호, 제(五)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경위가 엄중한 경우, 생산·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생산·판매 제품가치의3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도 함께 몰수한다.

제55조 판매자가 이 법 제49조부터 제53조에서 규정한 판매금지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가 당해 제품이 판매금지 제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제품 공급원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56조 법적 제품품질감독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워크아웃을 명한다. 경위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제57조 제품품질검사기관, 인증기관이 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을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며, 단위에는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주요 관계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 인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도 함께 몰수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그 검사자격, 인증자격을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품품질검사기관, 인증기관이 작성, 발급한 검사결과 또는 증명이 부실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중대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검사자격, 인증자격을 취소한다.

제품품질인증기관이 이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품에 인증마크를 사용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지 아니하거

产品不符合认证标准给消费者造成的损失，与产品的生产者、销售者承担连带责任；情节严重的，撤销其认证资格。

第五十八条 社会团体、社会中介机构对产品质量作出承诺、保证，而该产品又不符合其承诺、保证的质量要求，给消费者造成损失的，与产品的生产者、销售者承担连带责任。

第五十九条 在广告中对产品质量作虚假宣传，欺骗和误导消费者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规定追究法律责任。

第六十条 对生产者专门用于生产本法第四十九条、第五十一条所列的产品或者以假充真的产品的原辅材料、包装物、生产工具，应当予以没收。

第六十一条 知道或者应当知道属于本法规定禁止生产、销售的产品而为其提供运输、保管、仓储等便利条件的，或者为以假充真的产品提供制假生产技术的，没收全部运输、保管、仓储或者提供制假生产技术的收入，并处违法收入百分之五十以上三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二条 服务业的经营者将本法第四十九条至第五十二条规定禁止销售的产品用于经营性服务的，责令停止使用；对知道或者应当知道所使用的产品属于本法规定禁止销售的产品的，按照违法使用的产品（包括已使用和尚未使用的产品）的货值金额，依照本法对销售者的处罚规定处罚。

第六十三条 隐匿、转移、变卖、损毁被产品质量监督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查封、扣押的物品的，处被隐匿、转移、变卖、损毁物品货值金额等值以上三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

나 그 인증마크 사용자격을 취소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품 생산자, 판매자와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그 인증자격을 취소한다.

제58조 사회단체나 사회중개기관이 제품의 품질을 약속 또는 보증했으나, 해당 제품이 그가 약속, 보증한 품질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와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9조 광고에서 제품품질에 대한 허위홍보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도록 유도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생산자가 이 법 제49조와 제51조에 나열한 제품이나 모조제품의 생산에 전문적으로 사용한 원부자재, 포장재, 생산수단은 몰수하여야 한다.

제61조 이 법에서 생산·판매 금지가 규정된 제품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운송, 보관 등의 편리조건을 제공한 경우, 또는 모조 제품의 생산에 기술을 제공한 경우, 운송·보관·저장 또는 모조 생산기술을 제공한 전부 수입을 몰수하며, 불법 수입의 50%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2조 서비스업의 경영자가 이 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판매금지 제품을 영업성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며, 사용한 제품이 이 법의 판매금지 제품에 속하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불법 사용한 제품(기사용 또는 미사용 제품 포함)의 가치에 근거하여 이 법의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참조하여 처벌한다.

제63조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차압, 압류한 물품을 은닉·전이·매각·훼손한 경우, 은닉·전이·매각·훼손한 물품 가치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도 몰수한다.

第六十四条 违反本法规定,应当承担民事赔偿责任和缴纳罚款、罚金,其财产不足以同时支付时,先承担民事赔偿责任。

第六十五条 各级人民政府工作人员和其他国家机关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一) 包庇、放纵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行为的;
- (二) 向从事违反本法规定的生产、销售活动的当事人通风报信,帮助其逃避查处的;
- (三) 阻挠、干预产品质量监督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对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进行查处,造成严重后果的。

第六十六条 产品质量监督部门在产品质量监督抽查中超过规定的数量索取样品或者向被检查人收取检验费用的,由上级产品质量监督部门或者监察机关责令退还;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六十七条 产品质量监督部门或者其他国家机关违反本法第二十五条的规定,向社会推荐生产者的产品或者以监制、监销等方式参与产品经营活动的,由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消除影响,有违法收入的予以没收;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产品质量检验机构有前款所列违法行为的,由产品质量监督部门责令改正,消除影响,有违法收入的予以没收,可以并处违法收入一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其质量检验资格。

제6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상의 배상책임과 과태료 또는 벌금납부의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 만일 그 재산으로 모두를 부담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제65조 각급 인민정부의 공무원과 기타 국가기관의 공무원에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 (一) 이 법에서 규정한 제품의 생산·판매중의 위법행위를 비호하거나 방임한 경우
- (二)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생산·판매활동 종사자에게 비밀을 누설하여 조사 처리에 대한 도피에 협조한 경우
- (三) 이 법을 위반한 제품의 생산·판매 행위에 대한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사 처리를 방해하거나 간여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66조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제품품질감독 표본검사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한 샘플을 요구하거나 검사대상으로부터 검사비용을 수취한 경우, 상급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감찰기관은 그 반환을 명령하고 경위가 엄중한 경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제67조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기타 국가기관이 이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에 생산자의 제품을 추천하거나 제조감독, 판매감독 등의 방식으로 제품의 경영활동에 참여한 경우,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영향성을 해소하도록 명령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제품품질검사기관이 전 조항에서 열거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제품품질감독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영향성을 해소하도록 명령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위법소득1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그 품질검사자격을 취소한다.

第六十八条 产品质量监督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六十九条 以暴力、威胁方法阻碍产品质量监督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的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的，依法追究刑事责任；拒绝、阻碍未使用暴力、威胁方法的，由公安机关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

第七十条 本法规定的吊销营业执照的行政处罚由工商行政管理部门决定，本法第四十九条至第五十七条、第六十条至第六十三条规定的行政处罚由产品质量监督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权范围决定。法律、行政法规对行使行政处罚权的机关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七十一条 对依照本法规定没收的产品，依照国家有关规定进行销毁或者采取其他方式处理。

第七十二条 本法第四十九条至第五十四条、第六十二条、第六十三条所规定的货值金额以违法生产、销售产品的标价计算；没有标价的，按照同类产品的市场价格计算。

제68조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공무원이 직권남용·직무태만·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로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제69조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거부 또는 방해하였으나 폭력, 위협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0조 이 법에서 규정한 영업허가증 회수취소 행정처벌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결정하며, 이 법 제49조부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몰수한 제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각하거나 기타 방식을 취하여 처리한다.

제72조 이 법 제49조부터 제54조, 제62조, 제63조에서 규정한 상품의 가치는 불법 생산·판매제품의 정찰가격으로 계산한다. 정찰가격이 없는 경우, 같은 종류 제품의 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제6장 부칙

第七十三条 军工产品质量监督管理办法，由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另行制定。

因核设施、核产品造成损害的赔偿责任，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七十四条 本法自1993年9月1日起施行。

제73조 군수산업 제품의 품질감독관리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핵 시설 핵 제품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법률·행정법규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4조 이 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Ⅷ



국가표준 18401-2010
(GB 18401-2010)

국가방직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

National general safety technical code for textile products

중화인민공화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 국 국 가 표 준 화 관 리 위 원 회

반포

전언(前言)

본 표준의 전체 기술 내용은 강제성을 가진다.

본 표준은 GB18401-2003「국가방직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을 대체한다. 본 표준과 GB 18401-2003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기술내용의 주요한 변화는 아래와 같다:

- 범위 중 “가정용”을 추가하고, “사용” 및 “공급·수요 쌍방의 협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기술 삭제;
- 제2장에 GB/T23344 인용표준 추가;
- 영유아의 연령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수정;
- 4.1의 생산품 분류를 A, B, C의 약호를 사용하는 것에서 직접 문자로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
- 표 1 중 B유형의 pH수치 4.0 ~ 7.5를 4.0 ~ 8.5로 수정;
- 표 1의 각주 a와 b의 상품을 “반제품”으로 명확히 기재;
- 표 1의 각주 b에 “본 색깔 및 표백 제품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흘치기염색, 납염 등 전통적 수공작색 제품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타액에 대한 변색 내구성은 영유아 방직제품군만 심사한다”를 추가;
- 표 1의 각주 c에 ‘발암성방향족아민(aromatic amine)’의 한계수치 $\leq 20\text{mg/kg}$ 를 추가;
- 5.2에 “커튼 등 매달아 놓는 유형의 인테리어 상품군은 땀자국에 대한 변색 내구성은 심사하지 아니한다”의 문구 추가;
- 5.3에 “제품에 따라 종류별로 분류한다”의 문구를 추가하고, 각주 중의 80cm를 100cm로 조정;
- 6.8 중의 검출 한계치를 삭제;
- 7.4에 참고사항(注)에 있던 내용을 본문의 내용으로 추가;
- 부록 A에 A.11, A.12, A.13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A.9를 “켈트공예품”으로 수정;
- 부록 B의 전형물품예시를 조정;
- 부록 C의 목록 중 “4-아미노아조벤젠” 항목을 새로이 추가;
- 부록 D를 새로이 추가.

본 표준은 방직제품의 기본안전성능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며, 기타 요구사항은 상응하는 표준에 의하여 집행된다.

본 표준의 부록 C는 규범성 부록으로, 부록 A, 부록 B 그리고 부록 D는 자료성 부록이다.

본 표준은 중국방직공업협회에서 제정되었다.

본 표준은 전국방직제품표준화 기술위원회에 귀속된다.

본 표준은 방직공업표준화연구소 및 국가섬유제품 품질감독검사시험센터에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본 표준의 초안 주요 작성자 : 정우영(鄭宇英), 서로(徐路), 왕보군(王寶軍).

본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대체되는 개정 전 판본은 다음과 같다:

- GB 18401-2001, GB 18401-2003.

「국가방직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

1. 범위

본 표준은 방직제품의 기본안전기술요구, 시험방법, 검험규칙 및 실시 그리고 감독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방직제품의 기타 요구사항은 관련한 표준에 따라 실시한다.

본 표준은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의류용, 인테리어용과 가정용 방직제품에 적용한다. 수출용 제품은 당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주 : 부록A 중에 열거된 제품은 본 표준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규범성 인용문건

아래 문서 중의 조항은 본 표준에 인용됨으로 하여 본 표준의 조항이 된다. 일반적으로 날짜가 기입된 인용문건 그 이후 수·개정(단, 오탈자 교정은 제외)된 경우, 수·개정된 사항을 본 표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 표준을 토대로 하여 협의한 당사자 각 방이 이러한 문건의 최신 판본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연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또한, 날짜가 기입되지 않은 인용문건은 그 인용문건의 최신 판본을 본 표준에 적용한다.

GB/T 2912.1, 방직품, 포름알데히드의 측정, 제1부분 : 유리(遊離)와 가수분해의 포름알데히드(수분추출법)(GB/T 2912.1-2009, ISO 14184.1:1998, MOD)

GB/T 3920, 방직품, 색 견뢰도 시험, 마찰견뢰도(GB/T 3920-2008, ISO 105-X12:2001, MOD)

GB/T 3922, 방직품, 땀 견뢰도 시험방법(GB/T 3922-1995, eqv ISO 105-E04:1994)

GB/T 5713, 방직품, 색 견뢰도 시험, 물 견뢰도(GB/T 5713-1997, eqv ISO 105-E01:1994)

GB/T 7573, 방직품, 물 추출액 pH수치의 측정(GB/T 7573-2009, ISO 3071:2005, MOD)

GB/T 17592, 방직품, 아조염료 사용금지의 측정

GB/T 18886, 방직품, 색 견뢰도 시험, 타액 견뢰도 시험

GB/T 23344, 방직품, 4-아미노아조벤젠의 측정

3. 용어 정의

아래의 술어 및 정의는 본 표준에 적용한다.

3.1. 방직제품(textile products)

천연섬유와 화학섬유를 주요 원료로 하여, 실을 뽑고 직물을 짜며 염색을 하는 등의 기법 또는 봉제를 하거나 복합하는 등의 기법으로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예컨대 실, 직물 및 그 완제품 따위.

3.2. 기본안전기술요구(general safety specification)

방직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

3.3. 영유아방직제품(textile products for infants)

36개월 및 그 이하 연령의 영유아가 착용하거나 혹은 사용하는 방직제품.

3.4. 피부에 직접 닿는 방직 제품(textile products with direct contact to skin)

착용하거나 사용 시, 제품의 대부분 면적이 직접적으로 인체의 피부와 접촉하게 되는 방직제품.

3.5.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방직 제품(textile products without direct contact to skin)

착용하거나 사용 시, 제품이 직접적으로 인체의 피부와 접촉하지 않거나 혹은 작은 면적만이 인체의 피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방직제품.

4. 제품분류

4.1. 최종용도에 따른 제품의 분류는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 영유아 방직제품;
- 피부에 직접 닿는 방직제품;
-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방직제품.

4.2. 사용자가 재가공을 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제품(예컨대, 원단과 같은 면직 재료, 실)은 그 최종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5. 요구

5.1. 방직제품의 기본안전기술요구사항은 그 지시요구의 정도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그리고 C등급으로 분류하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부록 표1-1〉 방직제품의 기본안전기술요구지표

항목		A등급	B등급	C등급
포름알데히드/(mg/kg) ≤		20	75	300
pH수치 ^a		4.0~7.5	4.0~8.5	4.0~9.0
염색 전뢰도 ^b /급≥	내수성(변·착색)	3~4	3	3
	내산성·땀자국 (변·착색)	3~4	3	3
	내알칼리성·땀자국 (변·착색)	3~4	3	3
	마찰에 대한 내구성	4	3	3
	타액에 대한 내구성 (변·착색)	4	-	-
이취(이상한 냄새)		없음		
가분해발암성방향족아민염료 ^c /(mg/kg)		사용금지		
a : 후속가공기법제품 중 반드시 습식처리를 하여야만 하는 반제품은 pH수치를 4.0~10.5사이로 설정한다. b : 세탁하여 탈색기법을 거칠 필요가 있는 반제품, 본 색깔 및 표백 제품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흘치기염색, 납염 등 전통방식의 수공착색 제품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타액에 대한 변색 내구성은 영유아방직제품군만 심사한다. c : 발암성방향족아민성분의 목록은 부록 C를 참조하며, 한계수치는 ≤ 20mg/kg.				

5.2. 영유아방직제품은 반드시 A등급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하고,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은 적어도 B등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하며,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제품은 적어도 C등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중, 커튼 등 매달아 놓는 유형의 인테리어 상품군은 땀자국에 대한 변색 내구성은 심사하지 아니한다.

5.3. 영유아방직제품은 반드시 ‘사용설명’ 상에 “영유아용품”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한다. 기타 상품은 반드시 ‘사용설명’ 상에 기본안전기술요구지표에 따른 등급(예컨대, A등급, B등급 혹은 C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품에 따라 종류별로 분류한다.

주 : 일반적으로 신장 100cm이하의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은 영유아방직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6. 시험방법

6.1. 포름알데히드 함량의 측정은 GB/T 2912.1에 따라 시행한다.

6.2. pH수치 측정은 GB/T 7573에 따라 시행한다.

6.3. 물에 대한 강도 측정은 GB/T 5713에 따라 시행한다.

6.4. 산성 및 알칼리성에 대한 강도 측정은 GB/T 3922에 따라 시행한다.

6.5. 마찰에 대한 강도 측정은 GB/T 3920에 따라 시행한다.

6.6. 타액에 대한 강도 측정은 GB/T 18886에 따라 시행한다.

6.7. 이취(이상한 냄새)의 검측에는 후각법을 사용하며, 후각법의 검측원은 반드시 훈련과 심사를 거친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샘플을 개봉한 후에는 즉시 각 항목의 검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검측은 반드시 청결한 이상이 없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후각법의 검측원은 양 손을 깨끗이 씻은 뒤 장갑을 착용하고 두 손으로 샘플을 콧구멍에 밀착시킨 뒤 샘플에서 달려져오는 공기의 냄새를 세세히 맡는데, 이 때, 만일 곰팡이 냄새·높은 비등점의 석유냄새(예컨대 휘발유 또는 등유 냄새)·생선 비린내 또는 방향성 탄화수소 냄새 중 일종 또는 여러 종의 냄새가 검출될 경우, “이상 있음”으로 판단하고 이상점을 기재한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상 없음”으로 판단한다.

반드시 2인의 검측원이 독립적으로 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2인의 일치된 결과를 해당 샘플의 검측결과로 한다. 만일 2인의 검측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1명의 검측원을 추가로 하여 검측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2인의 일치된 결과를 해당 샘플의 검측결과로 한다.

6.8. 가분해발암성방향족아민염료의 측정은 GB/T 17592와 GB/T 23344에 따라 시행한다.

주 : 일반적으로 GB/T 17592에 따라 검측을 실시하며, 아미노벤젠 그리고/혹은 1, 4-페닐디아민이 검출된 경우, GB/T 23344에 따라 검측을 재 실시 한다.

7. 검험규칙

7.1. 제품은 그 제품의 품종, 색깔에 따라서 무작위추출의 방법으로 샘플의 대표성을 갖게 하고, 모든 품종은 각 색깔에 따라 1개의 샘플을 추출한다.

7.2. 천의 샘플링의 경우, 천의 앞부분을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길이는 0.5미터 이상의 ; 복장 혹은 기타 제품의 샘플의 수량은 반드시 시험의 수요에 충족하여야만 한다.

7.3. 샘플을 채취한 이후 밀봉하여야하며, 그 어떠한 처리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관 실험의 샘플 채취 방법은 부록 D의 샘플 채취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7.4. 제품의 유형에 근거, <표1>과 대조하여 평가 및 결정할 때, 만일 샘플의 시험결과가 <표1>의 상응 유형의 요구에 전부 부합하는 경우(두 가지 및 그 이상 종류의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모든 성분이 <표1>의 상응 유형의 요구에 모두 부합하여야 함), 그 샘플의 기본안전성능은 합격인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불합격인 것으로 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과 직접 닿지 않는 제품 중, 제품 중량의 1%를 초과하지 않는 성분은 심사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7.5. 만일 추출한 샘플이 전부 합격한 경우, 해당 상품의 기본안전성능은 합격인 것으로 판정한다. 만일 불합격한 샘플이 있는 경우, 해당 샘플로 대표되는 품종 혹은 색깔의 제품은 불합격인 것으로 판정한다.

8. 실시와 감독

8.1.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및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방직제품의 연구·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본 표준의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생산·판매·수입을 금지한다.

8.2.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및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본 표준의 위반행위를 고소·고발·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8.3. 「중화인민공화국제품질량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는 방직제품에 대하여 샘플을 추출하여 검사하는 것을 주요 방식으로 하는 감독·검사 제도를 실시한다.

8.4. 방직제품에 대하여, 기본안전방면의 제품인증 등 업무는 국가 유관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9. 법률책임

본 표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제품질량법」 등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부 록 A

(자료성 부록)

본 표준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품의 목록

- A.1. 토목용 섬유(Geotextile), 루핑(Roofing)·펠트(Felt)지 등과 같은 공정용 방직제품.
- A.2. 제지 담요, 타이어 코오드(Tire cord fabric), 여과천, 절연 방직품 등 공업용 방직제품.
- A.3. 수경재배용 천 등 농업용 방직제품.
- A.4. 방독·방복사·내고온 등 특수방호용품.
- A.5. 어망·로프 케이블·등산용 밧줄 등 그물, 밧줄 유형의 용품.
- A.6. 마대자루·소포 등 포장제품.
- A.7. 의료용 거즈·붕대 등 의료용품.
- A.8. 쉼트 및 쿠션 유형의 완구.
- A.9. 쉼트공예품.
- A.10. 네온간판·차양·천막 등 실외제품.
- A.11. 일회성 위생용품.
- A.12. 트렁크·백팩·신발·우산 등
- A.13. 카펫.

부 록 B

(자료성 부록)

방직제품분류예시

〈표 B.1〉에 열거된 제품은 제품분류의 예시이다. 〈표B.1〉 중 열거되지 아니한 제품은 반드시 그 제품의 최종용도에 따라서 그 제품의 유형을 확정해야한다.

〈표 B.1〉

유 형	전형분류예시
영유아 방직제품	기저귀, 내의, 턱받이(손수건), 잠옷, 장갑, 양말, 외투, 침대용품.
피부에 직접 닿는 방직제품	내의, 바지, 치마, 셔츠, 양말, 침대시트, 이불, 수건, 수영복, 모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방직제품	외투, 치마, 바지, 커튼, 침대커버, 형겔벽지.

부 록 C

(규범성 부록)

발암성방향족아민 목록

〈표 C.1〉

연번	영문명칭	중문명칭	한글명칭	CA(Chemical Abstracts)
1	4-aminobiphenyl	4-氨基联苯	4-아미노비페닐	92-67-1
2	benzidine	联苯胺	벤지딘	92-87-5
3	4-Chloro-o-toluidine	4-氯邻甲苯胺	4-클로로-o-톨루이딘	95-69-2
4	2-Naphthylamine	2-萘胺	2-나프틸아민	91-59-8
5	o-Aminoazotoluene	邻氨基偶氮甲苯	o-아미노아조톨루엔	97-56-3
6	5-nitro-o-toluidine	5-硝基-邻甲苯胺	5-니트로-o-톨루이딘	99-55-8
7	p-chloroaniline	对氯苯胺	p-클로로아닐린	106-47-8
8	2,4-diaminoanisole	2,4-二氨基苯甲醚	2,4-디아미노아니솔	615-05-4
9	4,4'-diaminobiphenylmethane	4,4'-二氨基二苯甲烷	4,4'-디아미노비페닐메탄	101-77-9
10	3,3'-dichlorobenzidine	3,3'-二氯联苯胺	3,3'-디클로로벤지딘	91-94-1
11	3,3'-dimethoxybenzidine	3,3'-二甲氧基联苯胺	3,3'-디메톡시벤지딘	119-90-4
12	3,3'-dimethylbenzidine	3,3'-二甲基联苯胺	3,3'-디메틸벤지딘	119-93-7
13	3,3-dimethyl-4,4'-diaminobiphenyl methane	3,3'-二甲基-4,4'-二氨基二苯甲烷	3,3'-디메틸-4,4'-디아미노비페닐메탄	838-88-0
14	p-cresidine	2-甲氧基-5-甲基苯胺	p-크레시딘	120-71-8
15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4,4'-亚甲基-二-(2-氯苯胺)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101-14-4
16	4,4'-oxydianiline	4,4'-二氨基二苯醚	4,4'-옥시디아닐린	101-80-4
17	4,4'-thiodianiline	4,4'-二氨基二苯硫醚	4,4'-티오디아닐린	139-65-1
18	o-toluidine	邻甲苯胺	o-톨루이딘	95-53-4
19	2,4-toluyldiamine	2,4-二氨基甲苯	2,4-톨루엔디아민	95-80-7
20	2,4,5-trimethylaniline	2,4,5-三甲基苯胺	2,4,5-트리메틸아닐린	137-17-7
21	o-anisidine	邻甲氧基苯胺	o-아니시딘	90-04-0
22	4-aminoazobenzene	4-氨基偶氮苯	4-아미노아조벤젠	60-09-3
23	2,4-xylydine	2,4-二甲基苯胺	2,4-크실리딘	95-68-1
24	2,6-xylydine	2,6-二甲基苯胺	2,6-크실리딘	87-62-7

부 록 D

(자료성 부록)

샘플 추출 설명

D.1. 색 견뢰도 시험에서의 샘플링

상응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규정한다. 디자인의 순환이 비교적 크거나 불규칙적인 날염, 선염 제품의 경우, 각 색깔별로 샘플을 분별 채취하여 검측을 진행하고 등급이 가장 낮은 것을 시험결과로 한다.

D.2. 포름알데히드, pH수치와 가분해발암성방향족아민 염료 시험에서의 샘플링

D.2.1. 색깔 패턴이 있는 제품:

- 규칙적 디자인의 제품인 경우, 그 디자인의 순환에 맞추어 샘플링하고, 잘라서 혼합한 후에 하나의 스타일로 한다.
- 디자인의 순환이 매우 큰 제품의 경우, 그 면적에 비례하여 샘플링하고, 잘라서 혼합한 후에 하나의 스타일로 한다.
- 독립적 패턴을 지닌 제품의 경우, 그 패턴의 면적이 하나의 스타일을 이루기에 충분한 경우, 그 패턴을 단독적으로 샘플링 한다; 패턴의 면적이 작아 하나의 스타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패턴 자체를 샘플링 하며, 여러 개의 샘플 중 잘라 붙여 하나의 스타일로 만드는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다.
- 패턴이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가분해방향족아민의 검측만을 진행한다.

D.2.2. 여러 겹 및 복합적 제품:

- 손으로 겹을 분리해낼 수 있는 제품의 경우, 겹을 분리하여 샘플링하고, 분별하여 측정한다;
- 손으로 겹을 분리해낼 수 없는 제품의 경우, 그 전체 제품을 샘플링으로 한다.

참고문헌

- [1]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 [2]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실시조례
- [3]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

부 록 IX



중국 「형법」 중 제품의 품질에 관한 죄목	
第一百四十条 【生产、销售伪劣产品罪】 生产者、销售者在产品中掺杂、掺假，以假充真，以次充好或者以不合格产品冒充合格产品，销售金额五万元以上不满二十万元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销售金额二十万元以上不满五十万元的，处二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销售金额五十万元以上不满二百万元的，处七年以上有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销售金额二百万元以上的，处十五年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제140조(가짜·불량상품 생산·판매죄)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제품에 잡물 및 가짜를 혼합하여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저질의 제품을 좋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불합격품을 합격품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그 판매금액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위의 벌금형에만 처한다; 판매금액이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판매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판매금액이 20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第一百四十一条 【生产、销售假药罪】 生产、销售假药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对人体健康造成严重危害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致人死亡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无期徒刑或者死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제141조(위약 생산·판매죄) 위약을 생산·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인체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정황이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황이 있는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며,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本条所称假药，是指依照《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的规定属于假药和按假药处理的药品、非药品。	본 조에서 말하는 위약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한 위약, 위약으로 처리한 약품 또는 비약품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第一百四十二条 【生产、销售劣药罪】 生产、销售劣药，对人体健康造成严重危害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后果特别严重的，处十年以	제142조(불량약품 생산·판매죄) 불량약품을 생산·판매하여, 인체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本条所称劣药，是指依照《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的规定属于劣药的药品。

第一百四十三条【生产、销售不符合安全标准的食品罪】

生产、销售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食品，足以造成严重食物中毒事故或者其他严重食源性疾病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对人体健康造成严重危害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后果特别严重的，处七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第一百四十四条【生产、销售有毒、有害食品罪】

在生产、销售的食物中掺入有毒、有害的非食品原料的，或者销售明知掺有有毒、有害的非食品原料的食物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对人体健康造成严重危害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致人死亡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依照本法第一百四十一条的规定处罚。

第一百四十五条【生产、销售不符合标准的卫生器材罪】

生产不符合保障人体健康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医疗器械、医用卫生材料，或者销售明知是不符合保障人体健康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医疗器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후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본 조에서 말하는 불량약품은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한 불량약품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143조(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의 생산·판매죄)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판매하여 엄중한 식중독사고 또는 음식물이 원인인 된 기타의 엄중한 질환을 야기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인체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정황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후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제144조(유독성·유해성 식품의 생산·판매죄)

식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유독·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혼합하거나, 유독·유해한 비식품 원료가 혼합된 식품임에 그 정을 명확히 알면서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체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 혹은 기타 엄중한 정황을 초래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기타 특히 엄중한 정황을 초래한 경우, 본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145조(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생기재의 생산·판매죄)

인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기계, 의료용 위생재료를 생산하거나 또는 인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표준,

医用卫生材料，足以严重危害人体健康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对人体健康造成严重危害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后果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第一百四十六条 【生产、销售不符合安全标准的产品罪】

生产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电器、压力容器、易燃易爆产品或者其他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产品，或者销售明知是以上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产品，造成严重后果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后果特别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

第一百四十七条 【生产、销售伪劣农药、兽药、化肥、种子罪】

生产假农药、假兽药、假化肥，销售明知是假的或者失去使用效能的农药、兽药、化肥、种子，或者生产者、销售者以不合格的农药、兽药、化肥、种子冒充合格的农药、兽药、化肥、种子，使生产遭受较大损失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使生产遭受重大损失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기계, 의료용 위생재료임에 그 정을 명확히 알면서도 판매하여 인체건강을 엄중하게 위해하기에 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인체건강에 대하여 엄중한 위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후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제146조(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생산·판매죄)

신체안전, 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전기기구, 압력용기, 폭발 및 인화성 물품 또는 신체안전, 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타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위의 신체안전, 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생산품인 정을 명확히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후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47조(가짜 농약·수의약품·화학비료·종자의 생산·판매죄)

가짜 농약, 가짜 동물의약품, 가짜 화학비료를 생산하거나 가짜 또는 사용기한을 초과한 농약, 동물의약품, 화학비료, 종자인 정을 명확히 알면서도 판매하거나 혹은 생산자, 판매자가 불합격된 농약, 동물의약품, 화학비료, 종자를 합격된 농약, 동물의약품, 화학비료, 종자로 사칭함으로써 생산에 비교적 큰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

使生产遭受特别重大损失的，处七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第一百四十八条 【生产、销售不符合卫生标准的化妆品罪】

生产不符合卫生标准的化妆品，或者销售明知是不符合卫生标准的化妆品，造成严重后果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

第一百四十九条 【对生产、销售伪劣商品行为的法条适用原则】

生产、销售本节第一百四十一条至第一百四十八条所列产品，不构成各该条规定的犯罪，但是销售金额在五万元以上的，依照本节第一百四十条的规定定罪处罚。

生产、销售本节第一百四十一条至第一百四十八条所列产品，构成各该条规定的犯罪，同时又构成本节第一百四十条规定之罪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第一百五十条 【单位犯本节规定之罪的处罚规定】

单位犯本节第一百四十条至第一百四十八条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各该条的规定处罚。

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형에만 처한다; 생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생산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제148조(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의 생산·판매죄)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인 그 정을 명확히 알면서도 판매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형에만 처한다.

제149조(가짜·불량상품 생산·판매행위의 법조적용 원칙)

본 절의 제141조부터 제148조까지 열거된 상품을 생산·판매하였지만 각 조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매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때에는 본 절의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본 절의 제141조부터 제148조까지 열거된 상품을 생산·판매하여 각 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고 동시에 본 절 제140조의 규정의 죄도 구성하는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운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50조(단위범의 처벌규정)

단위가 본 절 제140조부터 제148조까지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하고, 또한 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는 해당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 록 X



발의 일자	대표 발의자	소속 정당	제안이유	주요 내용	처리 결과
1973. 10.12 「전기 용품 안전 관리 법」	정부		전기용품의 제조·판매·사용등을 규제함으로써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장해를 방지	가.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나. 제조업자가 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제조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 다. 판매업자는 불량전기용품을 판매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함. 라. 전기사업자·전기공사업자등은 불량전기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마. 공업진흥청은 불량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파괴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전기통신용품에 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함	수정 가결
1989. 10.18	정부		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전기용품제조업허가 및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하고, 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국 의 전기용품제조업자도 제조업등록등을 받을 수 있게 하며,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 칙을 현실화	가. 전기용품을 위해의 정도에 따라 1종전기용품과 2종전기용품으로 구분함. 나. 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용품제조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2종 전기용품제조업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다.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대상을 1종전기용품으로 한정함.	원안 가결
1998. 10.29	정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신고제를 폐지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의 전기용품의 안전관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부에 의한 형식 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가. 전기용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전기용품과 공장 등 그 생산체를 시험·평가하여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안전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제품의 사양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하도록 하고, 화재·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정 가결

			수 있도록 함 다.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당해 제품·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 등은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당해 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등을 하고 당해 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종전의 등록(1종 전기용품) 및 신고(2종 전기용품) 제도를 폐지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원안 가결
1998. 12.30	산업지원 위원장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의 자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타 행정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가. 전기용품제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등록제 및 2종전기용품제조업의 신고제, 2종전기용품 수입판매업의 신고제를 폐지함 나. 전기용품제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 규정승인제를 폐지함 다. 기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1종전기용품제조업자 등에 대한 시설의 수리 등의 명령제도 폐지	수정 가결
2004. 11.09	정부	불량전기용품의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 증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가. 수입증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도입(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증고전기용품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 이를 그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여야 함)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제조업자는	

2005. 07.18	심재엽 의원 등 17인	전 한 나라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를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안전 인증대상 사무소·사업장·점포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전기용품 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음. 이 때 검사·질문계획을 사전에 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노력이 소요되는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하려는 것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다. 불법전기용품 조사 및 확인 등을 위한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설립 라. 안전인증 관련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수정 가결
2007. 08.24	정부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용품 중 위험(危害)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	가. 전기용품의 대여업자 등에 대한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 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만으로도 화재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	수정 가결

2008. 01.18	서갑원 의원 등 10인	전 민 주당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최근 인터넷 쇼핑물 운영자가 불법전기용품을 중개판매하는 신종영업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중개판매업자의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가 함으로써 안전사고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도는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성 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해당 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함
2008. 10.08	임태희 의원 등 171인	전 한 나라당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수정 가결 가.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의 경우에도 제조·판매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 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2008. 10.31	허범도 의원 등 10인	전 한 나라당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공급자책임성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 나.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한 경우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위한 제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기관에서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	대안 반영 폐기

			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안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으로 규정 마. 안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의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 사. 거짓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와 자율안전확인대상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안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자.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2008. 11.28	김종률 의원 등 18인	전 민 주당	현행 양별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 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별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원안 가결
2008. 12.02	최구식 의원 등 11인	전 한 나라당	현행법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 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전기용품판매증개 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의 판매의 증개·구매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전기용품의 비대면 거래를 중 개하는 전기용품 통신판매증개자의 경우 단 순히 거래의 장과 시스템만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자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제품의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전기용품 통신판매증개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통신판매증개자가 제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 또는 고지하였거나, 소비자 의 보호를 위해 결제대금예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음	대안 반영 폐기
2009. 02.26	지식경제 위원장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안전 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하도록 함. 또한, 현행별상 전기용품판매 증개업자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 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증개 금지 조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사업자에게 동등 하게 적용되어야 함. 이에 따라 “증개”에서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전기용품으로 규정함 나.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 또는 자율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 인한 경우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위한 제품 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전기용품 판매의 증개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증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원안 가결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함 라.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등의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규정함 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인 표시등을 하도록 함 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인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용품판매증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인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증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증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전기용품 판매의 “증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 한 경우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카.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2010. 06.10	정부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안전인증 면제확인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과 중복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가.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 등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나. 안전기준 없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근거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마련 다. 자체검사 기록의 작성·보관 의무의 내용 중 작성·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만 하도록 함	원안 가결
2012. 12.28	정부	진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교류 전원이나 직류 전원을 이용한 기계·기구 및 재료를 전기용품으로 정의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타인에게 주문자의	가. 전기용품의 용어를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을 교류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 등으로 정의 나. 현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	수정 가결

2013. 11.04	강창일 의원 등 10인	전 민 주당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도 제조업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다.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타인에게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제조업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을 다원화	원안 가결
2014. 04.14	윤영석 의원 등 10인	전 새 누리당	현행법은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해발생 우려가 큰 전기용품 중 일부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을 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확인인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라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고가의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일부 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반영하여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안전확인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정 가결

2015. 08.27	정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점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가. 공산품의 명칭을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모두 동일하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통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통합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사 종류 및 주기의 완화(안전인 증대상제품 모두 2년에 1회 정기검사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시검사를 폐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검사를 통일하고 단순화) 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의무 신설 라. 안전인증기관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신설 마.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등은 안전확인신고의 효 령을 상실시키는 규정 신설 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사고 발생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큰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도입	수정 가결	
2015. 11.05	조경태 의원 등 10인	전 새 정치민 주연합	현행법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 인증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현행보 다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 성확인을 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 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 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를 하도록 함	임기 만료 폐기

2017. 02.28	산업통상 자원위원 장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유와 비교해 비난의 가능성이 큰 만큼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 활동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 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표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 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구매대행업 의 경우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 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 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시행규 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 품에 대해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 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모델 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보관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 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 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 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 지 배제하도록 함. 또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 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함	원안 가결
2017. 03.17	박정 의원 등 10인	더불어 민주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 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현행법에 따르면 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 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확인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그러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소상공 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관 위접 수	

			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영난 등의 이유로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2017. 04.07	지상욱 의원 등 10인	바른 정당	현행법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자적합성생활용품 중 특히 의류, 가방 등의 경우 원부자재(원단 등)에 대한 단순 봉제작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은 패션 트렌드에 맞추어 신속히 국내외로 판매되어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상황임. 따라서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각 제조업자가 제품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현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아 중국 등 동남아 수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	소관 위점 수	생활용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원부자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부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행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화학처리 등 없이 제조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 함